발 간 등 록 번 호

지역경찰을위한필수절차법

2015.9.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목 차

1. 형사소송법
2.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3.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4.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5.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6. 기소중지자 지명수배 · 통보지침
7.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8.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9. 검찰압수물사무규칙
10.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11.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형사소송법

[시행 2015.7.31] [법률 제13454호, 2015.7.31,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①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토지관할의 심리분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①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신설 1995.12.29>

제9조(사물관할의 병합)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제13조(관할의 경합)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관할지정의 청구)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

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①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1987.11.28>

[본조신설 1973.1.25]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3.31>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기피신청의 관할) ①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①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개정 1995.12.29>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기피당한 법관이 기피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①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0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신설 1995.12.29>

제24조(회피의 원인 등) ①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②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

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본장의 규정은 제17조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개정 2007.6.1>

[제목개정 2007.6.1]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개정 2007.6.1>

제27조(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②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제28조(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특별대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제29조(보조인)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다.<신설 2015.7.31>
③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6.1, 2015.7.31>
④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7.31>

제4장 변호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05.3.31>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①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32조의2(대표변호인) ①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7.19]

제34조(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07.6.1]

제36조(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변호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장 재판

제37조(판결, 결정, 명령) ①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②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④전항의 조사는 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제38조(재판서의 방식)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제39조(재판의 이유)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

제40조(재판서의 기재요건) ①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7.18>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3조(동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44조(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1.9.1>

제45조(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6장 서류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 ①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③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한다.
④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⑦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①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③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 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①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7.6.1>
1.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2.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8. 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제52조(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제48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단,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①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법관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07.6.1>

③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07.6.1>

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 등) ①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07.6.1>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7.6.1>

④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7.6.1>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①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제57조(공무원의 서류) ①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③ 삭제 <2007.6.1>

제58조(공무원의 서류) ①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

②삽입, 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제59조(비공무원의 서류)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⑥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8]

[시행일:2014.1.1] 제59조의3 개정규정 중 증거목록이나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및 그에 대한 상소심 사건에서 증거목록이나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전자적 방법에 따른 열람 및 복사를 포함한다)

제7장 송달

제60조(송달받기 위한 신고) ①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
③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우체에 부치는 송달) ①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 ①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①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2007.6.1>
③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1.9.1>
④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개정 1961.9.1>

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6.1>
[제목개정 2007.6.1]

제8장 기간

제66조(기간의 계산) 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

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③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7.12.21>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29]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68조(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07.6.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제71조(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11.28, 2007.6.1>

제72조의2(수명법관)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제72조의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15]

제73조(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4조(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①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6조(소환장의 송달) ①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전항의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개정 1963.12.13, 2007.6.1>
⑤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개정 1963.12.13, 2007.6.1>

제77조(구속의 촉탁) ①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75조의 규정은 전항의 구속영장에 준용한다.

제78조(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①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79조(출석, 동행명령)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

제80조(요급처분) 재판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3조, 제76조, 제77조와 전조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07.6.1>
③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개정 1963.12.13, 2007.6.1>

제82조(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①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84조(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제목개정 2004.1.20]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6조(호송 중의 가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가장 접근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제87조(구속의 통지)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개정 1987.11.28, 1995.12.29>

②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제8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90조(변호인의 의뢰) ①구속된 피고인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의뢰를 받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는 급속히 피고인이 지명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제91조(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의 접견)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07.6.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61.9.1, 1995.12.29, 2007.6.1>

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20, 1995.12.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전문개정 1973.1.25]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개정 1995.12.29>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신설 2007.6.1>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007.6.1>

[전문개정 1973.1.25]

[93헌가2 1993.12.23(1973.1.25 法2450)]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전문개정 2007.6.1]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②법원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6.1]

제100조(보석집행의 절차) ①제98조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7.6.1>

④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7.6.1>

[제목개정 2007.6.1]

제100조의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①법원은 제98조제5호의 조건을 정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5.7.31>

④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개정 1980.12.18, 1987.11.28>

⑤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1.25]

[위헌, 2011헌가36, 2012.6.27. 형사소송법(1973.1.25. 법률 제2450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①법원은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③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제103조(보증금 등의 몰취) ①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②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제104조(보증금 등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제목개정 2007.6.1]

제104조의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①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제98조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105조(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18>
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신설 2011.7.18>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신설 2011.7.18>

제107조(우체물의 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② 삭제 <2011.7.18>
③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7.18>

제108조(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109조(수색)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12.18, 1997.12.13>

제113조(압수·수색영장)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년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②제7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영장에 준용한다.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제116조(주의사항)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7조(집행의 보조) 법원사무관등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제118조(영장의 제시)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119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①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①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4조(여자의 수색과 참여)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제127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제128조(증명서의 교부)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③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신설 2007.6.1>

제131조(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①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전3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①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 내에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 소재지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명법관, 수탁판사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법원이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제11장 검증

제139조(검증)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①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2조(신체검사와 소환) 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제143조(시각의 제한) ①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③제126조에 규정한 장소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4조(검증의 보조) 검증을 함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명할 수 있다.

제145조(준용규정) 제110조, 제119조 내지 제123조, 제127조와 제136조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2장 증인신문

제146조(증인의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147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12.18, 1997.12.13>

제150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50조의2(증인의 소환) ①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②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본조신설 2007.6.1]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교도관·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6.1]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제153조(준용규정) 제73조, 제74조, 제76조의 규정은 증인의 소환에 준용한다.

제154조(구내증인의 소환)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제155조(준용규정) 제73조, 제75조, 제77조,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증인의 구인에 준용한다.

제156조(증인의 선서)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7조(선서의 방식) ①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대행한다.<개정 2007.6.1>
④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158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제159조(선서 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1. 16세미만의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1.25, 1995.12.29>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①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②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7.11.28>
⑤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1.9.1]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①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1961.9.1>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164조(신문의 청구)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삭제 <1961.9.1>

제165조(증인의 법정 외 신문)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1.8.4, 2012.12.18>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본조신설 2007.6.1]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②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제167조(수명법관, 수탁판사) ①법원은 합의부원에게 법정 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는 증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8조(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13장 감정

제169조(감정) 법원은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제170조(선서) ①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57조제3항, 제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

제171조(감정보고) ①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72조(법원 외의 감정)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 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1.25>
⑤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73.1.25>
⑥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신설 1973.1.25>
⑦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3.1.25>
⑧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신설 1973.1.25>

제172조의2(감정유치와 구속) ①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조 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감정인은 제1항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전2항의 규정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제1항의 처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41조, 제1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4조(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발문할 수 있다.

제175조(수명법관)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76조(당사자의 참여)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제1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7조(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구인에 관한 규정을 제한 외에는 감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78조(여비, 감정료 등) 감정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9조(감정증인)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본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79조의2(감정의 촉탁)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학교·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당해 공무소·학교·병원·단체 또는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80조(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1조(농아자의 통역)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제182조(번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3조(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

제15장 증거보전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신설 2007.6.1>

제185조(서류의 열람등)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16장 소송비용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②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7조(공범의 소송비용)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8조(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9조(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

제190조(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①검사 아닌 자가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자에게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191조(소송비용부담의 재판) ①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

제192조(제삼자부담의 재판) ①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 아닌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3조(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①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의 최종계속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4조(부담액의 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07.6.1]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①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제194조의5(준용규정)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6.1]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8]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1.7.18>
[전문개정 2007.6.1]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 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본조신설 1961.9.1]
[제목개정 1995.12.29]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목개정 2007.6.1]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7.6.1>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신설 2007.6.1>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7.6.1>

[본조신설 1995.12.29]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종전 제200조의5는 제200조의6으로 이동 <2007.6.1>]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개정 2007.6.1>

[본조신설 1995.12.29]

[제200조의5에서 이동 <2007.6.1>]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0.12.18, 1995.12.29>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개정 1980.12.18>

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전문개정 1973.1.25]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제3항·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6.1]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7.12.13, 2007.6.1>
[본조신설 1995.12.29]

제204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6조 삭제 <1995.12.29>

제207조 삭제 <1995.12.29>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전문개정 1973.1.25]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전문개정 2007.6.1]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어 수사할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와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95.12.29>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12조의2 삭제 <1987.11.28>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1987.11.28>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7.6.1>

[본조신설 1987.11.28]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3.1.25, 1980.12.18, 1995.12.29>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95.12.29, 2005.3.31, 2007.6.1>

②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신설 2007.6.1>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1995.12.29, 2007.6.1>

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2004.10.16, 2007.6.1>

⑤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5.12.29, 2004.10.16, 2007.6.1>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제5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2007.6.1>

⑦제99조 및 100조는 제5항에 따라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신설 1995.12.29, 2007.6.1>

⑧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개정 2007.6.1>

⑨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07.6.1>

⑩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12.29, 2007.6.1>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7.6.1>

⑫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2007.6.1>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

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6.1>

⑭제201조의2제6항은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신설 2007.6.1>

[본조신설 1980.12.18]

[제목개정 1995.12.29]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①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2007.6.1>

②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신설 1995.12.29, 2007.6.1>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80.12.18]

[제목개정 1995.12.29]

제214조의4(보증금의 몰수)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07.6.1>

1.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제214조의3제2항에 열거된 사유로 재차 구속할 때
2.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때

②법원은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6.1>

[본조신설 1995.12.29]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8]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신설 1961.9.1>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7.18]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

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2011.7.18>

제220조(요급처분)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 제2항, 제125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6.1]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6.1>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개정 2007.6.1>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개정 2007.6.1>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6.1>
⑥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6.1>
[본조신설 1973.1.25]
[94헌바1 1996.12.26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전인 1995.12.29 법률 제5054호로 이 조 제5항이 개정되었으나 위 결정으로 이 조 제2항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제5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은 자동 효력 상실]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검사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②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72조 및 제172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80.12.18>
[본조신설 1973.1.25]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검사가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③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
④제173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개정 1980.12.18>
[본조신설 1973.1.25]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신설 1961.9.1>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61.9.1>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①「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4.5>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39조(준용규정) 전2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제237조와 제238조의 규정은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41조(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07.12.21>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개정 2007.6.1>
③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개정 2007.6.1>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07.6.1]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7 및 제279조의8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장 공소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제248조(공소효력의 범위) ①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전문개정 2007.6.1]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신설 1961.9.1, 2007.12.21>

제250조(2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6.1>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개정 1961.9.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신설 1995.12.29>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7.31]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255조(공소의 취소) ①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256조의2(군검찰관에의 사건송치)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군사법원검찰부검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송치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1987.11.28>
[본조신설 1973.1.25]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7.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전문개정 2007.6.1]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한정위헌, 2008헌마578, 2009헌마41·98(병합), 2011.11.14.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 제4항의 "불복할 수 없다."는 부분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에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415조의 '재항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종전 제262조의2는 제262조의4로 이동 <2007.6.1>]

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①법원은 제262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264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7.12.21>
②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6.1]
[제262조의2에서 이동 <2007.6.1>]

제263조 삭제 <2007.6.1>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①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재정신청은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07.6.1>
③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제265조 삭제 <2007.6.1>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

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②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⑥제1항의 서류등은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해당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2항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5(공판준비절차) ①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②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6(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등 법원에 제출된 서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공판준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7(공판준비기일)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④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8(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①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한다.
③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⑥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①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4.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5.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7.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8. 증거 채부(採否)의 결정을 하는 행위
9.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10.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
11.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12.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②제296조 및 제304조는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①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11(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①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3. 제1호의 서류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266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266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⑤제1항에 따른 서류등에 관하여는 제266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
2.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
3. 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①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1.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14(준용규정) 제305조는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15(기일간 공판준비절차)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6조의16(열람·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면 및 서류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67조(공판기일의 지정) ①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③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7조의2(집중심리) ①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②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제268조(소환장송달의 의제)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다.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①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피고인이 이의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0조(공판기일의 변경) ①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제271조(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273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부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274조(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61.9.1>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①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②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개정 2007.6.1>
③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개정 2007.6.1>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본조신설 1980.12.18]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①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전문개정 2007.6.1]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78조(검사의 불출석)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제279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79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279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제279조의2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79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① 제27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한다.

②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79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는 전문심리위원에게 준용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79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27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79조의7(비밀누설죄)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79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80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①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7.19>

[제목개정 2006.7.19]

제283조(국선변호인)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제목개정 2006.7.19]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84조(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①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본조신설 1973.1.25]

제286조의3(결정의 취소)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①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6.1]

제288조 삭제 <1961.9.1>

제289조 삭제 <2007.6.1>

제290조(증거조사) 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7.6.1]

제291조(동전) ①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제272조, 제2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직권으로 전항의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9.1]

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①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③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93조(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
1. 삭제 <2007.6.1>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7.6.1>
③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6.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7.6.1>
[본조신설 1987.11.28]
[제목개정 2007.6.1]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在廷)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①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 ①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경우에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종료한 때에는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2007.6.1>

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1.25]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

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1.25]

제299조(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제301조(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01조의2(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제286조의2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3.1.25]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05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 ①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함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제1항, 제2항의 사유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⑤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증거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목개정 1963.12.13]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61.9.1]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개정 1973.1.25, 1995.12.29>

[전문개정 1961.9.1]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전항과 같다.

[전문개정 1961.9.1]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7.6.1]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007.6.1>

[전문개정 1961.9.1]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①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②전항의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③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전2항의 예에 의한다.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①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3.1.25]

제3절 공판의 재판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제319조(관할위반의 판결)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제320조(토지관할 위반) ①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②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제321조(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①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노역장의 유치기간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제322조(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24조(상소에 대한 고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30조(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

[92헌가8 1992.12.24(1995.12.29 法5054)]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①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전3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①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

제335조(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①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전2항의 규정은 유예한 형을 선고할 경우에 준용한다.

제336조(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①「형법」 제36조, 동 제39조제4항 또는 동 제61조의규정에 의하여 형을 정할 경우에는 검사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323조에 의하여야 하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형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제338조(상소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12.21>

제339조(항고권자) 검사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제341조(동전) ①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제342조(일부상소) ①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①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제344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①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63.12.13>
②전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 제338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46조(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①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제70조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한한다.

제349조(상소의 포기, 취하) 검사나 피고인 또는 제339조에 규정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제350조(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352조(상소포기 등의 방식) ①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②구술로써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53조(상소포기 등의 관할)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354조(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제355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4조의 규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3.12.13>

제356조(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항소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9.1]
[제목개정 1963.12.13]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1963.12.13>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제360조(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①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1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6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92헌마44 1995.11.30(1995.12.29 法5054)]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3.12.13, 2007.12.21>
②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③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④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①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63.12.13>
[본조신설 1961.9.1]

제361조의5(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삭제 <1963.12.13>
6. 삭제 <1963.12.13>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0. 삭제 <1963.12.13>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2. 삭제 <1963.12.13>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본조신설 1961.9.1]

제362조(항소기각의 결정) ①제360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3조(공소기각의 결정) ①제3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1995.12.29>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전문개정 1961.9.1]

제364조의2(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본조신설 1961.9.1]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제366조(원심법원에의 환송)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367조(관할법원에의 이송)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 항소법원이 그 사건의 제1심관할권이 있는 때에는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개정 1963.12.13>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전문개정 1961.9.1]

제370조(준용규정) 제2편 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준용한다. <개정 1963.12.13>

제3장 상고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전문개정 1961.9.1]

제372조(비약적 상고) 다음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2.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제373조(항소와 비약적 상고)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74조(상고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375조(상고제기의 방식) 상고를 함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6조(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①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1.9.1, 2007.12.21>
②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④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61.9.1>
⑤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①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1.9.1, 2014.5.14>
②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신설 2014.5.14>

제381조(동전) 제376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상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제382조(공소기각의 결정) 제3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4조(심판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제385조 삭제 <1961.9.1>

제386조(변호인의 자격) 상고심에는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한다.

제387조(변론능력) 상고심에는 변호인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제388조(변론방식)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제389조(변호인의 불출석등) ①변호인의 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의 진술을 듣고 판결을 할 수 있다. 단, 제283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적법한 이유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89조의2(피고인의 소환 여부)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90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①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07.6.1>

[전문개정 1961.9.1]

제391조(원심판결의 파기)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39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393조(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95조(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396조(파기자판) ①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②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전4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98조(재판서의 기재방식) 재판서에는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제399조(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제400조(판결정정의 신청) ①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 <개정 1961.9.1>
②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01조(정정의 판결) ①정정의 판결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②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제4장 항 고

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4조(보통항고의 시기)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목개정 1963.12.13]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

제406조(항고의 절차) 항고를 함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7조(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①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8조(원심법원의 갱신결정) ①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09조(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제411조(소송기록등의 송부) ①원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12조(검사의 의견진술) 검사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13조(항고기각의 결정) 제407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14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①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2.13]

제416조(준항고) 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07.12.21>

제418조(준항고의 방식) 전2조의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9조(준용규정)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의 규정은 제416조, 제417조의 청구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

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제421조(동전) ①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②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개정 1963.12.13>
③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23조(재심의 관할)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424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제425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20조제7호의 사유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제426조(변호인의 선임) ①검사 이외의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29조(재심청구의 취하) ①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②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30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4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준용한다.

제431조(사실조사) ①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의부원에게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판사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제432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33조(청구기각 결정)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434조(동전)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436조(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①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심 또는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법원 또는 항소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3.12.13]

제437조(즉시항고) 제433조, 제434조제1항, 제435조제1항과 전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38조(재심의 심판) ①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②다음 경우에는 제306조제1항, 제3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전항의 심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30>
1.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으로 된 때
③전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변호인이 출정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
④전2항의 경우에 재심을 청구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439조(불이익변경의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440조(무죄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비상상고

제44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제442조(비상상고의 방식) 비상상고를 함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3조(공판기일) 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①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법원의 관할, 공소의 수리와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4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5조(기각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46조(파기의 판결)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
1.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제447조(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판결은 전조제1호 단행의 규정에 의한 판결 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제3장 약식절차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

다.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455조(기각의 결정) ①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458조(준용규정) ①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
②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5.12.29>
[제목개정 1995.12.29]

제5편 재판의 집행

제459조(재판의 확정과 집행)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제460조(집행지휘) ①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제461조(집행지휘의 방식) 재판의 집행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 외에는 재판서의 원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

제462조(형집행의 순서) 2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제469조(사형집행의 정지) ①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 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개정 1963.12.13>

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4.1.20, 2007.6.1>

제472조(소송비용의 집행정지) 제487조에 규정된 신청기간 내와 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의 집행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제473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①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개정 1973.1.25>

③제1항의 경우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개정 1973.1.25>

제474조(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①전조의 형집행장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거, 연령, 형명, 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1973.1.25]

제475조(형집행장의 집행) 전2조의 규정에 의한 형집행장의 집행에는 제1편제9장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3.1.25]

제476조(자격형의 집행)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자원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등록기준지와 주거지의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 읍·면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구 의 장,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읍·면의 장으로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2007.5.17>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1.26, 2007.6.1>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신설 2007.6.1>

⑤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07.6.1>

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79조(합병 후 법인에 대한 집행) 법인에 대하여 벌금 ,과료, 몰수, 추징,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을 명한 경우에 법인이 그 재판확정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80조(가납집행의 조정) 제1심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가납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제1심재판의 집행은 제2심가납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재판의 집행으로 간주한다.

제481조(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

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신설 2007.6.1, 2015.7.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15.7.31>

[제목개정 2015.7.31]

[2015.7.31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09.12.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483조(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484조(몰수물의 교부) ①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몰수물을 처분한 후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85조(위조등의 표시) ①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인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이 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제출하게 하여 전항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그 물건이 공무소에 속한 것인 때에는 위조나 변조의 사유를 공무소에 통지하여 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486조(환부불능과 공고) ①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고한 후 3월 이내에 환부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1973.1.25>

③전항의 기간 내에도 가치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개정 2007.6.1>

제487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으로 인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488조(의의신청)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89조(이의신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90조(신청의 취하) ①전3조의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제344조의 규정은 전3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준용한다.

제491조(즉시항고) ①제487조 내지 제489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3조(집행비용의 부담) 제477조제1항의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7.6.1>

부칙 <제341호,1954.9.23>

제1조 본법 시행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구법을 적용한다.

제2조 본법 시행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본법을 적용한다. 단, 본법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본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절차로 본법의 규정에 상당한 것은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본법 시행전 진행된 법정기간과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나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소재지의 거리에 의한 부가기간은 구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이 재판서나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는 용지1매에 50환으로 계산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필요사항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법원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다.

제7조 당분간 본법에 규정한 과태료와 부칙 제5조의 용지요금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증감할 수 있다.

제8조 본법 시행직전까지 시행된 다음 법령은 폐지한다.

1. 조선형사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조
2. 미군정법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조

제9조 (시행일) 이 법률은 단기 428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호,1961.9.1>

(경과규정) ①본법은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상소한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0호,1963.12.13>

①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상소사건으로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사건의 상소이유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2450호,1973.1.25>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행위를 한 자의 처벌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전에 진행이 개시된 법정기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⑤(동전) 제286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53호,1973.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2호,1980.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55호,1987.11.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4796호,1994.12.22>
제1조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6조중 "시、읍、면장"을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 읍、면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구 의 장、읍.면의 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⑪내지 <25>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054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2, 제361조, 제361조의2, 제37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5435호,1997.12.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체포 또는 구인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7조제3항 단서 및 제493조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54>및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078호,2004.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 제목중 "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동조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며, 제261조의 제목중 "검사장"을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제471조제2항중 "소속검찰청검사장"을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부칙 <제7225호,2004.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중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를 "친족 또는 친족관계"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중 "직계친족, 형제자매와호주"를 각각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제14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제201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14조의2제1항중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를 각각 "형제자매나"로 한다.

제341조제1항중 "형제자매, 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29>생략

부칙 <제7965호,2006.7.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1조 및 제284조 중 "본적"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315조제1호 중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하고, 제476조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29>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496호,2007.6.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구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된 상소사건부터 적용한다.

②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이 이루어지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태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최초로 출석하지 아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정신청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의 재정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불기소처분된 사건, 이 법 시행 전에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검찰청 또는 대검찰청에 항고 또는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26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는 사건의 재정신청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 대검찰청에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6조 (상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고되거나 재항고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위원회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를 "위원회는 그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제261조·제262조 및 제263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을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1항 중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소속의"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소속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60조(재정신청)제2항·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제262조(고등법원의 재정결정)·제263조(공소제기의 의제)·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및 제265조(공소의 유지와 지정변호사)"를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제2항, 제264조 및 제264조의2"로 한다.

③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중 "형사소송법 제262조제3항"을 "「형사소송법」 제262조제5항"으로 한다.

④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중 "제262조제3항"을 "제262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8730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 및 제279조의2부터 제279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9조, 제243조, 제262조의4제1항, 제319조 단서, 제338조제2항 및 제417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수사자문위원 및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적용례)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 및 제279조의2부터 제279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3조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3항 중 "제260조제2항에 규정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를 "제260조제3항에 따른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로, "제262조제1항"을 "제262조제2항"으로 한다.

② 범죄인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214조의2제2항 내지 제12항"을 "제214조의2 제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한다.

③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형사소송법 제289조"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로 하고, 제10조 중 "제312조제2항"을 "제312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9765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제2호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청소년 또는"을 "아동·청소년 또는"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0864호,2011.7.18>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증거목록이나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
2.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및 그에 대한 상소심 사건에서 증거목록이나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전자적 방법에 따른 열람 및 복사를 포함한다)

제2조(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판결이 확정되는 사건의 판결서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정신청사건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불기소처분된 사건, 이 법 시행 전에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검찰청 또는 대검찰청에 항고 또는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11002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⑬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72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제2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1731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2576호,2014.5.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84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99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청구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무죄판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454호,2015.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과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지휘의 원칙)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모든 수사를 적정하게 지휘한다.

제3조(수사지휘 일반)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필요한 일반적 수사준칙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준칙 또는 지침은 검찰총장이 수사에 대한 일반적 수사준칙 또는 지침을 시행하면 사법경찰관리에게 이를 시달(示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를 할 수 있다.

제4조(수사지휘 건의)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의 지휘가 필요하면 검사에게 건의하여 구체적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다.

제5조(수사지휘의 방식)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서면 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이미 수사지휘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한 경우, 수사 현장에서 지휘하는 경우 등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휘가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하였을 때에는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수사지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모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사건이 복잡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대면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검사에게 대면하여 보고

할 수 있다.

제6조(신속한 수사지휘)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지휘 건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장기간 검토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사지휘 기한 준수) 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가 기한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지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검사가 지휘한 기한 내에 지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8조(수사지휘에 대한 재지휘 건의) ① 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지휘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지휘 건의를 받은 때에는 재지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은 제2항의 조치에 의견이 있으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6조에 따라 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제목개정 2014.8.6]

제10조(문서의 서식)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58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단순하고 정형적인 사건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159호서식부터 별지 제170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제2장 수사

제1절 통칙

제11조(관할) 사법경찰관리는 소속 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 내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신속한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를 마쳐야 한다.

제13조(비밀의 엄수 등) 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기밀(機密)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의자, 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건을 송치하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수사의 협조) 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사법경찰관리 상호간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수사의 회피)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6조(사건의 단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 이미 검찰청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서에 송치하거나 이송한 후에 수리(受理)한 사건도 또한 같다.
2.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과 그 처분이 내려진 후 검사의 지휘에 따라 다시 수사를 개시한 사건
3.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
4. 다른 관서로부터 이송받은 사건
5. 검찰청에 송치하기 전의 맞고소 사건
6. 판사가 청구기각 결정을 한 즉결심판 청구 사건
7. 피고인으로부터 정식재판이 청구된 즉결심판 사건

제2절 수사 개시와 사건기록의 관리

제17조(수사 개시)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196조제2항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수사를 개시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編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범죄인지서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범죄경력,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및 수사의 단서와 범죄 인지 경위를 적어야 한다.

제18조(사건기록의 관리) ① 사법경찰관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범죄인지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때
2. 긴급체포를 한 때
3. 검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때
4.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한 때

②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4호의 압수·수색·검증을 제외한 압수·수색·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법원으로부터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장 또는 허가서를 발부받아 대물적(對物的) 강제처분을 집행한 때
2. 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때
3. 현행범인을 체포·인수한 때

③ 제2항의 경우 사건관계인이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지시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절 출석요구와 조사

제19조(출석요구)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적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본을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하며, 출석요구서 외의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나 참고인이 출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0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①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나이·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거·직업 및 전과·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피의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국적·주거·출생지·입국연월일·입국목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명칭·상호·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설립목적 및 그 기구
2. 피의자가 자수하거나 자복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3. 피의자의 훈장·기장·포장·연금의 유무
4. 피의자의 병역관계
5. 피의자의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재산 정도, 생활수준 및 종교관계

6. 범죄의 동기、원인、성질、일시、장소、방법 및 결과
7. 피해자의 주거、직업、성명 및 나이
8.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이거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죄의 성립 여부, 형의 경중(輕重)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항
9.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0.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11. 피해의 상태, 손해액, 피해 회복의 여부 및 처벌 희망의 유무
12. 피의자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② 피의자의 진술은 별지 제6호(갑)서식, 별지 제6호(을)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서 끝 부분에 피의자로부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변호인 참여 전에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변호인 참여 신청을 받았을 때에도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으면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말과 행동 등을 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피의자신문 내용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하여 변호인이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하는 간단한 메모는 제외한다.

제22조(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① 법 제244조의5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신뢰관계자"라 한다)을 말한다.

② 피의자나 법정대리인이 신뢰관계자의 동석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동석신청서 및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동석 조사 이후에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으로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⑤ 피의자신문에 동석하는 신뢰관계자는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행위 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법경찰관은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으로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신뢰관계자가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할 때에는 피의자신문 도중에 동석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① 법 제2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63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로, "신문"은 "조사"로 각각 본다.

제24조(참고인의 진술) ① 사법경찰관리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법 제317조에 따라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참고인의 진술은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진술조서에 적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조서 끝 부분에 참고인으로부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자필로 작성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며 수사담당 사법경찰관리가 대필(代筆)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25조(영상녹화)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필요하면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에는 조서 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조사자·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조사를 중단·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⑤ 사법경찰관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영상녹화 동의서에 따라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할 때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識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법 제243조의 참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때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하여야 한다.

제26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①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하였을 때에는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말한다) 2개를 제작하고, 그 중 하나는 조사받는 사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조사받는 사람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封印)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영상녹화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생성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영상녹화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7조(임상의 조사) 사법경찰관이 치료 중인 피의자나 참고인이 있는 곳에서 임상신문(臨床訊問)할 때에는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으면 가족, 의사, 그 밖의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28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법 제244조의4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사과정 확인서에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확인서를 조서의 끝 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間印)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수사과정을 기록할 때에는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고,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를 시작한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으면 그 구체적인

이유 등을 적으며,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면 그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재개 시각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 등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4절 체포와 구속

제29조(구속영장의 신청)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7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0조제2항의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법 제201조의2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으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제30조(영장의 재신청)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그 취지를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1.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2.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발부받지 못한 경우
3. 피의자가 체포·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제31조(영장의 집행) ① 사법경찰관리는 영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와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하고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신체 및 명예를 보전하는 데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영장은 검사의 서명, 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④ 사법경찰관리가 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법 제200조의5(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⑥ 사법경찰관리가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법 제89조 및 제90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체포·구속의 통지 등)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였을 때에는 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구속한 때부터 늦

어도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 통지서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가 없어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서면으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체포·구속의 통지서 사본은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21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체포·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사법경찰관은 법 제21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가 체포·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면 그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체포·구속영장 등본 교부대장에 적어야 한다.

제34조(영장 등의 반환)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75조에 따라 체포·구속영장을 반환할 때에는 영장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장반환 보고서 사본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법 제82조에 따라 체포·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되었을 때에는 이를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③ 영장반환 보고서에는 발행 통수 및 집행 불능의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④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또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은 별지 제26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반환 보고서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 보고서에 따른다.

제35조(긴급체포) ① 사법경찰관이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나이·경력·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태양,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히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28호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긴급체포를 승인해 달라는 건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해당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하였을 때에는 24시간 내에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 건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 건의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긴급체포한 사유와 체포를 계속하여야 할 사유를 상세히 적어 팩스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 건의를 할 수 있다.

⑤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할 때에는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⑥ 피의자의 긴급체포에 관하여는 제31조제5항·제6항,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제36조(피의자의 석방) ① 사법경찰관은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건의서를 작성·제출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의 석방지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 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석방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 건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석방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검사는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기록 및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37조(현행범인의 체포) ①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적은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체포한 사람으로부터 그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 및 체포의 일시·장소·사유를 청취한 후 별지 제35호서식의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특히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히 하여야 하며, 별지 제36호서식의 현행범인 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④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1조제5항·제6항,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제38조(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 ①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하였을 때에는 약물 복용 또는 음주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보고서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적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문서의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할 때에는 현행범인 체포 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39조(피의자의 접견 등) ①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물건의 접수 또는 수진(受診)을 요청할 때에는 친절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1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도 법 제91조에 규정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접견 등의 장소는 될 수 있으면 유치장 외의 방실에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체포·구속 장소 감찰에 따른 조치) 검사가 법 제198조의2에 따라 체포·구속 장소를 감찰한 후 인치되거나 구금된 자의 석방을 명하거나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하였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 석방 명령서 또는 사건 송치 명령서를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41조(피의자의 도주 등) 사법경찰관은 체포 중이거나 구속 중에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의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증거의 확보

제42조(증거보전의 신청) 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검사에게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증거보전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실황조사)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범죄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가서 실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4조(압수조서 등) ① 사법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40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를, 압수목록에는 물건의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어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45조(증거물 등의 보전) ① 사법경찰관리는 혈흔, 지문, 발자국, 그 밖에 멸실할 염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보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별지 제41호서식의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형상을 상세히 적거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② 시체 해부 또는 증거물이 훼손되거나 형상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검증이나 감정을 위촉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변경 전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46조(압수물의 보관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킬 때에는 보관자를 주의 깊게 선정하여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압수물건 보관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압수물을 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압수물에는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압수목록에 적은 순위·번호를 기입한 표찰을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④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또는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법 제135조에 규정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한 후 신속히 환부하여야 한다.
⑤ 압수물이 유가증권일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4호서식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 건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원형보존 여부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원형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검사 지휘가 있으면 지체 없이 환전(換錢)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및 집행조서와 함께 봉인한 후 허가번호 및 보존기간을 표기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수사담당자 외의 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자료 등은 보존기간이 지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47조(압수물의 폐기) 사법경찰관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을 폐기하기 위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을 때에는 검사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 건의서를 제출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48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자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46호서식의 압수물 환부 지휘 건의서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지휘 건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49조(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제출) 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8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통신제한조치 등 집행사실 통지) 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6항(같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집행·제공 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별지 제49호서식 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라 그 통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절 변사자의 검시

제51조(변사자의 검시) ① 사법경찰관리는 변사자(變死者)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별지 제51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서 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서를 작성하여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신속하게 지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변사사건에 대한 검사의 지휘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 건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시(檢視)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2조(검시의 주의사항) ①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변사자의 소지품이나 그 밖에 변사자가 남겨 놓은 물건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보존하는 데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검시할 때에는 잠재지문 및 변사자의 지문을 채취하는 데에 유의하고 의사로 하여금 사체검안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3조(검시와 참여자)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친족、이웃사람、친구, 시、군、구、읍、면、동의 공무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54조(자살자의 검시) 사법경찰관리는 자살한 사람을 검시할 때에는 자살을 교사(敎唆)하거나 방조한 자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하며, 유서가 있으면 그 진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7절 고소·고발 사건

제55조(고소의 대리)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36조에 따른 대리인이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취소할 때에는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56조(고소사건 등에 대한 주의사항) 사법경찰관은 고소사건에 대하여서는 고소권의 유무, 친고죄에 있어서는 법 제230조에 따른 고소기간의 경과 여부, 간통죄에 있어서는 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의 구비 여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각각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제57조(고소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이 고소나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나 고발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58조(고소 등의 취소)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나 고발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조사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8절 소년사건, 가정폭력사건 등에 대한 특칙

제59조(소년사건 수사의 기본원칙)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한 심리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우려는 자세로 수사하여야 한다.

제60조(소년의 특성 고려)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되도록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아니하는 조용한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소년의 심정을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

제61조(범죄의 원인 등과 환경조사) ①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그 소년의 성격·행실·태도·경력·교육정도·가정상황·교우관계와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별지 제55호서식의 소년환경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년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제62조(구속에 관한 주의) 소년에 대해서는 되도록 구속을 피하여야 하며, 부득이 구속하거나 동행할 때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63조(보도상의 주의)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소년의 주거·성명·나이·직업·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아니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64조(학생 범죄) 소년이 아니더라도 학생의 범죄사건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여성 범죄) 피의자가 여자일 때에는 제60조와 제62조를 준용한다.

제66조(가정폭력범죄 수사 시 유의사항)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의 심리를 위한 특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의 육성을 도우려는 자세로 수사하여야 한다.

제67조(가정환경 조사서의 작성)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행위자의 성격·행실·태도·경력·교육정도·가정상황과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별지

제56호서식의 가정환경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8조(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응급조치 보고서에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사실의 요지, 가정상황, 피해자와 신고자의 성명,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상세히 적은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69조(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임시조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제68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은 별지 제58호서식의 임시조치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은 별지 제58호서식의 임시조치 신청서에 따른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임시조치 신청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가 임시조치의 결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집행일시 및 집행방법을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는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록 등본을 관할 검찰청으로 보내야 한다.

⑥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한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⑦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검사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동행영장의 집행) ①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요청이 있으면 동행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동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동행할 사람에게 동행영장을 제시하고 신속히 지정된 장소로 동행하여야 한다.

③ 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동행할 사람에게 범죄사실과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을 마친 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동행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동행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각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1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9절 마약류범죄 관련 보전절차 등

제72조(마약류범죄 수사 관련 입국·상륙 절차 특례 등의 신청) ① 사법경찰관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5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입국·상륙 절차의 특례, 체류 부적당 통보, 반출·반입의 특례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부터 별지 제63호서식까지의 입국·상륙절차 특례 신청서, 체류 부적당 통보 신청서, 세관절차 특례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특례조치 등 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73조(마약류범죄 수사 관련 몰수·부대보전 신청) ① 사법경찰관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부대보전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몰수·부대보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몰수·부대보전 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장 수사지휘

제1절 수사에 관한 보고

제74조(수사 개시 보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外患)의 죄
3. 국기(國旗)에 관한 죄
4. 국교(國交)에 관한 죄
5. 공안을 해하는 죄. 다만, 공무원자격의 사칭죄는 제외한다.
6. 폭발물에 관한 죄
7. 살인의 죄
8. 13세 미만 아동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9.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10. 각종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
11. 공무원에 관한 죄(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기관장인 5급 또는 5급 상당 이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한한다.)
12. 피해 규모, 광역성, 연쇄성, 수법 등에 비추어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범죄
13. 검찰총장 승인을 얻어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정한 범죄

제75조(범죄통계원표) 사법경찰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이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수사지휘의 이행

제76조(중요 범죄의 입건) 사법경찰관은 대공(對共)·선거(정당 관련 범죄를 포함한다)·노동·집단행동·출입국·테러 및 이에 준하는 공안 관련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하고 입건 여부에 대한 검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77조(송치 전 지휘 등)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건 송치 전에 검사의 구체적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제76조에 따라 입건 지휘를 받은 사건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 및 그 미수범으로 입건한 사건
3. 사건관계인의 이의 제기 등의 사유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수사의 투명성을 위해 사건 송치 전에 지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② 검사가 송치의견에 대하여 지휘할 때에는 법률 적용 및 증거 판단 등에 대한 의견을 지휘서에 적어야 한다.

제78조(송치 지휘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절차상 이의가 제기되거나 동일한 사건이나 관련된 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사하는 경우 등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지휘를 받은 때에는 즉시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제79조(송치 이후 보완 지휘)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검사로부터 보완수사 지휘를 받은 때에는 지휘 내용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사건관계인을 소환하거나 조사할 때 검사로부터 보완수사를 지휘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80조(검사 수사사건 지휘) ① 사법경찰관리가 검사로부터 검사가 접수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지휘받은 때에는 신속히 수사한 후 사건 송치 전에 검사의 구체적 지휘를 받아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지휘를 받아 고소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소환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4장 사건 송치

제81조(사건 송치)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여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이를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82조(송치 서류) ①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 서류에 별지 제67호서식부터 별지 제71호서식까지의 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와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却下)
5. 참고인중지

② 사건 송치 전에 범죄경력 조회 회보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건송치서(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송치 후에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송치 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목록
4. 의견서
5. 그 밖의 서류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1 - 1", "1 - 2", "1 -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표시하되, "2"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매겨야 한다.

⑦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귀중품을 송치할 때에는 감정서 3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에 준하는 증서
2. 귀금속류 및 귀금속제품
3. 문화재 및 고가예술품
4. 그 밖에 검사 또는 법원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⑧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송치 시에는 수사기록표지 증거품 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담당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압수물 송치에 준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⑨ 사건 송치 전 수사진행 단계에서 구속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병지휘 건의 등을 하는 경우에 영장신청 서류 또는 신병지휘 건의 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3조(송치인 및 의견서 작성인) ① 제81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소속 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닐 때에는 수사 주무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제82조제1항의 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84조(영상녹화물의 송치) ①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사건 송치 시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기록과 함께 송치하여야 한다.

② 영상녹화물 송치 시 사법경찰관은 송치서 표지 비고란에 영상녹화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5조(추송) 사법경찰관이 사건 송치 후에 다시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할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그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과 추송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적은 별지 제72호서식의 추송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6조(송치 후의 수사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사건을 송치한 후에 수사를 계속하려면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사건을 송치한 후에 해당 사건 피의자의 다른 범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고소ㆍ고발사건을 기소ㆍ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의 의견으로 송치한 후에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ㆍ각하의 처분결과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수사자료표가 지체 없이 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7조(소재불명자의 처리) 사법경찰관은 제74조에서 규정한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소재불명 피의자의 지명수배 내용과 사진, 그 밖에 별지 제73호서식의 인상서 등을 첨부

하여야 한다.

제88조(참고인 등의 소재수사) ①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를 작성하고 그 사본 1부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고 분기마다 1회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송치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에 그 취지를 적고 소재수사를 하지 아니한다.

제89조(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①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피의자 소재불명의 사유로 기소중지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별지 제75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소중지가 특정증거의 불명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 이를 발견하였을 때 또는 참고인중지의 경우에 참고인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참고인 등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③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사유로 수사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피의자 소재발견 처리부에 적어야 한다.

제5장 수사관계 서류

제90조(수사서류의 작성)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일상용어에 사용하는 쉬운 문구를 사용한다.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한다.
3. 사투리, 약어, 은어 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5. 지명, 인명 등으로서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 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인다.
6. 각 서류마다 작성 연월일을 적고 간인하게 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한다.

제91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이용)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작성한 문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

3.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장애 또는 전산망 오류 등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는 문서

제92조(외국어로 된 서면) 외국어로 적은 서류가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3조(장부와 비치서류) 사법경찰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범죄사건부
2. 압수부
3. 구속영장 신청부
4. 체포영장 신청부
5. 체포·구속영장 집행원부
6. 긴급체포원부
7. 현행범인 체포원부
8. 피의자 소재발견 처리부
9.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부
10. 출석요구통지부
11. 체포·구속인 접견부
12. 체포·구속인 교통부
13. 물품차입부
14. 체포·구속인 수진부
15. 체포·구속인명부
16. 수사종결사건철(송치사건철)
17. 변사사건종결철
18. 수사미제사건기록철
19. 통계철
20. 처분결과통지서철
21. 검시조서철
22.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23.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24.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
25.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발송부
26.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부
27.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28.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부

29.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대장
30.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
31.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대장
3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부
33.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4.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35. 특례조치 등 신청부
36. 몰수·부대보전 신청부

제94조(장부와 비치서류의 전자화) ① 제93조 각 호의 장부와 비치서류 중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그 작성·저장·관리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것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전자 장부와 전자 비치서류는 종이 장부와 서류의 개별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5조(수사종결사건철) 수사종결사건철(송치사건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의 기록 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96조(수사미제사건기록철) 수사미제사건기록철에는 장차 검거할 가망이 없는 도난이나 그 밖의 피해신고 사건 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97조(통계철) 통계철에는 사법경찰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98조(처분결과통지서철) 처분결과통지서철에는 검사의 기소·불기소(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각하)·기소중지·참고인중지·이송 등 결정 및 각 심급의 재판 결과에 관한 통지서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99조(서류철의 색인목록) ① 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 서류 편철 후 그 일부를 빼낼 때에는 색인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담당 사법경찰관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00조(임의 장부 등) 사법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 및 제93조에서 규정한 장부 및 서류 외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갖추어 둘 수 있다.

제101조(장부 등의 갱신) ① 사법경찰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철은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연도를 구분하는 종이 등을 삽입하여 연도별로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102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범죄사건부: 25년

2. 압수부: 25년
3. 구속영장 신청부: 2년
4. 체포영장 신청부: 2년
5. 체포·구속영장 집행원부: 2년
6. 긴급체포원부: 2년
7. 현행범인 체포원부: 2년
8. 피의자 소재발견 처리부: 25년
9.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부: 2년
10. 출석요구통지부: 2년
11. 체포·구속인 접견부: 2년
12. 체포·구속인 교통부: 2년
13. 물품차입부: 2년
14. 체포·구속인 수진부: 2년
15. 체포·구속인명부: 25년
16. 수사종결사건철(송치사건철): 25년
17. 변사사건종결철: 25년
18. 수사미제사건기록철: 25년
19. 통계철: 5년
20. 처분결과통지서철: 2년
21. 검시조서철: 2년
22.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3년
23.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3년
24.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 3년
25.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발송부: 3년
26.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부: 3년
27.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년
28.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부: 3년
29.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대장: 3년
30.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 3년
31.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대장: 3년
3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부: 3년
33.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년
34.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25년
35. 특례조치 등 신청부: 2년
36. 몰수·부대보전 신청부: 10년

제103조(보존기간의 기산 등) ① 제102조의 보존기간은 사건처리를 완결하거나 최종 절차를 마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② 보존기간이 지난 장부 및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6장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

제104조(동의) 사법경찰관리는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전자약식사건"이라 한다)을 수사할 때에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처리되는 약식절차(이하 "전자약식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안내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동의할 때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동의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05조(전자약식절차의 예외) 사법경찰관리는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전자약식절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06조(전자화문서) ①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나 그 밖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관한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로 변환하여 작성한다.
② 제1항의 문서 작성자는 전자화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전자약식사건을 송치하였을 때에는 전자화대상문서를 추송하여야 한다.
④ 전자화문서 작성 후 사건 송치 전에 피의자가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동의를 철회하는 등의 사유로 전자약식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전자화대상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107조(수사협의회) 국민안전처, 대검찰청 및 경찰청 간에 수사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4.11.19>

제108조(상황 정보 공유) 사법경찰관은 소요의 발생, 집단 불법행위 등의 사유로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거나,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을 때에는 그 사실과 경찰 조치에 관한 자료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와 공유하여야 한다.

제109조(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적용 제외) 법 제197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436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4550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중 "법 제230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소기간의 경과 여부"를 "법 제230조에 따른 고소기간의 경과 여부"로 한다.

부칙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 중 "대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대검찰청 및 경찰청"으로 한다.

<76>부터 <418>까지 생략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

아래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합니다.

접 수 일 자		
사 건 번 호	검 찰	
	경 찰	
죄 명		
피 의 자		
수사진행내역		
연 장 사 유		
연 장 기 간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참 조 :

제 목 : **범죄인지**

다음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지합니다.

1. 피의자 인적사항

성 명(한자) : 직업

주민등록번호 : - OO세

주 거 :

등록기준지 :

2. 범죄경력자료

3. 범죄사실의 요지

4. 죄명 및 적용법조

5. 수사단서 및 범죄 인지 경위

경 로	수사지휘 및 의견	구분	결 재	일시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범 죄 사 건 부

(앞 면)

사건번호		년 범죄 제 호	년 범죄 제 호
수리		. . . :	. . . :
구분		고소·고발·자수·신고·현행범·기타	고소·고발·자수·신고·현행범·기타
수사담당자			
피의자	성명 및 성별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직업 주거	(남·여)	(남·여)
조회		컴퓨터·지문·사진·수법·지명 기타	컴퓨터·지문·사진·수법·지명 기타
죄명	수리		
	송치		
범죄	일시	. . . :	. . . :
	장소		
피해정도			
피해자			
체포·구속	체포영장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구속영장		
	인치구금	경찰서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
석방일시 및 사유			
송치	연월일	. . .	. . .
	번호	제 호	제 호
	의견		
압수번호		압 제 호	압 제 호
수사미결사건철번호		제 호	제 호
검사처분	연월일	. . .	. . .
	요지		
판결	연월일	. . .	. . .
	요지		
비고			
범죄원표	발생사건표	. . . 제 호	. . . 제 호
	검거사건표	. . . 제 호	. . . 제 호
	피의자표	. . . 제 호	. . . 제 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년 범죄 제 호	년 범죄 제 호	년 범죄 제 호
. . . :	. . . :	. . . :
고소 · 고발 · 자수 · 신고 · 현행범 기타	고소 · 고발 · 자수 · 신고 · 현행범 기타	고소 · 고발 · 자수 · 신고 · 현행범 기타
(남 · 여)	(남 · 여)	(남 · 여)
컴퓨터 · 지문 · 사진 · 수법 · 지명 기타	컴퓨터 · 지문 · 사진 · 수법 · 지명 기타	컴퓨터 · 지문 · 사진 · 수법 · 지명 기타
. . . :	. . . :	. . . :
경찰서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
. . .	. . .	. . .
제 호	제 호	제 호
압 제 호	압 제 호	압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 . .	. . .	. . .
. . .	. . .	. . .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출석요구서
(피 의 자)

제 0000-00000 호

귀하에 대한 ○○○○○○○○○ 피의사건(피해자·고소인 ○○○외 ○명)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00:00에 ○○과 ○○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그 밖에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1.

2.

3.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팀(☎ 00-0000-0000)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임된 변호사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 변호사는 법률적 조언을 할 수 있고, 작성된 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사건담당자 ○○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출석요구서
(참 고 인)

제 0000-00000 호

피의자/피내사자/피진정인 ○○○외 ○명에 대한 ○○○○○○○○○○ 피의/내사/진정 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00:00에 ○○과 ○○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그 밖에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 주십시오.

1.

2.

3.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팀(☎ 00-0000-0000)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 등으로 경찰관서 직접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FAX·e-mail 등 편리한 매체를 이용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장조사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 .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사건담당자 ○○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갑)서식]

피 의 자 신 문 조 서

피 의 자 : ○○○

위의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00:00 ○○○○○○○○○에서 사법경찰관 ○○ ○○○는(은) 사법경찰리 ○○ ○○○를(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 성명은 ( )

주민등록번호는 - (세)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주소는

연락처는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을)서식]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피 의 자 신 문 조 서 (제　회)

피 의 자 : ○○○

위의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00:00 ○○○○○○○○○에서 사법경찰관 ○○ ○○○는(은) 사법경찰리 ○○ ○○○를(을) 참여하게 한 후,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읽어준바)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진 술 자 (인)

· · ·

사법경찰관 ○○ ○○○ (인)

사법경찰리 ○○ ○○○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위의 조서를 통역인을 통하여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읽어준바)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통역인과 같이 간인한 후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통 역 인 (인)

진 술 자 (인)

. . .

사법경찰관 ○○ ○○○ (인)

사법경찰리 ○○ ○○○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동석신청서
(피 의 자)

수 신 : ○○○○경찰서 사법경찰관 ○○ ○○○

귀서 제 0000-000000 호 피의자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를 조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합니다.

- 다 음 -

신뢰관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거(사무소)	
	전 화 번 호	
	피의자와의 관계	
동석 필요 사유		

※ 소명자료 별첨

신청인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동석신청서
(피 해 자)

수 신 : ○○○○경찰서 사법경찰관 ○○ ○○○

귀서 제 0000-000000 호 피의자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를 조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합니다.

- 다 음 -

피 해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전 화 번 호	
신뢰관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거(사무소)	
	전 화 번 호	
	피해자와의 관계	
동석 필요 사유		

※ 소명자료 별첨

. . .

신청인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진 술 조 서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직 업 :

주 거 :

등록기준지 :

직 장 주 소 :

연 락 처 :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00:00 ○○○○○○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과(와) ○○○ 관계에 있습니다.

/ 저는 피의자 ○○○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의 자격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진 술 조 서(제 회)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00:00 ○○○○○○○○○에 임의 출석하였는바, 사법경찰관은 진술인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전회에 이어 계속 문답을 하다.

문 :

답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영상녹화 동의서

진술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거			

상기인은 ○○○○○○○○○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참고인·피해자로서 진술함에 있어 진술내용이 영상녹화됨을 고지받고 강제적인 압력이나 권유를 받음이 없이 영상녹화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성 명 : (인)

○○○○경찰서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6호서식]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순번	접수일자	사건번호	죄 명	영상녹화대상자			인수자	인계자	송치일자	비고
				피의자	참고인	피해자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6호서식]

수사과정 확인서

구 분	내 용
1. 조사 장소 도착시각	
2.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 종료시각 :
3.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 종료시각 :
4. 그 밖에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 . .

사법경찰관 ○○ ○○○는(은) ○○○를(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로(으로)부터 확인받음

확 인 자 : (인)
사법경찰관 : ○○ ○○○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7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구속영장 신청(미체포)**

다음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에 구속하려 하니 . .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		
필요적 고려사항		[ ] 범죄의 중대성 [ ] 재범의 위험성 [ ]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 그 밖의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8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구속영장 신청(체포영장)**

다음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였는바, 동인을 ○○○○○○○에 구속하려 하니 . .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체포한 일시·장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		
필요적 고려사항	[ ] 범죄의 중대성 [ ] 재범의 위험성 [ ]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 그 밖의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 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9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구속영장 신청(현행범인)**

다음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바, 동인을 ◯◯◯◯◯◯◯에 구속하려 하니 . .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체포한 일시·장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		
필요적 고려사항	[ ] 범죄의 중대성 [ ] 재범의 위험성 [ ]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 그 밖의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 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20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구속영장 신청(긴급체포)**

다음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하였는바, 동인을 ○○○○○○○에 구속하려 하니 . .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체포한 일시·장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		
필요적 고려사항		[ ] 범죄의 중대성 [ ] 재범의 위험성 [ ]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 그 밖의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 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21호서식]

확 인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세)

주 거 :

본인은 . . . 00:00경 ○○○○○○○에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 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 . .

위 확인인 (인)

위 피의자를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음(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함).

. . .

○○○○경찰서

사법경찰관/리 ○○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22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 귀하

제 목 :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 통지**

1. 피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거 :

2. 위 사람을 . . . 00:00 ○○○○○○○○ 피의사건으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여 ○○○○○○○○에 인치구금 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3.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체포·구속된 위 피의자 본인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지방법원(○○지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 범죄사실의 요지 및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 이유 1부

담 당 자		소속 및 연락처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23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 귀하

참 조 :

제 목 : **수사보고**

피의자 ○○○외 ○명에 대한 ○○○○○○○○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아 래 -

경 로	수사지휘 및 의견	구분	결 재	일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24호서식]

체포·구속영장 등본 교부대장

(앞 면)

진 행 번 호			
사 건 번 호		년 제 호	년 제 호
청구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거		
	피 의 자 와 의 관 계		
피 의 자			
죄 명			
체 포 · 구 속 일 자		. . .	. . .
접 수 연 월 일		. . .	. . .
교 부 허 가		. . .	. . .
교 부 불 허 가		. . .	. . .
수 령 연 월 일		. . .	. . .
청구인의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년 제 호	년 제 호	년 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26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영장반환 보고**

별지 영장은 다음의 이유로 반환합니다.

영 장 종 별		
영 장 발 부 일		
영 장 번 호		
대상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거	
죄 명		
집 행 불 능 의 사 유		

첨 부 : 영장 통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26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반환 보고**

별지 허가서를 다음의 이유로 반환합니다.

허 가 서 종 별		
허 가 서 발 부 일		
허 가 서 번 호		
대상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거	
죄 명		
집 행 불 능 의 사 유		

첨 부 : 허가서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 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27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 보고**

별지 허가서를 다음의 이유로 반환합니다.

허 가 서 종 별		
허 가 서 발 부 일		
허 가 서 번 호		
대상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거	
죄 명		
집 행 불 능 의 사 유		

첨 부 : 허가서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28호서식]

긴 급 체 포 서

제 0000-00000 호

피의자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위 피의자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함

. . .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범 죄 사 실 및 체 포 의 사 유	
체 포 자 의 관 직 및 성 명	
인 치 한 일 시	
인 치 한 장 소	
구 금 한 일 시	
구 금 한 장 소	
구금을 집행한 자의 관 직 및 성 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29호서식]

긴 급 체 포 원 부

(앞 면)

진 행 번 호				
사 건 번 호			년 제 호	년 제 호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죄 명				
긴 급 체 포 서 작 성 연 월 일			. . .	. . .
긴급체포	체 포 한 일 시		. . . 00:00	. . . 00:00
	체 포 한 장 소			
	체 포 자 의 관 직 및 성 명			
	인 치 한 일 시		. . . 00:00	. . . 00:00
	인 치 한 장 소			
	구 금 한 일 시		. . . 00:00	. . . 00:00
	구 금 한 장 소			
	검사 지휘	승 인	. . . 00:00	. . . 00:00
		불 승 인	. . . 00:00	. . . 00:00
석방	일 시		. . .	. . .
	사 유			
구속 영장 신청	신 청 부 번 호			
	발 부 연 월 일		. . .	. . .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년 제 호	년 제 호	년 제 호
. . .	. . .	. . .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30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긴급체포 승인 건의**

다음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긴급체포한 일시				
긴급체포한 장소				
긴급체포한 자의 관직 및 성명				
인치한 일시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구금한 장소				
범죄사실				
소명자료				
긴급체포한 사유				
체포를 계속하여야 할 사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31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피의자 석방 건의**

다음 피의자를 석방하려 하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의 자	
죄 명	
체포·구속유형	
체포·구속일시	
석 방 사 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32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피의자 석방 보고**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기 보고합니다.

구 분	
영장발부 연월일 또는 현행범인체포(인수)서 작성 연월일	
체포·구속영장 번호 또는 현행범인체포(인수)서 작성 번호	
피체포·구속자	
죄 명	
석 방 일 시	
석 방 사 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33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피긴급체포자 석방 보고**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

피긴급체포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긴 급 체 포 한 일 시		
긴 급 체 포 한 장 소		
죄 명		
긴 급 체 포 하 게 된 구 체 적 이 유		별첨 긴급체포서의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와 같음
석 방 지 휘 검 사		
석 방 한 일 시		
석 방 한 장 소		
석 방 사 유		[ ] 구속영장청구 불요 [ ] 추가수사 필요 [ ] 기타
석방한 자의 관직 및 성명		

첨부 : 긴급체포서 사본 1부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34호서식]

현행범인 체포서

제 0000-00000 호

피의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위 피의자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함

. . .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체포한 일시	
체포한 장소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	
인치한 일시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구금한 장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36호서식]

현행범인 인수서

제 0000-00000 호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만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3조제1항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인수함

. . .

○○○○경찰서

사법경찰관/리 ○○ (인)

체포한 일시		. . . 00:00
체포한 장소		
체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인수한 일시		. . . 00:00
인수한 장소		
인치한 일시		. . . 00:00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 . . 00:00
구금한 장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36호서식]

현행범인 체포원부

(앞 면)

진 행 번 호				
사 건 번 호			년 제 호	년 제 호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죄 명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 작성일			. . .	. . .
현행범인 체포 및 인 수	체 포 한 일 시		. . . 00:00	. . . 00:00
	체 포 한 장 소			
	체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또는 관직		
	인 수 한 일 시		. . . 00:00	. . . 00:00
	인 수 한 장 소			
	인 수 한 자	관 직		
		성 명		
	인 치 한 일 시		. . . 00:00	. . . 00:00
	인 치 한 장 소			
	구 금 한 일 시		. . . 00:00	. . . 00:00
	구 금 한 장 소			
석방	일 시		. . . 00:00	. . . 00:00
	사 유			
구속영장 신 청	신 청 부 번 호			
	발 부 연 월 일		. . .	. . .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년 제 호	년 제 호	년 제 호
. . .	. . .	. . .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37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증거보전 신청**

다음 사건에 관하여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거의 보전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사 건 의 개 요				
증 명 할 사 실				
증 거 및 보 전 의 방 법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 는 사 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38호서식]

실 황 조 사 서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 00. 00. 00:00 ○○○○○○○ ○○○○○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한바, 다음과 같다.

1. 실황조사의 장소(대상)

2. 실황조사의 목적

3. 실황조사의 참여인

4. 실황조사의 경위 및 결과

이 실황조사는 . . . 00:00 에 시작하여 . . . 00:00 에 끝나다.

. . .

○○○○경찰서

사법경찰관 ○○ ○○○ (인)

사법경찰리 ○○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39호서식]

압 수 조 서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00:00 ○○○○에서 사법경찰관 ○○ ○○○는(은) 사법경찰리 ○○ ○○○를(을) 참여하게 하고, 별지 목록의 물건을 다음과 같이 압수하다.

압 수 경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참여인				

. . .

○○○○경찰서

사법경찰관 ○○ ○○○ (인)

사법경찰리 ○○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40호서식]

압 수 목 록

번호	품 종	수량	소지자 또는 제출자		소 유 자		경찰의견	비고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41호서식]

검 증 조 서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00:00 ○○○○○○○○에 임하여 사법경찰관 ○○ ○○○는(은) 사법경찰리 ○○ ○○○를(을)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검증하다.

1. 검증의 장소(대상)

2. 검증의 목적

3. 검증의 참여인

4. 검증의 경위 및 결과

이 검증은 . . . 00:00에 시작하여 . . . 00:00에 끝나다.

. . .

○○○○경찰서

사법경찰관 ○○ ○○○ (인)

사법경찰리 ○○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42호서식]

압수물건 보관 서약서

□ 서 약 인 (앞 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연 락 처	
주 거			

다음 압수물건에 대한 보관명령을 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보관할 것은 물론 언제든지 지시가 있으면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인 : (인)

피의자					
죄 명					
압수번호	0000-00000	접수번호	0000-000000	사건번호	0000-000000

연번	품 종	수 량	보 관 장 소	비 고

○○○○경찰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연번	품 종	수량	보 관 장 소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43호서식]

폐 기 조 서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00:00 사법경찰관 ○○ ○○○는(은) 사법경찰리 ○○ ○○○를(을) 참여하게 하고 압수물을 다음과 같이 폐기한다.

연번	품 종	수 량	이 유	비 고

. . .

○○○○경찰서

사법경찰관 ○○ ○○○ (인)

사법경찰리 ○○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44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 건의**

다음 유가증권은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의 증거품인바, 원형보존의 필요여부에 대하여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유가증권종류	유가증권번호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46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 건의**

다음 물건은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의 증거품으로 압수중인바,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으므로 폐기처분하려 하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품 증	수 량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46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압수물 환부 지휘 건의**

다음 물건은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의 증거품인바, 다음과 같이 환부하려 하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품 종	수량	피압수자	환부받을 사람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47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압수물 가환부 지휘 건의**

다음 물건은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의 증거품인바, 다음과 같이 가환부하려 하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품 종	수량	피압수자	가환부 받을 사람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48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

아래 사람에 대한 제 0000-000000 호 ○○○○○○○○ 피의사건에 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였으나 단시간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자의 관직·성명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목적				
긴급통신제한조치 후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지 못한 사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49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 귀하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당서 사건번호 제 0000-000000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허 가 서 번 호	
통신제한조치 집행기관	
전기통신의 가입자 (우편물검열의 대상자)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종류와 기간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60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 귀하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

당서 제 0000-000000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허 가 서 번 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기관	
전 기 통 신 가 입 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대상과 종 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 공 요 청 의 범 위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61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

우리서 관내에서 아래와 같은 변사사건이 발생하였기에 보고하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견 일 시		. . . 00:00
발 견 장 소		
신 고 일 시		. . . 00:00
변사 종별	원 인	
	방 법	
변 사 자 인 적 사 항		성 명 : (세,) 주민등록번호 : - 직 업 : 주 거 :
발 견 자 인 적 사 항		성 명 : (세,) 주민등록번호 : - 직 업 : 주 거 : 변사자와관계 :
발 견 경 위		

<table>
<tr><td>피 의 자
(피내사자)</td><td colspan="4">성 명 : (세,)
주민등록번호 : -
직 업 :
주 거 :</td></tr>
<tr><td>사 인 및
의 사 소 견</td><td colspan="4">직 접 사 인 :
중간선행사인 :
선 행 사 인 :</td></tr>
<tr><td>사 망 추 정
시 각</td><td colspan="4"></td></tr>
<tr><td>사체의 상황
(위치, 착의,
외상 유무 등
사체의 상태
를 구체적으
로 기재)</td><td colspan="4"></td></tr>
<tr><td>증 거 품
(소지금품,
흉기등범행
공용물, 유
서, 일지등존
재 사 항) 및
참 고 사 항</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5">유족의진술</td><td>진 술 일 시</td><td></td><td>변 사 자 와
관 계</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직 업</td><td></td><td>주 민 등 록
번 호</td><td></td></tr>
<tr><td>성 명</td><td></td><td>연 령</td><td>만 세</td></tr>
<tr><td colspan="4"></td></tr>
</table>

관계인진술	진술일시		변사자와 관계	
	주소			
	직업		주민등록 번호	
	성명		연령	만 세
사건개요				
경찰조치 및 의견				
담당경찰관	계급 : 성명 : 전화 :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62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

우리서 관내에서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 변사사건이 발생하였기에 보고하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rowspan="2">사 망</td><td>일 시</td><td colspan="6"></td></tr>
<tr><td>장 소</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사 고 일 시</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사고발생 장소</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변 사 자
인 적 사 항</td><td colspan="6">성 명 : (세,)
주민등록번호 : -
직 업 :
주 거 :</td></tr>
<tr><td rowspan="8">피 의 자
(피 내 사 자)</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d>연령</td><td></td></tr>
<tr><td>직 업</td><td></td><td>변사자와 관계</td><td></td><td>성별</td><td></td></tr>
<tr><td>주 거</td><td colspan="5"></td></tr>
<tr><td>집 전화번호</td><td colspan="2"></td><td>회사 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진술일시</td><td colspan="2"></td><td>휴대 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진술내용</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6"></td></tr>
</table>

의 사 소 견	
특 이 사 항	
경 찰 조 치 및 의 견	
담 당 경 찰 관	계급 : 성명 : 전화 :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63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 건의**

우리서 제 0000-00000 호(. . . 접수) 변사사건에 대한 검사 ○○○의 지휘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내사하였기에 보고하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 사 자 인 적 사 항	성 명 : (세,) 주민등록번호 : - 직 업 : 주 거 :
사 인	직접사인 :
	간접사인 :
내 사 요 지	
경 찰 의 견	
첨 부 서 류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64호서식]

검 시 조 서

. . . 00:00 ○○○○검찰청 검사 ○○○의 명에 의하여 사법경찰관 ○○ ○○○는 (은) 사법경찰리 ○○ ○○○를(을) 참여하게 하고 다음의 변사자에 대하여 이를 검시하다.

변사자	성 명		성 별		연 령	세
	직 업		국 적			
	등록기준지					
	주 거					
변 사 장 소						
검 시 장 소						
사체의 모양 및 상 황						
변 사 연 월 일						
사 인						
발 견 일 시						
발 견 자						
의사의 검안 및 관계자의 진술						
소 지 금 품 및 유 류 품						
사체 및 휴대품의 처 리						
참 여 인						
의 견						

이 검시는 . . . 00:00에 시작하여 . . . 00:00에 끝나다.

. . .

○○○○경찰서

사법경찰관

○○ ○○○ (인)

사법경찰리

○○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66호서식]

<table>
<tr><td>색인</td><td colspan="5"></td><td colspan="2">소년환경 조사서
(소년카드)</td><td>결재</td><td>계장</td><td>과장</td><td>서장</td></tr>
<tr><td></td><td colspan="5"></td><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r>
<tr><td>번호</td><td colspan="5">○○○○경찰서 ○○년도 제 0000-000000 호</td><td>구분</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11">소년</td><td>성명</td><td colspan="2"></td><td>이명</td><td colspan="2"></td><td rowspan="2">국적</td><td colspan="4">내국인(주민등록번호 : -)</td></tr>
<tr><td>생년월일</td><td colspan="5">. . .
(만 세,)</td><td colspan="4">외국인(국적: , 신분: , 체류목적: ,
등록번호:)</td></tr>
<tr><td>직업</td><td colspan="2"></td><td>연락처</td><td colspan="2"></td><td>등록기준지</td><td colspan="4"></td></tr>
<tr><td>학력</td><td colspan="7">학교 학년 [ ] (퇴학사유:)</td></tr>
<tr><td>주소</td><td colspan="5"></td><td>생활정도</td><td colspan="4"></td></tr>
<tr><td>혼인관계</td><td colspan="5"></td><td>종교</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6">가족관계</td><td colspan="7"></td></tr>
<tr><td>관계</td><td colspan="2">성 명</td><td>연령</td><td colspan="2">직업(경제상태)</td><td>연락처</td><td colspan="3">소년에 대한 감호태도, 전과유무 등</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d></td><td colspan="3" rowspan="4"></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 rowspan="8">본건비행</td><td>구분</td><td colspan="3"></td><td>죄명</td><td></td><td>비행내용</td><td colspan="2"></td></tr>
<tr><td>공범관계</td><td colspan="3">공범 유 무 (공범과 관계:)</td><td>여죄</td><td></td><td>비행내용</td><td colspan="2"></td></tr>
<tr><td>범행동기</td><td colspan="7"></td></tr>
<tr><td>피해자와의관계</td><td colspan="7"></td></tr>
<tr><td>범행후은신처</td><td colspan="7"></td></tr>
<tr><td>마약상용여부</td><td colspan="7"></td></tr>
<tr><td>정신상태</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2">조치</td><td colspan="7">법원 보호사건 송치[ ] 검찰 구속 송치[ ] 검찰 불구속 송치[ ] 선도조건부 불입건[ ]
기타[ ]( )</td></tr>
<tr><td colspan="7">- 구속별(긴급체포[ ] 사전영장[ ] 체포[ ] 현행범체포[ ])
- 불구속별(검사구속취소[ ] 검사기각[ ] 불구속입건[ ] 적부심석방[ ] 판사기각[ ])
- 선도조건부 불입건 조치별(상담기관인계[ ] 사랑의 교실[ ] 교육기관통보[ ] 전문가결연[ ] 기타[ ])</td></tr>
</table>

<table>
<tr><td rowspan="5">비행
경력</td><td>전과</td><td colspan="3"></td></tr>
<tr><td>전회
처분</td><td colspan="3">가석방[ ] 기소유예[ ] 보석·형집행정지[ ] 보호처분[ ] 선고유예[ ] 선도유예[ ] 수배중[ ]
즉결심판[ ] 집행유예[ ] 형집행종료[ ] 감호소출소[ ] 선도조건부 불입건[ ] 기타[ ] 없음[ ]</td></tr>
<tr><td>보호
처분</td><td></td><td>재범
종류</td><td></td></tr>
<tr><td>재범
기간</td><td colspan="3"></td></tr>
<tr><td>경찰
선도
경력</td><td colspan="3">선도조건부 불입건[ ] 송치 후 선도[ ] 기타[ ]( ) 없음[ ]

- 선도조건부 불입건 조치별 (청소년상담기관 인계[ ] 사랑의 교실 이수[ ]
교육기관 통보[ ] 전문가 결연선도[ ] 기타[ ])
- 송치 후 선도 조치별 (청소년상담기관 인계[ ] 사랑의 교실 이수[ ]
교육기관 통보[ ] 전문가 결연선도[ ] 기타[ ])</td></tr>
<tr><td rowspan="4">재비행
위험성
평가</td><td rowspan="3">비행
환경
평가</td><td colspan="3">1. 생계 담당자 ( ) 점
1) 가정의 생계담당자는 소년의
부 또는 모 (0)
기 타 (6)

2. 결손가정 ( ) 점
1) 가정 내 결손이 없다 (0)
있다 (6)
2) 있다면 부 사망 이혼 별거 장기부재
모 사망 이혼 별거 장기부재

3. 교육수준 ( ) 점
1) 중학교 혹은 고교 재학중 (0)
중학교 이하/중퇴, 고교 중퇴 (7)

4. 무단결석 ( ) 점
1) 학교 재학 중 무단결석 없다. (0)
2) 일주일 이상 무단 결석 있다. (9)
* 최초 무단 결석시: 학교 학년
최초무단 결석시 결석 일수: 일간

5. 교우관계 ( ) 점
* 친한 친구 중,
1) 학업 중단 후 무직인 친구가 있다 없다
2) 경찰에 단속되었던 친구가 있다 없다
"있다"가 0개 (0)
1개 (5)
2개 (8)

6. 가출 경험 ( ) 점
1) 가출경험 없다 (0)
있다 1~2회 이상 (3)
3회 이상 (8)
* 최초 가출시 연령 : 만 세
* 최초 가출시 가출 기간: 일간

7. 조발 비행 ( ) 점
* 14세 미만에
1) 조발 비행이 없다 (0)
있다 우범행위 (13)
촉법행위 (16)
* 최초 조발 비행시 연령 : 만 세
* 최초 조발 비행시 죄명 :</td></tr>
<tr><td>계 : ( ) 점</td><td>비행위험성 낮다(0~11점)</td><td>비행위험성 높다(21~29점)</td></tr>
<tr><td colspan="2">비행위험성 약간 높다(12~20점)</td><td>비행위험성 아주 높다(30점 이상)</td></tr>
<tr><td>전문가
참여
결과</td><td>검사결과</td><td colspan="2"></td></tr>
<tr><td></td><td>종합의견</td><td colspan="2"></td></tr>
<tr><td>처우
의견</td><td colspan="4"></td></tr>
<tr><td>작성자</td><td colspan="4">. . . 작성 ○○○○경찰서 ○○과 ○○팀
계 급 : ○○ 성 명 : ○○○ (인)</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66호서식]

가정환경 조사서

제 0000-00000 호 . . .

조사자	○○○○경찰서 ○○과 ○○팀 ○○ ○○○				
사건번호		죄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소					
전 화 번 호	(자 택)		학 력		
	(휴대전화)				

1. 인적사항

관계	성명	연령	성별	학력	직업	기타

2. 가족상황

관계	성명	연령	성별	학력	직업	기타

3. 혼인상황 및 생활환경

혼인상황	
생계비 조달방법	
주거환경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 가정폭력상황

최초갈등 발생원인		
본건범행전 가정불화 및 폭력 횟수		
가정불화 해결을 위한 노력 유무		
본건범죄의 원인 및 동기		
행위자 심신상태	음주상황	
	약물복용여부	
	성격문제	
	정신장애유무	
범죄후정황		

5. 재범의 위험성 및 가정유지 의사 유무

가정유지 의사유무	
임시조치 결정시 기거할 장소 유무	
상담소 상담 희망 여부	
그 밖의 참고사항	
재범위험성	

6. 조사자 의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67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참 조 :

제 목 : 응급조치 보고

행위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피해자와의 관계	
	가정상황	성명 : 행위자와의 관계 : 주거 :
죄 명		
범죄사실요지		별지와 같음
피 해 자		
신 고 자		

위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인도(피해자가 동의함)
[ ]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하여 긴급치료를 받게 함
[ ] 폭력행위 재발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행위자에게 통보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 위반시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경찰서

사법경찰관(리)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68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임시조치 신청**

다음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4.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행위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피해자	성 명	
	주 거	
	직 장	
범죄사실 및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69호서식]

임시조치 신청부

진행번호			
사건번호		년 제 호	년 제 호
신청일시			
신청자 관직 및 성명			
행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임시조치	검사기각		
	판사기각		
	발부		
	재신청 신청		
	재신청 검사기각		
	재신청 판사기각		
	재신청 발부		
임시조치			
항고	항고제기일		
	등본송부일		
	결정일		
	결정내용		
재항고	재항고제기일		
	결정일		
	결정내용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60호서식]

긴 급 임 시 조 치 결 정 서

제 0000-00000 호 . . .

행위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소	
변호인	성 명	

위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함

[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피해자	성 명	
	주 거	
	직 장	
긴 급 임 시 조 치 결 정 근 거		[ ] 피해자 [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 사법경찰관 직권
긴 급 임 시 조 치 일 시 및 장 소		1. 일 시 : . . . : 2. 장 소 :
범죄사실의 요지 및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별지와 같음

년 월 일

○○○○경찰서

사법경찰관 ○ ○ ○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61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입국·상륙절차 특례 신청**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외국인을 입국·상륙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입국·상륙절차의 특례 조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세)	성 별	
	국 적			
마약류의 분산 방지 및 도주방지를 위한 감시체제의 상황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62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체류 부적당 통보 신청**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외국인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통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세)	성 별	
	국 적			
입국(상륙) 허가일자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63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세관절차 특례 신청**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마약류가 외국으로 반출될 / 우리나라로 반입될 필요가 있으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세관절차의 특례 조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약 류 의 특 정	
마 약 류 의 분 산 방 지 를 위 한 감 시 체 제 의 상 황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64호서식]

특례조치 등 신청부(0000-000000)

<table>
<tr><th colspan="5">입국·상륙 등 요청·통보 관련</th><th colspan="3">세 관 요 청 관 련</th></tr>
<tr><td rowspan="3">대상자</td><td>성 명</td><td colspan="3"></td><td rowspan="3">마 약 류</td><td colspan="2" rowspan="3"></td></tr>
<tr><td>생년월일</td><td>. . .
(세)</td><td>성 별</td><td>남·여</td></tr>
<tr><td>국 적</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4">요청
관련</td><td rowspan="2">사법경찰관
신 청</td><td>신 청 일</td><td colspan="2">. . .</td><td rowspan="2">사법경찰관
신 청</td><td>신 청 일</td><td>. . .</td></tr>
<tr><td>기 각 일</td><td colspan="2">. . .</td><td>기 각 일</td><td>. . .</td></tr>
<tr><td rowspan="2">사법경찰관
재 신 청</td><td>신 청 일</td><td colspan="2">. . .</td><td rowspan="2">사법경찰관
재 신 청</td><td>신 청 일</td><td>. . .</td></tr>
<tr><td>기 각 일</td><td colspan="2">. . .</td><td>기 각 일</td><td>. . .</td></tr>
<tr><td rowspan="4">통보
관련</td><td rowspan="2">사법경찰관
신 청</td><td>신 청 일</td><td colspan="2">. . .</td><td rowspan="4">비 고</td><td colspan="2" rowspan="4"></td></tr>
<tr><td>기 각 일</td><td colspan="2">. . .</td></tr>
<tr><td rowspan="2">검사통보</td><td>통 보 일</td><td colspan="2">. . .</td></tr>
<tr><td>처리결과</td><td colspan="2">. . .</td></tr>
<tr><td colspan="2">비 고</td><td colspan="3"></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66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몰수·부대보전 신청**

다음 피의자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몰수·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 금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세)
	직 업	
	주 거	
죄 명		
피 의 사 실 의 요 지		
몰수·부대보전의 근거법령 조 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몰수 보전 관계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성명·주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부대 보전 관계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66호서식]

몰수·부대보전 신청부

진행번호		제 호	제 호
성명			
죄명			
사건번호		년 형 제 호	년 형 제 호
사건명			
검사			
신청관서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권리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사법경찰관 신청	신청일	. . .	. . .
	기각일	. . .	. . .
검사청구	청구일	. . .	. . .
	결정일	. . .	. . .
	요지		
사법경찰관 재신청	신청일	. . .	. . .
	기각일	. . .	. . .
검사 재청구	청구일	. . .	. . .
	결정일	. . .	. . .
	요지		
결정문수령일		. . .	. . .
수령자의 직급·성명·날인			
항고	제기일		
	결정일		
	요지		
재항고	제기일		
	결정일		
	요지		
종국연월일		. . .	. . .
몰수·부대보전부 번호		몰수 년 제 호 부대	몰수 년 제 호 부대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67호서식]

○○지방검찰청	사건과장	20 . . . 수리	주임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형 제 호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사건송치**

다음 사건을 송치합니다.

피 의 자		지문원지 작성번호	구속영장 청구번호	피의자 원표번호	통신사실 청구번호
죄 명					
발각원인					
접 수					
구 속					
석 방					
의 견					
증 거 품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68호서식]

압 수 물 총 목 록

연번	품 명	수 량	기록정수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69호서식]

기 록 목 록

서 류 표 목	진 술 자	작성 연월일	정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70호서식]

의 견 서

1. 피의자 인적사항

ㅇ ㅇ ㅇ(ㅇ ㅇ ㅇ) 직업
주민등록번호 : - OO세
주 거 :
등록기준지 :

2.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3. 범죄사실

4. 적용법조

5. 증거관계

6. 수사결과 및 의견

. . .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71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발 신 : ○○○○경찰서

제 목 : **의견서** 사법경찰관 ○○ (인)

피 의 자	
죄 명	
범 죄 사 실	
적 용 법 조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의 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72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추송**

다음과 같이 추송합니다.

피 의 자	
죄 명	
송 치 연 월 일	
송 치 번 호	
사 건 번 호	
추 송 서 류 및 증 거 품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73호서식]

인 상 서

제 0000-00000 호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등록기준지					
신 장		얼 굴		머리모양	
머 리 색		눈 썹		귀	
눈		입		이	
음 성		수 염		몸 집	
특 징					
도주당시의 옷					
휴 대 품					
배회 또는 잠복할 만한 장소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리)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74호서식]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사건번호		송치번호		송치일자		담당자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죄명						
참고인(고소인, 고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및 연령	남·여	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그 밖의 참고사항						
형제번호	형제 호			주임검사			
결정일자				공소시효			

소 재 수 사 지 휘

지휘일자	지휘관서	보고일자	보 고 내 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76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

귀청에서 기소중지된 아래 사람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죄 명		
송치일시		
송치번호		
사건번호		
발견경위 및 의견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76호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

귀청 0000년 형제 000000 호로 참고인중지된 피의자 ○○○외 ○명에 대한 사건 관련 참고인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전 화	(자택)		(직장)	
대상 사건	피의자				
	죄 명				
	송치연월일				
	송치번호				
	사건번호				
발견경위					
비 고					
첨 부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77호서식]

피의자 소재발견 처리부

번 호	1	2	3
피 의 자			
소 재 발 견 일 자			
소 재 발 견 사 유 (검 거, 재 기 신 청)			
소 재 발 견 보 고 일			
죄 명			
수 배 해 제 일 자			
재 기 전 사 건 번 호			
송 치 일 (송 치 의 견)			
담 당 자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78호서식]

동 의 서

제 0000-00000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주 거			
진 행 사 항 통 지 방 법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록 아이디(ID)		
	휴 대 전 화		전자우편
	통 지 수 단	[ ] 휴대폰문자서비스 [ ] 전자우편(e-mail)	

- 안 내 문 -

1. 동의절차가 완료되면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조에 따라 사건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2. 통지수단에서 선택한 휴대전화문자서비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나 그 밖에 소송에 관한 서류가 형사사법포털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게 되며, 등재사실을 알린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됩니다.
3.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후 위 아이디(ID)를 이용해 형사사법포털에 로그인하면 약식명령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초기비밀번호는 위 휴대폰문자서비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됩니다.
4. 전자약식절차에 따라 사건이 처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기 전까지 서면 또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동의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5. 동의절차가 완료되었더라도 사건수사 과정에서 법 제3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이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본인은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며,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송달받는 데에 동의합니다.

. . .

신 청 인 : (인)

작 성 자 :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79호서식]

출 석 요 구 통 지 부

접수번호 : 사건번호 :

연번	통지일	통지방법	출석요구일	대상자	성 명	결 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80호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참 조 :

제 목 : **수사결과 보고**

○○○○○○○○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하였기에 결과를 보고합니다.

1. 피의자 인적사항

2.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3. 범죄사실

4. 적용법조

5. 증거관계

6. 수사결과 및 의견

7. 수사참여경찰관

경 로	수사지휘 및 의견	구분	결 재	일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81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수사지휘 건의**

아래 사건에 대하여 수사지휘를 건의합니다.

접 수 일			사 건 번 호	
죄 명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거			
건 의 내 용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82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증인신문 신청**

피의자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 신문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주 거			
증 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주 거			
범 죄 사 실				
증 명 할 사 실				
신 문 사 항				
증인신문청구의 요건이 되는 사실				
변 호 인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83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수사관계서류 등 제출**

○○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 사람에 대한 동원 제 00000 호 구속적부심사청구/체포적부심사청구 등 사건의 심문기일 지정통지가 있으므로 동 사건 심리에 필요한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합니다.

피체포·구속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체포·구속 일		. . .
지정된 심문기일		. . . 00:00

첨부 1. 사건기록 1권
2. 증거물(있음/없음)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84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체포영장 신청**

다음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에 인치하고 ○○○○○○○에 구금하려 하니 0000. 00. 00.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범 죄 사 실 및 체 포 를 필 요 로 하 는 이 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 청 하 는 취 지 와 사 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현 재 수 사 중 인 다 른 범 죄 사 실 에 관 하 여 발 부 된 유 효 한 체 포 영 장 존 재 시 그 취 지 및 범 죄 사 실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86호서식]

체포영장 신청부

(앞 면)

진 행 번 호			
사 건 번 호		년 제 호	년 제 호
신 청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신청자 관직 및 성명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검 사 기 각		. . . 00:00	. . . 00:00
판 사 기 각		. . . 00:00	. . . 00:00
발 부		. . . 00:00	. . . 00:00
재신청	신 청	. . . 00:00	. . . 00:00
	검 사 기 각	. . . 00:00	. . . 00:00
	판 사 기 각	. . . 00:00	. . . 00:00
	발 부	. . . 00:00	. . . 00:00
유 효 기 간		. . .	. . .
집행	일 시	. . . 00:00	. . . 00:00
	장 소		
	처 리 결 과		
구속영장 신청	신 청 부 번 호		
	발 부 연 월 일	. . .	. . .
석 방	연 월 일	. . .	. . .
	사 유		
반 환		. . .	. . .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년 제 호	년 제 호	년 제 호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 . .	. . .
. . . 00:00	. . . 00:00	. . . 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86호서식]

구속영장 신청부

(앞 면)

진행번호				
사건번호			년 제 호	년 제 호
신청일시			. . . 00:00	. . . 00:00
신청자 관직 및 성명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체포일시 및 유형			. . . 00:00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진행번호)	. . . 00:00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진행번호)
영장신청 및 발부	검사기각		. . . 00:00	. . . 00:00
	판사기각		. . . 00:00	. . . 00:00
	발부		. . . 00:00	. . . 00:00
	재신청	신청	. . . 00:00	. . . 00:00
		검사기각	. . . 00:00	. . . 00:00
		판사기각	. . . 00:00	. . . 00:00
		발부	. . . 00:00	. . . 00:00
	피의자 심문	일련번호		
		검사 또는 판사명		
		접수일시	. . . 00:00	. . . 00:00
		접수자 관직 성명		
		구인일시	. . . 00:00	. . . 00:00
유효기간			. . .	. . .
석방	연월일		. . .	. . .
	사유			
반환			. . .	. . .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년 제 호	년 제 호	년 제 호
. . . 00:00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진행번호)	. . . 00:00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진행번호)	. . . 00:00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진행번호)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00:00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87호서식]

체포·구속인 명부

제 호								
체포·구속	취급자	팀장		과장		서장		
	연월일 및 유형	. . . : 체포영장 . . . : 긴급체포 . . . : 현행범인체포(인수) . . . : 구속영장 . . . : 즉결심판선고에 의함						
석방	취급자	팀장		과장		서장		
	연월일시	. . . 00:00						
	사유							
죄명 및 형명·형기								
인상	키		몸집		머리털		눈썹	
	수염		이마		귀		눈	
	입		이		코		용모	
	얼굴		얼굴색					
	그 밖의 특징							
착의								
체포·구속된 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록기준지							
범죄경력, 죄명, 범수								
공범관계자성명								
가족관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88호서식]

체포·구속인 접견부

(앞 면)

유 치 인 성 명					
접 견 신 청 자	주 거				
	성 명				
유 치 인 과 의 관 계					
접 견 일 시		. . . :	. . . :	. . . :	. . . :
담 화 의 요 지					
비 고					
입 회 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89호서식]

체포·구속인 교통부

(앞 면)

유치인성명					
접견신청자	주거				
	성명				
유치인과의 관계					
수발의 구별					
교통일시		. . .	. . .	. . .	. . .
서신내용의 요지					
비고					
취급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 . .	. . .	. . .	. . .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90호서식]

체포·구속인 수진부

(앞 면)

유치인 성명				
진단의사의 성명				
수진의 원인				
수진일시	. . . :	. . . :	. . . :	. . . :
진단의 결과				
비고				
입회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 . . :	. . . :	. . . :	. . . :	.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91호서식]

물 품 차 입 부

유 치 인 성 명					
차 입 자	주 거				
	성 명				
유 치 인 과 의 관 계					
구 별					
연 월 일		. . . :	. . . :	. . . :	. . . :
물 품 및 수 량					
비 고					
취 급 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92호서식]

체포·구속영장 집행원부

진행 번호	영장 번호	구분	피의자	죄 명	집행지휘 또는 촉탁		영장유효 기 간	처 리			비고
					연월일	관 서		집 행	집행불능	반환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란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임을 특정하여 기재함.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93호서식]

접견 등 금지결정 처리부

진행 번호	결정일	사법경찰관	죄 명	피의자	결정이유	금지내용	취소일	취소사유	비 고

※ 사법경찰관란에는 접견 등 금지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의 관직 및 성명을 기재함.
※ 비고란에는 체포와 구속을 구분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번호를 기재함.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94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압수 · 수색 · 검증영장 신청(사전)**

다음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 · 수색 · 검증하려 하니 . . .까지 유효한 압수 · 수색 · 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압 수 할 물 건		
수 색 · 검 증 할 장 소 , 신 체 또 는 물 건		
범죄사실 및 압수 · 수색 ·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7 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들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 지 와 사 유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신 체 검 사 를 받 을 자 의 성 별 · 건 강 상 태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 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96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금융계좌추적용)**

다음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려 하니 . . .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대상 계좌	계 좌 명 의 인	[ ] 피의자 본인 [ ] 제3자(인적사항은 별지와 같음)
	개설은행·계좌번호	
	거 래 기 간	
	거래정보 등의 내용	
압 수 할 물 건		
수 색 · 검 증 할 장 소 또 는 물 건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 지 와 사 유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96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후)**

다음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압수·수색·검증하였으니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긴급압수·수색·검증한 자의 관 직 · 성 명		
긴 급 압 수 · 수 색 · 검 증 한 일 시		
긴 급 수 색 · 검 증 한 장 소 · 신 체 또 는 물 건		
긴 급 압 수 한 물 건		
범 죄 사 실 및 긴 급 압 수 · 수 색 · 검 증 한 사 유		
체 포 한 일 시 및 장 소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른 경우)		
일 출 전 또 는 일 몰 후 집 행 을 한 사 유		
신 체 검 사 를 한 자 의 성 별 · 건 강 상 태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97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 건의**

다음 물건은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의 증거품으로 압수중인바,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사유로 위탁보관의 필요가 있으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품 종	수 량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98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 건의**

다음 물건은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의 증거품으로 압수 중인바, 부패(멸실)의 우려가 있어 대가보관의 필요가 있으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품 종	수 량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99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제 목 : **압수증명**

다음과 같이 압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연번	품 종	수 량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0호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제 목 : **물건제출 요청**

아래 물건은 ○○○외 ○명에 대한 ○○○○○○○○○ 사건에 관하여 압수할 필요가 있으니 . . . 안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품 종	수 량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1호서식]

압수물 폐기 동의서

□ 동 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연 락 처	
주 거			

다음 압수물건을 폐기함에 동의합니다.

. . .

동 의 인 : (인)

피 의 자					
죄 명					
압수번호	0000-00000	접수번호	0000-000000	사건번호	0000-000000

연번	품 종	수 량	비 고

○○○○경찰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2호서식]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서

□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연 락 처	
주 거			

다음 압수물건은 아래 사건의 증거품으로 귀서에 압수중이던바, 필요하오니 환부(가환부)해 주시기 바라며, 환부(가환부)하신 후 언제든지 지시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청 구 인 : (인)

피 의 자					
죄 명					
압수번호	0000-00000	접수번호	0000-000000	사건번호	0000-000000

연번	품 종	수 량	비 고

○○○○경찰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3호서식]

압수물 환부(가환부) 영수서

□ 영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연 락 처	
주 거			

다음 압수물건은 아래 사건의 증거품으로 귀서에 압수중이던바, 확실히 환부(가환부)받았으며 언제든지 지시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 . .

영 수 인 : (인)

피 의 자					
죄 명					
압수번호	0000-00000	접수번호	0000-000000	사건번호	0000-000000

기록정수	연번	품 증	수 량	비 고

○○○○경찰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4호서식]

수 색 조 서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00:00 사법경찰관 ○○ ○○○는(은) 사법경찰리 ○○ ○○○를(을)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수색하다.

수 색 장 소	
참 여 인	
수색한 신체·개소·물건	
수 색 결 과	
수 색 시 간	착수 : . . . 00:00
	종료 : . . . 00:00

. . .

○○○○경찰서

사법경찰관 ○○ ○○○ (인)

사법경찰리 ○○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6호서식]

증 명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00:00 ○○○○○○○○○에서 ○○○○○○○○○○을 수색한 결과, 증거물 등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6호서식]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부

(앞 면)

진행번호			
사건번호		년 제 호	년 제 호
신청연월일			
신청자 관직 및 성명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검사기각		. . .	. . .
판사기각		. . .	. . .
발부		. . .	. . .
유효기간		. . .	. . .
집행	일시	. . .	. . .
	장소		
	처리결과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년 제 호	년 제 호	년 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7호서식]

압 수 부

번 호		범죄사건부 번 호	압 수 연월일	압수물건		소유자의 주거·성명	피압수자의 주거·성명	보관자 확 인	취급자 확 인	처 분		비고
압수부	압수물			품종	수량					연월일	요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8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제 목 : **임치증명**

다음과 같이 임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연번	물 건	수 량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9호서식]

임 치 및 급 식 상 황 표

임 치 물						
임 치 물 품						
임치금품의 처리상황						
급식 상황	일 자	1	2	3	4	5
	아 침					
	점 심					
	저 녁					
	일 자	6	7	8	9	10
	아 침					
	점 심					
	저 녁					
	일 자	11	12	13	14	15
	아 침					
	점 심					
	저 녁					
	일 자	16	17	18	19	20
	아 침					
	점 심					
	저 녁					
	일 자	21	22	23	24	25
	아 침					
	점 심					
	저 녁					
	일 자	26	27	28	29	30
	아 침					
	점 심					
	저 녁					
비고						3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0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촉탁**

다음 사항을 촉탁하오니 조속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번 호		접 수 번 호	
피 의 자			
죄 명			
촉 탁 사 항			
촉 탁 내 용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1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회답**

○○○○경찰서장 제 0000-00000 호(. . .)에 의한 촉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답합니다.

회 답 내 용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2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감정유치장 신청**

피의자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피의자를 아래와 같이 감정유치하려 하니 . . .까지 유효한 감정유치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범 죄 사 실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유치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유 치 할 장 소		
유 치 기 간		. . .부터 . . .까지 (일간)
감정의 목적 및 이유		
감 정 인	성 명	
	직 업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3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감정처분허가장 신청**

피의자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감정인이 아래와 같이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 . .까지 유효한 감정처분허가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감정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감정위촉연월일				
감정위촉사항				
감 정 장 소				
범 죄 사 실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이상의 허가장을 신청하는 취 지 와 사 유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이유				
변 호 인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4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제 목 : **감정위촉**

피의자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의 감정을 위촉합니다.

사 건 번 호	
감 정 대 상 (종 류 · 품 명)	
위 촉 사 항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6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제 목 : **감정위촉(허가장)**

피의자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의 감정을 위촉합니다. 첨부한 감정처분허가장은 감정서와 함께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 번 호	
감 정 대 상 (종 류 · 품 명)	
위 촉 사 항	
비 고	

첨부 : 감정처분 허가장 1통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6호서식]

정식재판 청구서

사건번호				
피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거			
죄명				
선고연월일				
즉결심판주문				
비고				

위 피고사건의 즉결심판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 . .

위 청구인 (인)

○○○○경찰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7호서식]

○ ○ ○ ○ 경 찰 서

검 사 지 휘		
가	부	비고

제 0000-00000 호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정식재판청구 승인 건의**

다음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청구를 하려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죄 명		
선 고 연 월 일		
즉 결 심 판 주 문		
정식재판청구사유	범 죄 사 실	
	증 거 자 료	
	불 복 이 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8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법원

제 목 : **정식재판 청구**

다음 피고사건의 즉결심판에 불복이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사 건 번 호				
피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죄 명				
선 고 연 월 일				
즉 결 심 판 주 문				
비 고				

○ ○ ○ ○ 경 찰 서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9호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즉결심판 사건기록 송부**

다음 즉결심판 사건기록을 송부합니다.

피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문원지 작성번호
죄 명			
송 부 사 유			
기 록 권 수	○권		
증 거 물			
비 고			수리전산입력

○○○○경찰서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0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행협 담당검사)

제 목 : **한·미행정협정 사건발생 보고**

아래와 같이 미군인/미군속/미군가족 등의 범죄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피의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군 번	
주민등록번호	
사회보장번호	
주 거	
국 적	

2. 피해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3. 범죄사실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1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 지휘 건의**

다음 사람에 대하여 출국금지 · 출국정지 · 입국시통보 요청하고자 합니다.

사 건 번 호				
인적사항	성 명			
	주 거			
	등 록 기 준 지			
	직 업		성 별	
	여 권 번 호		주민등록번호	
죄 명				
범 죄 사 실				
사 유				
기 간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2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소년사건 선도조건부 불입건 건의**

아래 사건에 대하여 불입건하려 하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령	세	학교 및 학년		
	주 소				
죄 명					
범 죄 사 실					
적 용 법 조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피 해 자 및 학 교 장 의 견					
경 찰 의 견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3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법원

제 목 : **소년보호사건 송치**

다음과 같이 송치합니다.

비행소년	성 명		( )	이명(별명)		
	생 년 월 일		. . .(만 세)		직 업	
	등 록 기 준 지					
	주 거					
	학 교			담 임		
	보호자	성 명		관 계		
		주민등록번호		연 령		
		주 거				
		전 화		휴대전화		
비 행 사 건 명						
발 각 원 인						
동 행 여 부						
증 거 품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비 행 사 실 (일시·장소·등기· 방 법 · 피 해 액)	
	담당자 ○○ (인)
의 견	
	감독자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4호서식]

긴급검열·감청서

제 0000-00000 호 . . .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위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함.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1. 기간 : . . . ~ . . .
	2. 집행장소 :
범죄사실의 요지 및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목적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6호서식]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대 장

집행 번호	사건 번호	성명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집행 일시	사후신청 또는 통보서 발송 여부
			대상	종류·방법	기간·장소	연월일	관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6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 건의**

다음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1. 기간 : . . . ~ . . .			
	2. 집행장소 :			
긴급통신제한조치한 사유	1. 혐의사실의 요지 :			
	2. 소명자료 :			
사전지휘를 받지 못한 사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7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 건의**

다음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려 하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1. 기간 : . . . ~ . . .			
	2. 집행장소 :			
혐의사실의 요지 및 신청이유	1. 혐의사실의 요지 :			
	2. 소명자료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8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통신제한조치 허가 신청(사전)**

다음 피의자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1. 기간 : . . . ~ . . . 2. 집행장소 :			
혐의사실의 요지 및 신청이유				
둘이상을신청하는경우 신청취지 및 이유				
재신청 취지 및 이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9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통신제한조치 허가 신청(사후)**

다음 피의자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였으므로 통신제한조치를 계속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통신제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통신제한조치를 계속 필요로 하는 사유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일시와 집행장소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자의 관직·성명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장소	
둘이상을신청하는경우 신청취지 및 이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0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합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주 거	
	직 업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비 고		

붙 임 : 통신제한조치 허가(승인)서 사본 1통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1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거	
직 업	
사 건 번 호	
허 가 서 번 호	
통신제한허가기간	. . .부터 . . .까지 일
연 장 할 기 간	. . .부터 . . .까지 일
기간연장이 필요한 이유 및 소 명 자 료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2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통지**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 . .부터 . . .까지 일
연 장 한 기 간		. . .부터 . . .까지 일

붙 임 : 통신제한조치 연장 결정문 사본 1통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3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피의자 ○○○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고 이 조서를 작성함.

1.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2.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3.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4. 집행위탁 여부

5. 집행경위

6.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결과의 요지

. . .

○○○○경찰서

사법경찰관 ○○ ○○○ (인)

사법경찰리 ○○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4호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

아래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고 그 수사/내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피의/내사 사실				
< 처 리 내 용 >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6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

아래 사람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없게 되어 통지하니 집행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통신제한조치허가법원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통신제한조치허가년월일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번호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6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피의자 ○○○외 ○명에 대한 ○○○○○○○○○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의 통지를 유예하려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사 건 번 호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통신제한조치의 목적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일 및 결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사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7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연번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요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건				통지일	비고
	허가서 번호	통지 대상자	집행자의 관직·성명	사건 번호	처리일자 및 처리결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8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제 목 :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거	
직 업	
요 청 사 유	
해 당 가 입 자 와 의 연 관 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사 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9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사전)**

○○○○○○○○○ 피의사건 관련,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전기통신사업자				
요 청 사 유				
해당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0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사후)**

○○○○○○○○○ 피의사건 관련,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전기통신사업자				
요 청 사 유				
해당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				
집행일시·장소				
집행자의 관직·성명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1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 귀하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거	
직 업	
요 청 사 유	
해 당 가 입 자 와 의 연 관 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붙임 : 허가서 1부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2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피의자 ○○○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집행을 하고 이 조서를 작성함.

1. 허가서 번호

2. 집행기관

3. 전기통신가입자

4.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대상과 종류

5.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으로 취득한 결과의 요지

. . .

○○○○경찰서

사법경찰관 ○○ ○○○ (인)

사법경찰리 ○○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3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 보고**

○○○○○○○○ 피의사건 관련,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하고 그 수사/내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종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대상과 범위				
피의/내사 사실 요지				
< 처 리 내 용 >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4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 귀하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 통지**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에 같이 요청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그 제공이 필요 없게 되어 통지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법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종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 연월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번호		
< 비 고 >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6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피의자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 관련,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집행사실에 관한 통지를 유예하려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사 건 번 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종류 및 자료의 범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집행한 사건의 처리일 및 결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사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6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기간연장 신청**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기간연장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허가받은 대상 및 범위		
연장할 기간		
기간연장이 필요한 이유 및 소명자료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7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연번	신청 일자	신청자의 관직·성명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요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건			승인 일	유예사유 해소 후 통지일
			허가서 번호	통지 대상자	사건 번호	처리일 및 처리결과	통보받은 날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8호서식]

○ ○ ○ ○ 경 찰 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 귀하

제 목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

당서 제 0000-000000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압수·수색·검증 영장번호	
압수·수색·검증 집행기관	
전기통신가입자	
압수·수색·검증 집행의 대상과 종류	
압수·수색·검증 집행 대상의 범위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9호서식]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연번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건				통지일	비고 (반송 등)
	영장 번호	통지 대상자	집행자의 관직·성명	사건 번호	처리일 및 처리결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60호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발송부

연번	사건번호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작성자		통보서 송부일
		대상자	기간	직급	성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61호서식]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앞 면)

진행번호					
사건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죄명					
종류 · 방법					
처분대상 ·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일					
허가기간 · 집행장소					
연장기간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허가신청 및 발부	구분	허가신청	연장신청	허가신청	연장신청
	신청				
	발부				
	기각				
	재신청				
	발부				
	기각				
	수령연월일				
	수령자의 관직 성명 · 날인				
검찰반환연월일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 . .부터 . . .까지	
허가신청	연장신청	허가신청	연장신청	허가신청	연장신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62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집행 번호	허가서 번 호	성명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집행일	비고
			목적	대상	종류	기간	연월일	관서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63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연번	통신제한조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통지일	비고
	허가서 번 호	통 지 대상자	집행자의 관직 · 성명	사건 번호	처리일 및 처리결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64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연번	신청일	신청자의 관직·성명	통신제한조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승인일	유예사유 해소 후 통지일
			허가서 번호	통지 대상자	사건 번호	처리일 및 처리결과	통보받은 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66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부

(앞 면)

진 행 번 호				
사 건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거				
직 업				
종 류				
죄 명				
대 상 및 범 위				
긴급으로 자료를 제공받은 일시				
신청 및 발부일시	구 분	허 가	허 가	허 가
	신 청			
	발 부			
	기 각			
	재 신 청			
	발 부			
	기 각			
수령 및 반환	수 령 연 월 일			
	수령자의 관직 성 명 · 날 인			
	검찰반환연월일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부

(뒷 면)

허 가	허 가	허 가	허 가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66호서식]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대장

집행번호	사건번호	성 명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일	사후청구 또는 통보서 발송여부
			대 상	종 류	범 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67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

집행번호	허가서 번 호	성 명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			집 행 일	비 고
			대 상	종 류	범 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68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대장

연 번	요청일	요청자	대상자	제공받은 자료의 범위	회신일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69호서식]

피 의 자 신 문 조 서(간이교통)

피 의 자 : ○○○

위의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00:00 ○○○○○○○○○○에서 사법경찰관 ○○ ○○○는(은) 사법경찰리 ○○ ○○○를(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 성명은 ( )

주민등록번호는 - (세)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주소는

연락처는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고차량소유자 (소속)번호, 차종	
면허종류 및 취득시기	
사 고 일 시	
사 고 장 소	
사고차량의상태 (고장유무)	
사 고 경 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피의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점	
피해자 및 피해상황	
사고 후의 조치 (구호, 신고)	
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대한 의견	
피해증거(진단서, 견적서)에 대한 의견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점	
합의여부	
가입보험종류	
그 밖에 유리한 자료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60호서식]

피 의 자 신 문 조 서(간이폭력)

피 의 자 : ○○○

위의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00:00 ○○○○○○○○○○에서 사법경찰관 ○○ ○○○는(은) 사법경찰리 ○○ ○○○를(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 성명은 ( )

주민등록번호는 - (세)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주소는

연락처는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범 행 일 시	
범 행 장 소	
공범 및 모의 경위	
피 해 자	
범행동기, 경위 및 수단·방법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피해부위 및 정도	
진단서 등 증거에 대한 의견	
범행 후의 조치 (합의 여부 등)	
그 밖에 유리한 자료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61호서식]

피 의 자 신 문 조 서(간이절도)

피 의 자 : ○○○

위의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00:00 ○○○○○○○○○○에서 사법경찰관 ○○ ○○○는(은) 사법경찰리 ○○ ○○○를(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 성명은 ( )

주민등록번호는 - (세)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주소는

연락처는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범 행 일 시	
범 행 장 소	
공 범	
절 취 품	
피 해 자	
범 행 동 기 , 경 위 및 수 단 · 방 법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장 물 소 지 보 관 여 부	(압수절차)
장물처분경위 및 방법	
피 해 자 와 의 관 계	
검 거 된 경 위	
그 밖에 유리한 자료	

문 :

답 :

문 :

답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62호서식]

피 의 자 신 문 조 서(간이향군)

피 의 자 : ○○○

위의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00:00 ○○○○○○○○○○에서 사법경찰관 ○○ ○○○는(은) 사법경찰리 ○○ ○○○를(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 성명은 ( )

주민등록번호는 - (세)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주소는

연락처는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속예비군부대		
역종·계급·직책		
훈련불참	일시	
	장소	
	훈련종류	
소집통지서	피의자에게 전달된 과정	
	발행부대장	
불참이유		
증거(통지서수령증)에 대한 의견		
정당한 사유 유무(보류, 연기원서 제출 등)		
그 밖에 유리한 자료		

문 :

답 :

문 :

답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63호서식]

피 의 자 신 문 조 서(간이도박)

피 의 자 : ○○○

위의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00:00 ○○○○○○○○○○에서 사법경찰관 ○○ ○○○는(은) 사법경찰리 ○○ ○○○를(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 성명은 ( )

주민등록번호는 - (세)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주소는

연락처는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 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범 행 일 시	
범 행 장 소	
공 범	
범행동기, 경위 및 수단·방법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장 소 제 공 자 및 그 에 대 한 대 가	
승 패 역 수	
도박용으로 소지했던 금 품 및 물 건	(압수절차)
그 밖에 유리한 자료	

문 :

답 :

문 :

답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64호서식]

진 술 조 서(간이교통)

성 명	( ) 이명 :	성 별	
연 령	세 (. . . 생)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거			
자 택 전 화		직 장 전 화	
휴 대 전 화		전자우편(e-mail)	
직 업		직 장	

위의 사람은 피의자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의 피해자로서 . . . 00:00 ○○○○○○○○○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피 해 일 시	
피 해 장 소	
가 해 차 량	(소유자) (차량번호) (차종)
피 의 자	
피 해 경 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피 해 내 용	
제 출 할 증 거	
피의자의 과실에 대한 의견	
진술인의 과실	
사고 후 피의자의 조치	
피의자와 합의 여부 (교섭상황)	
피의자의 처벌에 대한 의견	
위의 진술내용을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답함.	

문 :

답 :

문 :

답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66호서식]

진 술 조 서(간이폭력)

성 명	( ) 이명 :	성 별	
연 령	세 (. . . 생)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거			
자 택 전 화		직 장 전 화	
휴 대 전 화		전자우편(e-mail)	
직 업		직 장	

위의 사람은 피의자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의 피해자로서 . . . 00:00 ○○○○○○○○○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피 해 일 시	
피 해 장 소	
피 의 자	
피 해 경 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피해내용 및 정도	
피해 후의 조치	
제출할 증거	
압수증거물 확인	
피의자와의 관계	
합의여부 또는 교섭상황	
피의자의 처벌에 대한 의견	
위의 진술내용을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답함.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66호서식]

진 술 조 서(간이절도)

성 명	( ) 이명 :		성 별	
연 령	세 (. . . 생)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거				
자 택 전 화		직 장 전 화		
휴 대 전 화		전자우편(e-mail)		
직 업		직 장		

위의 사람은 피의자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의 피해자로서 . . . 00:00 ○○○○○○○○○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도 난 일 시	
도 난 장 소	
도난품의 소유자, 점유자, 종류, 수 량 , 시 가	
도 난 경 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도 난 후 의 조 치	
제 출 할 증 거	
압 수 증 거 물 확 인	
도 난 품 의 회 수 , 가 격 변 상 여 부	
피 의 자 와 의 관 계	
피 의 자 의 처 벌 에 대 한 의 견	
위의 진술내용을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답함.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67호서식]

진 술 서(간이공통)

성 명	( ) 이 명 :	성 별	
연 령	만 세(. . .생)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거			
자 택 전 화		직 장 전 화	
휴 대 전 화		전자우편(e-mail)	
직 업		직 장	

위의 사람은 ○○○○○○○○○○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68호서식]

진 술 서(간이교통)

성 명	( ) 이 명 :	성 별	
연 령	만 세(. . .생)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거			
자 택 전 화		직 장 전 화	
휴 대 전 화		전자우편(e-mail)	
직 업		직 장	

위의 사람은 아래와 같이 교통사고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 이에 관하여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피 해 일 시	
피 해 장 소	
가 해 차 량	(소유자) (차량번호) (차종)
피 의 자	
피 해 경 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피 해 내 용	
제 출 할 증 거	
증거물 확인	
피의자의 과실에 대한 의견	
진 술 인 의 과 실	
사고 후 피의자의 조 치	
합의 여부 또는 교 섭 상 황	
피의자의 처벌에 대한 의견	
그 밖에 참고될 진 술	
. . . 작성자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69호서식]

진 술 서(간이폭력)

성 명	( ) 이 명 :	성 별	
연 령	만 세(. . .생)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거			
자 택 전 화		직 장 전 화	
휴 대 전 화		전자우편(e-mail)	
직 업		직 장	

위의 사람은 아래와 같이 상해(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이에 관하여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피 해 일 시	
피 해 장 소	
피 의 자	
피 해 경 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피 해 내 용	
피 해 후 의 조 치	
제 출 할 증 거 물 또 는 증 인	
압 수 증 거 물 확 인	
피 의 자 와 의 관 계	
합 의 여 부	
피 의 자 의 처 벌 에 대 한 의 견	
그 밖에 참고될 진술	
. . . 작성자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170호서식]

진 술 서(간이절도)

성 명	( ) 이 명 :	성 별	
연 령	만 세(. . .생)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거			
자 택 전 화		직 장 전 화	
휴 대 전 화		전자우편(e-mail)	
직 업		직 장	
위의 사람은 아래와 같이 도난당한 사실이 있어 이에 관하여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도 난 일 시			
도 난 장 소			
피 의 자			
도난품의 소유자, 점유자, 종류, 수 량 , 시 가			
피 해 경 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도 난 후 의 조 치	
제 출 할 증 거	
압 수 증 거 물 확 인	
도 난 품 의 회 수 , 가 격 변 상 여 부	
피 의 자 와 의 관 계	
피 의 자 의 처 벌 에 대 한 의 견	
그 밖에 참고될 진술	
. . . 작성자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시행 2015.9.1] [훈령 제774호, 2015.8.28, 폐지제정]

제1장 총칙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마음가짐,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① 사법경찰관리인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은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관할구역 내의 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② 관할이 경합하여 책임수사관서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차상급 기관에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한다.

제3조(인권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ㆍ공정ㆍ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 준수)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합리적인 수사) ①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 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ㆍ기술ㆍ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상사의 지시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고 경찰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의수사) ①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경찰관이 임의수사를 위해서 상대방의 승낙을 구할 때에는 승낙을 강요하거나 강요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태도나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비밀의 준수) 경찰관은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건관계인의 관련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8조(수사의 회피)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소속 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공판절차의 고려) 경찰관은 수사는 공소의 제기와 공판 심리의 전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사의 메모) 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사의 진행 경과와 그 밖의 참고가 될 사항을 메모하여 당해 사건의 공판심리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 대비하고 관련 사건 수사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1조(법정 증언) ① 경찰관은 수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 및 예상 질의답변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에는 품위 있는 자세와 단정한 차림을 갖추도록 하고, 증언을 할 때에는 기억에 기초하여 진실되고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언론 발표시 주의사항) 각 경찰기관의 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신문 그 밖의 언론매체에 수사에 관한 사실을 발표할 때에는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공보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발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수사의 조직

제13조(수사의 조직적 운영) 경찰관이 수사를 함에는 경찰관 상호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적정한 통제를 도모하고, 수사담당부서 이외의 다른 수사부서나 기타 관계있는 다른 경찰관서와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락하여, 경찰의 조직적 기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경찰청장) 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하며, 경찰청의 수사업무를 관장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건수사에 대한 지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수사관할이 수개의 지방청에 속하는 사건
2. 고위공직자 또는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 사건으로 해당관서에서 수사하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경찰청장이 수사본부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지정하는 사건
4. 그 밖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파장이 큰 사건으로 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건

제13조의3(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관서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하며, 체계적인 수사 인력·장비·시설·예산 운영 및 지도·교양 등을 통해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의4(경찰서장) 경찰서장은 해당 경찰서 관내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의5(수사간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서의 수사간부는 소속 경찰관서장을 보좌하고 그 명에 의하여 범죄수사의 지휘·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수사지휘) ①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규정된 사람은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수사지휘를 하여 그 책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이 지휘할 사건은 별표1과 같으며, 사건의 경중, 사건관할경찰서의 수사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본부 운영 등 별표1의3의 수사체계 중 하나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이 지휘할 사건은 별표1 중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서장에게 그 지휘를 일임한 사건과 별표1 이외의 경미한 사건으로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별표1의3에 따라서 경찰서장에게 수사를 일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최초에 지방경찰청장의 수사지휘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수사진행과정에서 새롭게 중요사항이 발견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별표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은 별표1의3의 수사체제를 다시 지정하여 지휘할 수 있다.

제14조의2(수사에 관한 보고) ① 경찰관은 범죄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수사상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인지한 때에는 신속히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별표1에 규정된 수사지휘 대상 중요사건이 발생하였거나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에는 별표1의2에 규정된 보고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지방경찰청장의 수사지휘 방식) ①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서장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수사지휘서를 작성하거나 제22호의2 서식에서 규정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으며, 사후에 신속하게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휘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상황
2. 이미 수사지휘 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한 경우
3. 수사 현장에서 지휘하는 경우

② 경찰서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휘내용을 송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휘내용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신속하게 지휘내용을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수사지휘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찰청장의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지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의4(지방경찰청장의 수사지휘사항)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서장에 대해 수사지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체적으로 지휘하여야 한다.
1. 수사착수, 사건의 이송·인계
2. 수사본부 설치 및 해산
3. 사건을 수사할 지방경찰청 주무부서, 전담경찰서 및 수사주책임관 지정
4. 수사방침의 수립 또는 변경
5. 언론지원팀과 공보책임자 지정 등 언론창구 단일화에 관한 사항
6. 피의자의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및 체포한 피의자의 신병조치
7.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지휘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의5(경찰서장의 수사지휘건의) ① 경찰서장은 사건수사를 함에 있어서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가 필요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건의하여 구체적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수사지휘건의를 받은 때에는 신속하게 지휘하여야 한다.

제14조의6(경찰관서 내 수사지휘) ① 경찰관서 내에서 수사지휘권이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안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사지휘서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수사서류의 결재 수사지휘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의 긴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
1. 체포·구속에 관한 사항
2.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사항
3. 송치의견에 관한 사항
4. 사건 이송 등 책임수사관서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수사지휘권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수사지휘를 한 경우에는 사후에 신속하게 제1항 본문의 방식으로 지휘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휘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수사지휘권자에게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휘내용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해당 수사지휘권자는 신속하게 지휘내용을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 제4항에 따라 전달받은 수사지휘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사지휘권자의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지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⑥ 경찰관서 내 일상적인 수사지휘의 위임과 수사서류 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의7(지휘계통의 준수) ① 지방경찰청장이 소속 경찰서장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을 준수하여 제13조의5에서 규정하는 소속 수사간부를 통하거나, 직접 경찰서장에게 수사지휘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장이 관서 내에서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도 지휘계통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의8(수사주책임관) ① 지방경찰청장은 자신이 지휘하는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수사를 주재하는 수사주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필요한 경우 자신이 지휘하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주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수사주책임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경찰청장 지휘사건 : 지방청 과·계장 또는 경찰서 과장급
2. 경찰서장 지휘사건 : 경찰서 과장급 또는 수사 계(팀)장

④ 수사주책임관은 소속 경찰관 등을 지휘·감독하며, 상급자에게 수사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수사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수사할 사항과 수사 경찰관의 임무분담 지정
2. 압수물 및 그 환가대금의 출납 승인과 보관상황 파악
3. 수사방침 수립
4. 수사 경찰관에 대한 수사보고 요구
5. 유치장에 유치된 피의자를 경찰시설 외에서 실황조사, 현장검증 등 수사하는 경우, 수사 경찰관의 임무분담과 일시·장소, 이동경로 등 사전 계획 수립
6. 수사의 적정한 수행 및 피의자의 도주와 자살, 각종 사고 방지 등에 대한 지도·교양
7.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거나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부터 특별히 명령을 받은 사항

제14조의9(수사경찰관 등) ① 경찰관은 상관의 명을 받아 범죄의 수사에 종사한다.

② 경찰관 이외의 수사관계 직원이 경찰관을 도와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의10(사건의 관리와 수사보고 요구) ① 경찰관서장과 소속 수사간부는 소속 경찰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수사진행에 관하여 소속 경찰관에게 수사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의11(준용규정) 경찰청장의 수사지휘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4조의10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으로,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으로 본다.

제15조(경찰관서 내 이의제기) ① 경찰관은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관에게 별지 제1호의3 서식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상관은 신속하게 이의제기에 대해 검토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재지휘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제2항의 재지휘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호의3 서식을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해당 경찰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호의3 서식을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신속하게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⑥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제2항의 재지휘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호의3 서식을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지방경찰청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해당 경찰관은 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호의3 서식을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경찰청장은 신속하게 경찰수사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⑨ 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제2항의 재수사지휘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국장에게 별지 제1호의3 서식을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속 국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사지휘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소속 국장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해당 경찰관은 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호의3 서식을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⑪ 제10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경찰청장은 신속하게 경찰수사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⑫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와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의2(상급경찰관서장에 대한 이의제기) ①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지방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신속하게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

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신속하게 경찰수사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제15조의3(긴급한 경우의 지휘) ①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은 각각 제15조제5항·제8항·제11항, 제15조의2제2항·제4항에 따라 지휘함에 있어서 해당사건수사에 대한 지휘를 늦출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사이의심사위원회와 경찰수사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지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휘한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은 각각 신속하게 수사이의심사위원회와 경찰수사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해당 이의제기 내용
2. 수사이의심사위원회 또는 경찰수사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지휘한 사유 및 지휘내용

제15조의4(이의제기에 대한 지휘와 수명)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를 한 경찰관,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은 각각 제15조제5항·제8항·제11항, 제15조의2제2항·제4항, 제15조의3에 따른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

제15조의5(이의제기 목록제출)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장은 각각 당해 경찰서 및 지방경찰청 내에서 발생한 이의제기사건 목록을 분기별로 바로 위의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6(불이익 금지 등) ①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는 경찰관,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신속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한 경찰관,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그 이의제기를 이유로 인사상, 직무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수사본부) ①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하여 종합적인 수사를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고위직의 내부비리사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공정성이 특별하게 중시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직무에 관하여 경찰청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 수사가 가능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국가기관간 공조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과 "합동수사본부"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의한 수사본부의 설치절차와 운영방법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⑤ 경찰청장은 각 지방경찰청의 수사본부의 수사활동을 지휘통제, 조정 및 감독하기 위하여 "종합수사지휘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종합수사지휘본부의 설치 대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의2(다른 기관과의 협조) 경찰관은 수사에 관하여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하여야 할 사안이 있을 때에는 미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절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제17조(공조의 원칙) 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와 공조를 하여야 하며, 공조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직접 수사하는 경우) 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를 먼저 알게 되어 직접 수사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이송하는 경우) 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을 인계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수사자료와 함께 신속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0조(인계를 받았을 경우) ① 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경찰관이 수사 중인 다른 사건과 관련된다는 등의 이유로 인계하려 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인수하여 수사하여야 하며, 수사를 종결한 후에는 수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증거물의 인도 그 밖의 수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1조(수사가 경합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관은 해당 사건 수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행하는 수사와 경합될 때에는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절 수사서류

제22조(수사서류의 작성) ① 경찰관이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표 2,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232호 서식까지와 같다.
② 경찰관이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일상용어로 평이한 문구를 사용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재
3. 사투리, 약어, 은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기재한 다음에 괄호를 하고 적당한 설명을 붙임
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임

5. 지명, 인명 등으로서 읽기 어려울 때 또는 특이한 칭호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음을 기재

제22조의2(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이용) 경찰관은「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작성한 문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문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
3.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장애 또는 전산망 오류 등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는 문서

제23조(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 ① 수사서류에는 작성연월일, 소속관서와 계급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날인은 문자 등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사서류에는 매장마다 간인한다.

④ 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⑤ 피의자 신문조서(별지 서식 제26호부터 제32호)와 진술조서(별지 서식 제33호부터 제39호)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조서말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인장이 없으면 날인 대신 무인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통역과 번역의 경우의 조치) ① 경찰관은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학식 경험있는 자 그 밖의 적당한 자에게 통역을 위촉하여 그 협조를 얻어서 조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그 취지와 통역을 통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통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경찰관은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학식, 경험있는 자 그 밖의 적당한 자에게 피의자 그 밖의 관계자가 제출한 서면 그 밖의 수사자료인 서면을 번역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기재한 서면에 번역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서류의 대서) 경찰관은 문맹 등 부득이한 이유로 서류를 대서하였을 경우에는 대서한 내용이 본인의 의사와 다름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대서의 이유를 기재하고 본인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6조(문자의 삽입·삭제) ① 경찰관은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임의로 문자를 고쳐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고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줄의 선을 긋고 날인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삭제"라고 기재하되 삭제한 부분을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함

2.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그 개소를 명시하여 행의 상부에 삽입할 문자를 기입하고 그 부분에 날인하여야 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추가"라고 기재
3. 1행중에 2개소 이상 문자를 삭제 또는 삽입하였을 때에는 각 자수를 합하여 "몇자 삭제" 또는 "몇자 추가"라고 기재
4. 여백에 기재할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난외에 "몇자 추가"라고 기재

② 피의자 신문조서(별지 서식 제26호부터 제32호)나 진술조서(별지 서식 제33호부터 제39호)인 경우 문자를 삽입 또는 삭제하였을 때에는 난외에 "몇자 추가" 또는 "몇자 삭제"라고 기재하고 그 곳에 진술자로 하여금 날인 또는 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진술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서류의 접수) 경찰관은 수사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여백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개소에 접수연월일을 기입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접수 시각을 기입해 두어야 한다.

제2장 내사 및 수사의 개시

제1절 내사

제28조(범죄의 내사) ① 경찰관은 범죄에 관한 신문, 출판물, 방송, 인터넷, 익명의 신고, 풍설 등이 있어 내사가 필요한 때에는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하여야 한다.

② 내사의 착수 및 종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절 피해신고

제29조(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전항의 피해신고 중 범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범죄인지는 하지 않는다.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신고가 구술에 의한 것일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서 제39호 서식까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사건 인계) 경찰관은 접수된 피해신고가 제2조(관할)의 규정에 따라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3절 변사자의 검시

제31조(변사자의 검시) ① 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를 발견하거나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2조의 규정에 따른 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발견일시·장소와 발견자의 주거, 직업, 성명, 연령
2. 발견경위
3. 발견자의 신고일시
4. 변사자의 주거, 직업, 성명, 연령, 성별(판명되지 않을 때에는 인상, 체격, 추정 연령, 특징, 착의 등)
5. 사망의 추정연월일시
6.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
7. 시체의 상황
8. 소지금품 등 증거품 및 참고사항
9. 의견

③ 경찰관은 변사사건에 대한 검사의 지휘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 건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2조(검시의 대행) ①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직접 검시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의사를 참여시켜 시체를 검시하고 즉시 그 결과를 경찰서장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할 때에는 검시 관련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때 검시에 참여한 검시조사관은 별제 제205호 서식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검시를 할 때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사람,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의사의 검안서와 촬영한 사진 등과 함께 검시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검시와 참여자) 경찰관은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친족·이웃사람·친구, 시·군·구·읍·면·동의 공무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34조(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 ① 사법경찰관은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1. 변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국적, 주거, 직업, 성명, 연령과 성별
2. 변사장소 주위의 지형과 사물의 상황
3. 변사체의 위치, 자세, 인상, 치아, 전신의 형상, 상처, 문신 그 밖의 특징
4. 사망의 추정연월일
5.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
6. 흉기 그 밖의 범죄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
7. 발견일시와 발견자
8. 의사의 검안과 관계인의 진술
9. 소지금품 및 유류품
10. 착의 및 휴대품
11. 참여인
12. 중독사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증상, 독물의 종류와 중독에 이른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할 것
2. 변사자의 소지금품이나 그 밖의 유류한 물건으로서 수사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보존하는데 유의할 것
3. 잠재지문과 변사자지문 채취에 유의하고 의사로 하여금 검안서를 작성하게 할 것
4. 자살자나 자살의 의심있는 시체를 검시할 때에는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유무, 유서가 있을 때에는 그 진위를 조사할 것
5. 지문미등록자의 경우 DNA 감정을 의뢰하고, 입양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입양기관 탐문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보강 조사를 할 것

제35조(사진의 촬영과 지문의 채취)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관하여 검시, 검증, 해부,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특히 인상、전신의 형상、착의 그 밖의 특징있는 소지품의 촬영, 지문의 채취 등을 하여 사후의 수사 또는 신원조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검시에 연속된 수사) ① 사법경찰관은 제31조 규정에 따른 검시를 한 경우에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검증을 하되 의사에게 시체의 해부를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검증조서와 감정서만을 작성하고 검시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시체의 인도) ① 사법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지품 등과 같이 시체를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시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체를 인도하였을 때에는 인수자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의 시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
③ 변사체는 후일을 위하여 매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보) ① 사법경찰관은 변사체의 검시를 한 경우에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사망지역의 구·시·읍·면의 장에게 검시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사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전항에 따라 통보한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분명하여졌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취지를 해당 구·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범죄인지

제39조(범죄인지) ① 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범죄의 경중과 정상, 범인의 성격, 사건의 파급성과 모방성, 수사의 완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의 시기 또는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40조(범죄인지서)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범죄인지서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범죄경력,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및 수사의 단서와 범죄인지 경위를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41조(공무원에 대한 수사개시 등의 통지) 사법경찰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의 공무원범죄수사개시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경우에도 별지 제17호 서식의 공무원범죄 수사상황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절 고소·고발·자수 사건

제42조(고소·고발의 접수) ① 경찰관은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고소·고발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하여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만, 고소·고발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예외로 함

4.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
5.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
6.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규정에 의해 고소 권한이 없는 자가 고소한 사건
7.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35조에 의한 고소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고소·고발된 사건

② 전항에 의한 반려시 그 사유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고소·고발은 관할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단,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규정된 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190조에 따라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43조(고소·고발인 진술조서) ① 경찰관은 구술에 의한 고소·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서면에 의한 고소·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취지가 불분명할 경우 고소·고발인에게 보충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4조(자수와 준용규정) ① 제42조제4항 본문 및 제43조의 규정은 자수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경찰관은 자수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해당 범죄사실이나 자수인이 범인으로서 이미 발각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와 진범인이나 자기의 다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해당 사건만을 자수하는 것인지 여부를 주의하여야 한다.

제45조(고소의 대리 등) ① 경찰관은 「형사소송법」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에서 규정한 피해자 이외의 고소권자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항 고소권자의 위임에 따른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고소·고발 수리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고소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고소권의 유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여부, 친고죄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소정의 고소기간의 경과여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는가의 여부를 각각 조사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고발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발인지 여부, 관세법·조세범처벌법 등 고발이 소송조건인 범죄에 있어서는 고발권자의 고발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47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 ① 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고소·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무고, 중상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또는 현저하게 과장된 사실의 유무
2.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이외의 범죄 유무

제4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별지 제215호 서식에 따라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49조(친고죄의 긴급수사착수) 경찰관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 즉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수집 등 그 밖의 사후 수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제출되기 전에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고소권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수사할 수 없다.

제50조(고소 취소 등에 따른 조치) ① 경찰관은 고소·고발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조사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경찰관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송치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그 고소의 취소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1조(범칙사건의 고발) 경찰관은 범칙사건에 관하여 세무공무원 등으로부터 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수사를 하여야 하며 항상 해당 공무원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제52조(범칙사건의 긴급수사착수) 경찰관은 범칙사건에 관하여 즉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의 수집 그 밖의 사후에 있어서의 수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제출되기 전이라도 수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범칙사건의 통지 등) ① 경찰관은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른 범칙사건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건의 관할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세무공무원 등이 조사를 위한 임검, 수색, 압수를 함에 있어서 협조를 요구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의수사

제1절 출석요구

제54조(출석요구의 방법) 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SMS)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출석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출석요구통지부의 작성)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시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필요사항을 등재하여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피의자신문 및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조사

제56조(임의성의 확보) ① 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그 밖에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희망하는 진술을 상대자에게 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유도하거나 진술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진술의 진실성을 잃게 할 염려가 있는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경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심야에 조사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진술 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경찰관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경찰관은 전항에 따라 알려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경찰관이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는 조사를 상당기간 중단하였다가 다시 개시할 경우 또는 담당 경찰관이 교체된 경우에도 다시 하여야 한다.

제58조(변호인의 선임) 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선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변호인의 선임에 관하여 특정의 변호인을 시사하거나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의 신문과정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인에게 신문 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인과 신문 일시를 협의하고,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당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피의자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⑤ 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당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나 조사 중인 경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의견 진술권을 줄 수 있다.

⑥ 경찰관은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⑦ 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변호인 참여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0조(변호인이 수인인 경우 신문참여 변호인 선정) 사법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고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제61조(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규정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기재된 자에 대한 동석 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3호 서식의 동석 신청서 및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작성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지 않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서류를 동석 신청시에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긴급성,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히 존재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동석조사 이후에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있어서는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취지를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방해 등을 통해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⑤ 사법경찰관은 동석자가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방해 등을 통해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신문 도중에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62조(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①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제1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전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피해자에 대한 신뢰관계자 동석에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로, 신문은 조사로 본다.

제63조(공범자의 조사) ① 경찰관은 공범자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분리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범행은폐 등 통모를 방지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대질신문 등을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대질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주의하여 한쪽이 다른 한쪽의 위압을 받는 등의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4조(증거물의 제시) 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증거물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당시의 피의자의 진술이나 정황 등을 조서에 기재해 두어야 한다.

제65조(임상조사 등) ① 경찰관은 가료중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임상조사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으면 가족, 의사, 그 밖의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경찰관은 피의자 신문 이외의 경우 피조사자가 경찰관서로부터 멀리 떨어져 거주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출석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66조(직접진술의 확보) ① 경찰관은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의자 이외의 관계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되도록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사건 수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속한 것으로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들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의 진술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7조(진술자의 사망 등에 대비하는 조치) 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사망, 정신 또는 신체상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하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고, 그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 피의자, 변호인 그 밖의 적당한 자를 참여하게 하거나 검사에게 증인 신문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8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별지 제26호 서식에서 제32호 서식까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명, 연령,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출생지, 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 설립목적, 기구
2. 구(舊)성명, 개명, 이명, 위명, 통칭 또는 별명
3. 전과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형명, 형기,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 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유무, 범죄사실의 개요, 재판한 법원의 명칭과 연월일, 출소한 연월일 및 교도소명)
4. 형의 집행정지, 가석방, 사면에 의한 형의 감면이나 형의 소멸의 유무
5.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범죄사실의 개요, 처분한 검찰청 또는 법원의 명칭과 처분연월일)
6.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처분의 내용, 처분을 한 법원명과 처분연월일)
7. 현재 다른 경찰관서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와 당해 수사기관의 명칭)
8.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 기소 연월일과 당해 법원의 명칭)
9. 병역관계
10. 훈장, 기장, 포장, 연금의 유무
11. 자수 또는 자복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12. 피의자의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재산과 생활정도, 종교관계
13. 범죄의 동기와 원인, 목적, 성질, 일시장소, 방법, 범인의 상황, 결과, 범행 후의 행동
14. 피해자를 범죄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동기
15.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등으로 인한 죄의 성부, 형의 경중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항
16.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와 장물에 관한 죄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본범과 친족 또는 동거 가족관계의 유무
17.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성명과 주거)
18.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9.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 한 사항

20. 전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만한 자료
21.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243조 각 호의 사항

제69조(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조사사항) 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별지 제33호 서식에서 제39호 서식까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피해상황
2.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3. 피해회복의 여부
4. 처벌희망의 여부
5. 피의자와의 관계
6.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사항

제70조(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형식에 흐르지 말고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며 범의 착수의 방법, 실행행위의 태양, 미수·기수의 구별, 공모사실 등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히 명확히 기재
2. 필요할 때에는 진술자의 진술 태도 등을 기입하여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 당시의 상황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함

② 경찰관은 진술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진술자가 증감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2항의 경우에 진술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이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71조(진술서 등 접수) ① 경찰관은 피의자와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기, 자술서, 경위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진술인의 진술내용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진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진술인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고 경찰관이 대신 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2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사과정확인서에는 조사장소 도착시각, 조사시작 및 종료시각 등을 기재하고, 만약 조사장소 도착시각과 조사시작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때에는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하며,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그 이유와 중단 및 재개시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절 영상녹화

제73조(영상녹화의 대상) 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영상녹화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4조(영상녹화의 범위) ① 경찰관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에는 조서 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제75조(피의자 진술 영상녹화시 고지) 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조사실 내의 대화는 영상녹화가 되고 있다는 것
2. 영상녹화를 시작하는 시각, 장소
3. 조사 및 참여 사법경찰관리 성명과 직급
4. 제57조 각 호에 규정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5. 조사를 중단·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6. 조사 종료 및 영상녹화를 마치는 시각, 장소

제76조(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 영상녹화시 고지 및 동의) ① 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별지 제45호 서식의 서면동의서를 제출받고, 제75조 제1호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7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는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77조(영상녹화시 참여자) 피의자 신문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자는 조사실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78조(영상녹화물 작성 및 봉인) ① 경찰관은 영상녹화를 종료한 경우에는 영상녹화물(CD, DVD 등) 2개를 제작하고 영상녹화물 표면에 사건번호, 죄명, 진술자 성명 등 사건정보를 기

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중 하나는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조사받는 사람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③ 경찰관은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④ 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⑤ 경찰관은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영상녹화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⑥ 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생성한 후 별지 제46호 서식에 따른 영상녹화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9조(봉인 전 재생·시청) 경찰관은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4장 체포 및 구속

제80조(영장에 의한 체포) ①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지명수배 전산망의 조회를 통해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 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 서식의 체포영장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48호 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체포·구속영장 집행원부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81조(긴급체포)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서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제1항의 긴급을 요한다고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하며 피의자의 연령, 경력, 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 태양,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긴급체포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50호 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51호 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당해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긴급체포승인건의는 별지 제52호 서식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한 사유와 체포를 계속하여야 할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팩스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⑥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⑦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부터 통지서 및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2조(현행범인의 체포) ①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별지 제54호 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체포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위 번호들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성별, 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 주거, 직업, 체포일시·장소 및 체포의 사유를 청취하여 별지 제55호 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현행범인인 때에는 범행과의 시간적 접착성과 범행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준현행범인인 때에는 범행과의 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상황을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인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6호 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이 다른 경찰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3조(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 ① 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이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약물 복용 또는 음주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지체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57호 서식의 피의자석방보고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하는 때에는 현행범인 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4조(체포보고서) 경찰관은 피의자를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1호 서식의 피의자 체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5조(구속영장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할 염려가 있는 때(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피의자의 연령, 건강상태 그 밖의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제81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영장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되 검사의 영장청구 시한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되 검사의 영장청구 시한을 고려하여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2호 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⑦ 사법경찰관은 제2항, 제3항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제86조(구속전 피의자 심문) 경찰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제87조(체포·구속영장 발부 후 사정의 변경과 영장반환) ① 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사정 변경에 의하여 체포·구속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유효기간 내일지라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별지 제63호 서식의 영장 반환보고서에 첨부하여 즉시 반환하고 그 사본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제88조(체포·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 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그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인치 구금할 장소 그 밖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생겼을 때에는 검사를 거쳐 당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또는 그 소속법원의

다른 판사에게 서면으로 체포·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9조(체포·구속영장의 재신청)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영장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체포·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2.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그 발부를 받지 못한 경우
3. 체포·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제90조(체포·구속영장의 집행) ① 경찰관은 영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이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와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하고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신체 및 명예를 보전하는 데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영장은 검사의 서명, 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④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형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65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찰관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⑥ 경찰관은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89조 및 제90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1조(유효기간 내에 집행불능한 경우) 경찰관은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영장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별지 제63호 서식의 영장 반환보고서에 첨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2조(체포·구속영장 집행이 부적당한 경우) 경찰관은 영장의 집행을 받을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그 집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속히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고 지휘한 검사로부터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93조(보석 등의 경우에 준용)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02조제2항 규정에 따른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의 취소 결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제94조(소년에 대한 동행영장의 집행) 제90조, 제92조의 규정은 「소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소년부 판사로부터 동행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그 규정 중 "검사"를 "소년부 판사"로 한다.

제95조(체포·구속시의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실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시간·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다수의 피의자를 동시에 체포·구속할 때에는 각각의 피의자별로 피의사실, 증거 방법, 체포·구속시의 상황, 인상, 체격 그 밖의 특징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체포·구속, 압수·수색·검증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서류의 작성, 조사, 입증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피의자가 도주, 자살 또는 폭행 등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제96조(연행과 호송) ① 경찰관은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연행 또는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의 도망·자살·피습·탈취, 증거 인멸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연행 또는 호송 도중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경찰관서에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97조(체포·구속의 통지 등) ①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2. 배우자
3.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②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음 각호의 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변호인
2. 전항 각호의 자
3. 가족, 동거인, 고용주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체포·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64호 서식의 체포·구속 통지서에 따라 사법경찰관 명의로 한다. 다만, 위에 규정된 자가 없어 통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제3항에 의한 통지를 할 때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SMS) 전송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체포·구속의 통지서 사본은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98조(체포·구속시 범죄사실 등의 고지)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65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확인서 말미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99조(체포·구속적부심사) ① 경찰관은 체포·구속 적부심사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를 거쳐 법원에 제출하고 심문기일까지 피의자를 법원에 출석시켜야 한다.

② 경찰관은 법원이 석방결정을 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결정을 한 경우에는 보증금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은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석방하여야 한다.

제100조(체포·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①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은 제97조제2항에 규정된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가 이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 그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체포·구속영장등본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67호 서식의 체포·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에 발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1조(체포·구속장소 감찰) 경찰관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규정에 따라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한 후 인치 또는 구금된 자의 석방을 명하거나,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한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한 후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를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02조(범죄경력 조회 등)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때에는 지문 채취, 사진 촬영 등 감식자료를 작성하고, 범죄경력 조회(수사자료를 포함한다), 여죄 조회, 지명수배·통보 유무 조회 등 수사와 관련된 경찰전산시스템의 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103조(변호인 선임의뢰의 통지) 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을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변호인 또는 가족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04조(피의자와의 접견·교통·수진) ① 경찰관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수진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친절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변호인 아닌 자로부터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고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로부터 타인과의 접견,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수진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친절하게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친족 이외의 접견과 서신의 수수는 필요한 용무가 있을 때에 한한다.
④ 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수진의 신청에 응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9호 서식의 체포·구속인접견부, 별지 제70호 서식의 체포·구속인교통부, 별지 제71호 서식의 물품차입부 또는 별지 제72호 서식의 체포·구속인수진부에 그 상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105조(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처우) 경찰관서장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급양, 위생, 의료 등에 대하여 공평하고 상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제106조(피의자의 석방) ① 사법경찰관은 영장에 의해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면 별지 제74호 서식의 피의자 석방 건의서를 작성·제출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의 석방지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장에 의해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7호 서식의 석방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건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전화,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석방을 건의할 수 있다.

제107조(피의자의 도주 등) 사법경찰관은 구금 중에 있는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경찰서에 있어서는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에 있어서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압수와 수색

제108조(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건을 압수하거나 타인의 주거, 간수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선차 내에 들어가 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제109조(영장의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항 규정에 따른 사전 영장과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 제217조제1항 규정에 따른 긴급 영장으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전항의 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93호 서식의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에 신청의 절차, 발부 후의 상황 등을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한다.

제110조(영장 신청의 범위)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범위를 정해야 하고, 수색할 장소·신체 또는 물건, 압수할 물건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11조(소명자료) ①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그 밖에 해당 처분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그 밖의 장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우편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피의자가 발송한 것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발송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물건과 해당 사건의 관련성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2조 <삭제>

제113조(영장의 제시) ① 경찰관은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참여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4조(피의자 그 밖의 참여권자의 참여) ① 경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수사상 특히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의자 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 피의자 등의 언어와 거동에 주의하여 새로운 수사자료를 입수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15조(공무소 등 압수·수색시 참여) ① 경찰관은 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자,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전항에 규정된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사람 또는 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6조(제3자의 참여) ① 경찰관은 전조 제1항, 제2항 이외의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되도록 제3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3자를 참여시킬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경찰관을 참여하게 하고 수색을 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7조(집행중의 퇴거와 출입금지) ① 경찰관은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참여인 또는 따로 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는 그 장소에서 퇴거하게 하고 그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전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장소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퇴거를 강제하거나 간수자를 붙여 수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8조(압수·수색 중지시의 조치) 경찰관은 압수·수색에 착수한 후 이를 일시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두어서 사후의 압수·수색을 계속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9조(압수조서 등) ① 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9호 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80호 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 압수목록에는 물건의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압수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소유권포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0조(수색조서) ① 경찰관은 수색을 한 때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별지 제94호 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수색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거나 참여인을 참여시킬 수 없었을 때에는 수색조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명백히 기재해 두어야 한다.

제121조(증명서 교부) 경찰관은 수색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한 물건이 없을 때에는 그 처분을 받는 자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별지 제95호 서식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2조(압수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관은 범죄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그 물건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부터 임의의 제출을 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그 물건에 대한 압수영장의 발부를 신청하는 동시에 은닉·멸실·산일 등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3조(임의 제출물의 압수 등) ① 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주거주 또는 간수자가 임의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임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별지 제78호 서식의 물건 제출 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되도록 제출자에게 별지 제75호 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지 제79호 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80호 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별지 제76호 서식의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그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임의제출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거나 별지 제77호 서식의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24조(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 ①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를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2.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② 경찰관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신청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전항에 따라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5조(유류물의 압수) ① 경찰관은 유류물을 압수할 때에는 거주자, 관리자 그 밖에 관계자의 참여를 얻어서 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압수에 관하여는 실황조사서 등에 그 물건이 발견된 상황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6조(압수·수색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 기구 등을 파괴하거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하고, 이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압수를 할 때에는 지문 등 수사자료가 손괴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그 물건을 되도록 원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 멸실, 파손, 변질, 변형, 혼합 또는 산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27조(압수물의 보관 등) ① 경찰관은 압수물을 보관할 때에는 사건명, 피의자 성명 및 압수목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한 표찰을 붙여 견고한 상자 또는 보관에 적합한 창고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압수금품 중 현금, 귀금속 등 중요금품은 임치금품과 같이 물품출납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압수물의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3항의 경우에는 보관자의 선정에 주의하여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별지 제82호 서식의 압수물건 보관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⑤ 압수물이 유가증권일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16호 서식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 건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원형보존 여부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원형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검사 지휘가 있으면 지체 없이 환전(換錢)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8조(압수물의 폐기) ① 경찰관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압수물은 별지 제84호 서식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 건의서에 의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은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129조(압수물의 대가보관) ① 경찰관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검사지휘를 받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제130조(폐기, 대가보관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폐기 또는 대가보관의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사진을 촬영해둘 것
2. 그 물건의 상황을 사진, 도면, 모사도 또는 기록 등의 방법에 의하여 명백히 할 것
3.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압수물의 성상, 가격 등을 감정해둘 것. 이 경우에는 재감정할 경우를 고려하여 그 물건의 일부를 보존해두어야 한다.
4. 위험발생,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이라는 등 폐기 또는 대가보관의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를 명백히 할 것

② 경찰관은 폐기 또는 대가보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각각 별지 제90호 서식의 폐기조서 또는 별지 제89호 서식의 대가보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1조(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① 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가 있거나 압수장물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환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6호서식의 압수물 환부 지휘건의서 또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지휘건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압수물 환부(가환부)지휘 건의를 할 때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 또는 피해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제87호 서식의 압수물 환부(가환부)청구서를 제출받아 건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인가를 조사하여 뒤에 분쟁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할 때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88호 서식의 압수물 환부(가환부)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먼저 가환부한 물건에 대하여 다시 환부의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부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2조(폐기 등 처분시 압수목록에의 기재) 경찰관은 압수물의 폐기, 대가보관,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에 해당한 압수목록의 비고란에 그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3조(대가보관 등 처분시 통지) 경찰관은 압수물의 대가보관,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 처분을 위한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4조(영장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을 때에는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을 발부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은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경찰관은 금융기관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거래명의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명의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유예하도록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인멸·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범죄수사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제6장 검증

제135조(실황조사) ① 경찰관은 범죄의 현장 그 밖의 장소, 신체 또는 물건에 대하여 사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실황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실황조사를 할 때에는 거주자, 관리자 그 밖의 관계자 등을 참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실황조사서에 정확하게 기재해 두어야 한다.

제136조(실황 조사서 기재) ① 경찰관은 별지 제97호 서식의 실황조사서를 작성할 때에는 범죄현장을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현장 도면 및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지시, 설명 등 진술을 실황조사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및 제244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는 미리 피의자에게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그 점을 조서에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제137조(피의자의 진술에 의한 실황조사) 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여 흉기, 장물 그 밖의 증거자료를 발견하였을 경우에 증명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실황조사를 하여 그 발견의 상황을 실황조사서에 정확히 해두어야 한다.

제138조(검증) ① 경찰관은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검증을 할 때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검증을 하였을 때에는 검증의 상황 및 경과를 명백히 한 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9조(시체 검증) ① 경찰관은 시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등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있을 때에는 이들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체의 착의, 부착물, 분묘내의 매장물 등은 유족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여야 한다.

제140조(준용규정)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11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117조부터 제118조까지, 제120조, 제126조제1항의 규정은 검증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1조(신체검사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를 받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장소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전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의 조력을 얻어서 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부상자의 부상부위를 신체검사 할 때에는 그 상황을 촬영 등의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기록하고 되도록 단시간에 끝내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장 통신수사
제1절 통칙

제142조(통신비밀보호) 경찰관은 통신수사를 할 때에는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말고 통신비밀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43조(허가 및 자료요청의 주체) ①「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의 허가신청은 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②「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따른 통신자료의 요청은 경찰서장 및 지방청·경찰청 과장 이상 결재권자의 직책, 직급, 성명을 명기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요청할 수 있다.

제144조(남용방지) ①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6조에서 규정한 대상범죄, 신청방법, 관할법원, 허가요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남용 및 기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남용 및 기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5조(관할) ① 통신제한조치의 관할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말한다.

②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관할은 피의자, 피내사자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해당 가입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말한다.

제146조(허가신청방법) ①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의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 아닌 경우 다수의 가입자에 대하여 1건의 허가신청서로 요청할 수 있다.

제147조(자료제공요청방법) ①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팩스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후에는 취득한 결과의 요지 등을 별지 제120호 서식의 집행조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48조(허가서의 반납) 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허가서번호, 허가서 발부일자 및 수령일자, 수령자 성명, 집행불능의 사유를 기재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19호 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반환 보고서 또는 별지 제218호 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보고서에 따른다.

제2절 긴급통신수사

제149조(긴급통신수사) ①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긴급검열서 또는 별지 제112호 서식의 긴급감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113호 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긴급 통신제한조치 및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허가서 표지사본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긴급 통신제한조치 후 36시간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집행을 중지하여야 하며 체신관서로부터 인계받은 우편물이 있는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은 긴급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36시간 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공받은 자료는 분쇄시키고 파일은 삭제하는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고 허가신청서 등 관련서류 및 폐기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사법경찰관은 긴급한 사건으로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실시간 위치추적)를 제공받았으나 허가를 받기 전 조기에 검거된 경우에는 그 즉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 등으로 자료제공의 중단을 요청하고 반드시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허가서 사본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0조(긴급통보서 작성·송부) 사법경찰관은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4호 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절 통신수사 집행후 조치

제151조(집행결과보고) ①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아 집행한 후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을 종결할 경우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 관서에서 통신수사를 집행한 사건을 이송받아 내사한 후 내사종결한 경우는 내사종결한 관서에서 허가서를 청구한 검찰청에 집행결과를 보고한 후 허가서를 신청한 관서로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2조(통신제한조치 등 집행사실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않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입건하지 않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통지유예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

야 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
2.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

제153조(통신제한조치 취득자료 보관) ①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허가서 및 집행조서와 함께 봉인한 후 허가번호 및 보존기간을 표기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수사담당자 외의 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내사종결한 사건의 경우 전항과 같이 보존하여 25년 경과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8장 증거

제1절 통칙

제154조(위법수집증거의 배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증거수집 절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절 범죄현장과 증거보전

제155조(현장조사) ① 경찰관은 범죄현장을 직접 관찰(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범죄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그 현장에 가서 필요한 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따로 수사주책임관 그 밖의 자에 의한 현장임검이 행하여지게 될 때에는 현장을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6조(부상자의 구호 등) ① 경찰관은 현장조사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빈사상태의 중상자가 있을 때에는 응급 구호조치를 하는 동시에 그 자로부터 범인의 성명, 범행의 원인, 피해자의 주거, 성명, 연령, 목격자 등을 청취해 두어야 하고, 그 중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시각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157조(현장보존의 범위) 경찰관은 범죄를 실행한 지점 뿐만 아니라 현장 보존의 범위를 충분히 정하여 수사자료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8조(현장보존을 위한 조치) 경찰관은 보존하여야 할 현장의 범위를 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출입금지 표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함부로 출입하는 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현장에 출입한 자가 있을 경우 그들의 성명, 주거 등 인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현장 또는 그 근처에 있어서 배회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들의 성명, 주거 등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제159조(현장에 있어서의 수사의 통제) 현장에서 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주책임관이 이에 종사하는 경찰관을 통제하여 조직적으로 수사하여야 한다.

제160조(원상태로의 보존) ① 경찰관은 현장을 보존할 때에는 되도록 현장을 범행 당시의 상황 그대로 보존하여 현장에 있어서의 수사가 정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부상자의 구호, 증거물의 변질되거나 흩어짐, 없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특히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현장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③ 경찰관은 현장에서 발견된 수사자료 중 광선, 풍우 등에 의하여 변질, 변형 또는 멸실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덮개로 가리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그 원상을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1조(현장보존을 할 수 없을 때의 조치) 경찰관은 부상자의 구호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현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수사자료를 원상태로 보존할 수 없을 때에는 사진, 도면, 기록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그 원상을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2조(현장에서의 수사사항) ① 경찰관은 현장에서 수사를 할 때는 현장 감식 그 밖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도록 노력하여 범행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일시 관계
   가. 범행의 일시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
   나. 발견의 일시와 상황
   다. 범행당시의 기상 상황
   라. 특수일 관계(시일, 명절, 축제일 등)
   마. 그 밖의 일시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2. 장소 관계
   가. 현장으로 통하는 도로와 상황
   나. 가옥 그 밖의 현장근처에 있는 물건과 그 상황
   다. 현장 방실의 위치와 그 상황
   라. 현장에 있는 기구 그 밖의 물품의 상황
   마. 지문, 족적, DNA시료 그 밖의 흔적, 유류품의 위치와 상황
   바. 그 밖의 장소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3. 피해자 관계
   가. 범인과의 응대 그 밖의 피해 전의 상황
   나. 피해 당시의 저항자세 등의 상황
   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 금품의 종별과 수량 등 피해의 정도
   라. 시체의 위치, 창상, 유혈 그 밖의 상황
   마. 그 밖의 피해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4. 피의자 관계
가. 현장에 있어서의 침입과 도주경로
나. 피의자의 수와 성별
다. 범죄의 수단, 방법 그 밖의 범죄 실행의 상황
라. 피의자의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면식과 현장에 대한 지식의 유무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
마. 피의자의 인상, 풍채, 특징, 습벽 그 밖의 특이한 언동
바. 흉기의 종류, 형상과 가해의 방법 그 밖의 가해의 상황
사. 그 밖의 피의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② 제1항의 현장감식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04호 서식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3조(감식자료 송부) ① 경찰관은 감식을 하기 위하여 수사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변형, 변질, 오손, 침습, 멸실, 산일, 혼합 등의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우송을 할 때에는 그 포장, 용기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요하거나 긴급한 증거물 등은 경찰관이 직접 지참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④ 감식자료를 인수·인계할 때에는 그 연월일과 인수·인계인의 성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제164조(재감식을 위한 고려) 경찰관은 혈액, 정액, 타액, 대소변, 장기, 모발, 약품, 음식물, 폭발물 그 밖에 분말, 액체 등을 감식할 때에는 되도록 필요 최소한의 양만을 사용하고 잔량을 보존하여 재감식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65조(증거물의 보존) ① 경찰관은 지문, 족적, 혈흔 그 밖에 멸실할 염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그 보존에 유의하고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 형상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시체해부 또는 증거물의 파괴 그 밖의 원상의 변경을 요하는 검증을 하거나 감정을 위촉할 때에는 전항에 준하여 변경전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유류물 그 밖의 자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원근법으로 사진을 촬영하되 가까이 촬영할 때에는 되도록 증거물 옆에 자를 놓고 촬영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전항의 경우 증명력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참여인을 함께 촬영하거나 자료 발견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서면에 참여인의 서명을 요구하여 이를 함께 촬영하고, 참여인이 없는 경우에는 비디오 촬영 등으로 현장상황과 자료수집과정을 녹화하여야 한다.

제166조(증거보전의 신청) 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별지 제146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증거 보전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67조(감정의뢰서 등) ① 경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01호 서식의 감정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전항 이외의 감정기관이나 적당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위촉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2호 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라 의뢰하며 이 경우 감정인에게 예단이나 편견을 생기게 할 만한 사항을 기재해서는 아니된다.

③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규정에 따른 감정을 위촉하며 「형사소송법」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104호 서식의 감정유치신청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법원 판사의 감정유치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감정을 의뢰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 감정에 관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기차 및 자동차 내에 들어가야 하거나, 신체의 검사, 시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를 필요로 할 때에는 별지 제105호 서식의 감정처분허가신청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법원 판사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아 감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68조(감정서) ① 경찰관은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감정인에게 감정의 일시, 장소, 경과와 결과를 관계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기재한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감정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동의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감정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여 감정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69조(증인신문의 신청)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고,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여 별지 제147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장 수배와 공조

제170조(수사의 공조) 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체포·출석요구·조사, 장물 등 증거물의 수배, 압수·수색·검증, 참고인의 출석요구·조사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수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조를 다른 경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71조(사건수배) 사건수배란 사건의 용의자와 수사자료 그 밖의 참고사항에 관하여 통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경찰관이 사건수배를 할 때에는 별지 제149호 서식의 사건수배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172조(긴급사건수배) 경찰관은 범죄수사에 있어서 다른 경찰관서에 긴급한 조치를 의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50호 서식의 긴급사건수배서에 따라 긴급배치, 긴급수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73조(지명수배)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179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다만, 제81조제1항에서 정하는 긴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명수배를 한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발부받지 못한 경우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지명통보의 대상인 자로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지명수배를 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에 유의하여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수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재발부 받아야 한다.

제174조(지명수배된 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 ① 경찰관은 지명수배된 자(이하 "지명수배자"라 한다)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지명수배한 경찰관서(이하 "수배관서"라 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신속히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긴급체포한다는 사실 및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긴급체포하여야 하며, 즉시 확인서를 받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도서지역에서 지명수배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 등을 발견한 경찰관서(이하 "발견관서"라 한다)의 경찰관은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계속 확인하고, 수배관서와 협조하여 검거시기를 정함으로써 검거후 구속영장청구시한(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에 대한 소명자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포의 과정과 상황 등을 자세히 기재한 지명수배자체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배관서에 인계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24시간 내에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이하 "검거관서"라 한다)의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75조(지명수배자의 인수·호송 등) ① 경찰관서장은 검거된 지명수배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호송을 위하여 미리 출장조사 체계 및 자체 호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배관서의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거관서로부터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배관서와 검거관서 간에 서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른다.

1. 검거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배를 받은 범죄의 죄종 및 죄질이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
2. 검거관서에서 지명수배자와 관련된 범죄로 이미 정범이나 공동정범인 피의자의 일부를 검거하고 있는 경우
3. 지명수배자가 단일 사건으로 수배되고 불구속 수사대상자로서 검거관서로 출장하여 조사한 후 신속히 석방함이 타당한 경우

③ 경찰관은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수배관서 순위에 따라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계받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인 수배관서
2.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3.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4.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④ 검거관서와 수배관서의 경찰관은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때로부터 구속영장 청구시한(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을 경과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76조(재지명수배의 제한) 긴급체포한 지명수배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지명수배하지 못한다.

제177조 <삭제>

제178조(공개수배) ① 경찰청장은 지명수배·지명통보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주요 지명피의자에 대하여는 종합공개수배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서장은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의 상습성, 사회적 관심, 공익에 대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검거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긴급 공개수배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공개수배는 사진·현상·전단 그 밖의 방법에 의한다.

제179조(지명통보)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재가 불명할 때에는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소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지명통보를 하여야 한다.

1.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
2.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
3. 제1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기, 횡령, 배임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

제180조(지명통보된 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 ① 경찰관은 지명통보된 자(이하 "지명통보자"라 한다)의 소재를 발견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과 범죄개요, 지명통보한 관서(이하 "통보관서"라 한다) 등을 고지하고 발견일자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관서에 출석하겠다는 내용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되어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157호의2 서식의 지명통보 사실 통지서를 피의자에게 교부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별지 제157호 서식의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건인계서를 작성하여 통보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소재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각 건마다 지명통보 사실 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를 송부받은 통보관서의 사건담당 경찰관은 즉시 지명통보된 피의자에게 피의자가 출석하기로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거나 사건이송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약속한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73조부터 제1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체포영장청구기록에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 지명통보사실 통지서, 출석요구서 사본 등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본인이 약속한 일자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1조(지명통보자에 대한 특칙) ① 제18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기관 고발사건 중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중지된 자를 발견한 발견관서의 경찰관은 통보관서로부터 사건송치의견서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송부받아 피의자를 조사한 후 조사서류만 통보관서로 보낼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상습적인 법규위반자 또는 전과자이거나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견관서의 경찰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고 강제 등 인권침해 요인이 없어야 한다.

제182조(장물수배) ① 장물수배란 수사중인 사건의 장물에 관하여 다른 경찰관서에 그 발견을 요청하는 수배를 말한다.

② 경찰관은 장물수배를 할 때에는 발견해야 할 장물의 명칭, 모양, 상표, 품질, 품종 그 밖의 특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사진, 도면, 동일한 견본·조각을 첨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범죄수법 공조자료 관리규칙」 제10조의 피해통보표에 수록·전산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본다.

제183조(장물수배서) ① 경찰서장은 범죄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물과 관련있는 영업주에 대하여 장물수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장물수배서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2. 중요 장물수배서(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3. 보통 장물수배서(그 밖의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②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는 홍색, 중요 장물수배서는 청색, 보통장물수배서는 백색에 의하여 각각 그 구별을 하여야 한다.

③ 장물수배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1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경찰서장은 장물수배서를 발부하거나 배부하였을 때 별지 제158호 서식의 장물수배서 원부와 별지 제159호 서식의 장물수배서 배부부에 따라 각각 그 상황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제184조(수배 등의 해제) ①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9조 및 제182조에 규정한 수배 또는 통보에 관계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즉시 그 수배 또는 통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1.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
2. 사건이 해결된 경우
3. 피의자가 통보관서에 출석하거나 이송신청에 따른 이송관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

②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재발부를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이외에는 제170조의 규정에 따라 수사 등의 요청을 한 경우 또는 장물수배서를 발행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85조(참고통보) ① 경찰관서장은 다른 경찰관서에 관련된 범죄사건에 대하여 그 피의자, 증거물 그 밖의 수사상 참고가 될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취지를 해당 경찰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장은 전항의 통보 외에 중요사건, 타에 파급될 염려가 있는 사건 그 밖의 범죄의 수사나 예방에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하여는 관계 경찰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6조(수배요령)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8조, 제179조 및 제182조에 따라 수배를 하는 절차 및 방법은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87조(지명수배 및 통보대장) 경찰관은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한 때에는 별지 제160호 서식의 지명수배 통보대장에 기입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88조(유치장의 이용) 경찰관은 피의자의 호송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른 경찰관서에 의뢰하여 그 경찰관서의 유치장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장 송치와 이송

제189조(송치)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모두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190조(이송과 인계) ① 경찰관서장은 관할구역 내의 사건이 아니거나 해당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신속히 이를 범죄지 또는 피의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수사에 적합한 경찰관서나 기관에 이송 또는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 기관에서 하명된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미리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찰관은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정확한 사건의 인수, 인계를 위하여 별지 제163호 서식의 사건인계서[피의자 인도서]인수인란에 인수인의 소속, 계급, 성명을 명기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서간 사건의 인수·인계시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인수자가 인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사건을 인수, 인계한 경우에는 인계관서 범죄 접수부 비고란에 인수관서 범죄접수부의 접수 번호와 접수 일시를 기입해 두어야 한다.

제191조(사건의 단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 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이라도 이미 검찰청 또는 상당관서에 송치하거나 이송한 후에 접수한 사건
6. 불기소 처분이 있은 후 검사의 지휘에 따라 다시 수사를 개시한 사건
7. 검사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
8. 다른 관서로부터 이송을 받은 사건
9. 검찰청에 송치하기 전의 맞고소 사건
10. 판사가 청구기각 결정을 한 즉결심판 청구 사건

11. 피고인으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즉결심판 청구 사건

제192조(송치서류) ①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별지 제168호 서식의 사건송치서, 별지 제169호 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별지 제170호 서식의 기록목록, 별지 제171호, 172호 서식의 의견서, 피의자환경조사서, 별지 제173호 서식의 피의자의 등록기준지조회회답서 및 범죄경력조회(지문조회)통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조회(지문조회)통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 없음
3. 죄가 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② 경찰관은 사건송치 전에 전항의 첨부서류중 조회회답 또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동 사건 송치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송치후에 범죄경력을 발견하였거나 그 밖의 회보를 받았을 때에는 추송서를 첨부하여 즉시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

③ 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기록목록
4. 의견서
5. 그 밖의 서류

④ 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와 제5호의 서류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 - 1, 1 - 2, 1 - 3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⑥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관서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⑦ 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⑧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송치 시에는 수사기록표지 증거품 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담당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압수물송치에 준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⑨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귀중품을 송치할 때에는 감정서 3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에 준하는 증서
2. 귀금속류 및 귀금속제품

3. 문화재 및 고가예술품
4. 그 밖에 검사 또는 법원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⑩ 사건송치 전 수사진행 단계에서 구속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병지휘 건의 등을 하는 경우에 영장신청 서류 또는 신병지휘 건의 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3조(송치후의 수사와 추송) ① 경찰관은 사건 송치후라도 항상 그 사건에 주의하여 새로운 증거의 수집과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의 발견에 힘써야 한다.

②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증거물,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전항에 따른 추송을 할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그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 추송하는 서류와 증거물 등을 기재한 별지 제174호 서식의 추송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수리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기소,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의견으로 송치한 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으로부터 그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각하의 처분결과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통보받은 때에는 그 수사자료표가 지체없이 폐기될 수 있도록 처분결과를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4조(여죄의 추송) 경찰관은 사건 송치 후에 당해 사건에 속하는 피의자의 여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신속히 그 수사를 행하고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

제195조(소재불명자의 처리) 경찰관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4조에 각호의 범죄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소재불명 피의자의 지명수배·통보 내용과 사진 및 별지 제175호 서식의 인상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6조(참고인 등의 소재수사) ①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별지 제176호 서식의 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를 작성하고 그 사본 1부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고 매분기 1회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송치의견과 다른 결정을 한 때에는 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소재수사를 하지 않는다.

제197조(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①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피의자소재불명의 사유로 기소중지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별지 제177호 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소중지가 특정증거의 불명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 이를 발견한 때 또는 참고인중지의 경우에 참고인 등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참고인 등의 소재를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78호 서식에 따른다.

③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사유로 수사에 착수한 때에는 별지 제217호 서식에 따른 피의자 소재발견 처리부에 적어야 한다.

제198조(중요범죄 사건부와 미검거 중요범죄 사건부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별지 제179호 서식의 중요범죄 사건부를 비치하고 그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중요범죄 사건에 대한 발생보고나 검거보고를 접수하였을 때마다 기입,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별지 제180호 서식의 미검거 중요범죄 사건부를 비치하고 그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중요범죄 중 발생 후 2개월 이내에 검거하지 못한 사건을 기재하고 수시로 필요사항을 기입, 정리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별지 제181호 서식의 미검거 중요범죄 사건 수사부를 비치하고 그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중요범죄 중 발생 후 2개월 이내에 검거하지 못한 사건을 기재하고 계속 수사진행 상황을 수시 기입, 정리하여야 한다.

④ 경찰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제181호 서식에 기재된 범죄에 대하여는 연 4회 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한 결과 전혀 검거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수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사법경찰관은 미검거 또는 미체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때에는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등 장차 참고가 될 기록은 그 사본을 작성하여 중요범죄 미제사건으로 편철, 정리하고 계속 수사하여야 한다.

⑥ 미검거 사건의 수사주책임관은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에게 인계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증거물 등의 인계를 확실히 하여 사후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9조(수사서류의 사본) 경찰관은 처리한 사건 중 중요도나 특이성 그 밖의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수사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장 범죄피해자 보호

제200조(범죄피해자 보호 원칙) ① 경찰관은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장의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③ 범죄신고자 및 참고인으로서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장을 준용한다.

제201조(피해자 동행시 유의사항)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 등으로 동행할 때 가해자 또는 피의자 등과 분리하여 동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2조(피해자 조사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권위적인 태도, 불필요한 질문으로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하고, 피해자가 불안 또는 괴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로서 신원 비노출을 요하거나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장에 찾아가 조사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강력범죄 피해자 등 정신적 충격이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확인 후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 피해자 심리 전문요원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3조(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4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①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통지가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경찰관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 사건을 접수할 때 피해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05조(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 ① 경찰관서장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그 외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외출·귀가 시 동행, 수사기관 출석 동행 및 신변경호
3. 임시숙소 제공

4. 주거지 순찰강화, 패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비상연락망 구축
6.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범죄수사에 관한 자료제공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06조(피해자의 비밀누설금지) 경찰관은 성명, 연령, 주거지, 직업, 용모 등 피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6조의2(피해자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경찰관은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2 서식의 가명조서와 같이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 피해자로 하여금 조서 등에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30호 서식의 가명진술서 등 승인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가명진술서 등의 끝부분에 편철한다.

③ 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서 등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231호 서식의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미기재사유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을 별지 제184호 서식의 신원관리카드에 작성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제1항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한 경우에는 별지 제232호 서식의 가명조서 등 불작성 사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2장 특칙

제1절 소년사건에 관한 특칙

제207조(소년사건 수사의 기본) ① 경찰관은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② 경찰관은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에 필요한 특별한 심리자료를 제공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208조(소년의 특성의 고려) 경찰관은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되도록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않는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209조(범죄의 원인과 환경조사) ① 경찰관은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범죄원인, 동기, 그 소년의 성격, 행상, 경력, 교육정도, 가정 상황, 교우관계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별지 제186호 서식의 소년카드[소년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심리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비행성예측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소년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제210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경찰관은 소년사건을 수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치단체, 학교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 하여야 한다.

제211조(보호자와의 연락) 경찰관은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2조(체포·구속에 관한 주의) 경찰관은 소년 피의자에 대하여는 가급적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 구속, 체포 또는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213조(보도상의 주의) 경찰관은 소년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소년의 주거,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214조(소년사건의 송치) ① 경찰관은 범죄소년 사건을 입건하여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촉법소년) 및 제3호(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사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189호 소년보호사건 송치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송치할 경우 제209조에 따라 작성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5조 <삭제>

제216조(학생범죄) 소년이 아니더라도 학생의 범죄사건에 관하여는 제208조, 제209조, 제210조와 제2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7조 <삭제>

제2절 성폭력사건에 관한 특칙

제218조(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의 조사) ① 경찰관서장은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성폭력 피해여성은 여자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여야 한다.

제219조(성폭력범죄 수사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시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은 분리하여 실시하고, 대질신문은 최후의 수단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시하되 대질 방법 등에 대한 피해자측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조사 및 증언요구로 인하여 신분노출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필요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가급적 진술녹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2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경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영상녹화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녹화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녹화장소는 피해아동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적정한 환경을 갖추고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에 유의한다.

제221조(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신뢰관계자가 동석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사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한다.

③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아동등 조사시 신뢰관계자는 피해아동등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적절한 위치에 좌석을 마련하고, 조사 전에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석자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동석자의 퇴거를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다.

1. 조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조사를 제지·중단시키는 경우
2. 피해아동등을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3. 피해아동등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4. 그 밖의 동석자의 언동 등으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경찰관은 제3항의 사유로 동석자를 퇴거하게 한 경우 그 사유를 피해자측에 설명하고 그 구체적 정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⑤ 그 밖의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에 관한 사항은 제62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21조의2(진술조력인의 참여) ①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21조의3(전문가의 의견 조회) 경찰관은 경찰청장이 지정한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소견 및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제222조(장애인에 대한 특칙) ①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권유하고, 선정된 보조인을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언어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인 때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의견을 참작하여 수화 또는 문자 통역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한다.

③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지체인인 때에는 면담을 통하여 진술능력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보조인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3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 그 사유를 소명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청구와 그 절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절 가정폭력사건에 관한 특칙

제224조(가정폭력범죄 수사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의 심리를 위한 특별자료를 제공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가급적 진술녹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개인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25조(응급조치) ① 경찰관은 진행 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4 규정에 따라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신고현장에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호의 응급조치를 취하되, 폭력행위 제지시 가족 구성원과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족폭력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③ 전항의 응급조치를 취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사실의 요지, 가정상황, 피해자와 신고자의 성명,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한 별지 제190호 서식의 응급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26조(환경조사서의 작성) 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행위자의 성격·행상·경력·교육정도·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별지 제191호 서식의 가정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7조(임시조치) 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92호 서식의 임시조치 신청서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전항의 신청에 의해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임시조치 신청을 한 때에는 별지 제193호 서식의 임시조치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경찰관은 임시조치의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고, 집행일시 및 집행방법을 별지 제229호 서식의 임시조치통보서에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⑦ 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경찰관은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 내의 수사기록등본을 관할검찰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227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2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때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206호 서식의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92의2호 서식의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긴급임시조치 한 경우에는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알려주고, 별지 제207호 서식의 긴급임시조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행위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경찰관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27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임시조치결정서, 긴급임시조치확인서,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를 임시조치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임시조치를 검사가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및 행위자에게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28조(가정폭력사건 송치) ①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가정폭력사건 송치서 죄명란에는 해당 죄명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 가정폭력사건 ’ 이라고 표시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사건 송치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29조(동행영장의 집행) ①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행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동행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동행자에게 동행영장을 제시하고 신속히 지정된 장소로 동행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동행자에게 범죄사실과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을 완료한 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동행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집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각각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30조(보호처분결정의 집행)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4절 외국인 등 관련범죄에 관한 특칙

제231조(준거규정) 외국인관련범죄 또는 우리나라 국민의 국외범, 대ㆍ공사관에 관한 범죄 그 외 외국에 관한 범죄(이하 "외국인 등 관련범죄"라 한다)의 수사에 관하여 조약, 협정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르고,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본 절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일반적인 수사절차를 따른다.

제232조(국제법의 준수) 경찰관은 외국인 등 관련범죄의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33조(외국인 등 관련범죄 수사의 착수) 경찰관은 외국인 등 관련범죄중 중요한 범죄에 관하여는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처분을 한 후 신속히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34조(대ㆍ공사 등에 관한 특칙) ① 경찰관은 외국인 등 관련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외교 특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외교관 또는 외교관의 가족

2. 그 밖의 외교의 특권을 가진 자

②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사용인을 체포하거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행범인의 체포 그 밖의 긴급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경찰관은 피의자가 외교 특권을 가진 자인지 그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속히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35조(대·공사관 등에의 출입) 경찰관은 대·공사관과 대·공사나 대·공사관원의 사택 별장 혹은 그 숙박하는 장소에 관하여는 당해 대·공사나 대·공사관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출입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를 추적 중 그 자가 위 장소에 들어간 경우에 지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공사관원이나 이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수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색을 행할 때에는 지체없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36조(외국군함에의 출입) ① 경찰관은 외국군함에 관하여는 당해 군함의 함장의 청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출입해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관은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가 도주하여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군함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신속히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할 때에는 당해 군함의 함장에게 범죄자의 임의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7조(외국군함의 승무원에 대한 특칙) 경찰관은 외국군함에 속하는 군인이나 군속이 그 군함을 떠나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신속히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범 그 밖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체포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신속히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38조(영사 등에 관한 특칙) ① 경찰관은 임명국의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주재의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구속 또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경찰관은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의 사무소는 당해 영사의 청구나 동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출입해서는 아니된다.

③ 경찰관은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의 사택이나 명예영사의 사무소 혹은 사택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경찰관은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나 명예영사의 사무소 안에 있는 기록문서에 관하여는 이를 열람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9조(외국 선박내의 범죄) 경찰관은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내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육상이나 항내의 안전을 해할 때

2. 승무원 이외의 자나 대한민국의 국민에 관계가 있을 때
3. 중대한 범죄가 행하여졌을 때

제240조(조사와 구속에 대한 주의) 경찰관은 외국인의 조사와 체포·구속에 있어서는 언어, 풍속과 습관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41조(외국인 피의자 체포·구속시 영사기관 통보) ① 사법경찰관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체포·구속하였을 때에는 체포·구속시 고지사항 외에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구속사실의 통보와 국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당 영사기관원과 접견·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전항의 내용을 고지하고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194호 서식의 영사기관통보요청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영사기관 통보 및 접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95호 서식의 영사기관 체포·구속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사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서류는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42조(외국인 사망자 통보) 사법경찰관은 외국인 변사사건을 접수한 때에는「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96호 서식의 영사기관사망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사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고 이를 사건관련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43조(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경찰관은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68조에 열거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국적, 출생지와 본국에 있어서의 주거
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 증명서 그 밖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의 유무
3. 외국에 있어서의 전과의 유무
4. 대한민국에 입국한 시기 체류기간 체류자격과 목적
5. 국내 입·출국 경력
6. 가족의 유무와 그 주거

제244조(통역인의 참여) ① 경찰관은 외국인인 피의자 그 밖의 관계자가 한국어에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 한국어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외국어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외국어의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외국인이 구술로써 고소·고발이나 자수를 하려 하는 경우에 한국어에 통하지 않을 때의 고소·고발 또는 자수인 진술조서는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45조(번역문의 첨부) 경찰관은 외국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그 밖의 영장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압수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절 다중범죄에 관한 특칙

제246조(심적대비) 경찰관은 다중범죄의 수사에 관하여는 항상 일반 사회의 정세와 다중범죄의 주체가 될 염려가 있는 단체, 집단 등의 실태와 그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다중범죄의 수사가 철저하게 행하여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47조(다중범죄 수사의 중점) 경찰관은 다중범죄의 수사에 있어서는 실행행위자에만 그치지 말고 주모자, 모의 참여자 그 밖의 사건의 배후에 있는 공범관계자를 정확하게 탐색,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8조(현장에 있어서의 체포) 경찰관은 다중범죄의 현장에서 그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서는 상대편의 세력, 정세의 추이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체포의 시기, 방법과 범위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현장지휘관의 통제하에 행하여야 한다.

제249조(감식활동의 주의) 경찰관은 다중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행상황 그 밖의 현장의 상황을 명백히 하고 피의자의 범행을 확인하는 등 증거의 수집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0조(체포시의 주의) ① 다중범죄의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관은 각각 체포한 피의자에 관하여 그 인상, 체격 그 밖의 특징, 범죄사실의 개요, 체포시의 장소와 상황 등을 명백히 기록해 두어 사후의 조사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직후에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관과 함께 촬영해 두는 등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피의자와 관계가 있는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와 압수물의 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들을 함께 촬영하는 등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제251조(통모의 방지) 경찰관은 다중범죄의 피의자를 다수 동시에 체포한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를 분산하여 구금하는 등 통모, 탈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2조(피의자의 조사) 다중범죄의 피의자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특히 조사를 하는 경찰관 상호간에 연락을 긴밀히 하여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6절 아동보호사건에 관한 특칙

제253조(피해아동 조사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피해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조사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인격·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피해아동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피해아동의 연령·성별·심리상태에 맞는 조사방법을 사용하고 조사 일시·장소 및 동석자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피해아동 조사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문을 반드시 분리하여 실시하고, 대질신문은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만 실시하되 대질 방법 등에 대하여는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 및 아동학대범죄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⑤ 피해아동 조사시에는 제220조부터 제221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제254조(응급조치) ① 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② 전항의 응급조치를 취한 경찰관은 즉시 별지 제190호의2 서식의 응급조치결과보고서와 별지 제226호 서식의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및 별지 제227호 서식의 축약형 학대위험도 평가척도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55조(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그 법정대리인·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25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92호의4 서식의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긴급임시조치 한 경우에는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알려주고, 별지 제207호의2 서식의 긴급임시조치통보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행위자가 통보서 교부를 거부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통보일시 및 장소란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제255조의2(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이 제25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응급조치를 하였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응급조치결정 통지를 받거나 제255조의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신청은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로부터 72시간 이내,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하되 검사의 청구시한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그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56조(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 또는 가족구성원이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임시조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2호의3 서식의 임시조치신청서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다음 각호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의 임시조치는 병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아동·그 법정대리인·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아동학대사건의 임시조치 신청에는 제227조 제5항부터 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때 임시조치통보서는 별지 제229호의2 서식을 사용한다.

제257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 ① 경찰관은 아동학대행위자를 신문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보호처분·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와, 그러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처분의 내용, 처분을 한 법원 및 처분일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피해아동을 조사하고 아동학대행위자를 신문한 이후 별지 제228호 서식의 학대행위자 및 피해아동 위험도 평가척도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58조(아동보호사건 송치) ①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사건 송치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아동보호사건 송치시 송치서 죄명란에는 해당 죄명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 아동보호사건 ’ 이라고 표시한다.

제259조(동행영장의 집행) ① 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4조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행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아동보호사건에서의 동행영장 집행에는 제22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0조(보호처분결정의 집행) 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9조, 제36조, 제47조,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261조(증거보전의 특례) 아동보호사건에서 증거보전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2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제13장 마약류범죄 관련 보전절차 등

제262조(마약류범죄수사 입국ㆍ상륙절차 특례 등의 신청) ① 사법경찰관이「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5항 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입국ㆍ상륙절차의 특례, 체류부적당 통보, 반출ㆍ반입 특례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10호 서식부터 별지 제212호 서식까지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 신청서, 체류부적당통보신청서, 세관절차특례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3호 서식에 따른 특례조치 등 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63조(마약류범죄수사 관련 몰수ㆍ부대보전 신청) ① 사법경찰관이「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ㆍ부대보전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08호 서식에 따른 몰수ㆍ부대 보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9호 서식에 따른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4장 보석자 등의 관찰

제264조(보석자 등의 관찰) ① 경찰서장은 검사로부터 그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보석 피고인 또는 구속집행정지자에 대한 시찰조회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그 밖의 적당한 경찰관을 지정하여 주거지의 현주 여부 등을 관찰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검사로부터 그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형집행정지사유 존속 여부를 관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3의 규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98조 제3호의 보석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의 주거 제한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5조(관찰상의 주의) 경찰관은 보석 피고인, 구속집행정지자,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은 적절한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피관찰자 또는 그 가족의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66조(관찰부) 경찰관은 보석자 등을 관찰하였을 때에는 보석(구속집행정지)자 관찰부에 그 관찰상황을 명백하게 기재해 두어야 한다.

제15장 장부와 비치서류

제267조(장부와 비치서류) ① 경찰관서에는 다음의 장부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범죄사건부
2. 압수부
3. 출석요구통지부
4. 체포영장신청부
5. 체포ㆍ구속영장집행부
6. 긴급체포원부
7. 현행범인체포원부
8. 구속영장 신청부
9.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10. 체포ㆍ구속인 접견ㆍ수진ㆍ교통ㆍ물품차입부
11. 체포ㆍ구속인 명부
12. 보석(구속집행정지)자 관찰부

13.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14. 내사사건 기록철
15. 수사미제사건 기록철
16. 통계철
17. 처분결과 통지서철
18. 검시조서철
19.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20.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
21.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22.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
23.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24.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2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부
26.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집행대장(사후허가용)
27.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사전허가용)
28.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2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3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1.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32.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
33. 변사사건종결철
34.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35. 특례조치등 신청부
36.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② 제1항 각 호의 장부와 비치서류 중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그 작성ㆍ저장ㆍ관리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것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전자장부와 전자비치서류는 종이 장부 및 서류의 개별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68조(범죄 사건부) ① 경찰관은 범죄사건을 접수하거나 입건, 수사, 송치할 때에는 범죄사건부에 접수일시, 접수구분, 수사담당자, 피의자, 조회상황, 죄명, 범죄일시, 장소, 피해정도, 피해자, 체포ㆍ구속내용, 석방연월일 및 사유, 송치일자 및 번호, 송치의견, 압수번호, 수사미결사건철번호, 검사처분, 판결내용, 범죄원표번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부에 압수연월일, 압수 물건의 품종, 수량, 소유자 및 피압수자의 주거, 성명 등을 기록하고 그 보관자, 취급자, 처분연월일과 요지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269조(수사종결 사건철) 수사종결 사건(송치사건)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의 사본과 사건인계서 사본 등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270조(내사사건 기록철) 내사사건 기록철에는 범죄를 내사한 결과 입건이 필요없다고 인정되어 완결된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271조(수사미제사건 기록철) 수사미제사건 기록철에는 장차 검거의 가망이 없는 피해 신고사건 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272조(통계철) 통계철에는 수사경찰 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273조(처분결과 통지서철) 처분결과 통지서철에는 검사의 기소, 불기소(기소유예, 무혐의, 죄가안됨,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이송 등 결정 및 각 심급의 재판결과에 관한 통지서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274조(서류철의 색인목록) ① 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 서류편철 후 그 일부를 빼낼 때에는 색인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그 담당 경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275조(임의의 장부)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58조 소정 장부서류 이외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제276조(장부 등의 갱신) ① 수사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철은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그 연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간지 등을 삽입하여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277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범죄사건부 25년
2. 압수부 25년
3. 출석요구통지부 2년
4. 체포영장신청부 2년
5. 체포·구속영장집행부 2년
6. 긴급체포원부 2년
7. 현행범인체포원부 2년
8. 구속영장 신청부 2년
9.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부 2년
10. 체포·구속인 접견·수진·교통·물품차입부 2년
11. 체포·구속인 명부 25년
12. 보석(구속집행정지)자 관찰부 2년

13.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25년
14. 내사사건 기록철 25년
15. 수사미제사건 기록철 25년
16. 통계철 10년
17. 처분결과 통지서철 2년
18. 검시조서철 2년
19.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3년
20.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 3년
21.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3년
22.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 3년
23.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부 3년
24.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 승인신청부 3년
2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부 3년
26.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집행대장(사후허가용) 3년
27.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사전허가용) 3년
28.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3년
2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3년
3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년
31. 영상녹화물관리대장 25년
32.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 25년
33. 변사사건종결철 25년
34.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3년
35. 특례조치등 신청부 2년
36. 몰수ㆍ부대보전신청부 10년

제278조(보존기간의 기산 등) ① 보존기간은 사건처리를 완결하거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 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와 서류철은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주서로 폐기일자를 기입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16장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

제279조(동의) 경찰관은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약식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전자약식사건"이라 한다)을 수사할 경우에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전자문서 등을 이용해 처리되는 약식절차(이하 "전자약식절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안내하고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3호서식의 동의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80조(전자약식절차의 예외) 경찰관은 「전자약식법」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전자약식절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81조(전자화문서) ① 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관한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로 변환하여 작성한다.

② 제1항의 문서작성자는 전자화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전자약식사건을 송치한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를 추송하여야 한다.

④ 전자화문서 작성 후 사건송치 전에 피의자가 「전자약식법」 제3조 제1항의 동의를 철회하는 등의 사유로 전자약식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전자화대상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제28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774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 9.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칙의 폐지) 종전의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750호)는 폐지한다.

[별표1]

보고 및 수사지휘 대상 중요사건

분류	세부 내용
1.범죄의 주체	장·차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4급 이상 공무원, 주요기업의 대표 및 임원, 금융기관 대표 및 임원, 유명 연예인·운동선수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저명인사의 범죄
	외교사절, 수행원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 저명인사의 범죄 및 외국군대의 군인·군속의 범죄,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경찰관 범죄(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제4조 제1항 본문에 정한 교통사고사건 중 경상의 인피사고 또는 물피사고에 관한 것으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제외)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주요 협회, 주요 포털·이동통신사·온라인게임사 등 사이버 관련 주요 법인의 범죄
2.범죄의 대상	장·차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4급 이상 공무원, 주요기업의 대표 및 임원, 금융기관 대표 및 임원, 유명 연예인·운동선수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저명인사에 대한 범죄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수행원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 저명인사에 대한 범죄 및 외국군대의 군인·군속,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에 대한 범죄 중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
	경찰관, 교도관, 법관, 검사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범죄 중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
	대규모 국책사업·공익사업을 방해하거나, 공공시설을 파괴 또는 그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 중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주요 협회, 주요 포털·이동통신사·온라인게임사 등 사이버 관련 주요 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주요 시스템을 공격한 사건
3.수사의 태양	수사본부를 개설하여 수사하는 사건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감청'이 필요한 사건 중 보안유지가 중요하고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
	다른 경찰관서(지방경찰청·경찰서) 및 타 기관(검찰·국방부·국세청·국정원 등)과 공조수사 또는 합동수사가 필요한 사건 중 중요하고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
	집중(통합)수사 등 경찰청에서 수사지시(지휘)한 사이버 사건

분류	세부 내용
4.범죄의 종류 및 정도	내란, 외환 또는 국교에 관한 사건
	화재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현주건조물방화(다만,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검거하였거나 수단·방법이 명확하여 입증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제외) ② 연쇄방화(원인불명의 화재를 포함) 및 관공서, 학교, 주요 문화재 기타 중요시설에서의 실화사건(다만, 원인이 명확하고 입증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제외한다)
	통화위조·동행사사건 중 범죄수법이 특이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
	공문서위조·변조·동행사사건 및 유가증권 위조·변조·동행사사건 중 사회의 존립에 위험을 발생시켜 현저하게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중요하고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강간 또는 강제추행 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집단 강간·강제추행 ② 기타 범행수법이 특이하거나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
	증·수뢰사건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중요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살인사건(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검거한 경우, 또는 범행수법 등이 명백하여 입증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제외)
	상해, 상해치사 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를 사용하는 등 무차별적인 사건 ② 기타 범행수법이 특이하거나 잔인하고, 사회적 방향이 큰 사건
	과실치사상 사건(교통사고사건은 제외한다)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사망자 3인 이상 또는 사상자 5인 이상의 사건 ② 기타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약취·유인, 체포·감금사건 중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인신매매사건
	절도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현금 피해액이 1억원 이상 또는 현금 이외 피해액이 3억원 상당 이상의 사건 ② 조직적인 절도사건 중 피의자 또는 범죄건수가 다수에 이르는 사건 ③ 기타 범죄수법이 특이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강도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금융기관 또는 현금수송차를 대상으로 한 사건 ② 총포, 화약 등을 사용한 사건 ③ 치사 또는 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사건 중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건 ④ 피해총액이 5,000만원 이상인 사건 ⑤ 기타 범행수법이 특이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사기, 공갈, 횡령·배임 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현금 피해액이 5억원 이상 또는 현금 이외 피해액이 10억원 이상의 사건 ② 기타 범행수법이 특이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치사를 수반한 결과적 가중범 중 범행수법이 특이하거나 잔인하고,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분류	세부 내용
4.범죄의 종류 및 정도	특별법 위반의 죄 중 중요하고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선거관계범죄 중 중요하고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금융 관련범죄, 증권거래 관련범죄, 기업경영 관련범죄, 기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시장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범죄
	폭력단체 관련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단체 상호간(내부다툼을 포함) 폭력행위 등 범죄 또는 이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사건 ② 주요 기업이나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사건 ③ 기타 범행수법이 특이하거나 잔인하고,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약물에 관한 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조직적인 사건으로 특수한 수사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② 대량의 약물(각성제, 아편, 헤로인, 코카인 및 대마에 있어서는 1㎏이상, 정제형의 약물에 있어서는 1,000정 이상)을 압수한 사건 ③ 기타 범행수법이 특이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총기 관련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조직적인 사건으로 특수한 수사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② 폭력단체와 관련 있는 총기 등을 압수한 사건 ③ 기타 범행수법이 특이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환경 관련 범죄 중 조직적, 계획적 또는 광역적으로 행해졌고, 또한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위험물 관련범죄 중 공공의 위험성이 높고, 또한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풍속관련 범죄 중 조직적 또는 계획적으로 행해졌고, 정치인, 유명 연예인 등 사회저명인사가 연루되었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소년범죄 중 범행수법이 특이하고 잔인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
	교통사고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사망뺑소니사건 중 중요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 ② 인피사고 중 사망자 3인 이상 또는 사상자 20인 이상으로 중요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 ③ 폭주족 관련사건 중 범행수법 특이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대통령령) 제76조의 중요범죄
	공안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극우 또는 극좌단체의 폭력 활동 관련사건 또는 극단적인 주장에 기초한 폭력사건 등에서 범행수법이 특이하거나 잔인하고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②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사건 ③ 기타 각종 사회운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사건 중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건 또는 반대단체에 의한 테러 등 충돌이 우려되는 사건

분류	세부 내용
4.범죄의 종류 및 정도	(사이버범죄) 해킹·디도스·악성프로그램 관련 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해킹, 서비스거부공격,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정부·공공기관·금융기관·대기업·주요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서버에 침입하거나, 서버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서버에서 중요 정보를 유출한 피의자 검거 ② 해킹, 서비스거부공격,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1천만원 이상 부당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검거 ③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국내 20대 이상 서버·PC를 감염시킨 피의자 검거 ④ 신종 해킹 사건
	(사이버범죄) 다중피해 인터넷사기 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피해자 50명 이상(이 경우 피해액 최소 5백만원 이상) 또는 피해액 1천만원 이상(이 경우 피해자 최소 20명 이상) ② 소액결제 사기는 피해자 1만명 이상이면서 피해액 5억원 이상인 사건
	(사이버범죄) 사이버금융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피싱·파밍 - 피해자 10명 이상(이 경우 피해액 최소 1천만원 이상) 또는 피해액 2천만원 이상(이 경우 피해자 최소 5명 이상) ② 스미싱 - 피해자 50명 이상(이 경우 피해액 최소 1천만원 이상) 또는 피해액 2천만원 이상 (이 경우 피해자 최소 20명 이상) ③ 원인 불명 사이버금융범죄 - 메모리해킹 등 피해자가 금융정보를 타인·외부에 제공·유출한 사실이 없고, 피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이버금융범죄
	(사이버범죄) 개인정보 침해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5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이용·제공하거나, 부정하게 유출된 정보를 그 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피의자 검거 ② 부정하게 취득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천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검거 ③ 스파이앱(악성프로그램 이용 스마트폰 도청·위치추적) 사건
	(사이버범죄) 인터넷음란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물 1천건 이상 또는 아동청소년음란물 1백건 이상 유포한 피의자 검거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방조)하여 1천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검거 ③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피의자 검거
	(사이버범죄) 기타 중요 사이버 사건 ① 인터넷도박 - 총 매출액(입금액 기준) 50억원 이상 또는 부당이득액 5억원 이상인 인터넷도박을 개장한 주범급 피의자 검거 ② 사이버저작권 침해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검거 ③ 몸캠피싱 - 피해자 10명 이상(최소 피해액 1천만원 이상) 또는 피해액 5백만원 이상(최소 피해자 5명 이상) ④ 사이버선거 - 모든 사이버선거 사건 ⑤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주요 사이버범죄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 ⑥ 사이버범죄 관련 지명수배·통보 5건 이상 수배자 검거 사건
5.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사건	

[별표 1호의2]

보고 절차 및 방법

보고 절차	◦ 지구대장파출소장은 경찰서장에게 보고, 경찰서장이 지방청장에게 보고, 지방청장은 경찰청장에게 보고**(경찰청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까지 보고하고, 지방청에서 조치해야할 사항은 지방청에 보고)** ◦ 단, 필요시 경찰서장은 지방청장과 경찰청장에게 동시보고
보고 시점	◦ 사건 발생 또는 검거시 ◦ 필요성이 있는 경우 첩보입수·수사(내사) 착수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신청, 수사종결 등 중요수사 진행사항 발생시에도 보고
보고 종류	◦ 사건발생시는 발생보고 ◦ 피의자검거시는 검거보고 ◦ 첩보입수, 수사(내사) 착수시, 수사종결시, 중요수사진행사항 발생시는 수사사항보고
보고 방법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 긴급시에는 일단 유·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별표 1호의3]

수사체제 및 지휘책임

연번	수사체제	주요내용	지휘책임	사건관할
1	수사본부	- 수사본부장 지정, 지방청 수사인력 투입 및 전문수사인력 지원 - 경찰서 수사인력과 합동수사 원칙	지방청장	경찰서
2	수사전담팀	- 수사주책임관 지정, 지방청 (전문)수사인력 투입·지원 및 지휘	지방청장	경찰서
3	경찰서 수사, 지방청 지휘	- 경찰서에서 수사하되, 지방청에서 지휘 - 대통령령 제76조의 중요범죄, 주요강력사건 등 예외적으로 지방청장이 지정한 사건	지방청장	경찰서
4	경찰서 전담수사	- 경찰서에서 수사 전담	경찰서장	경찰서
5	지방청 직접수사	- 중요사이버범죄,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집중수사 필요사건 - 해당 경찰서 참여가 부적합한 경찰관 비위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지방청장	지방청

[별표 2]

서 식 목 록

서식 번호	서 식 명	범죄수사 규칙조항	비 고
1	수사지휘서	14조의6	
1의2	수사지휘서(관서간)	14조의3	
1의3	경찰관서내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15	
1의4	상급경찰관서장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15의2	
2	수사보고	14조의2①	
3	사건발생·검거보고	14조의2②	
4	<삭제>		
5	내사착수보고	28	
6	내사지휘	28	
7	범죄신고 접수대장	29①	
8	피해신고서	29③	
9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31②	
9의2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	
10	검시조서	32②	
11	검시필증	〃	
12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건의	31	
13	시신 및 소지금품 인수서	37	
14	사망통보	38	
15	범죄인지	40	
16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	41	
17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	〃	
18	출석요구서	54①	
19	참고인출석요구서	〃	
20	출석요구통지부	55	
21	<삭제>		
22	<삭제>		
23	동석신청서	61	피의자
24	동석신청서	62	피해자
25	우편조서	65②	
26	피의자신문조서	68	
27	피의자신문조서(제○회)	〃	
28	〃 (간이-경찰-교통)	〃	
29	〃 (간이-경찰-폭력)	〃	
30	〃 (간이-경찰-절도)	〃	

서식 번호	서 식 명	범죄수사 규칙조항	비 고
31	〃 (간이-경찰-향군)	〃	
32	〃 (간이-경찰-도박)	〃	
33	진술조서	69	
33의2	진술조서(가명)	206의2	
34	진술조서(제○회)	〃	
35	〃 (간이-교통)	〃	
36	〃 (간이-폭력)	〃	
37	진술조서(간이-절도)	68②	
38	말미	〃	
39	〃 (통역조서)	〃	
40	진술서(간이-공통)	68④	
41	진술서(간이-교통)	〃	
42	진술서(간이-폭력)	〃	
43	진술서(간이-절도)	〃	
44	수사과정 확인서	72	
45	영상녹화 동의서	76	
46	영상녹화물관리대장	78	
47	체포영장신청	80	
48	체포영장신청부	80②	
49	체포·구속영장집행원부	80③	
50	긴급체포서	81③	
51	긴급체포원부	81③	
52	긴급체포승인건의	81④	
53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	81⑥	
54	현행범인체포서	82①	
55	현행범인인수서	82②	
56	현행범인체포원부	82④	
57	피의자석방보고	83②	
58	구속영장신청	85	사전
59	구속영장신청	〃	체포영장
60	구속영장신청	〃	긴급체포
61	구속영장신청	〃	현행범
62	구속영장신청부	85⑥	
63	영장반환보고	87①	
64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통지	97	

서식 번호	서 식 명	범죄수사 규칙조항	비 고
65	확인서	98	
66	수사관계서류 등 제출	99①	
67	체포·구속영장 등본 등 교부대장	100②	
68	접견 등 금지결정처리부	104	
69	체포·구속인 접견부	104④	
70	체포·구속인 교통부	〃	
71	물품차입부	104④	
72	체포·구속인 수진부	〃	
73	임치 및 급식상황표	105	
74	피의자석방건의	106	
75	임의제출	123③	
76	압수증명	〃	
77	소유권 포기	123④	
78	물건제출요청	123②	
79	압수조서	123③	
80	압수목록	〃	
81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건의	127	
82	압수물건보관 서약서	〃	
83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건의	129①	
84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건의	128①	
85	압수물 폐기 동의	128②	
86	압수물환부 지휘건의	131①	
86의2	압수물 가환부 지휘건의	131①	
87	〃 청구	131②	
88	〃 영수	131③	
89	대가보관조서	130②	
90	폐기조서	〃	
9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109①	사전
92	〃	〃	사후
93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	109②	
94	수색조서	120	
95	증명서	121	
96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134①	
97	실황조사서	135	
98	<삭제>	〃	

서식 번호	서 식 명	범죄수사 규칙조항	비 고
99	검증조서	138	
100	<삭제>	〃	
101	감정의뢰	167①	
102	감정위촉	167②	
103	감정위촉	〃	감정처분허가장
104	감정유치장신청	167③	
105	감정처분허가장신청	167④	
106	통신자료제공요청	143②	
107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143①	사전
108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109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149①	긴급
110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	〃	
111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	〃	
112	긴급검열(감청)서	149②	
113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	
114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	150	
115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발송부	〃	
116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146	
117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		
118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통지		
119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120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147③	
121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	151	
122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	149④	
123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152	
124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	
125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 유예승인신청	152③	
126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승인 신청부	〃	
127	<삭제>		
12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	143①	
12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신청부	〃	
130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149③	
13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	〃	긴급
13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대장(사후허가용)	〃	
13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147	

서식 번호	서 식 명	범죄수사 규칙조항	비 고
13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대장(사전허가용)	〃	
135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147③	
136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보고	151	
137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중지통지		
138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153	
13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	152②	
14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	
14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152③	
14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143	<삭제>		
14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	151②	
14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내사종결시)	〃	
146	증거보전신청	166	
147	증인신문신청	169	
148	촉탁	42④	
148의2	회답	〃	
149	사건수배(보고)서	171	
150	긴급사건수배(보고)서	172	
151	지명수배서	173	
152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 목록	〃	
153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 목록	〃	
154	지명수배자 체포영장 발부대장	〃	
155	지명수배자 구속영장 발부대장	〃	
156	지명통보서	179	
157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	180	
157의2	<신설>지명통보사실 통지서	180	
158	장물수배서원부	183④	
159	장물수배서배부부	〃	
160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	187①	
161	<삭제>		
162	이송심의요청서		
163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	190②	
164	정식재판청구	191	
165	정식재판청구서	〃	
166	정식재판청구 승인건의	〃	

서식 번호	서 식 명	범죄수사 규칙조항	비 고
167	즉결심판사건기록 송부	〃	
168	사건송치	192①	
169	압수물총목록	〃	
170	기록목록	〃	
171	의견서	〃	
172	의견서(간이)	〃	
173	등록기준지 조회	〃	
173의2	등록기준지 조회 회답	〃	
174	추송	193②	
175	인상서	195	
176	참고인 등 소재수사지휘부	196②	
177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	197①	
178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	197②	
179	중요범죄사건부	198①	
180	미검거 중요범죄사건부	198②	
181	미검거 중요범죄 사건수사부	198③	
182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	204	
183	피해자 등 통지관리표	〃	
184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206②	
185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작성대장	〃	
186	소년카드(소년환경조사서)	209①	
187	비행성 예측자료표	〃	
188	소년사건 선도조건부 불입건 건의		
189	소년보호 사건송치	214	
190	응급조치보고서(가정폭력)	225②	
190의2	응급조치결과보고서(아동학대) <신설>	254	
191	가정환경조사서	226	
192	임시조치신청(가정폭력)	227①	
192의2	긴급임시조치결정서(가정폭력)	227의2	
192의3	임시조치신청서(아동학대) <신설>	256	
192의4	긴급임시조치결정서(아동학대) <신설>	255	
193	임시조치신청부	227⑤	
194	영사기관 통보요청확인서	241②	
195	영사기관 체포·구속 통보	241③	
196	영사기관 사망통보	242	

서식 번호	서 식 명	범죄수사 규칙조항	비 고
197	보석자·구속집행정지자 관찰부	255	
198	압수부	256①	
199	체포·구속인명부	〃	
200	범죄사건부	257	
201	피의자 체포보고	84	
202	임치증명서		
203	동의서	270	
204	현장감식 결과보고	162②	
205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31	
206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227의2①	
207	긴급임시조치 확인서(가정폭력)	227의2②	
207의2	긴급임시조치 통보서(아동학대) <신설>	255	
208	몰수부대보전신청	263①	
209	몰수부대보전신청부	263②	
210	입국상륙절차특례신청	262①	
211	체류부적당 통보 신청	〃	
212	세관절차특례 신청	〃	
213	특례조치등 신청부	262②	
214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		
215	수사기일 연장 지휘건의	48	
216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건의	127	
217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	193③	
218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보고	148	
219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반환보고	〃	
220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기간연장 신청		
221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실 통지		
222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223	수사결과보고		
224	수사지휘건의		
225	한미행정협정사건 발생보고		
226	아동학대 현장조서 체크리스트 <신설>	254	
227	축약형 학대위험도 평가도 <신설>	〃	
228	학대행위자·피해아동 위험도 평가척도 <신설>	257	
229	임시조치 통보서(가정폭력) <신설>	227	
229의2	임시조치 통보서(아동학대) <신설>	256	

서식 번호	서 식 명	범죄수사 규칙조항	비 고
230	가명진술서 등 승인확인서 <신설>	206의2	
231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미기재 사유보고서 <신설>	〃	
232	가명조서등 불작성 사유 확인서 <신설>	〃	

[별지 제1호 서식]

수 사 지 휘 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접수번호	*접수번호*	사건번호	*0000-000000*
피 의 자	*피의자 등 O명*		
사건담당자	소속 : *소속부서* 계급 : *계급* 성명 : *성명*		

< 지 휘 내 용 >

○○○○경찰서

사법경찰관 ○○

[별지 제1호의2 서식]

수 사 지 휘 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접수번호	접수번호	사건번호	0000-000000
피 의 자	피의자 등 O명		
담당경찰관서			

< 지 휘 내 용 >

상급경찰관서장(직인)

(전결시 : 전결자) 직위 계급 O O O

[별지 제1호의3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수 신 :

경 유 :

제 목 : 경찰관서내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범죄수사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합니다.

접수번호	0000.00.00. 00:00 *발생장소*
사건번호	0000.00.00. 00:00 *검거장소*
피의자	
죄명	
사건개요	
이의제기할 수사지휘내용	
이의제기 내용 및 사유	
첨부사항	

○○○○경찰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

[별지 제1호의4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수 신 :

경 유 :

제 목 : 상급경찰관서장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범죄수사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합니다.

접수번호	0000.00.00. 00:00 *발생장소*
사건번호	0000.00.00. 00:00 *검거장소*
피의자	
죄명	
사건개요	
이의제기할 수사지휘내용	
이의제기 내용 및 사유	
첨부사항	

○○○○경찰관서장

계급 ○ ○ ○

[별지 제2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참 조 :

제 목 : **수사보고**

피의자 ○○○외 ○명에 대한 ○○○○○○○○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아 래 -

경 로	수사지휘 및 의견	구분	결 재	일시
직위 성명				0000.00.00. 00:00
직위 성명				0000.00.00. 00:00
직위 성명				0000.00.00. 00:00
직위 성명				0000.00.00. 00:00

[별지 제3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참조

제 목 : 사건발생·검거보고

다음과 같이 발생·검거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발생 일시·장소	0000.00.00. 00:00 발생장소
검거 일시·장소	0000.00.00. 00:00 검거장소
관련자 인적사항	
신고자 인적사항	
피해·회수 금품	
사 건 개 요	
발생·검거 경위	
조 치	
담당·검거자	
기타 참고사항	

○○○○경찰서

사법경찰관(리) ○○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별지 제5호 서식]

○○○○경찰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수사부서의) 장

제 목 내사 착수 보고

다음 사람에 대하여 내사하고자 하니 지휘바랍니다.

1. 내사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2. 내사할 사항

(별지 사용 가능)

3. 내사가 필요한 이유(범죄첩보 등 관련자료 첨부)

○○○○○팀(계) 경○ ○ ○ ○ ㊞

지 휘 사 항

(내사착수 여부, 내사의 방식, 기타 주의사항 등 지휘사항 기재)

년 월 일

(수사부서의) 장 경 ㊞

[별지 제6호 서식]

○○○○경찰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팀(계) 경

제 목 내사 착수 지휘

다음과 같이 내사를 지휘합니다.

1. 내사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2. 내사할 사항

(별지 사용 가능)

3. 내사가 필요한 이유(범죄첩보 등 관련자료 첨부)

4. 내사방식

5. 기타 주의사항 등

(수사부서의) 장 경 ㊞

[별지 제7호 서식]

범 죄 신 고 접 수 대 장

연번	접수일자	신고인 성명	신 고 내 용	신고인 연락처	신고 접수자	취급자

[별지 제8호 서식]

피 해 신 고 서

다음과 같이 범죄피해를 당하였으므로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주거

피해자와의 관계 : 성명 : ㊞ (전화)

○○경찰서장 귀하

피 해 자 인 적 사 항	주 거 : 성 명 : 주민번호 : - (세) 직 업 : 연락처 : - (휴대폰 - -)
피해 연월일시	20 . . .경부터 20 . . .경까지 사이
피 해 장 소	
피 해 상 황 (범 행)	

피해 금품	금 품	수 량	시 가	특 징	소 유 자

법인의 주거·성명 또는 인상·착의·특정 등	
참 고 사 항 (유류물품·기타)	

피해자 보호사항 통지		통지 방법	구두, 우편, 전화, FAX, E-mail, 기타 (해당 연락처 :)
원함 ( )	원하지않음 ( )		

※ 원하는 통지방법중 하나를 선택 표시하고, 해당 연락처를 기재하세요.

[별지 제9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검사 : ○○○)

제 목 :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우리서 관내에서 아래와 같은 변사사건이 발생하였기에 보고하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견일시		. . . 00:00
발견장소		
신고일시		. . . 00:00
변사종별	**원인**	
	방법	
변사자 인적사항		성 명 : (세,) 주민등록번호 : - 직 업 : 주 거 :
발견자 인적사항		성 명 : (세,) 직 업 : 주 거 : 변사자와관계 :
발견경위		

<table>
<tr><td>피 의 자
(피내사자)</td><td colspan="4">성 명 : (세,)
주민등록번호 : -
직 업 :
주 거 :</td></tr>
<tr><td>사 인 및
의 사 소 견</td><td colspan="4">직접사인 :
중간선행사인 :
선행사인 :</td></tr>
<tr><td>사망추정시각</td><td colspan="4"></td></tr>
<tr><td>사체의상황
(위치, 착의, 외상
유무등사체의상태를
구체적으로기재)</td><td colspan="4"></td></tr>
<tr><td>증 거 품
(소지금품, 흉기등
범행공용물, 유서,
일 지 등
존재사항) 및
참 고 사 항</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5">유족의진술</td><td>진술일시</td><td></td><td>변사자와
관 계</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직 업</td><td></td><td>주민등록
번 호</td><td></td></tr>
<tr><td>성 명</td><td></td><td>연 령</td><td>만 세</td></tr>
<tr><td colspan="4"></td></tr>
</table>

<table>
<tr><td rowspan="6">관계인진술</td><td>진술일시</td><td></td><td>변사자와
관계</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직 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성 명</td><td></td><td>연 령</td><td>만 세</td></tr>
<tr><td colspan="4"></td></tr>
<tr><td colspan="4"></td></tr>
<tr><td>사건개요</td><td colspan="4"></td></tr>
<tr><td>경찰조치
및 의견</td><td colspan="4"></td></tr>
<tr><td>담당경찰관</td><td colspan="4">계급 : 성명 :
전화 :</td></tr>
<tr><td colspan="5">○○○○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td></tr>
</table>

[별지 제9호의2 서식]

○○○○경 찰 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우리서 관내에서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 변사사건이 발생하였기에 보고하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rowspan="2">사 망</td><td>일 시</td><td colspan="6">*사망일시(0000.00.00.00:00)*</td></tr>
<tr><td>장 소</td><td colspan="6">*장소*</td></tr>
<tr><td colspan="2">사 고 일 시</td><td colspan="6">*사고일시(0000.00.00.00:00)*</td></tr>
<tr><td colspan="2">발 생 장 소</td><td colspan="6">*발생장소*</td></tr>
<tr><td colspan="2">변 사 자
인 적 사 항</td><td colspan="6">성 명 : *성명* (*나이*세, *성별*)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직 업 : *직업*
주 거 : *주거 주거2*</td></tr>
<tr><td rowspan="7">피 의 자
(피내사자)</td><td>성 명</td><td>*성명*</td><td>주민등록번호</td><td>*주민등록번호*</td><td>연령</td><td>*연령*</td></tr>
<tr><td>직 업</td><td>*직업*</td><td>변사자와관계</td><td>*관계*</td><td>성별</td><td>*성별*</td></tr>
<tr><td>주 거</td><td colspan="5">*주거 주거2*</td></tr>
<tr><td>집전화번호</td><td colspan="2">*자택전화*</td><td>회사전화번호</td><td colspan="2">*직장전화*</td></tr>
<tr><td>진술일시</td><td colspan="2">*진술일시*</td><td>휴대전화번호</td><td colspan="2">*휴대전화*</td></tr>
<tr><td colspan="6">진술내용

진술내용</td></tr>
</table>

의 사 소 견	*의사소견*
특 이 사 항	
경 찰 조 치 및 의 견	
담당경찰관	계급 : *계급* 성명 : *성명* 전화 : *사무실전화번호*
○○○○경찰서 사법경찰관 ○○	

[별지 제10호 서식]

검 시 조 서

0000.00.00. 00:00 검찰청명 검사 ○○○의 명에 의하여 사법경찰관 *계급 성명*는 사법경찰리 ○○ ○○○를 참여하게 하고 다음의 변사자에 대하여 이를 검시한다.

변사자	성 명	*성명*	성 별	*남·여*	연 령	*연령*세
	직 업	*직업*	국 적	*국적*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주 거	*주거*				
변 사 장 소		*변사장소*				
검 시 장 소						
시체의모양및상황						
변 사 년 월 일		*0000.00.00. 00:00*				
사 인		*사인*				
발 견 일 시		*0000.00.00. 00:00*경				
발 견 자						
의사의 검안 및 관계자의 진술						
소지금품 및 유류품		*소지금품및유류품*				
시체및휴대품의 처 리						
참 여 인						
의 견						

이 검사는 0000.00.00 00:00에 시작하여 0000.00.00 00:00에 끝나다.

20 . . .

○○○○경찰서

사법경찰관 *계급* *성명* ㊞

사법경찰리 ○○ ○○○ ㊞

[별지 제11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수신자(일반인)가족* 귀하

제 목 : **검시필증**

아래 사람은 당서 관내에서 변사한 자인 바, *검찰청명* 검사 *검사명*의 지휘로 검시를 마쳤으므로 시체를 유족에게 인도하여도 무방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별*, 만 *연령* 세)
직 업	
주 소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별지 제12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검사 : ○○○)

제 목 :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건의**

우리서 제0000-00000호(. . .접수) 변사사건에 대한 검사 ○○○의 지휘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내사하였기에 보고하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 사 자 인적사항	성 명 : (세,) 주민등록번호 : - 직 업 : 주 거 :
사 인	직접사인 : 간접사인 :
내사요지	
경찰의견	
첨부서류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3호 서식]

시신 및 소지금품 인수서

□ 인 수 자

성 명	인수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직 업	직업	연 락 처	연락처
주 거	주거		
사망자와의 관계	관계		

※ 주의 : 인수자가 구청장·시장·읍면장인 경우에는 직명만 기재

다음과 같이 시신과 소지금품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00.00.

인 수 자 : 인수자 ㊞

□ 인수 일시·장소

0000.00.00. 00:00

□ 시 신

성 명	변사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 별	남 · 여	연 령	연령세	국 적	국적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주 거	주거				

□ 소지금품

품 명	수 량	비 고
품명	수량	비고

소속관서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수신

제 목 : **사망통보**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분명하지 아니한(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사체를 검시하였으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검시조서를 첨부 통보합니다.

첨부 : 검시조서 ○○통

○○○○경찰서

사법경찰관 ○○

[별지 제15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수신

참 조 : 참조

제 목 : 범죄인지

다음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지합니다.

1. 피의자 인적사항

2. 범죄경력자료

3. 범죄사실의 요지

4. 죄명 및 적용법조

5. 수사단서 및 범죄 인지 경위

경 로	수사지휘 및 의견	구분	결 재	일시

[별지 제16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수신처*

제 목 :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

아래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를 개시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의거 통보합니다.

피의자	성 명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거	*주거*		
	소속및직위	*소속및직위*		
사 건 번 호		*사건번호*	수사개시일자	*0000.00.00*
죄 명		*죄명*	신 병	*신병*

< 피의사실요지 >

사건개요

비 고	이 사건과 관련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으면 참고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17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수신처

제 목 :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

귀(부) 직원에 대한 사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의거 통보합니다.

사건번호		사건번호
죄명		죄명
피의자	소속및직위	소속및직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피의자
처리상황	연월일	0000.00.00
	내용	내용

< 피의사실요지 >

사건개요

비고	이 사건과 관련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으면 참고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8호 서식]

출 석 요 구 서

제 *0000-000000* 호

대상자 귀하에 대한 *사건명* 사건(접수번호:*0000-000000*)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0000.00.00. 00:00*에 *OO과 OO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의 요지 >

사건의 요지

< 구비서류 등 >

1. *구비서류1*
2. *구비서류2*
3. *구비서류3*

출석하실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와 위 구비서류,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롭게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소속팀*(☎ *연락처*)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0000.00.00.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사건담당자 *계급*

□ 경찰관서 안내

□ 수사과정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제도

○ 변호인 참여제

1.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임된 변호사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3.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사이의신청 제도(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수사과정 및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인권침해·편파수사 등으로 담당수사관 교체를 희망할 경우,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을 통해 담당수사관 교체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교체 사유 해당 여부 심의 후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별지 제19호 서식]

제 호

참 고 인 출 석 요 구 서

피 의 자 에 대한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피내사자 에 대한 내사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피진정인 에 대한 진정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오전(후) 시에 서 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 주십시오

1.
2.
3.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팀(☎ - -)로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 등으로 경찰관서 직접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FAX·E-mail 등 편리한 매체를 이용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장조사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0 .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사건담당자 ㊞

[별지 제20호 서식]

출 석 요 구 통 지 부

연번	통지일	통지방법	출석요구일	대상자	성 명	결 과

[별지 제21호 서식] <삭제>

[별지 제22호 서식] <삭제>

[별지 제23호 서식]

동 석 신 청 서

(피 의 자)

수 신 :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성명*

귀서 제 호 피의자 *OOO외 O명*에 대한 *사건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피의자명*를 조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합니다.

- 다 음 -

신뢰관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거(사무소)	
	전화번호	
	피의자와의 관계	
동석 필요 사유		

※ 소명자료 별첨

0000. 00. 00.

신청인 (인)

[별지 제24호 서식]

동 석 신 청 서

(피 해 자)

수 신 :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성명*

귀서 제 호 피의자 *OOO외 O명*에 대한 *사건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피해자명*를 조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합니다.

- 다 음 -

피 해 자	성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직 업	*직업*
	주 거	*주거*
	전화번호	*집전화번호*
신뢰관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거(사무소)	
	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동석 필요 사유		

※ 소명자료 별첨

0000. 00. 00.

신청인 ㊞

[별지 제25호 서식]

(번호 :)

우 편 조 서 (참고인)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직 업 : **직 장 :**

전화번호 : 자택 **직장** **휴대전화**

주 거 :

등록기준지 :

피의자 *피의자외 O명*에 대한 *죄명*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편의를 위하여 우편으로 조사하고자 하오니 아래 "문"란의 내용을 잘 읽으시고 "답"란에 진실하게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진술조서의 우측 상단에 일련번호를 기입하시고 끝장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또는 무인)하신 다음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기에 용지가 부족하면 A4용지(본 진술조서 용지규격)에 추가로 기재한 후 간인하고 동봉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 진술인 ㊞

[별지 제26호 서식]

피 의 자 신 문 조 서

피 의 자 : *피의자성명*

위의 사람에 대한 *최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00.00. 00:00 조사장소(기본:소속관서+부서)*에서 사법경찰관 *계급 성명*은 사법경찰리 ○○ ○○○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 성명은 *피의자성명* (*한자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직업은 *직업*

주거는 *주거*

등록기준지는 *등록기준지*

직장주소는

연락처는 자택전화 *자택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전자우편*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1.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별지 제27호 서식]

피 의 자 신 문 조 서 (제0회)

피 의 자 : *피의자성명(한자)*

위의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00.00. 00:00 조사장소(기본:소속관서+부서)*에서 사법경찰관 *계급 성명*은 사법경찰리 ○○ ○○○을 참여하게 한 후,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1.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별지 제28호 서식]

피 의 자 신 문 조 서 (간이교통)

피 의 자 : ○○○

위의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00:00 ○○○○○○○○○에서 사법경찰관 ○○ ○○○는(은) 사법경찰리 ○○ ○○○를(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 성명은 ( )

주민등록번호는 -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주소는

연락처는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고차량소유자 (소속)번호, 차종	
변하종류및취득시기	
사 고 일 시	
사 고 장 소	
사고차량의상태 (고 장 유 무)	
사 고 경 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피의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점	
피해자 및 피해상황	
사고 후의 조치 (구호, 신고)	
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대한 의견	
피해증거(진단서, 견적서)에 대한 의견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점	
합의여부	
가입보험종류	
기타 유리한 자료	

[별지 제29호 서식]

피 의 자 신 문 조 서 (간이폭력)

피 의 자 : ○○○

위의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00:00 ○○○○○○○○○○에서 사법경찰관 ○○ ○○○는(은) 사법경찰리 ○○ ○○○를(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 성명은 ( )

주민등록번호는 -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주소는

연락처는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범 행 일 시	
범 행 장 소	
공범및모의경위	
피 해 자	
범행동기, 경위 및 수단·방법	

피해부위 및 정도	
진단서 등 증거에 대 한 의 견	
법행 후의 조치 (합의 여부 등)	
기타 유리한 자료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별지 제30호 서식]

피 의 자 신 문 조 서 (간이절도)

피 의 자 : ○○○

위의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00:00 ○○○○○○○○○○에서 사법경찰관 ○○ ○○○는(은) 사법경찰리 ○○ ○○○를(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 성명은 ( )

주민등록번호는 -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주소는

연락처는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범 행 일 시	
범 행 장 소	
공 범	
절 취 품	
피 해 자	
범행동기, 경위 및 수단·방법	

장물소지보관여부	(압수절차)
장물처분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관계	
검 거 된 경 위	
기타유리한자료	

문 :

답 :

문 :

답 :

[별지 제31호 서식]

피 의 자 신 문 조 서 (간이향군)

피 의 자 : ○○○

위의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00:00 ○○○○○○○○○에서 사법경찰관 ○○ ○○○는(은) 사법경찰리 ○○ ○○○를(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 성명은 ( )

주민등록번호는 -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주소는

연락처는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소속예비군부대		
역종·계급·직책		
훈련불참	일 시	
	장 소	
	훈련종류	
소집통지서	피의자에게 전달된 과정	
	발행부대장	
불 참 이 유		
증거(통지서수령증)에 대한 의견		
정당한 사유 유무(보류, 연기원서 제출 등)		
기타유리한자료		

문 :

답 :

문 :

답 :

[별지 제32호 서식]

피 의 자 신 문 조 서 (간이도박)

피 의 자 : ○○○

위의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00:00 ○○○○○○○○○○에서 사법경찰관 ○○ ○○○는(은) 사법경찰리 ○○ ○○를(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 성명은 ( )

주민등록번호는 -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주소는

연락처는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범 행 일 시	
범 행 장 소	
공 범	
범행동기, 경위 및 수단·방법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장소제공자 및 그에 대한 대가	
승 패 역 수	
도박용으로 소지했던 금품 및 물건	(압수절차)
기타유리한자료	

문 :

답 :

문 :

답 :

[별지 제33호 서식]

진 술 조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전화 :)

주 거 : (전화 :)

등록기준지 :

직 장 주 소 :

연 락 처 :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경찰서 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과(와) 인 관계에 있습니다.(저는 피의자 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의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사법경찰관(리)은 진술인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문답을 하다.

문 :

답 :

[별지 제33호의2 서식]

진 술 조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전화 :)

주 거 : (전화 :)

등록기준지 :

직 장 주 소 :

연 락 처 :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경찰서 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과(와) 인 관계에 있습니다.(저는 피의자 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 인적사항의 생략

위 사람은 (00법 제00조의 규정에 따라 /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의 우려가 있어)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의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사법경찰관(리)은 진술인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문답을 하다.

문 :

답 :

[별지 제34호 서식]

진 술 조 서 (제○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경찰서 에 임의 출석하였는 바, 사법경찰관은 진술인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전회에 이어 계속 문답을 하다.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별지 제35호 서식]

진 술 조 서 (간이교통)

성 명	( ) 이명	성 별	
연 령	세(. . .생)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거			
자택전화		직장전화	
직 업		직 장	

위의 사람은 피의자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의 피해자로서 . . . 00:00 ○○○○○○○○○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피해일시	
피해장소	
가해차량	(소유자) (차량번호) (차종)
피 의 자	
피해경위	

피 해 내 용	
제 출 할 증 거	
피의자의 과실에 대 한 의 견	
진 술 인 의 과 실	
사 고 후 피 의 자 의 조 치	
피의자와 합의 여부 (교 섭 상 황)	
피의자의 처벌에 대 한 의 견	
위의 진술내용을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답함.	

문 :

답 :

문 :

답 :

[별지 제36호 서식]

진 술 조 서 (간이폭력)

성 명	( ) 이명	성 별	
연 령	세(. . .생)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거			
자택전화		직 장 전 화	
직 업		직 장	

위의 사람은 피의자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의 피해자로서 . . . 00:00 ○○○○○○○○○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피해일시	
피해장소	
피 의 자	
피해경위	

피해내용 및 정도	
피 해 후 의 조 치	
제 출 할 증 거	
압수증거물확인	
피의자와의관계	
합의여부 또는 교 섭 상 황	
피의자의 처벌에 대 한 의 견	
위의 진술내용을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답함.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별지 제37호 서식]

진 술 조 서 (간이절도)

성 명	( ) 이명	성 별	
연 령	세 (. . . 생)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거			
자택전화		직장전화	
직 업		직 장	

위의 사람은 피의자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의 피해자로서 . . . 00:00 ○○○○○○○○○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함.

도난일시	
도난장소	
피 의 자	
도난품의 소유자, 점유자, 종류, 수량, 시가	
도난경위	

도난후의 조치	
제출할증거	
압수증거물 확인	
도난품의 회수, 가격변상 여부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자의 처벌에 대한 의견	
위의 진술내용을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답함.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별지 제38호 서식]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준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진 술 자 (인)

. . .

사법경찰관 ○○ ○○○ (인)

사법경찰리 ○○ ○○○ (인)

[별지 제39호 서식]

위의 조서를 통역인을 통하여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준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통역인과 같이 간인한 후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통 역 인 (인)

진 술 자 (인)

. . .

사법경찰관 ○○ ○○○ (인)

사법경찰리 ○○ ○○○ (인)

[별지 제40호 서식]

진 술 서 (간이공통)				
성 명	( ) 이 명 :		성 별	
연 령	만 세(. . .생)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거				
자택전화		직 장 전 화		
직 업		직 장		
위의 사람은 ○○○○○○○○○○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별지 제41호 서식]

<table>
<tr><td colspan="6">진 술 서 (간이교통)</td></tr>
<tr><td>성 명</td><td colspan="3">( ) 이 명 :</td><td>성 별</td><td></td></tr>
<tr><td>연 령</td><td colspan="2">만 세(. . .생)</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등록기준지</td><td colspan="5"></td></tr>
<tr><td>주 거</td><td colspan="5"></td></tr>
<tr><td>자택전화</td><td colspan="2"></td><td>직장전화</td><td colspan="2"></td></tr>
<tr><td>직 업</td><td colspan="2"></td><td>직 장</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위의 사람은 아래와 같이 교통사고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 이에 관하여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함.</td></tr>
<tr><td>피해일시</td><td colspan="5"></td></tr>
<tr><td>피해장소</td><td colspan="5"></td></tr>
<tr><td>가해차량</td><td colspan="5">(소유자) (차량번호) (차종)</td></tr>
<tr><td>피 의 자</td><td colspan="5"></td></tr>
<tr><td>피해경위</td><td colspan="5"></td></tr>
</table>

피 해 내 용	
제 출 할 증 거	
증거물 확인	
피의자의 과실에 대한 의견	
진술인의 과실	
사고 후 피의자의 조 치	
합의 여부 또는 교 섭 상 황	
피의자의 처벌에 대한 의견	
기타 참고될 진술	
. . . 작성자 (인)	

[별지 제42호 서식]

진 술 서 (간이폭력)

성 명	( ) 이 명 :	성 별	
연 령	만 세(. . .생)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거			
자택전화		직장전화	
직 업		직 장	

위의 사람은 아래와 같이 상해(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이에 관하여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피해일시	
피해장소	
피 의 자	
피해경위	

피 해 내 용	
피해후의 조치	
제출할 증거물 또는 증인	
압수증거물 확인	
피의자와의 관계	
합 의 여 부	
피의자의 처벌에 대 한 의 견	
기타 참고될 진술	
. . . 작성자 (인)	

[별지 제43호 서식]

진 술 서 (간이절도)

성 명	( ) 이 명 :	성 별	
연 령	만 세(. . .생)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 거			
자택전화		직장전화	
직 업		직 장	

위의 사람은 아래와 같이 도난당한 사실이 있어 이에 관하여 임의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도난일시	
도난장소	
피 의 자	
도난품의 소유자, 점유자, 종류, 수량, 시가	
도난경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도난후의 조치	
제출할 증거	
압수증거물 확인	
도난품의 회수, 가격변상 여부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자의 처벌에 대한 의견	
기타 참고될 진술	
. . . 작성자 (인)	

[별지 제44호 서식]

수사 과정 확인서

구 분	내 용
1. 조사 장소 도착시각	
2.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 종료시각 :
3.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 종료시각 :
4. 기타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 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년 월 일

사법경찰관 는(은) 를(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로(으로)부터 확인받음

확 인 자 : ㊞

사법경찰관 : ㊞

[별지 제45호 서식]

영 상 녹 화 동 의 서

진술자	성 명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거	*주거*		

상기인은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참고인·피해자로서 진술함에 있어 진술내용이 영상녹화됨을 고지받고 강제적인 압력이나 권유를 받음이 없이 영상녹화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0000.00.00.

성 명 : *대상자* ㊞

소속관서장 귀하

[별지 제46호 서식]

영 상 녹 화 물 관 리 대 장

순번	접수일자	사건번호	죄 명	영상녹화대상자			인수자	인계자	송치일자	비고
				피의자	참고인	피해자				

[별지 제47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제 목 : **체포영장신청**

다음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에 인치하고 ○○○○○○○에 구금하려 하니 0000. 00. 00.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범죄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이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 존재시 그 취지 및 범죄사실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48호 서식]

체포영장신청부

진행번호			
사건번호		년 제 호	년 제 호
신청일시		. . . 시 분	. . . 시 분
신청자 관직 및 성명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검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판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발부		. . . 시 분	. . . 시 분
재신청	신청	. . . 시 분	. . . 시 분
	검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판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발부	. . . 시 분	. . . 시 분
유효기간		. . .	. . .
집행	일시	. . . 시 분	. . . 시 분
	장소		
	처리결과		
구속영장신청	신청부번호		
	발부연월일	. . .	. . .
석방	연월일	. . .	. . .
	사유		
반환		. . .	. . .
비고			

년 제 호	년 제 호	년 제 호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9호서식]

체포·구속영장집행원부

진행번호	영장번호	구분	피의자	죄명	집행지휘 또는 촉탁		영장유효기간	처리			비고
					연월일	관서		집행	집행불능	반환일자	
					. . .		. . .	. . . 시 분		. . .	

※ 구분란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임을 특정하여 기재함.

[별지 제50호 서식]

긴 급 체 포 서

제 0000-00000 호

피의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위 피의자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함

. . .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체포한 일시	
체포한 장소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	
인치한 일시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구금한 장소	
구금을 집행한 자의 관직 및 성명	

[별지 제51호 서식]

긴 급 체 포 원 부

진 행 번 호				
사 건 번 호			년 제 호	년 제 호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긴급체포서 작성 년 월 일			. . .	. . .
긴급체포	체포한 일시		. . . 시 분	. . . 시 분
	체포한 장소			
	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			
	인치한 일시		. . . 시 분	. . . 시 분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 . . 시 분	. . . 시 분
	구금한 장소			
	검사 지휘	승 인	. . . 시 분	. . . 시 분
		불승인	. . . 시 분	. . . 시 분
석방	일 시		. . .	. . .
	사 유			
구속영장 신청	신청부번호			
	발부연월일		. . .	. . .
비 고				

년 제 호	년 제 호	년 제 호
. . .	. . .	.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2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검사 : ○○○)

제 목 : **긴급체포 승인 건의**

다음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긴급체포한 일시				
긴급체포한 장소				
긴급체포한 자의 관적 및 성명				
인치한 일시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구금한 장소				
범죄사실				
소명자료				
긴급체포한 사유				
체포를 계속하여야 할 사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53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검사 : ○○○)

제 목 : 피긴급체포자석방보고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

피긴급체포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긴급체포 일시		
긴급체포 장소		
죄 명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별첨 긴급체포서의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와 같음
석방지휘검사		
석방한 일시		
석방한 장소		
석방사유		□ 구속영장청구 불요 □ 추가수사 필요 □ 기타
석방한 자의 관직 및 성명		

첨부 : 긴급체포서 사본 1부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54호 서식]

현 행 범 인 체 포 서

피의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형사소송법」제212조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함

20 .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	
인 치 한 일 시	
인 치 한 장 소	
구 금 한 일 시	
구 금 한 장 소	

[별지 제55호 서식]

현 행 범 인 인 수 서

피의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인수함

20 .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체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인 수 한 일 시		
인 수 한 장 소		
인 치 한 일 시		
인 치 한 장 소		
구 금 한 일 시		
구 금 한 장 소		

[별지 제56호 서식]

현 행 범 인 체 포 원 부

진 행 번 호				
사 건 번 호			년 제 호	년 제 호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죄 명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 수 서 작 성 일			. . .	. . .
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체 포 한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체 포 한 장 소			
	체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또는 관직		
	인 수 한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인 수 한 장 소			
	인수한 자	관 직		
		성 명		
	인 치 한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인 치 한 장 소			
	구 금 한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구 금 한 장 소			
석방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사 유			
구속영장 신 청	신 청 부 번 호			
	발 부 연 월 일		. . .	. . .
비 고				

년 제 호	년 제 호	년 제 호
. . .	. . .	.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별지 제57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검사 : ○○○)

제 목 : **피의자 석방보고**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기 보고합니다.

구 분	
영장발부 연월일 또는 현행범인체포서 (인수) 작성 연월일	
체포, 구속영장 번호 또는 현행범인체포서 (인수) 작성 번호	
피체포·구속자 또는 현행범인	
죄 명	
석 방 일 시	
석 방 사 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58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제 목 : **구속영장신청(미체포)**

다음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에 구속하려 하니 . .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59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제 목 : **구속영장신청(체포영장)**

다음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였는 바, 동인을 ○○○○○○○에 구속하려 하니 . .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체포한 일시·장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60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제 목 : **구속영장신청(현행범인)**

다음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 바, 동인을 ○○○○○○○에 구속하려 하니 . .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체포한 일시·장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61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제 목 : 구속영장신청(긴급체포)

다음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하였는 바, 동인을 ○○○○○○○에 구속하려 하니 . .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체포한 일시·장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62호 서식]

구속영장신청부

진행번호				
사건번호			년 제 호	년 제 호
신청일시			. . . 시 분	. . . 시 분
신청자 관직 및 성명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체포일시 및 유형			. . . 시 분 체포 · 긴급체포 · 현행범인체포 (진행번호)	. . . 시 분 체포 · 긴급체포 · 현행범인체포 (진행번호)
영장신청 및 발부	검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판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발부		. . . 시 분	. . . 시 분
	재신청	신청	. . . 시 분	. . . 시 분
		검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판사기각	. . . 시 분	. . . 시 분
		발부	. . . 시 분	. . . 시 분
	피의자 심문	일련번호		
		검사또는판사명		
		접수일시	. . . 시 분	. . . 시 분
		접수자관직성명		
		구인일시	. . . 시 분	. . . 시 분
유효기간			. . .	. . .
석방	연월일		. . .	. . .
	사유			
반환			. . .	. . .
비고				

년 제 호	년 제 호	년 제 호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체포 · 긴급체포 · 현행범인체포 (진행번호)	. . . 시 분 체포 · 긴급체포 · 현행범인체포 (진행번호)	. . . 시 분 체포 · 긴급체포 · 현행범인체포 (진행번호)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3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검사 : ○○○)

제 목 : **영장반환 보고**

별지 영장은 다음의 이유로 반환합니다.

영 장 종 별		
영 장 발 부 일		
영 장 번 호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죄 명		
집행불능의 사유		
첨 부 : 영장 통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64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 귀하

제 목 :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 통지**

1. 피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거 :

2. 위 사람을 . . . 00:00 ○○○○○○○○○ 피의사건으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여 ○○○○○○○○○에 인치구금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3.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체포·구속된 위 피의자 본인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지방법원(○○지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 범죄사실의 요지 및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 이유 1부

담 당 자		소속 및 연락처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65호 서식]

확 인 서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세)

주 거 :

본인은 20 . . . : 경 에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위 확인인 ㊞

위 피의자를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음(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20 .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리) ㊞

[별지 제66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검사 : ○○○)

제 목 : **수사관계서류 등 제출**

○○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 사람에 대한 동원 제00000호 구속적부심사청구/체포적부심사청구 등 사건의 심문기일 지정통지가 있으므로 동사건 심리에 필요한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합니다.

피체포·구속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체포·구속 일자		. . .
지정된 심문기일		. . . 00:00

첨부 1. 사건기록 1권
2. 증거물(있음/없음)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67호 서식]

체포·구속영장 등본 등 교부대장

진행번호			
사건번호		년 제 호	년 제 호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자			
죄명			
체포·구속 일자		. . .	. . .
접수연월일		. . .	. . .
교부허가		. . .	. . .
교부불허가		. . .	. . .
수령연월일		. . .	. . .
청구인의 서명 또는 날인			
비고			

년 제 호	년 제 호	년 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8호 서식]

접견 등 금지결정처리부

진행번호	결정일자	사법경찰관	죄 명	피의자	결정이유	금지내용	취소일자	취소사유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법경찰관란에는 접견 등 금지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의 관직 및 성명을 기재함.

※ 비고란에는 체포와 구속을 구분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번호를 기재함.

[별지 제69호 서식]

체포·구속인 접견부

유치인성명					
접견신청자	주거				
	성명				
유치인과의 관계					
접견일시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답화의 요지					
비고					
입회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별지 제70호 서식]

체포·구속인 교통부

유치인성명					
접견신청자	주거				
	성명				
유치인과의 관계					
수발의 구별					
교통일시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서신내용의 요지					
비고					
취급자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별지 제71호 서식]

물 품 차 입 부

유 치 인 성 명					
차입자	주 거				
	성 명				
유치인과의 관계					
구 별					
연 월 일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물 품 및 수 량					
비 고					
취 급 자					

[별지 제72호 서식]

체포·구속인 수진부

유치인성명				
진단의사의 성명				
수진의 원인				
수진일시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진단의 결과				
비 고				
입 회 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별지 제73호 서식]

임치 및 급식상황표

임 치 물						
임 치 물 품						
임치금품의 처리상황						
급식상황	일 자	1	2	3	4	5
	아 침					
	점 심					
	저 녁					
	일 자	6	7	8	9	10
	아 침					
	점 심					
	저 녁					
	일 자	11	12	13	14	15
	아 침					
	점 심					
	저 녁					
	일 자	16	17	18	19	20
	아 침					
	점 심					
	저 녁					
	일 자	21	22	23	24	25
	아 침					
	점 심					
	저 녁					
	일 자	26	27	28	29	30
	아 침					
	점 심					
	저 녁					
비 고						31

[별지 제74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검사 : ○○○)

제 목 : **피의자 석방 건의**

다음 피의자를 석방하려 하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의 자	
죄 명	
체포·구속유형	
체포·구속일시	
석 방 사 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75호 서식]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임의제출**

다음 물건을 임의로 제출합니다. 사건처리 후에는 처분의견란 기재와 같이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거 : (통 반)

직 업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제 출 물 건

번 호	품 종	수 량	제출자의 처분의견(반환의사 유무)	비 고

[별지 제76호 서식]

○ ○ 경 찰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압수증명

다음과 같이 압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번 호	품 종	수 량	비 고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별지 제77호 서식]

소유권 포기서

□ 소유권 포기인

성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직 업	*직업*	연 락 처	*전화번호*
주 거	*주거*		

다음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20 . . .

포 기 인 : ㊞

피 의 자	*피의자외 0명*				
죄 명	*죄명*				
압수번호	*전화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사건번호	*사건번호*

연번	품 종	수 량	비 고

*소속관서*장 귀하

[별지 제78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수신*

제 목 : **물건제출요청**

아래 물건은 *대상자*에 대한 *죄명* 사건에 관하여 압수할 필요가 있으니 20 . . . 안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번	품 종	수 량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79호 서식]

압 수 조 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20 년 월 일 에서 사법경찰관 은 사법경찰리 을 참여하게 하고, 별지 목록의 물건을 다음과 같이 압수하다.

압 수 경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참여인				

20 .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리 ㊞

[별지 제80호 서식]

압 수 목 록

번호	품 종	수량	피압수자 주거·성명				소 유 자 주거·성명	경찰 의견	비 고
			1	2	3	4			
			유류자	보관자	소지자	소유자			

번호	품 종	수량	피압수자 주거·성명				소 유 자 주거·성명	경찰 의견	비 고
			1 유류자	2 보관자	3 소지자	4 소유자			

[별지 제81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검사 : ○○○)

제 목 :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건의**

다음 물건은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의 증거품으로 압수중인 바,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사유로 위탁보관의 필요가 있으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품 종	수 량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82호 서식]

압수물건 보관 서약서

□ 서 약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연 락 처	
주 거			

다음 압수물건에 대한 보관명령을 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보관할 것은 물론 언제든지 지시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 . .

서 약 인 : (인)

피 의 자					
죄 명					
압수 번호	0000-00000	접수 번호	0000-000000	사건 번호	0000-000000

연번	품 종	수 량	보 관 장 소	비 고

○○○○경찰서장 귀하

연번	품 종	수 량	보 관 장 소	비 고

[별지 제83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검사 : ○○○)

제 목 :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건의**

다음 물건은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의 증거품으로 압수중인 바, 부패(멸실)의 우려가 있어 대가보관의 필요가 있으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품 종	수 량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84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검사 : ○○○)

제 목 :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건의**

다음 물건은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의 증거품으로 압수중인 바,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으므로 폐기처분하려 하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품 종	수 량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85호 서식]

압수물 폐기 동의서

□ 동 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연 락 처	
주 거			

다음 압수물건을 폐기함에 동의합니다.

. . .

동 의 인 : (인)

피 의 자					
죄 명					
압수번호	0000-00000	접수번호	0000-000000	사건번호	0000-000000

연번	품 종	수 량	비 고

○○○○경찰서장 귀하

[별지 제86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검사 : ○○○)

제 목 : **압수물 환부 지휘건의**

다음 물건은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의 증거품인 바, 다음과 같이 환부하려 하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품 종	수량	피압수자	환부 받을 사람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86호의2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검사 : ○○○)

제 목 : **압수물 가환부 지휘건의**

다음 물건은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의 증거품인 바, 다음과 같이 가환부하려 하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품 종	수량	피압수자	가환부 받을 사람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87호 서식]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서

□ 청 구 인

성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직 업	직업	연 락 처	전화번호
주 거	주거		

다음 압수물건은 아래 사건의 증거품으로 귀서에 압수중이던 바, 필요하오니 환부(가환부)해 주시기 바라며, 환부(가환부)하신 후 언제든지 지시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0000.00.00.

청 구 인 : ㊞

피 의 자	피의자외 0명				
죄 명	죄명				
압수번호	전화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사건번호	사건번호

연번	품 종	수 량	비 고

소속관서장 귀하

[별지 제88호 서식]

압수물 환부(가환부) 영수서

□ 영 수 인

성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직 업	*직업*	연 락 처	*전화번호*
주 거	*주거*		

다음 압수물건은 아래 사건의 증거품으로 귀서에 압수중이던 바, 확실히 환부(가환부)받았으며 언제든지 지시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0000.00.00.

영 수 인 : ㊞

피 의 자	*피의자외 0명*				
죄 명	*죄명*				
압수번호	*전화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사건번호	*사건번호*

기록면수	연 번	품 종	수 량	비 고

*소속관서*장 귀하

[별지 제89호 서식]

대 가 보 관 조 서

*OOO외 O명*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00.00.* 사법경찰관 *계급 성명*은 사법경찰리 OO OOO을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대가보관하다.

대가보관금액		보 관 자	

번호	품 종	수량	매각대금	이 유	매수자

0000.00.00.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담당자* ㊞

사법경찰리 ○○ ○○○ ㊞

[별지 제90호 서식]

폐 기 조 서

*OOO외 O명*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00.00.* 사법경찰관 *계급 작성자*는 사법경찰리 OO OOO를 참여하게 하고 압수물을 다음과 같이 폐기한다.

번 호	품 종	수 량	이 유	비 고

0000.00.00.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담당자* ㊞

사법경찰리 ○○ ○○○ ㊞

[별지 제91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사전)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려 하니 *유효일자*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령*세)
	직 업	*직업*
	주 거	*주거*
변 호 인		
압 수 할 물 건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일출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건강상태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92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사후)**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압수·수색·검증하였으니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령*세)
	직 업	*직업*
	주 거	*주거*
변 호 인		
긴급압수·수색·검증한 자의 관직·성명		
긴급압수·수색·검증한 일시		
긴급수색·검증한 장소·신체 또는 물건		
긴급압수한 물건		
범죄사실 및 긴급압수·수색·검증한 사유		
체포한 일시 및 장소 (「형사소송법」 제217조제2항에 따른 경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한 사유		
신체검사를 한 자의 성별·건강상태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93호 서식]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

진행번호			
사건번호		년 제 호	년 제 호
신청연월일			
신청자 관직 및 성명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검사기각		. . .	. . .
판사기각		. . .	. . .
발부		. . .	. . .
유효기간		. . .	. . .
집행	일시	. . .	. . .
	장소		
	처리결과		
비고			

년 제 호	년 제 호	년 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4호 서식]

수 색 조 서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00.00.* 사법경찰관 *작성자계급 작성자성명*은 사법경찰리 ○○ ○○○를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수색하다.

수 색 장 소	
참 여 인	
수색한 신체 개소·물건	
수 색 결 과	
수 색 시 간	착수 : 0000.00.00. 00:00
	종료 : 0000.00.00. 00:00

0000.00.00.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작성자계급 담당자명* ㊞

사법경찰리 ○○ ○○○ ㊞

[별지 제95호 서식]

증 명 서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수신*

*OOO외 O명*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00.00. OOOOO에서 OOOOO을 수색한 결과, 증거물 등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별지 제96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려 하니 *영장유효기간*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령*세)
	직 업	*직업*
	주 거	*주거*
변 호 인		
대상계좌	계좌명의인	□ 피의자 본인 □ 제3자(인적사항은 별지와 같음)
	개설은행·계좌번호	
	거래기간	
	거래정보 등의 내용	
압수할 물건		
수색·검증할 장소 또는 물건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일출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97호 서식]

실 황 조 사 서

○○○외 00명에 대한 OOOO 피의사건에 관하여 20 . . . : 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한 바, 다음과 같다.

1. 실황조사의 장소(대상)

2. 실황조사의 목적

3. 실황조사의 참여인

4. 실황조사의 경위 및 결과

이 실황조사는 20 . . . : 에 시작하여 20 . . . : 에 끝나다.

0000.00.00.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 ○○○ ㊞

사법경찰리 ○○ ○○○ ㊞

[별지 제98호 서식] <삭제>

[별지 제99호 서식]

검 증 조 서

*○○○외 ○명*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00.00.* ○○○○○○에 임하여 사법경찰관 *계급 성명*는 사법경찰리 ○○ ○○○을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검증한다.

1. 검증의 장소(대상)

2. 검증의 목적

3. 검증의 참여인

4. 검증의 경위 및 결과

이 검증은 0000.00.00. 00:00에 시작하여 0000.00.00. 00:00에 끝나다.

20 . . .

○○○○경찰서

사법경찰관 *직위* *성명* ㊞

사법경찰리 ㊞

[별지 제100호 서식] <삭제>

[별지 제101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수신자*

제 목 : **감정의뢰**

다음 사항을 의뢰하오니 조속히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번 호	*0000-000000*
피 의 자	*OOO외 O명*
죄 명	*죄명*
감정대상(종류 품명) 및 구 분 번 호	
감 정 의 뢰 사 항	
채 취 년 월 일	
채 취 장 소	
채 취 방 법	
관련사건 개요	*사건개요*
관련 피의자 주소 성명	
사건담당자 계급 성명	*계급 성명*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02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수신*

제 목 : **감정위촉**

피의자 *○○○외 ○명*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의 감정을 위촉합니다.

사 건 번 호	*0000-000000*
감 정 대 상 (종 류 · 품 명)	
위 촉 사 항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03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수신*

제 목 : **감정위촉(허가장)**

피의자 *OOO외 O명*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의 감정을 위촉합니다. 첨부한 감정처분허가장은 감정서와 함께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 번 호	*0000-000000*
감 정 대 상 (종 류 · 품 명)	
위 촉 사 항	
비 고	

첨부 : 감정처분허가장 1통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04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제 목 : **감정유치장신청**

피의자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피의자를 아래와 같이 감정유치하려 하니 . . .까지 유효한 감정유치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범 죄 사 실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유치장을 신청하는 취지와 사유		
유 치 할 장 소		
유 치 기 간		. . .부터 . . .까지 (일간)
감정의 목적 및 이유		
감 정 인	성 명	
	직 업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05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제 목 : 감정처분허가장신청

피의자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감정인이 아래와 같이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 . .까지 유효한 감정처분허가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감정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감정위촉연월일				
감정위촉사항				
감정장소				
범죄사실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사유				
둘이상의 허가장을 신청하는 취지와사유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이유				
변호인				
비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06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수신*

제 목 : 통신자료제공요청

다음과 같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번호*
대상자	*대상자* (*주민번호*)
요청사유 및 가입자와의 연관성	
의뢰사항 (필요한 자료의 범위)	
의뢰자	*소속관서 소속부서 계급 담당자*
회신정보	전 화: *전화번호* FAX: *소속부서의 팩스*
	기타(e-mail): *기타(e-mail)*

○○○○경찰서장

우

전화 전송 / email :

[별지 제107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제 목 : **통신제한조치 허가 신청(사전)**

다음 피의자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기간및집행장소	1. 기간 : . . . ~ . . . 2. 집행장소 :			
혐의사실의 요지 및 신청이유				
둘이상을신청하는경우 신청취지및이유				
재신청의취지및이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08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제 목 :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사 건 번 호	
허 가 서 번 호	
통신제한허가기간	. . .부터 . . .까지 일
연 장 할 기 간	. . .부터 . . .까지 일
기간연장이 필요한 이유 및 소명자료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09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제 목 : **통신제한조치 허가 신청(사후)**

다음 피의자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였으므로 통신제한조치를 계속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통신제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통신제한조치를 계속 필요로 하는 사유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일시와 집행장소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자의 관직·성명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장소	
둘이상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취지 및 이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10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검사 : ○○○)

제 목 :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

다음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려 하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1. 기간 : . . . ~ . . . 2 집행장소 :			
협의사실의 요지 및 신청이유	1. 협의사실의 요지 : 2 소명자료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11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검사 : ○○○)

제 목 :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 건의**

다음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1. 기간 : . . . ~ . . . 2 집행장소 :			
긴급통신제한조치한 사유	1. 혐의사실의 요지 : 2 소명자료 :			
사전지휘를 받지못한 사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12호 서식]

긴 급 검 열 · 감 청 서

제 0000-00000 호 . . .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위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실시함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 류 및 방 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 상 과 범 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1. 기간 : . . .~ . . . 2. 집행장소 :
범죄사실의요지및 긴급통신제한조치의목적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13호 서식]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대 장

집행번호	사건번호	성명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집행일시	사후신청 또는 통보서 발송여부
			대상	종류·방법	기간·장소	연월일	관서		

[별지 제114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검사 : ○○○)

제 목 :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

아래 사람에 대한 제 0000-000000 호 ○○○○○○○○○ 피의사건에 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였으나 단시간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자의 관직·성명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목적				
긴급통신제한조치후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지 못한 사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15호 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발송부

연번	사건번호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작성자		통보서 송부일자
		대상자	기 간	직급	성명	

[별지 제116호 서식]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부

진행번호					
사건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죄명					
종류·방법					
처분대상·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일자					
허가기간·집행장소					
연장기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허가신청및발부	구분	허가신청	연장신청	허가신청	연장신청
	신청				
	발부				
	기각				
	재신청				
	발부				
	기각				
	수령년월일				
	수령자직성명, 날인				
검찰반환연월일					
비고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허가신청	연장신청	허가신청	연장신청	허가신청	연장신청

[별지 제117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합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주 거	
	직 업	
통신제한조치의 종 류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기 간		
비 고		

붙 임 : 통신제한조치허가(승인)서 사본 1통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18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통지**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 . .부터 . . .까지 일
연장한 기간		. . .부터 . . .까지 일

붙 임 : 통신제한조치 연장 결정문 사본 1통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19호 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집행 번호	허가서 번호	성 명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집행일시	비고
			목 적	대 상	종 류	기 간	연월일	관 서		

[별지 제120호 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피의자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고 이 조서를 작성함.

1.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종류

2.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대상과 범위

3.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기간

4. 집행위탁 여부

   집행위탁 여부

5. 집행경위

   집행경위

6.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결과의 요지

   결과의 요지

20 .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리 ㊞

[별지 제121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검사 :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보고**

아래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고 그 수사/내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피의/내사 사실				

< 처 리 내 용 >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22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

아래 사람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없게 되어 통지하니 집행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통신제한조치허가법원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통신제한조치허가년월일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번호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23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 귀하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당서 사건번호 제 0000-000000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허 가 서 번 호	
통신제한조치 집행기관	
전기통신의 가입자 (우편물검열의 대상자)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종류와 기간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24호 서식]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부

연번	통신제한조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통지일자	비고
	허가서 번호	통지 대상자	집행자의 관직·성명	사건 번호	처리일자 및 처리결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일자		

[별지 제125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검사 : ○○○)

제 목 :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피의자 ○○○외 ○명에 대한 ○○○○○○○○○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의 통지를 유예하려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사 건 번 호				
통신제한조치의 종 류 및 방 법				
통신제한조치의 대 상 과 범 위				
통신제한조치의 기 간 및 집 행 장 소				
통신제한조치의 목 적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일자 및 결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일자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사 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26호 서식]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유예승인신청부

연번	신청 일자	신청자 관직·성명	통신제한조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승인 일자	유예사유 해소후 통지일자
			허가서 번 호	통 지 대상자	사건 번호	처리일자 및 처리결과	통보받은 일 자		

[별지 제127호 서식] <삭제>

[별지 제128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사전)**

○○○○○○○○○ 피의사건 관련,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전기통신사업자				
요 청 사 유				
해당가입자와의 연 관 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29호 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신청부

진 행 번 호							
사 건 번 호							
신청자 관직, 성명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종 류							
죄 명							
대 상 및 범 위							
긴급으로 자료를 제공받은 일시							
연 장 기 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신청 및 발부 일시	구 분	허 가	기간연장 (안보목적)	허 가	기간연장 (안보목적)	허 가	기간연장 (안보목적)
	신 청						
	발 부						
	검사불청구						
	관 사 기 각						
	기 각						
	재 신 청						
	발 부						
	검사불청구						
	관 사 기 각						
	기 각						
수령 및 반환	수령연월일						
	수령자의 관직 성명 · 날인						
	검찰반환연월일						
통 지							
비 고							

[별지 제130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제 목 :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요 청 사 유	
해당가입자와의 연 관 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미리 허가를받지 못한 사 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31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사후)

○○○○○○○○○ 피의사건 관련,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전기통신사업자				
요 청 사 유				
해당가입자와의 연 관 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미리 허가를 받지못한 사유				
집행일시·장소 집행자의관직·성명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32호 서식]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대장

집행 번호	사건 번호	성 명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 행 일 시	사후청구 또는 통보서 발송여부
			대 상	종 류	법 위		

[별지 제133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 귀하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요 청 사 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 관 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붙임 : 허가서 1부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34호 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사전허가용)

집행 번호	허가서 번 호	성 명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			집행일시	비고
			대 상	종 류	범위		

[별지 제135호 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의 집행을 하고 이 조서를 작성함

1. 허가서 번호

2. 집행기관

3. 전기통신가입자

4.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대상과 종류

5.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으로 취득한 결과의 요지 : 별첨

20 . . .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리 ㊞

[별지 제136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검사 :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보고**

○○○○○○○○ 피의사건 관련,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하고 그 수사/내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종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대상과범위				
피의/내사 사실 요 지				

< 처 리 내 용 >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37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 귀하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통지**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에 같이 요청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그 제공이 필요없게 되어 통지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법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종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 연월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번호		

< 비 고 >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38호 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연번	요청일자	요청자	대상자	제공받은 자료의 범위	회신일자	비 고 (자료폐기등)

[별지 제139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20 . . .

수 신 : 귀하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

당서 제 *0000-000000*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을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허 가 서 번 호	*허가서번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집행기관	*집행기관*
전 기 통 신 가 입 자	*가입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대상과 종류	*대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 공 요 청 의 범 위	*범위*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사건담당자 *휴대폰번호*

[별지 제140호 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연번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건				통지일자	비고 (반송등)
	허가서 번 호	통 지 대상자	집행자의 관직·성명	사건 번호	처리일자 및 처리결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일자		

[별지 제141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검사 :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피의자 ○○○외 ○명에 대한 ○○○○○○○○○ 피의사건 관련,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의 집행사실에 관한 통지를 유예하려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사 건 번 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의 종류 및 자료의 범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을 집행한 사건의 처리일자 및 결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일자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사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42호 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연번	신청일자	신청자의 관직·성명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건			승인일자	유예사유 해소 후 통지일자
			허가서 번호	통지 대상자	사건번호	처리일자 및 처리결과	통보받은 일자		

[별지 제143호 서식] <삭제>

[별지 제144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수신(OO경찰서장)*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

귀서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집행을 한 후 이송한 당서 제 *0000-000000*호 *죄명* 피의사건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허 가 서 번 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 공 요 청 기 관	
집행자의 관직, 성명	
전기통신의 가입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대상과 종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 공 요 청 의 기 간	
사 건 처 리 일 자 및 처 리 결 과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45호 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내사종결시)

연 번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사건					통 보 일 자
	허가서 번 호	통 지 대상자	사건번호	내사종결 일자	집행관서 (통보대상)			
					소 속	직 급	성 명	

[별지 제146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지검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증거보전신청

다음 피의사건에 관하여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거의 보전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사건번호		
죄명		죄명		
피의자	성명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직업	직업		
	주거	주거		
사건의 개요				
증명할 사실				
증거 및 보전의 방법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47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제 목 : **증인신문신청**

피의자 *○○○외○명*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신문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직 업	*직업*		
	주 거	*주거*		
증인	성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직 업	*직업*		
	주 거	*주거*		
범 죄 사 실				
증 명 할 사 실				
신 문 사 항				
증인신문청구의 요건이 되 는 사 실				
변 호 인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48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수신관서*

제 목 : **촉탁**

다음 사항을 촉탁하오니 조속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사건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피 의 자	*피의자외 0명*		
죄 명	*죄명*		
촉탁사항	*촉탁사항*		
촉탁내용	*촉탁내용*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48호의 2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수신경찰관서*

제 목 : **회답**

○○경찰서 제 *0000-000000*호(*0000.00.00.*)에 의한 촉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답합니다.

회 답 내 용

회답내용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49호 서식]

사 건 수 배 보 고 서

<table>
<tr><td colspan="2">수 배 일 시</td><td colspan="3">제 0000-000000 호 0000.00.00.</td></tr>
<tr><td colspan="2">수 배 관 서</td><td>소속관서</td><td rowspan="2">취급자</td><td>발</td></tr>
<tr><td colspan="2">수 배 처</td><td></td><td>수</td></tr>
<tr><td colspan="2">피 의 사 건 명</td><td colspan="3">사건명</td></tr>
<tr><td colspan="2" rowspan="2">범 죄 일 시</td><td colspan="3">0000.00.00. 00:00경부터</td></tr>
<tr><td colspan="3">0000.00.00. 00:00경까지 사이</td></tr>
<tr><td colspan="2">범 죄 장 소</td><td colspan="3">범죄장소</td></tr>
<tr><td rowspan="4">피
의
자</td><td>성명·연령</td><td colspan="3">OOO외 O명, 만 연령 세</td></tr>
<tr><td>인상·체격·특징</td><td colspan="3"></td></tr>
<tr><td>착의·휴대품</td><td colspan="3"></td></tr>
<tr><td>무기의 휴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피 해 자</td><td colspan="3">OOO외 O명</td></tr>
</table>

피 해 금 품	
범죄사실의 개요	*사건개요*
피의자의 도주경로 및 방 법	
피의자 승용차의 종 별 및 번 호	
특 히 수 배 를 의 뢰 할 사 항	
인 치 할 장 소	
기 타 참 고 사 항	
처 리 요 령	

[별지 제150호 서식]

긴 급 사 건 수 배 보 고 서

수 배 일 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배 관 서		소속관서	취급자	발
수 배 처				수
피 의 사 건 명		사건명		
범 죄 일 시		20 . . . : 경부터		
		20 . . . : 경까지 사이		
범 죄 장 소		범죄장소		
피 의 자	성명·연령	000외 0명, 만 연령 세		
	인상·체격·특징			
	착의·휴대품			
	무기의 휴대			
피 해 자		000외 0명		

피 해 금 품	
범죄사실의 개요	*사건개요*
피의자의 도주경로 및 방 법	
피의자 승용차의 종 별 및 번 호	
특 히 수 배 를 의 뢰 할 사 항	
인 치 할 장 소	
기 타 참 고 사 항	
처 리 요 령	

[별지 제151호 서식]

지 명 수 배 서

공조제보	월 일
등재요구	

수 배 일 시	0000.00.00. 제 0000-00000 호			
수 배 관 서	소속관서	취 급 자	발	
수 배 처			수	
피 의 사 건 명		수 배 종 별	제 종	
죄 명	죄명			
피의자	등 록 기 준 지	등록기준지		
	전 주 거			
	주 거	주거		
	직 업	직업		
	성 명	피의자		
	연 령	만 연령 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범 죄 경 력			
	범 죄 수 법	지 문 번 호		〈사진〉
		좌		
		우		
	인 상 착 의 특 징 등			

범 죄 일 시	0000.00.00. 00:00경부터
	0000.00.00. 00:00경까지 사이
범 죄 장 소	범죄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사건개요
구 속 영 장 (유 효 기 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인치(구속) 할 장 소	
배 회 처 및 피의자와의 관계	
기 타 참 고 사 항	
공소시효만료년월일	
처 리 요 령	

[별지 제152호 서식]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 목록

진행 번호	피의자	사건 번호	담당 사법 경찰 관리	죄명	영장 발부일	영장 유효 기간	공소 시효 만료 일자	영장 신청부 진행 번호	기소 중지 명부 진행 번호	영장 반환 일자	비고

[별지 제153호 서식]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 목록

진행 번호	피의자	사건 번호	담당 사법 경찰 관리	죄명	영장 발부일	영장 유효 기간	공소 시효 만료 일자	영장 신청부 진행 번호	기소 중지 명부 진행 번호	영장 반환 일자	비고

[별지 제154호 서식]

지명수배자 체포영장 발부대장

진행 번호	피의자	사건 번호	담당 사법 경찰 관리	죄명	영장 발부일	영장 유효 기간	공소 시효 만료 일자	영장 신청부 진행 번호	기소 중지 명부 진행 번호	영장 반환 일자	비고

[별지 제155호 서식]

지명수배자 구속영장 발부대장

진행 번호	피의자	사건 번호	담당 사법 경찰 관리	죄명	영장 발부일	영장 유효 기간	공소 시효 만료 일자	영장 신청부 진행 번호	기소 중지 명부 진행 번호	영장 반환 일자	비고

[별지 제156호 서식]

지 명 통 보 서

공조제보등재요구월일		
통 보 년 월 일		
죄 명		
성명·연령·직업· 주민등록번호·범죄경력		
등 록 기 준 지		
주 거		
인상·착의 특징 등		
범 죄 사 실 의 요 지		
배 회 처		
공소시효만료년월일		
비 고		
시 도 경 찰 서 명		

[별지 제157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소속관서장*

제 목 :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

귀청(서)에서 지명통보한 피의자 *@피의자*를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으므로 보고(통보)합니다.

피의자	성 명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직 업	*직업*	전 화	자택 : *자택전화* 직장 : *직장전화'*	
	주 거	*주거'*			
죄 명		*죄명*	사건번호	*0000-000000*	
수배번호		*수배번호*	수배일자	*0000.00.00*	수배관서 *수배관서*
발견일시·장소·경위		*발견일시 장소 경위*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본인은 0000.00.00. 00:00경 ○○○○에서 지명통보자로 발견되어 지명통보사실과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받고 0000.00.00.까지 ○○○○로 출석할 것을 약속하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위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 지명수배되어 체포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0000. 00. 00.

확인자

[별지 제157호의2 서식]

지명통보 사실 통지서

귀하는 *수배관서*에서 *죄명* 사건으로 수사 중 소재불명 사유로 지명통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지명통보자

성　　명 : *성명 최대 15자* (*000000-0000000*)
주　　거 : *통보자가 진술한 주소*
연 락 처 : *000-0000-0000, 000)0000-0000, ID@메일도메인*
직　　장 : *직장명(000-0000-0000)*

2. 지명통보 개요

죄　　명 : *수배 대장 등록 죄명*
사건번호 : *0000-000000*　　수배일자 : *0000.00.00*
사건담당 : *수배관서 담당자*

3. 통지 개요

통지일시 : *0000.00.00. 00:00*
통지장소 : *발견 수사관이 입력한 장소*

통지서를 받은 후 사건담당자에게 연락하여 1개월 안에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정한 후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자와 연락하시려면 경찰콜센터(국번 없이 182)로 전화하여 사건담당자와의 통화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주거지와 연락처 등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사건담당자와의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고의로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체포영장에 따라 지명수배되어 체포될 수 있습니다.

통지자 : *검거관서 소속부서 계급 발견 경찰관 성명*

0000.00.00. 00:00

확인자 :　　(서명)

[별지 제158호 서식]

장 물 수 배 서 원 부

일련번호	발부월일	품명	수량	규격및종별	특징및기타표시	도난분실년월일	발부법위및매수	발견신고사항

[별지 제159호 서식]

장물수배서 배부부

업종별	옥호 또는 성명	월일	제호	월일	제호	월일	제호	월일	제호	월일	제호
		수령인		수령인		수령인		수령인		수령인	

[별지 제160호 서식]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

사건송치			수배번호				피의자				죄명	공소시효만료일자	연고지 수사상황		수배해제		
청자	일자	번호	일자	번호	공조		성명	연령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	회보내용	사유	일자	번호
					일자	번호											

[별지 제161호 서식] <삭제>

[별지 제162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지방경찰청장(이송심의위원회)

제 목 : **이송심의 요청**

아래와 같이 심의요청합니다.

대상 사건	사건번호	
	최초접수일	
	죄 명	
	피 의 자	
사 건 개 요		
책임수사 관서 (이송받을 관서)		
지정·요청사유		
담 당 자		○○과 ○○0팀 경○ ○ ○ ○ ㊞
접 수 일 시		200 . . .(제 호)
심 의 결 과		

심 의 사 유

심의 위원	찬	반	찬	반	찬	반	찬	반	찬	반

[별지 제163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수신관서*장

제 목 : **사건인계서**

다음 사건을 인계합니다.

접 수 번 호	*접수번호*	사 건 번 호	*사건번호*
죄 명	*죄명*		
피 의 자	*피의자*		
사 건 개 요	*사건개요*		
증 거 품	품 명	수 량	
서 류 표 목	별지 기록목록과 같음		
인 계 이 유	*인계이유*		
기타참고사항			
범죄통계원표	발 생	검 거	피 의 자
	발생원표번호	*검거원표번호*	*피의자원표번호*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64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지방법원 ○○법원

제 목 : 정식재판청구

다음 피고사건의 즉결심판에 불복이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사 건 번 호		*사건번호*		
피고인	성 명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거	*주거*		
죄 명		*죄명*		
선고연월일				
즉결심판주문				
비 고				

○○○○경찰서장

[별지 제165호 서식]

정 식 재 판 청 구 서

사 건 번 호		사건번호		
피고인	성 명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주 거	주거		
죄 명		죄명		
선고년월일				
즉결심판주문				
비 고				

위 피고사건의 즉결심판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20 . . .

위 청구인 ㊞

○○○○경찰서장 귀하

[별지 제166호 서식]

○○○○경찰서

검사지휘		
가	부	비고

제 *0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정식재판청구 승인 건의**

다음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청구를 하려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성 명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령*세)
	직 업	*직업*
	주 거	*주거*
죄 명		*죄명*
선고연월일		
즉결심판주문		
정식재판청구사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증거자료	
	불복이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별지 제167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제 목 : 즉결심판사건기록송부

다음 즉결심판 사건기록을 송부합니다.

피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문원지 작성번호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죄 명	*죄명*		
송 부 사 유			
기 록 권 수	*기록권수*권		
증 거 물			
비 고			수리전산입력

○○○○경찰서장

기 록 목 록

제 목	진 술 자	작성년월일	면수

[별지 제168호 서식]

○○지방검찰청 ○○지청 ○○○○지방검찰청	사건과장	20 . . . 수리	주임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형 제 호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수 신 : ○○○○검찰청 검사장

제 목 : 사건송치

다음 사건을 송치합니다.

피 의 자	지문원지 작성번호	구속영장 청구번호	피의자 원표번호	통신사실 청구번호

죄 명	
발각원인	
사건번호	
체포구속	
석 방	
의 견	
증 거 품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성명

[별지 제169호 서식]

압 수 물 총 목 록

번 호	품 명	수 량	기록정수	비 고

번 호	품 명	수 량	기록정수	비 고

[별지 제170호 서식]

기 록 목 록

서 류 표 목	진 술 자	작성년월일	면수

서 류 표 목	진 술 자	작성년월일	면수

[별지 제171호 서식]

의 견 서

1. 피의자 인적사항

2.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3. 범죄사실

4. 적용법조

5. 증거관계

6. 수사결과 및 의견

20 . . .

○○경찰서

사법경찰관 ㊞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별지 제172호 서식]

○○○○경찰서

20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　　발 신 : *소속관서*

제 목 : 의견서　　사법경찰관 ○○

피 의 자	
죄 명	
범죄사실	별지와 같음
적용법조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의 견	

[별지 제173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수신*

제 목 : **등록기준지 조회**

다음 사람에 대하여 조사 후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나이*세)
주 거	*주거*
등 록 기 준 지	*등록기준지*
조회의뢰내용	'등록기준지 조회 회답서'에 기재된 항목과 같음

추기 1. 등록기준지, 성명 등에 다소 틀린 점이 있을지라도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에 따라 조사하시고, 만약 등록기준지가 변경되었거나 불명일 때에는 그 취지를 회답서 비고란에 기재하여 회보해 주시기 바라며

2. 범죄경력란이 부족할 때에는 범죄경력란에 "별지와 같다"라고 표기하고 별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73호의 2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수신*

제 목 : 등록기준지 회답

다음과 같이 회보합니다.

성 명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나이*세)
직 업	*직업*
주 거	*주거*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병 역	
재산상황	
특 징	
부모, 형제자매의 성명	

범죄경력	선고연월일	선고법원	죄 명	형명,형기(금액)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74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추송

다음과 같이 추송합니다.

피 의 자	피의자
죄 명	죄명
송치년월일	0000.00.00.
송 치 번 호	송치번호
사 건 번 호	사건번호
추송서류 및 증거품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75호 서식]

인 상 서

제 0000-00000 호 0000.00.00.

성 명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나이세)				
직 업	직업				
주 거	주거				
등 록 기 준 지	등록기준지				
신 장		얼 굴		머리모양	
머 리 색		눈 썹		귀	
눈		입		이	
음 성		수 염		몸 집	
특 징					
도주 당시의 옷					
휴 대 품					
배회또는잠복할 만 한 장 소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리) ○○ (인)

[별지 제176호 서식]

참고인 등 소재수사지휘부

사건번호		송치일자		담당자		과장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죄명					
참고인(고소인, 고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팀장
	성별 및 연령	남·여 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기타 참고사항					
형제번호	형제 호		주입검사			
결정일자			공소시효			
소재수사지휘						

지휘일자	지휘관서	보고일자	보고내용	확인

[별지 제177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검사 : ○○○)

제 목 :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

귀청에서 기소중지된 아래 사람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죄 명		
송치일시		
송치번호		
사건번호		
발견경위 및 의견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78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검사 : ○○○)

제 목 : **참고인등 소재발견 보고**

귀청 0000년 형제 000000 호로 참고인중지된 피의자 ○○○외 ○명에 대한 사건 관련 참고인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

참고인 (피해자,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전 화	(자택) (직장)
대 상 사 건	피 의 자	
	죄 명	
	송치연월일	
	송치번호	
	사건번호	
발 견 경 위		
비 고		
첨 부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79호 서식]

중요범죄사건부		
죄명		
범죄년월일 보고번호	20 . . . 제 호	20 . . . 제 호
범죄방법개요		
피해상황 (피해가격등		
피해자 성명·연령		
피의자 성명·연령		
소할경찰서장		
체포년월일		
체포관서		
비고		

[별지 제180호 서식]

미검거 중요범죄 사건부

죄명		수법	
사건기록번호		보고	20 . . . 제 호
범죄일시	20 . . . : 경부터 20 . . . : 경까지 사이		
발각일시	20 . . . :		
발생장소	(○○경찰서 관내)		
피해자 주거·성명·연령			
피해금품(종류·수량)(시가 등)			
유류물품			
지문·족적 기타 감식자료			
피의자 주거·성명 연령·주민등록번호			
수사방침			

범 죄 사 실 과 수 사 경 과 개 요

< 수사경과개요 >

[별지 제181호 서식]

미검거 중요범죄 사건수사부

죄명		수법	
범죄일시	20 . . . : 경부터 20 . . . : 경까지 사이		
접수일시		보고	20 . . . 제 호
발생장소	(○○경찰서 관내)		
피해자 등록기준지·주거·직업·성명·연령·주민등록번호			
피해금품(종류·수량·시가 등)			
유류물품			
지문·족적 기타 수사 기초 자료			
수사방침			

범 죄 사 실 개 요	
피의자 등록기준지 · 주거 · 직업 · 성명 · 연령 · 인상 · 체격 · 특징 등	
배 회 처 (피의자와의 관계)	
비 고	

수사진행상황(월일·수사전말 기타)

[별지 제182호 서식]

○○○○경 찰 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수신인* 귀하

제 목 :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

귀하와 관련된 사건이 다음과 같이 처리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빠른 피해회복을 기원합니다.

접수일시	*0000.00.00.*	접수번호	*0000-000000*
진행상황	1. 수 사 중 (*선택*) 2. 사건이송 (*선택*) : *이송관서명*(☎ : *전화번호*) 3. 송 치 (*선택*) : *송치관서명*(☎ : *전화번호*) 4. 내사종결 (*선택*)		
주요내용			
담 당 자	*담당자*	소속 및 연락처	*소속 연락처*

※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제도

❒ 형사절차상 권리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권, 수사·재판결과 및 구금사실 등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신청권,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권·재정신청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 재판절차 의견진술권, 심리 비공개 신청권

❒ 지원제도

◦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무료법률구조(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범죄로 인한 심리상담·치료지원(각 지방경찰청 피해자심리전문요원, 지역별 스마일센터)

◦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검찰청 ☎지역번호-1301,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1899-3075),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02-558-1391)

❒ 기타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사항

◦ 범죄행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각급 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접수제도(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보다 자세한 피해자지원 정보 제공

○○○○경 찰 서 장

[별지 제183호 서식]

피 해 자 등 통 지 관 리 표

□ 기본사항

사건번호		죄 명	
피 의 자		피 해 자	
통지대상	피해자와의 관계 : 성 명 : 주민번호 : - (세) 주 소 : 연락처 : - (휴대폰 - -) 이메일 :		
피해자 보호사항 통지		원하는 통지방법	구두, 우편, 전화, FAX, E-mail, 기타 (연락처 :)
원함 ( )	원하지 않음 ( )		

※ 원하는 통지방법 중 하나를 선택 표시하고, 해당 연락처를 기재

□ 통지현황

연번	일 시	주 요 내 용	방 법	비 고	확인

[별지 제184호 서식]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사건번호					
법원사건번호					
피의자(피고인)성명				주임검사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성명			가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주소				
	본인서명	본명		신분	
		가명			
작성원인					
최초작성일자		최초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신원관리카드 접수일자		사건종국 결정일자			

보좌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피보좌인과의 관계	직권신청	신청일자 / 신청인	사법경찰관의 허가신청일자 / 검사의 허가일자	지정일자	지정자	비고
1										
2										

변 호 인	선임기간		성 명	
	선임기간		성 명	

신변안전조치	피의자(피고인)와의 관계 신청인과의 관계	종류	신청(지시·요청)일자 신청(지시·요청)자	조치기관	조치일자	조치사항
1						
2						
3						

구조금지급					
	신청인	성 명(가 명)		범죄신고자등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소		전 화 번 호	
	결정	결정위원회		결 정 일 자	
		결 정 내 용		결정통지일자	
	지급	청 구 일 자		청 구 금 액	
		지 급 일 자		지 급 금 액	

[별지 제185호 서식]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 작성대장

(카드별 기재)

연번	사건번호	죄 명	범죄신고자 등 (가 명)	인계일자 (송치일)	인수자 (서명)

[별지 제186호 서식]

소년환경조사서(소년카드)

<table>
<tr><td>번호</td><td colspan="4">소속관서 년도년도 제 사건번호 호</td><td>구 분</td><td colspan="2">범죄구분</td></tr>
<tr><td rowspan="10">소년</td><td>성명</td><td></td><td>이명</td><td></td><td rowspan="2">국적</td><td colspan="2">내국인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 주민번호)</td></tr>
<tr><td>생년월일</td><td colspan="3">생년월일생
(만 나이 세, 성별)</td><td colspan="2">외국인 외국인 (국적: 국적, 신분: 신분, 체류목적: 체류목적, 등록번호: 등록번호)</td></tr>
<tr><td>직업</td><td></td><td>연락처</td><td></td><td>등록기준지</td><td colspan="2"></td></tr>
<tr><td>학력</td><td colspan="5">학교명학교 학년학년 ■ (퇴학사유: 퇴학사유)</td></tr>
<tr><td>주소</td><td colspan="3"></td><td>생활정도</td><td colspan="2">생활정도</td></tr>
<tr><td>혼인관계</td><td colspan="3">혼인관계</td><td>종교</td><td colspan="2">종교</td></tr>
<tr><td rowspan="5">가족관계</td><td colspan="6">부모</td></tr>
<tr><td>관계</td><td>성 명</td><td>연령</td><td>직업(경제상태)</td><td>연락처</td><td colspan="2">소년에 대한 감호태도, 전과유무 등</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 rowspan="3"></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6">본건비행</td><td>구분</td><td colspan="3">구분</td><td>죄명</td><td>비행내용</td><td></td></tr>
<tr><td>공범관계</td><td colspan="3">공범 유유 (공범과 관계: 공범과의 관계)
무무</td><td>여죄</td><td>비행내용</td><td></td></tr>
<tr><td>범행동기</td><td colspan="3">범행동기</td><td>피해자관계</td><td colspan="2"></td></tr>
<tr><td>범행후은신처</td><td colspan="3">피해자관계</td><td>마약상용</td><td colspan="2"></td></tr>
<tr><td>정신상태</td><td colspan="6"></td></tr>
<tr><td>조치</td><td colspan="6">법원 보호사건 송치송치 검찰 구속 송치송치2 검찰 불구속 송치송치3 기타기타(내용)
- 구속별(긴급체포긴급체포 사전영장사전영장 체포체포 현행범체포현행범체포)
- 불구속별(검사구속취소취소 검사기각기각 불구속입건입건 적부심석방석방 관사기각기각)</td></tr>
<tr><td rowspan="4">비행경력</td><td>전과</td><td colspan="3">전과</td><td>전회처분</td><td colspan="2">전회처분</td></tr>
<tr><td>재범종류</td><td colspan="3">재범종류</td><td>재범기간</td><td colspan="2">재범기간</td></tr>
<tr><td>보호처분</td><td colspan="3">보호처분</td><td>피해자관계</td><td colspan="2"></td></tr>
<tr><td>경찰선도경력</td><td colspan="6">선도프로그램 조치별 (자체 선도프로그램 이수, 사랑의 교실 이수, 표준선도프로그램 이수)
선도심사위원회 처분결정(즉결심판 청구, 훈방)</td></tr>
</table>

재비행위험성평가	비행환경평가	**1. 가족의 구조 ( )점**		1) 가정결손여부: 친부 혹은 친모사망 아니다(0) 그렇다(1)
		부모 이혼, 별거 혹은 가출 아니다(0) 그렇다(1)		독거 아니다(0) 그렇다(1)
		2) 생계를 책임지는 보호자 있음(0) 없음(1)	**2. 가족의 기능적 역할 ( )점**	
		1) 가정불화·냉담 심하지 않음(0) 심함(1)		2) 가족 간 신체 및 언어적 폭력 심하지 않음(0) 심함(1)
		3) 가족 간 심리적 학대 정상(0) 비정상(1)		4) 보호자의 애착 및 관심정도 정상(0) 비정상(1)
		5) 가족 구성원 중 전과자 없음(0) 있음(1)	**3. 학교생활 ( )점**	
		1) 학력 중졸이상 혹은 재학 중(0) 중졸이하 혹은 고퇴(1)		2) 장기결석 혹은 잦은 무단결석 없음(0) 있음(1)
		3) 학교생활적응에 문제 (왕따 피해 혹은 가해경험) 없음(0) 있음(1)		4) 학교에서의 경고나 정학경험 없음(0) 있음(1)
		5) 상급학교 진학예정 있음(0) 없음(1)		6) 교우관계 : 비행을 저질러 경찰서 출입하는 친구 없음(0) 있음(1)
		4. 가출경험 ( )점		1) 가출경험 상습적이지 않음(0) 상습적(1)
		2) 가출하여 어울릴 친구들 없음(0) 있음(1)		3) 가출하여 집단으로 생활해 본 경험 없음(0) 있음(1)
		5. 비행전력 및 환경 ( )점 총전과 수( )회		1) 본 비행 전 지구대 혹은 경찰서 입건 없음(0) 있음(1)
		2) 유죄 판결 전력 없음(0) 있음(1)		3) 소년원 혹은 소년교도소 경력 없음(0) 있음(1)
		4) 보호관찰 위반경력 없음(0) 있음(1)		5) 대인피해전력(본범제외) 폭력, 성범죄, 강도, 살인 등 없음(0) 있음(1)
		6) 본 비행내용 대물피해(0) 대인피해(1)		7) 본 범 사전모의 혹은 계획여부 없음(0) 있음(1)
		8) 비행수법(장물처리 등) 모름(0) 앎(1)		9) 비행전력의 점진적 심각성 없음(0) 있음(1)
		10) 최초 비행연령이 만 10세 이상(0) 이하(1)	**6. 개인적 위험요인 ( )점**	
		1) 술을 마시지 않음(0) 자주 마심(1)		2) 본드나 가스 등을 해본 적이 없음(0) 있음(1)
		3) 술이나 약물에 대한 중독, 남용여부 없음(0) 있음(1)		4) 인터넷 게임 혹은 음란싸이트 중독여부 없음(0) 있음(1)
		5) 성경험으로 인한 문제 없음(0) 있음(1)		6) 성매매 경험 없음(0) 있음(1)
		7) 본범에 대한 책임의식 있음(0) 없음(1)		8) 피해자의 입장이해 잘 이해(0) 이해 못함(1)
		9) 행위의 결과에 대한 인식 인식함(0) 인식 못함(1)		10) 준법의식 있음(0) 없음(1)
		11) 인생목표의 현실성 및 노력정도 열심(0) 노력 없음(1)		12) 인지능력손상 없음(0) 있음(1)
		13) 정서상태 안정(0) 불안정(1)		14) 어려운 일에 대한 대처능력 있음(0) 없음(1)
		15) 충동적 행위 탐닉 없음(0) 있음(1)		16) 분노경험 잘 조절(0) 폭발(1)
		17) 상담 및 조사에 임하는 태도 우량(0) 불량(1)		
		비행척도	□ 낮다(0~10점) □ 약간 높다(11~20점) □ 높다(21점 이상)	
	전문가 참여 결과	검사결과		
		종합의견		
처우의견				
작성자		0000.00.00. 작성 소속관서 소속부서		
		계 급 : 계급 성 명 : 성명 ㊞		

[별지 제187호 서식]

비 행 성 예 측 자 료 표

이름		성 별		비행명 :
		연 령		

비행환경	조사항목	점수	조사항목	점수
	1. 생계담당자		5. 교우관계	
	2. 결손가정		6. 가출경험	
	3. 교육수준		7. 조발비행	
	4. 무단결석		계	

비행환경평가	점수	비행위험 환경요인	체크란
	0-11	낮다	
	12-20	약간 높다	
	21-29	높다	
	30이상	아주 높다	

인성검사	척도	ICN (비일관성)	INF (저빈도)	NIM (부정적인상)	PIM (긍정적인상)	SOM (신체적호소)	ANX (불안)	ARD (불안장애)	DEP (우울)	MAN (조증)	PAR (망상)	SCZ (정신분열병)
	점수											
	척도	BOR (경계선특징)	ANT (반사회적특징)	ALC (음주문제)	DRG (약물사용)	AGG (공격성)	SUI (자살관념)	STR (스트레스)	NON (비지지)	RXR (치료거부)	DOM (지배성)	WRM (온정성)
	점수											

인성검사 소견	
종합 소견	재비행 위험성 : ___① 낮다 ___② 약간 높다 ___③높다 ___④ 매우 높다

작성일자	20 . . .	범죄심리사 ㊞
		범죄심리전문가 ㊞

[별지 제188호 서식] <삭제>

[별지 제189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수 신 : ○○○○법원 소년부

제 목 : 소년보호사건 송치

다음과 같이 송치합니다.

비행소년	성 명	피의자 (한자성명)		이명(별명)		이명(별명)
	생년월일	0000.00.00.생 (만 연령세)		성별	직 업	직업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주 거	주거				
	학 교	0000학교 0학년 0반		담 임		담임
	보호자 성 명	성명		관 계		관계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연 령		연령
	보호자 주 거	주거				
	보호자 전 화	전화번호	핸드폰			핸드폰
비 행 사 건 명		비행사건명				
발 각 원 인		인지 / 고소				
동 행 여 부		유 · 무				
증 거 품		증거품				
비 고		비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비 행 사 실 (일시·장소·동기· 방법·피해액)	*비행사실* *직위(담당자/팀원) 계급*
의 견	*의견* *직위(감독자/팀장이상) 계급*

※ 주 의 : 비행사실에는 사건담당자, 의견란에는 감독자가 서명날인할 것

[별지 제190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수 신 : *관서의장(경찰서장/지방경찰청장)*

참 조 : *부서의장(형사과장/수사과장/생활안전과장등)*

제 목 : 응급조치보고

행위자	성 명	*피의자(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나이세)*
	직 업	*직업*
	주 거	*주거*
	피해자와의 관계	
	가 정 상 황	성명 : 행위자와의 관계 : 주거 :
죄 명		*죄명*
범 죄 사 실 요 지		별지와 같음
피 해 자		*000외 0명*
신 고 자		

위 사람에 대한 *사건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인도(피해자가 동의함)
☐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하여 긴급치료를 받게 함
☐ 폭력행위의 재발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행위자에게 통보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 위반시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소속관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별지 제190호의2 서식]

○○경찰서
(00-0000-0000)

제 0000-00000 호 . . .

수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

제목 : 응급조치 결과 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아래와 같이 응급조치를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피해아동과의 관계	
	주 거			
	다른 가정구성원	성명 : 행위자와의 관계 : 주거 :		
피해아동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 상담원			
응급조치 일시 및 장소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장 소			
응급조치의 내용	[ ]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제12조제1항제1호)		
	[ ]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제12조제1항제2호)		
	[ ]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제12조제1항제3호)		
	[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제12조제1항제4호)		
응급조치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직 급	
피해사실의 요지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별지와 같음		

○○경찰서

사법경찰관리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91호 서식]

가정환경조사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조 사 자	○○경찰서 ○○과 ○○팀

1. 인적사항

사건번호		죄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핸드폰)		학 력		

2. 가족상황

관계	성 명	연령	성별	학 력	직 업	기 타

3. 혼인상황 및 생활환경

혼 인 상 황	
생계비조달방법	
주 거 환 경	

4. 가정폭력상황

최초갈등 발생원인		
본건범행전가정불화 및폭력 횟수		
가정불화 해결을 위한 노력 유무		
본건 범죄의 원인 및 동기		
행위자 심신 상태	음주상황	
	약물복용여부	
	성격문제	
	정신장애유무	
범죄후 정황		

5. 재범의 위험성 및 가정유지 의사 유무

가정유지 의사유무	
임시조치 결정시 기거할 장소 유무	
상담소 상담 희망 여부	
기타 참고사항	
재범위험성	

6. 조사자 의견

[별지 제192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제 목 : **임시조치 신청**

다음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4.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행위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피해자	성 명	
	주 거	
	직 장	
범죄사실 및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192호의2 서식]

긴급임시조치 결정서

제 *0000-000000* 호 2015. 00. 00.

행위자	성 명	000 (*한자*)	주민등록번호	
	직 업	*직업*		
	주 거			
변 호 인		*성명*		

위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함

[*선택*]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선택*]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선택*]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피해자	성 명	
	주 거	
	직 장	

긴급임시조치 결정근거	[*선택*] 피해자 [*선택*]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선택*] 사법경찰관 직권
긴급임시조치 일시 및 장소	일시 : 2015. 00. 00. 00:00 장소 :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및 긴급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참조

00경찰서

사법경찰관 *계급*

범죄사실의 요지 및 긴급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제192호의3 서식]

○○경찰서
(00-0000-0000)

제 0000-00000 호 . . .

수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목 : 임시조치 신청(사전)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니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rowspan="5">아동학대
행위자</td><td>성 명</td><td colspan="3">( )</td></tr>
<tr><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 (세)</td></tr>
<tr><td>직 업</td><td></td><td>피해아동과의
관계</td><td></td></tr>
<tr><td>주 거</td><td colspan="3"></td></tr>
<tr><td>보조인</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피해아동</td><td>성 명</td><td colspan="3"></td></tr>
<tr><td>법정대리인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 상담원</td><td colspan="3"></td></tr>
<tr><td>변호사</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8">임시조치의
내용
(중복신청 가능)</td><td>[ ]</td><td colspan="3">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제19조제1항제1호)</td></tr>
<tr><td>[ ]</td><td colspan="3">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제19조제1항제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td></tr>
<tr><td>[ ]</td><td colspan="3">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19조제1항제3호)</td></tr>
<tr><td>[ ]</td><td colspan="3">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제19조제1항제4호)</td></tr>
<tr><td>[ ]</td><td colspan="3">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제19조제1항제5호)</td></tr>
<tr><td>[ ]</td><td colspan="3">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제19조제1항제6호)</td></tr>
<tr><td>[ ]</td><td colspan="3">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제19조제1항제7호)</td></tr>
<tr><td colspan="2">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td><td colspan="3">별지와 같음</td></tr>
</table>

○○경찰서

사법경찰관(보호관찰관) (서명 또는 인)

○○경찰서
(00-0000-0000)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임시조치 신청(사후)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니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조속히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피해아동과의 관계	
	주 거			
	보 조 인			
피해아동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 상담원			
임시조치의 내용 (중복신청 가능)	[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제19조제1항제1호)		
	[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제19조제1항제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		
	[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19조제1항제3호)		
	[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제19조제1항제4호)		
	[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제19조제1항제5호)		
	[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제19조제1항제6호)		
	[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제19조제1항제7호)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일 시	년 월 일 시 분		
	내 용			
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별첨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또는 긴급임시조치결정서) 기재내용과 같음		

○○경찰서

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92호의4 서식]

긴급임시조치결정서

제 0000-00000 호 . . .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피해아동과의 관계	
	주 거			
피해아동	성 명			
	법정대리인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 상담원			
긴급임시조치 내용	[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제19조제1항제1호)		
	[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제19조제1항제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		
	[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19조제1항제3호)		
긴급임시조치 일시 및 장소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장 소			
범죄사실의 요지 및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별지와 같음		

긴급임시조치 고지	[ ]	본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 ]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고지하였으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함 거부사유 :

년 월 일

○○경찰서

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93호 서식]

임시조치신청부

진행번호				
사건번호			년 제 호	년 제 호
신청일시				
신청자 관직 및 성명				
행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임시조치	검사기각			
	판사기각			
	발부			
	재신청	신청		
		검사기각		
		판사기각		
		발부		
임시조치				
항고	항고제기일			
	등본송부일			
	결정일			
	결정내용			
재항고	재항고제기일			
	결정일			
	결정내용			
비고				

[별지 제194호 서식]

領事機關 通報要請確認書

Date/ Month/ Year

Confirmation of Request for Notification to the Consulate

被逮捕者 姓名	擔當警察官 所屬, 階級, 姓名 印

당신은 귀국에서 파견된 영사관원에게 체포된 사실을 통보·요구할 권리 및 대한민국의 법령 내에서 위 영사관원에 편지를 보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You have the rights to demand us to notify an official in the consulate dispatched by your government that you are arrested and to send a letter to the official pursuant to relevant laws of Republic of Korea.

당신이 원하는 항목의 ( )에 V표를 한 후, 끝으로 공란에 국명을 기입하고 서명해 주십시오.
Choose one between the following alternatives and mark it with V in the parenthesis.
Finally write your nationality(country of origin) and sign underneath.

나는 자국 영사관원에 대한 통보를 요청합니다.
I request you to notify an official in the consulate of my country that I am arrested. ( )

나는 통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I do not request you to notify. ( )

( ) ( )
국 명 피체포자 서명
Nationality(Country of Origin) Signature

※ 注意 : 1. 국명확인은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에 의할 것

通 報 書

년 월 일
본직은 다음과 같이 상기의 외국인을 체포한 것을 영사관에 통보하였음
(1) 통보일시
(2) 통보대상 영사기관

㊞
담당경찰관 소속, 계급, 성명, 인

※ 송치서류에 복사본을 편철할 것

[별지 제195호 서식]

○○○○경찰서

(OOOOO Police station)

전화(Telephone) : *전화번호*

팩스(Fax) : *팩스번호*

수 신(To) : *수신*

제 목(Subject) : **체포(구속) 통보** (Arrest(Detention) Notification)

1. **피의자**(Personal details of the arrested)

   성 명(Name) : *성명* (*영문명*)

   생년월일(Date of Birth) : *0000.00.00.생* (*000000-0000000*)

   여권번호(Passport No.) : *여권번호*

   국적(Nationality) : *국적*

2. **체포일시 및 장소** (Date & Place of arrest)

   체포일시 : *0000.00.00. 00:00*

   체포장소 : *체포장소*

3. **사건개요**(Details of the case)

   사건개요

4. **경찰 조치**(Actions taken by the police)

사법경찰관(Officer in charge) *계급*

[별지 제196호 서식]

○○○○경찰서

(OOOOO Police station)

전화(Telephone) : *전화번호*

팩스(Fax) : *팩스번호*

수 신(To) : *수신*

제 목(Subject) : **사망 통보**(Death Notification)

1. **변사자**(Personal Details of the deceased)

   성 명(Name) : *성명*

   생년월일(Date of Birth) : *0000.00.00.생*

   여권번호(Passport No.) : *여권번호*

   국적(Nationality) : *국적*

2. **발생 일시 및 장소**(Date & Place of occurrence)

   발생일시 : *0000.00.00. 00:00*

   발생장소 : *발생장소*

3. **발생 개요**(Details of the incident)

   사건개요

4. **경찰 조치**(Actions taken by the police)

사법경찰관(Officer in charge) *계급*

[별지 제197호 서식]

보석자 구속집행정지자 관찰부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성명·연령	
주민등록번호	
죄명 및 소속법원	
출소한 교도소 또는 대용감방	
관찰이유 및 통지받은 일자	보석, 구속집행정지, 20 년 월 일
법원에서 부가한 제한 및 조건	

관 찰 상 황

년 월 일	관 찰 상 황	관 찰 자	확 인 자

[별지 제198호 서식]

압 수 부

번 호		범죄사건부 번 호	압 수 연월일	압수물건		소유자의 주거 성명	피압수자의 주거 성명	보관자 확 인	취급자 확 인	처 분		비고
압수부	압수물			품종	수량					연월일	효지	

[별지 제199호 서식]

체포·구속인명부

제 호								
체포·구속	취급자	팀장	과장	서장				
	연월일 및 유형	년 월 일 : 체포영장 년 월 일 : 긴급체포 년 월 일 : 현행범인체포(인수) 년 월 일 : 구속영장 년 월 일 : 즉결심판선고에 의함						
석방	취급자	팀장	과장	서장				
	연월일시	년 월 일 시 분						
	사유							
죄명 및 형명, 형기								
인상	키		몸 집		머리털		눈 썹	
	수 염		이 마		귀		눈	
	입		이		코		용 모	
	얼 굴		얼굴색					
	기타특징							
착의								
체포·구속된 자의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등록기준지							
법죄경력, 죄명, 법수								
공범관계자성명								
가족관계								

[별지 제200호 서식]

범 죄 사 건 부

사건번호		년 범죄 제 호	년 범죄 제 호
수리		. . . :	. . . :
구분		고소·고발·자수·신고· 현행범·기타	고소·고발·자수·신고· 현행범·기타
수사담당자			
피의자	성명 및 성별 주민등록번호 (또는생년월일) 직업 주거	(남·여)	(남·여)
조회		컴퓨터·지문·사진·수법· 지명 기타	컴퓨터·지문·사진·수법· 지명 기타
죄명	수리		
	송치		
범죄	일시	. . . :	. . . :
	장소		
피해정도			
피해자			
체포·구속	체포영장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구속영장		
	인치구금	경찰서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
석방일시 및 사유			
송치	년월일	. . .	. . .
	번호	제 호	제 호
	의견		
압수번호		압 제 호	압 제 호
수사미결사건철번호		제 호	제 호
검사처분	년월일	. . .	. . .
	요지		
판결	년월일	. . .	. . .
	요지		
비고			
범죄원표	발생사건표	. . . 제 호	. . . 제 호
	검거사건표	. . . 제 호	. . . 제 호
	피의자표	. . . 제 호	. . . 제 호

년 범죄 제 호	년 범죄 제 호	년 범죄 제 호
. . . :	. . . :	. . . :
고소·고발·자수·신고· 현행범·기타	고소·고발·자수·신고· 현행범·기타	고소·고발·자수·신고· 현행범·기타
(남·여)	(남·여)	(남·여)
컴퓨터지문사진수법 지명 기타	컴퓨터지문사진수법 지명 기타	컴퓨터지문사진수법· 지명 기타
. . . :	. . . :	. . . :
경찰서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
. . .	. . .	. . .
제 호	제 호	제 호
압 제 호	압 제 호	압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 . .	. . .	. . .
. . .	. . .	. . .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별지 제201호 서식]

○○○○경 찰 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수 신 : *관서의장(경찰서장/지방경찰청장)*

참 조 : *부서의장(형사과장/수사과장/생활안전과장등)*

제 목 : **피의자체포보고**

피의자 ***피의자외 O명***에 대한 ***죄명***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체포하였기 보고합니다.

1. 체포일시 및 장소

일 시 : *0000.00.00. 00:00*

장 소 : *체포장소*

2. 피의자 인적사항

이 름 : *한글성명*(*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연령*세)

직 업 : *직업*

주 거 : *주거*

등록기준지 : *등록기준지*

3. 범죄사실

범죄사실

4. 체포경위

체포경위

5. 증거자료의 유무

증거자료유무

6. 조 치

조치

경 로	수사지휘 및 의견	구분	결 재	일시
직위 성명				*0000.00.00. 00:00*
직위 성명				*0000.00.00. 00:00*
직위 성명				*0000.00.00. 00:00*
직위 성명				*0000.00.00. 00:00*

[별지 제202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수신*

제 목 : **입치증명**

다음과 같이 임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연 번	물 건	수 량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203호 서식]

전 자 적 처 리 동 의 서

성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소		
주 거	주거		
진행사항 통지방법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록 아이디 (id)		
	휴 대 폰	전자우편	
	통지수단	□ 휴대폰문자서비스	□ 전자우편(e-mail)

1. 동의를 하게되면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4조에 따라 사건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2. 통지방법에서 선택한 휴대폰문자서비스 또는 전자우편은 법률에 따라 약식명령이나 그 밖에 소송에 관한 서류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 등재되었음을 알리는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3. 통지를 받은 후 위에 기재된 아이디(id)로 로그인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초기비밀번호는 위에 등록된 휴대폰문자서비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됩니다.
4. 약식명령을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만일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면 **등재사실을 알린 날부터 2주가 지난때에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됩니다.**
5. 법률 제4조에 따라 전자약식처리절차로 사건이 처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서면 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기 전까지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동의를 하였어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률 제3조 제3항에 해당되는 사건은 법률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며, 동 법률에 따라 약식명령 등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받는 것을 원합니다.

0000.00.00.

신 청 인(피의자) :

작 성 자 : 계급

[별지 제204호 서식]

현 장 감 식 결 과 보 고 서

결재	담 당	팀 장	계 장

제 2015-000000 호

범죄유형		KICS접수번호		사건담당		
발생일시	~					
발생장소						
감식일시	시작		종료		기상상태	
사건개요						
현장상황						
감식사항						

<table>
<tr><td rowspan="6">채증물
처리현황</td><td>지문</td><td colspan="3"></td></tr>
<tr><td>족적</td><td colspan="3"></td></tr>
<tr><td>DNA</td><td colspan="3"></td></tr>
<tr><td>미세증거</td><td colspan="3"></td></tr>
<tr><td>CCTV</td><td colspan="3"></td></tr>
<tr><td>기타</td><td colspan="3"></td></tr>
<tr><td>참고사항</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6">감정결과</td><td>지문</td><td colspan="3"></td></tr>
<tr><td>족적</td><td colspan="3"></td></tr>
<tr><td>DNA</td><td colspan="3"></td></tr>
<tr><td>미세증거</td><td colspan="3"></td></tr>
<tr><td>CCTV</td><td colspan="3"></td></tr>
<tr><td>기타</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6">현장감식
실시자</td><td colspan="2">소 속</td><td>직급</td><td>성명</td></tr>
<tr><td colspan="2"></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r>
<tr><td colspan="5">2000. 00. 00.

경찰청 수사국

작 성 자 .</td></tr>
</table>

채 증 물 현 황

연번	채취일시	채증물	수량	기법 · 장비	장소 · 부위	보관장소
1						
2						
3						
4						
5						
6						
7						

[별지 제205호 서식]

변 사 자 조 사 결 과 보 고

결재	담 당	팀 장	과 장

제 0000-0000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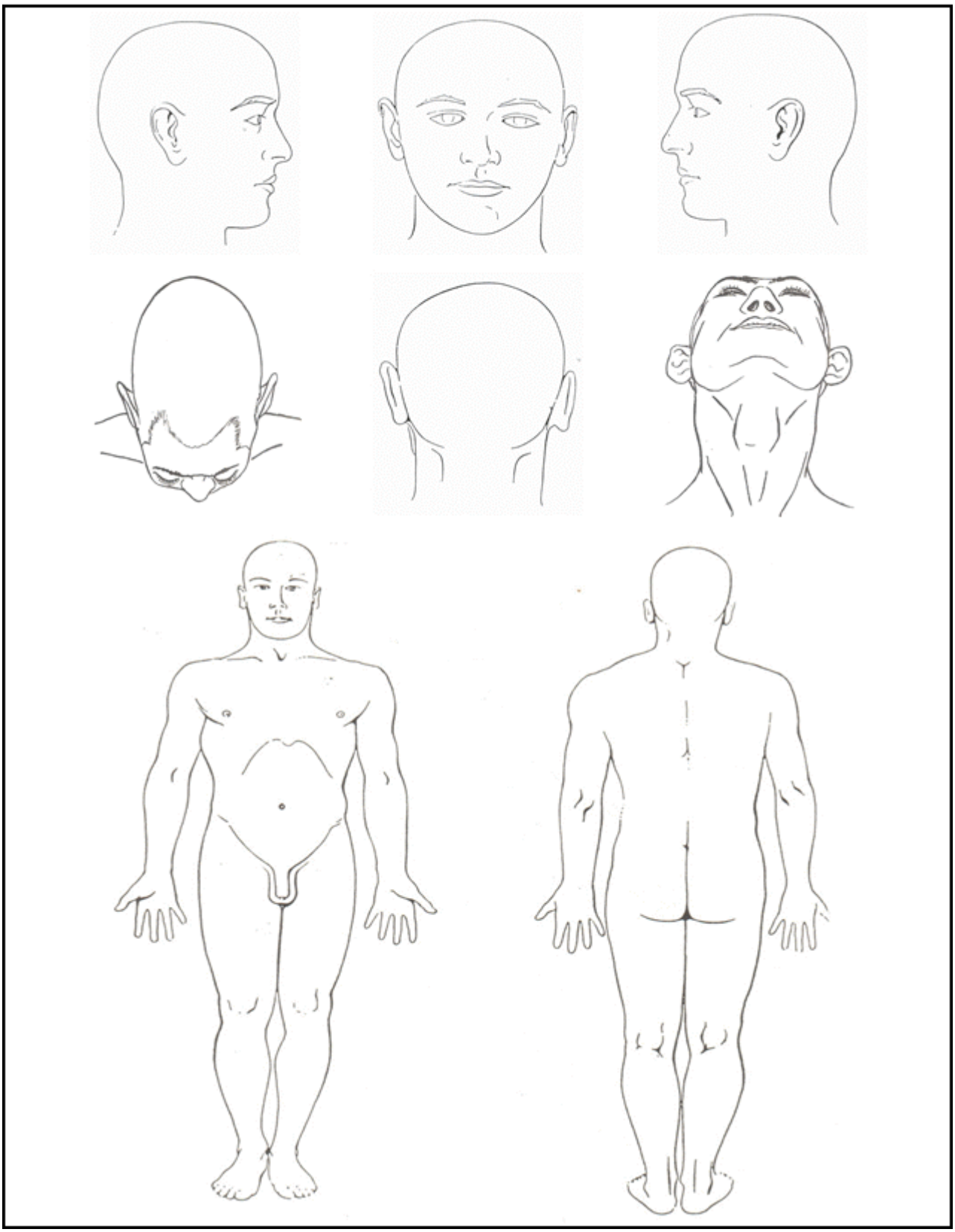
접수번호	0000-0000	관할경찰서		사건담당	
변사자	성 명		생년월일	0000.00.00(00세, 남/여)	
	직 업		국적		
	주소지				
발생일시	0000.00.00.00:00 ~ 0000.00.00.00:00				
발생장소					
조사일시	시 작	0000.00.00.00:00	종 료	0000.00.00.00:00	
조사장소					
사건개요					
조사내용					
현장상황					
의 견					

20 . . .

○○○○지방경찰청

검시조사관 ○○○○○ ○ ○ ○ ㊞

변 사 자 손 상 도



[별지 제206호 서식]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가해자명:_____ (. . 生)
피해자명:_____ (. . 生)
가해자-피해자 관계: _____

요인	평가문항			결정문항
당해사건 심각성	**1. 폭행 심각도***	하(1)	중(2)	**상(3)**
	2. 현재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위반*	없음(0)		**있음(1)**
	3. 혼란스러운 사건현장	없음(0)	있음(1)	
	4. 가해자 통제 어려움(현장출동 경찰관에 욕설 등 난동)	없음(0)	있음(1)	
피해자 심리상태	5. 현재 심리적 혼란상태	없음(0)	있음(1)	
	6. 폭력이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	없음(0)		**있음(1)**
가정폭력 전력	**7. 가정폭력의 빈도 [본 건 제외]***	없음(0)	1~2회(1)	**3회 이상(2)**
가해자 성격 심리적 특성	8. 폭력의 원인 제공자로 피해자 비난 (폭력 정당화 시도)	없음(0)	있음(1)	
	9. 갑자기 화를 내는 등의 심한 감정기복	없음(0)	있음(1)	
	10. 음주 문제 (알코올 중독 또는 폭력 당시 주취 여부)	없음(0)	있음(1)	
<고위험 **가해자** 분류> * 총점이 **7점 이상**일 경우 * 총점에 상관없이 **결정문항***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총점: [/13점]**		

<조사자 의견>

※ 기재 권장사항

: 사건발생과정, 신고경로 및 신고인, 지각된 피해 수준, 사건처리방향(훈방, 입건) 등

※ 재범위험성 평가: 상 중 하

조사일시: 년 월 일 **조사자:** **소속/직위:**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채점 가이드라인]

- 반드시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평가하시오 -

1. 폭행 심각도

- 여러 가지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그 중 가장 심각한 행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아래에 제시된 평가 기준은 권장사항일 뿐이며,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달리 판단할 근거가 충분히 존재할 경우 그것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자 의견' 란에 사유 기재)

하 (1점)	신체적 피해 없이 단순한 기물파손, 언어적 폭력에 국한되는 경우 (예: 고함, 욕설, 강요하기, 말로 위협하기 등)
중 (2점)	신체적 피해 있으나 전문의 치료를 요할 만큼 심하지 않은 경우 (예: 밀치기, 손바닥으로 때리기, 머리 채 잡기, 물건 던지기 등)
상 (3점)	도구 사용이나 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는 경우 (예: 흉기/둔기 등 도구를 사용한 위협 및 폭력, 주먹/발 등을 사용한 구타 등)

2. 현재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위반

- 본 건이 접근금지명령 등 임시조치나 보호처분 기간 중에 다시 발생한 것인가에 대하여 평가한다.

3. 혼란스러운 사건현장

- 가정폭력 현장에 파손된 가구나 깨진 유리, 어질러진 가재도구 등 폭행으로 인한 잔여물이 관찰되는지 평가한다.

4. 가해자 통제 어려움

- 가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 난동 등의 행위를 보였는가를 평가한다.

5. 현재 심리적 혼란상태

-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긴장, 초조, 불안감 등을 현저하게 보이는가에 대하여 평가한다. 현장 출동 당시, 피해자가 안절부절 하거나, 겁에 질린 태도/표정, 또는 멍한 상태가 관찰되면 점수를 부여한다.

6. 폭력이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

- 신고한 것에 대해 가해자가 보복을 하거나 계속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예감을 피해자가 느끼는지를 평가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격리 등 사법경찰관의 적극적인 사건 개입을 요구하는 경우, 점수를 부여한다.

7. 가정폭력의 빈도

- 본 건을 제외하고, 과거 동일한 가해자에 의한 가정폭력은 몇 번 정도였는지 그 횟수를 평가한다.
(인근 주민이나 지인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조사자 의견' 란에 추가 기재)

8. 폭력의 원인 제공자로 피해자 비난

- 피해자의 평소 행실, 습관 등을 원인으로 앞세워 가해자가 자신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9. 갑자기 화를 내는 등의 심한 감정기복

- 평소에 가해자가 갑자기 화를 내는 등 감정기복이 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한다.

10. 음주 문제

- 가해자가 알코올 남용(혹은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이거나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한 약물 치료 경험이나 병원 입원 전력 등이 있는지, 또는 폭력 당시 주취 상태였는지를 평가한다.

(별지 제207호 서식)

긴 급 임 시 조 치 확 인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세)

주 거 :

본인은 . . . 00:00경 에서 아래 항목의 긴급임시조치 결정에 대해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

위 ○ ○ ○ (인)

위 대상자에 대해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하면서, 당해 내용을 고지 하였음을 확인함(정당한 이유없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함).

. . .

○ ○ 경찰서

사법경찰관리 ○○ ○ ○ ○ (인)

[별지 제208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몰수·부대보전 신청**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몰수·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 금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령*세)
	직 업	*직업*
	주 거	*주거*
죄 명		*죄명*
피의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몰수 부대보전의 근거법령 조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제33조 제1항·제2항
몰수 보전 관계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주소와 재산의 장부 상 채무자의 성명·주소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사유*
부대 보전 관계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지방법원 ○○○○년 제○○○○호*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3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	*사유*

○○○○경찰서

사법경찰관 ○○

[별지 제209호 서식]

몰수·부대보전 신청부

진행번호		제 호	제 호
성명			
죄명			
사건번호		년 형 제 호	년 형 제 호
사건명			
검사			
신청관서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관리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사법경찰관 신청	신청일	. . .	. . .
	기각일	. . .	. . .
검사청구	청구일	. . .	. . .
	결정일	. . .	. . .
	효지		
사법경찰관 재신청	신청일	. . .	. . .
	기각일	. . .	. . .
검사재청구	청구일	. . .	. . .
	결정일	. . .	. . .
	효지		
결정문수령일		. . .	. . .
수령자의 직급·성명·날인			
항고	제기일		
	결정일		
	효지		
재항고	제기일		
	결정일		
	효지		
종국연월일		. . .	. . .
몰수·부대 보전부 번호		몰수 년 제 호 부대	몰수 년 제 호 부대
비고			

[별지 제210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입국·상륙절차 특례 신청**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외국인을 입국·상륙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입국·상륙절차의 특례조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성 명	*성명* (*영문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연령*세)	성 별	*성별*
	국 적			
마약류의 분산 방지 및 도주방지를 위한 감시체제의 상황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별지 제211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체류 부적당 통보 신청**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외국인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통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성 명	*성명* (*영문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연령*세)	성 별	*성별*
	국 적			
입국(상륙) 허가일자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별지 제212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세관절차 특례 신청**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마약류가 *외국으로 반출될 / 우리나라로 반입될* 필요가 있으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세관절차의 특례조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의 특정	
마약류의 분산 방지를 위한 감시체제의 상황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별지 제213호 서식]

특례조치 등 신청부(0000-000000)

입국·상륙 등 요청·통보 관련					세 관 요 청 관 련		
대상자	성 명				마 약 류		
	생년월일	. . . (세)	성 별	남·여			
	국 적						
요청관련	사법경찰관 신 청	신 청 일	. . .		사법경찰관 신 청	신 청 일	. . .
		기 각 일	. . .			기 각 일	. . .
	사법경찰관 재 신 청	신 청 일	. . .		사법경찰관 재 신 청	신 청 일	. . .
		기 각 일	. . .			기 각 일	. . .
통보관련	사법경찰관 신 청	신 청 일	. . .		비 고		
		기 각 일	. . .				
	검사통보	통 보 일	. . .				
		처리결과	. . .				
비 고							

[별지 제214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 지휘 건의

다음 사람에 대하여 *출국금지·출국정지·입국시통보* 요청하고자 합니다.

사건번호		*사건번호*			
인적사항	성명	*피의자*			
	주거	*주거*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직업	*직업*		성별	*남·여*
	여권번호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죄명		*죄명*			
범죄사실		*범죄사실*			
사유		*사유*			
기간		*기간*			
비고		*비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별지 제215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

아래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합니다.

접 수 일 자		접수일자
사 건 번 호	검 찰	검찰사건번호
	경 찰	경찰사건번호
죄 명		죄명
피 의 자		OOO외O명
수사진행내역		수사진행내역
연 장 사 유		연장사유
연 장 기 간		

○○○○경찰서

사법경찰관 ○○

[별지 제216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건의**

다음 유가증권은 ○○○에 대한 ○○ 피의사건의 증거품인 바, 원형보존의 필요여부에 대하여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유가증권종류	유가증권번호	비 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

[별지 제217호 서식]

피의자 소재발견 처리부

번 호	1	2	3
피 의 자			
소 재 발 견 일 자			
소 재 발 견 사 유 (검거, 재기신청)			
소 재 발 견 보 고 일			
죄 명			
수 배 해 제 일 자			
재 기 전 사 건 번 호			
송 치 일 (송 치 의 견)			
담 당 자			
비 고			

[별지 제218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 보고

별지 허가서를 다음의 이유로 반환합니다.

허가서 종 별		
허가서 발부일		
허가서 번 호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죄 명		
집행불능의 사유		
첨 부 : 허가서		

○○○○경찰서

사법경찰관 ○○

[별지 제219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검사 :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반환 보고

별지 허가서를 다음의 이유로 반환합니다.

허가서 종 별		
허가서 발부일		
허가서 번 호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죄 명		
집행불능의 사유		
첨 부 : 허가서		

○○○○경찰서

사법경찰관 ○○

[별지 제220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기간연장신청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기간연장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거	*주거*
	직 업	*직업*
허가받은 대상 및 범위		
연장할 기간		
기간연장이 필요한 이유 및 소명자료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221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수신 귀하

제 목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

당서 제 0000-000000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압수·수색·검증영장번호	
압수·수색·검증집행기관	
전기통신가입자	
압수·수색·검증 집행의 대상과 종류	
압수·수색·검증 집행대상의 범위	

○○○○경찰서

사법경찰관 ○○

[별지 제222호 서식]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연번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건				통지일	비고 (반송등)
	영장 번호	통지 대상자	집행자의 관직·성명	사건 번호	처리일자 및 처리결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		

[별지 제223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수신*

참 조 : *참조*

제 목 : 수사결과보고

○○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하였기에 결과보고합니다.

1. 피의자 인적사항

2.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3. 범죄사실

4. 적용법조

5. 증거관계

6. 수사결과 및 의견

7. 수사참여경찰관

경 로	수사지휘 및 의견	구분	결 재	일시

[별지 제224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장 (검사 : ○○○)

제 목 : 수사지휘건의

아래 사건에 대하여 수사지휘를 건의합니다.

접수일자	*접수일자*		**사건번호**	*사건번호*
죄명	*죄명*			
피의자	**성명**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거			

건 의 내 용

○○○○경찰서

사법경찰관 ○○ (인)

[별지 제225호 서식]

○○○○경찰서

제 *0000-000000* 호 20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행협 담당검사)

제 목 : **한미행정협정사건 발생 보고**

아래와 같이 *미군인/미군속/미군가족* 등의 범죄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피의자 인적사항

성 명 :
소 속 :
군 번 :
주민등록번호 :
사회보장번호 :
주 거 :
국 적 :

2. 피해자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거 :

3. 범죄사실

범죄사실

○○○○경찰서

사법경찰관 ○○

[별지 제226호 서식]

<table>
<tr><td colspan="3">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td><td>팀장</td><td></td><td>대장</td><td></td></tr>
<tr><td rowspan="9">피해아동</td><td>이 름</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성 별</td><td>[ ]남 [ ]여</td><td>연 령</td><td colspan="3">만 세(개월)</td></tr>
<tr><td>거주지</td><td></td><td>교육기관명</td><td colspan="3"></td></tr>
<tr><td>외상유무</td><td colspan="2">[ ]있음 [ ]없음</td><td>외상정도</td><td colspan="2">[ ]중상 [ ]경상</td></tr>
<tr><td>치료경력</td><td colspan="2">[ ]있음 [ ]없음</td><td>치료내용</td><td colspan="2"></td></tr>
<tr><td>표정</td><td colspan="5">[ ]어두움 [ ]밝음 [ ]무표정 [ ]기타</td></tr>
<tr><td>의복</td><td colspan="5">[ ]더러움 [ ]경범함 [ ]깨끗함 [ ]미착용</td></tr>
<tr><td>행동</td><td colspan="5">[ ]자연스러움 [ ]약간 자연스러움 [ ]부자연스러움 [ ]숨거나 회피함</td></tr>
<tr><td>장애여부</td><td colspan="5">[ ]지적장애 [ ]신체장애 [ ]지적+신체장애 [ ]기타</td></tr>
<tr><td rowspan="4">학대의심자</td><td>이 름</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거주지</td><td colspan="2"></td><td>연락처</td><td colspan="2"></td></tr>
<tr><td>직 업</td><td colspan="5">[ ]관리직 [ ]전문직 [ ]기술직 [ ]사무직 [ ]서비스직 [ ]노무직 [ ]공무원 [ ]무직</td></tr>
<tr><td>아동과의 관계</td><td colspan="5">[ ]친부 [ ]친모 [ ]계부 [ ]계모 [ ]양부 [ ]양모 [ ]친인척 [ ]대리양육자 [ ]기타</td></tr>
<tr><td rowspan="6">가정환경</td><td>청소상태</td><td colspan="5">[ ]깨끗함 [ ]보통 [ ]더러움</td></tr>
<tr><td>거주상태</td><td>[ ]자택</td><td>[ ]전세</td><td>[ ]보증금+월세</td><td>[ ]월세</td><td>[ ]영구임대</td><td>[ ]기타</td></tr>
<tr><td rowspan="2">가족유형</td><td>[ ]친부모</td><td>[ ]한부모</td><td>[ ]미혼부모</td><td>[ ]재혼가정</td><td>[ ]친인척 보호</td><td>[ ]사실혼 가정</td></tr>
<tr><td>[ ]위탁가정</td><td>[ ]입양가정</td><td>[ ]시설보호</td><td>[ ]소년소녀가장</td><td>[ ]기타</td><td>[ ]파악안됨</td></tr>
<tr><td rowspan="4">가족관계</td><td>이름</td><td>생년월일</td><td>직업(학교)</td><td colspan="2">동거여부</td><td>연락처</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 ]동거 [ ]비동거</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 ]동거 [ ]비동거</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 ]동거 [ ]비동거</td><td></td></tr>
<tr><td rowspan="6">학대의심내용</td><td rowspan="2">[ ]신체학대</td><td>[ ]세게 흔듦</td><td>[ ]묶음</td><td>[ ]아동 던짐</td><td>[ ]조름·비틂</td><td>[ ]꼬집거나 물</td></tr>
<tr><td>[ ]벽에 부딪힘</td><td>[ ]물건던짐</td><td>[ ]흉기로 찌름</td><td>[ ]화상</td><td>[ ]기타</td></tr>
<tr><td rowspan="2">[ ]정서학대</td><td>[ ]소리 지름</td><td>[ ]무시나 모욕</td><td>[ ]무관심</td><td>[ ]언어폭력</td><td>[ ]가정폭력 노출</td></tr>
<tr><td>[ ]집밖으로 쫓음</td><td>[ ]비현실 강요</td><td>[ ]수면 금지</td><td>[ ]공포분위기</td><td>[ ]기타</td></tr>
<tr><td rowspan="2">[ ]성학대</td><td>[ ]신체관찰</td><td>[ ]성관계 노출</td><td>[ ]성기노출</td><td>[ ]자위노출</td><td>[ ]신체추행</td><td>[ ]구강추행</td></tr>
<tr><td>[ ]성기추행</td><td>[ ]구강성교</td><td>[ ]성기삽입</td><td>[ ]음란물노출</td><td>[ ]성매매</td><td>[ ]기타</td></tr>
<tr><td>[ ]방임(유기)</td><td>[ ]
물리적방임</td><td>[ ]
의료적방임</td><td>[ ]
교육적방임</td><td>[ ]가출 후 찾지 않음</td><td>[ ]출생 신고안함</td><td>[ ]유기</td><td>[ ]기타</td></tr>
<tr><td>조치결과</td><td colspan="6">현장종결 : [ ] 혐의없음 [ ] 오인신고 [ ] 종복신고 [ ] 재신고 [ ] 허위신고 [ ] 기타
응급조치 : [ ] 범죄행위 제지 [ ] 학대행위자 격리 [ ] 보호시설 인도 [ ] 의료기관인도
긴급임시조치 : [ ] 퇴거 등 격리 [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아동보호전문기관 통보여부 : [ ] 통보 [ ] 미통보
참고사항 :</td></tr>
<tr><td colspan="7">신고접수번호 : 작성일시 : 년 월 일 시 분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계급 성명 (인)
계급 성명 (인)</td></tr>
</table>

[별지 제227호 서식]

축약형 학대 위험도 평가척도

아동명 : (□남 □여 / (만)연령 : 세)

학대행위자명 : (아동과의 관계 :)

적용일 : . . . 적용자 : (소속 :)

	평 가 문 항	점수		결정문항
1	아동에게 신체 외부 손상이 관찰되거나 신체 내부의 손상 혹은 정서적 피해가 의심된다.	아니오 (0)	예 (1)	□ 즉각적인 처치필요
2	아동의 주거 환경에 아동의 건강이나 안전상의 위험요소가 있다. (예 : 깨진 유리나 술병, 낙상 위험이 있는 가옥 구조, 보호자 없이 아동 방치, 노숙 등)	아니오 (0)	예 (1)	□ 36개월 미만(비학대보호자 부재)
3	아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보호를 요구하는 의사를 표현한다.	아니오 (0)	예 (1)	
4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비학대행위자)가 없다.	아니오 (0)	예 (1)	
5	학대행위자가 학대행위로 인해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본 건 제외)	아니오 (0)	예 (1)	□ 현재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위반
6	학대행위자가 학대행위의 개선에 대해 노력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아니오 (0)	예 (1)	
7	학대행위자가 학대행위의 중단을 위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에 대해 저항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아니오 (0)	예 (1)	□ 폭행, 협박, 위계, 위력

<적용기준>
* 총점이 3점 이상일 경우 조치 고려
* 총점과 상관없이 '결정문항'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조치 실시

총점 (/ 7점)

적용자 의견	** 상기 문항에 없는 기타 위험 사항, **조치결정사항 및 그 사유** 등을 기재*

[별지 제228호 서식]

피해아동 위험도 평가척도

아동명 : (□남 □여 / (만)연령 : 세)
학대행위자명 : (아동과의 관계 :)

적용일 : . . . 적용자 : (소속 :)

요인		평 가 문 항	점수		결정문항
학대 심각성 및 지속성	1	아동에게 신체 외부 손상이 관찰되거나 신체 내부의 손상 혹은 정서적 피해가 의심된다.	아니오 (0)	예 (1)	□ 즉각적인 처치필요
	2	아동의 주거 환경에 아동의 건강이나 안전상의 위험요소가 있다. (예 : 깨진 유리나 질병, 낙상 위험이 있는 가옥 구조, 보호자 없이 아동 방치, 노숙 등)	아니오 (0)	예 (1)	□ 36개월 미만 (비학대보호자 부재)
	3	아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2회 이상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	아니오 (0)	예 (1)	
	4	방임을 포함한 학대로 초래된 발육부진이나 영양실조, 혹은 비위생 상태가 관찰된다.	아니오 (0)	예 (1)	
피해아동의 욕구 및 특성	5	아동이 학대행위자에 대해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표현한다.	아니오 (0)	예 (1)	
	6	아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보호를 요구하는 의사를 표현한다.	아니오 (0)	예 (1)	
	7	아동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미약하다. (예 : 어린 나이, 심신 장애, 만성질환 등)	아니오 (0)	예 (1)	
생활 환경	8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비학대행위자)가 없다.	아니오 (0)	예 (1)	
	9	학대행위자가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에게 접근할 여지가 많다.	아니오 (0)	예 (1)	□ 성학대 행위자와 동거
<적용기준> * 총점이 4점 이상일 경우 조치 고려 * 총점과 상관없이 '결정문항'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조치 실시				총점 (/ 9점)	

적용자 의견	* 상기 문항에 없는 기타 위험 사항, ***조치결정사항 및 그 사유*** 등을 기재

학대행위자 위험도 평가척도

요인		평 가 문 항	점수		결정문항
학대 심각성 및 지속성	1	학대행위자가 아동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아동을 위험한 상황에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오 (0)	예 (1)	
	2	학대행위자가 학대행위로 인해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본 건 제외).	아니오 (0)	예 (1)	□ 현재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위반
학대에 대한 인식	3	학대행위자가 학대 및 체벌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아니오 (0)	예 (1)	
	4	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있다.	아니오 (0)	예 (1)	
	5	학대행위자가 아동의 행동 등 다른 이유를 주장하면서 학대행위의 정당화를 시도한다.	아니오 (0)	예 (1)	
	6	학대행위자가 학대행위의 개선에 대해 노력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아니오 (0)	예 (1)	
	7	학대행위자가 학대행위의 중단을 위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에 대해 저항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아니오 (0)	예 (1)	□ 폭행, 협박, 위계, 위력
학대 행위자 특성	8	학대행위자가 알코올 및 정신건강 상의 문제로 인해 아동을 방임하거나 학대한다.	아니오 (0)	예 (1)	
	9	학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가정 내 만성적 스트레스가 있다.	아니오 (0)	예 (1)	
	10	학대행위자가 아동의 양육에 어려움을 갖고 있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부족하다.	아니오 (0)	예 (1)	

<적용기준>
* 총점이 5점 이상일 경우 조치 고려
* 총점과 상관없이 '결정문항'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조치 실시

총점
(/ 10점)

적용자 의견	** 상기 문항에 없는 기타 위험 사항, **조치결정사항 및 그 사유** 등을 기재*

[별지 제229호 서식]

임시조치 통보서 (가정폭력)

0000. 00. 00.

1. 행 위 자

성 명 : 000 (00세, 성별)

주 거 :

2. 피 해 자

성 명 : 000 (세, 성별)

주 거 :

직 장 :

3. 임시조치 통보일시· 장소 및 방법

일시· 장소: 0000. 00. 00.(요일) 00:00, 장소

방 법 : 0000 (예시 : 대상자 대면하여 통보, 전화상 통보 등)

4. 임시조치 결정내용 및 기간 (0000.00.00 ~ 0000.00.00, 00법원)

[ ] 1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 2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 3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전기통신: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헌·음향 또는 영상 송수신

[ ] 4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 5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5. 담 당 자

소 속 : 00경찰서 00과 00계

성 명 : 계급 000

※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가정폭력특례법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임시조치 5호(유치장·구치소 유치) 신청 또는 제65조 제4호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함께 통보

※ 적의한 방법으로 임시조치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서는 수사기록에 편철

[별지 제229호의2 서식]

임 시 조 치 통 보 서

대상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직 업		피해아동과의 관계	
	주 거			
피해아동	성 명			
	생년월일			
	주 거			
조치 내용	[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1호)		
	[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2호) 기준지: [ ]주거 [ ]학교·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그 밖의 장소( )		
	[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호)		
	[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4호)		
	[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5호)		
	[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6호)		
	[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7호)		
통보일시 및 장소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장 소			

통보 방법	[ ]	대면 통보
	[ ]	전화통보(전화번호 :)

년 월 일

○○경찰서

사법경찰관(리)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30호 서식]

가명진술서 등 승인 확인서

년 월 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명진술서 등의 작성을 승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가명진술서 등 작 성 자 (가 명)	
승 인 사 유	

년 월 일

소속 직위(직급) 성명 ㊞

[별지 제231호 서식]

<table>
<tr><td colspan="5">수 신 : ○○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미기재사유보고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보고합니다.</td></tr>
<tr><td>사 건 번 호</td><td colspan="4"></td></tr>
<tr><td>신원관리카드
관 리 번 호</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대 상 자
인 적 사 항</td><td>성 명(가명)</td><td></td><td>신 분</td><td></td></tr>
<tr><td>신변안전조치해
당 여 부</td><td></td><td>피의자와의
관 계</td><td></td></tr>
<tr><td>미 기 재 원 인</td><td colspan="4">대상자 ○○○(법정대리인 ○○○)의 신청, 직권</td></tr>
<tr><td>서 류 명 및
미 기 재 내 용</td><td colspan="4"></td></tr>
<tr><td>미 기 재 사 유</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년 월 일

소속 직위(직급) 성명 ㊞</td></tr>
</table>

[별지 제232호 서식]

가명조서 등 불작성사유 확인서

년 월 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명조서 등 작성신청이 있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건번호	
죄명	
가명조서 등 작성신청자	
불작성사유	

년 월 일

소속 직위(직급) 성명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7>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이하 "판사"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94·7·27>

제3조(즉결심판청구) ①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개정 1991.11.22, 2014.11.19>
②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2009.12.29>

제3조의2(관할에 대한 특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7·27]

제4조(서류·증거물의 제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청구의 기각등) ①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6조(심판)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판사는 제5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제7조(개정) ①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1996·8·8, 2014.11.19>

②법정은 판사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열석하여 개정한다. <개정 1991、11、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제4조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다만,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피고인의 출석)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1、11、22]

제8조의2(불출석심판)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이하 "피고인등"이라 한다)는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11、22]

제9조(기일의 심리) ①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②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제2항의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증거능력)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2조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1、22, 2007.12.21>

제11조(즉결심판의 선고) ①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22>
②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선고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22>
③피고인이 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2항의 기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의2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부기한 즉결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의 경우에 피고인등이 미리 즉결심판서의 등본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1、22>

⑤판사는 사건이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고지할 수 있다.

제12조(즉결심판서) ①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문,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기록작성을 생략하고 즉결심판서에 선고한 주문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한다.

제13조(즉결심판서등의 보존)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가 이를 보존한다. <개정 1996、8、8, 2014.11.19>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22>
②경찰서장은 제11조제5항의 경우에 그 선고、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22>
③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22>
④형사소송법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4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 제454조,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즉결심판의 실효)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16조(즉결심판의 효력)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제17조(유치명령등) ①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8、8, 2014.11.19>
②집행된 유치기간은 본형의 집행에 산입한다.
③형사소송법 제334조의 규정은 판사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형의 집행) ①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구류는 경찰서유치장·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하며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할 때에는 검사가 이를 지휘한다.

③벌금, 과료, 몰수는 그 집행을 종료하면 지체없이 검사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 확정후 상당기간내에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형의 집행정지는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9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4131호,1989.6.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송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송치명령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각으로 본다.

③(정식재판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선고·고지된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398호,1991.1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4765호,1994.7.27>(법원조직법)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7조, 제29조, 제31조의 개정규정중 시·군법원에 관한 사항 및 제33조, 제3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의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중 예비판사에 관한 사항과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제3조,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의2, 제10조, 제14조, 제28조, 제44조의 개정규정중 특허법원, 특허법원장, 행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장에 관한 사항 및 제3편제2장(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4), 제3편제5장(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4) ,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42조의4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

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한다.

제3조 (시·군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군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순회심판소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각 해당 시·군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관할에 대한 특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속 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원조직법 제34조에 의한"을 삭제한다.

제2조중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순회판사"를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로,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군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순회심판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군법원으로 본다.

②부칙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2조의4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조사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보좌관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정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경위로 본다.

제6조 생략

부칙 <제5153호,1996.8.8>(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경찰관서"를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중 "관할경찰서"를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경찰서유치장"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⑫내지 <69>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730호,2007.12.21>(형사소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형사소송법 제289조"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로 하고, 제10조 중 "제312조제2항"을 "제312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9831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비안전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를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를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4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1] [훈령 제718호, 2014.1.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에 접수된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지"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를 말하며 범죄실행장소, 결과발생장소 및 결과발생의 중간지를 포함한다.
2. "이송"이란 한 경찰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옮기는 수사주체의 변경을 말한다.
3. "경찰관서"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를 말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사건의 관할과 관할사건수사에 있어서 이 규칙이 다른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이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사건의 관할과 지휘조정

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사건관할이 다른 수개의 사건에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 할 수 있다.

제6조(사건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의 관할지정) ① 다음 각 호의 사건 중 범죄지나 피의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1.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

2.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동 중에 발생한 범죄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범죄

②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도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다만, 사건접수 단계부터 피의자가 내국인으로 특정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관할관서로 한다.

③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는 출발지 또는 범죄 후의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관할관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군수사기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다른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협정 등이 있으면 이를 이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조(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①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면 다른 경찰관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건을 접수한 관서는 일체의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이 있는 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건의 이송은 원칙적으로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건의 특성상 범죄지에 대한 수사가 실익이 없어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이송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관서로 이송할 수 있다.

제8조(사건의 관할에 대한 지휘건의) ①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사건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할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사건의 관할에 관한 지휘건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휘건의를 받은 상급경찰관서의 장은 신속하게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 지휘하여야 한다. 이 지휘에 관한 업무는 해당사건의 수사지휘를 담당하는 상급부서에서 수행한다.

③ 지휘건의를 받은 사건이 상급경찰관서 내 다수 부서에 관련되어 있고 각 부서 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상급경찰관서의 장이 이를 조정한다.

제9조(동일 법원관할 내의 사건관할) 이송대상 경찰관서가 동일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이송하지 아니하고 수사할 수 있다.

제10조(병합수사 지휘건의) ① 두 개 이상의 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병합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찰관서장 상호간에 협의하여 관할관서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장은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장에게 병합수사를 지휘건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병합수사 지휘건의를 받은 상급경찰관서장은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지휘한다. 이 지휘에 관한 업무는 해당사건의 수사지휘를 담당하는 상급부서에서 수행한다.
④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병합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의한 지휘건의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병합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

제3장 수사촉탁

제11조(수사촉탁) ① 수사 중 다른 경찰관서에 소재하는 수사대상에 대하여 수사를 촉탁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조사는 현장진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② 동일 지방경찰청 내 또는 별표 제1호에 규정된 경찰관서에서는 구치소, 교도소, 대용감방에 수용된 자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수사촉탁할 수 없다. 다만 울릉경찰서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수사촉탁 절차) ① 수사촉탁은 촉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촉탁서에 의해야 하고 수사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 수사기록 원본 또는 사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첨부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처리가 용이한 단순고발사건 등의 경우에는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수사촉탁 사건은 수사지원팀에서 접수하여 대장에 등재한 후 촉탁관서 수사팀에 대응하는 수사팀에 배당하여야 한다.
③ 수사를 촉탁한 수사관은 수사촉탁을 이유로 사건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사진행사항을 파악하여 수사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사를 촉탁한 수사관은 촉탁을 받은 수사관에게 전화 등을 이용해 촉탁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수탁관서는 촉탁사항에 대한 수사를 완료한 후 회답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신속히 등기송달, 직접전달 등의 방법으로 촉탁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수사촉탁 처리기한 등) ① 수사촉탁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의자 조사 20일
2.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등 조사 15일
3. 소재수사, 사건기록 사본 송부 10일

② 제1항의 처리기한 내에 촉탁사항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촉탁한 수사관과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하고 수사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매월 1회 촉탁받은 사건의 성실한 처리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4장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의 수사대상

제14조(경찰청의 수사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다.

1. 수사관할이 수개의 지방경찰청에 속하는 사건
2. 고위공직자 또는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 사건으로 해당관서에서 수사하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경찰청장이 수사본부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지정하는 사건
4. 그 밖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파장이 큰 사건으로 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건

제15조(지방경찰청의 수사대상) 지방경찰청장은 소속경찰서 관할사건 중 다음 각 호의 범죄는 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수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이버사건
2. 대출사기, 보이스 피싱 등 관할이 불명확하거나, 다수의 경찰서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3.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하기가 부적합한 경찰관 비위 사건
4.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건

제16조(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의 수사상 관할)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의 수사부서에서 수사하는 사건의 영장을 신청하거나 기록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에 대한 관할이 있는 법원 및 검찰청에 하여야 한다.

제17조(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의 수사방식)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의 수사부서에서 수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 및 검찰청의 관할 내에 있는 경찰관서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사건이송의 절차) 경찰관은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범죄수사규칙 제190조에 따라 이송한다.

제19조(자의적인 사건이송 금지) 경찰관은 제6조에 의하여 관할이 지정되는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범죄지 또는 피의자가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 자의적으로 관할을 지정해 해당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부당한 사건이송 등에 대한 조치) 상급경찰관서의 장은 산하 경찰관서 소속 경찰관이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건을 이송하거나 수사촉탁 업무를 처리한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경찰관과 그 지휘를 한 수사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고 관할 관서로의 재이송, 적정한 수사촉탁 업무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제718호,2014.1.1>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접수되어 수사 중인 사건은 이 규칙과 다르게 관할관서로 지정되어 있거나 이 규칙에 의한 이송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경찰관서에 이송할 수 없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460호)은 폐지한다.

【별표 제1호】

구치소, 교도소, 대용감방에 수용된 자에 대한 조사를 위한 수사촉탁 금지관서

수용시설	인접 지방청 소속 이송, 수사촉탁 금지경찰관서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여주교도소 소망교도소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서
성동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경기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서
인천구치소	서울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의정부경찰서, 양주경찰서, 남양주경찰서, 구리경찰서, 광주경찰서, 이천경찰서, 포천경찰서, 여주경찰서, 양평경찰서, 가평경찰서, 연천경찰서 제외) 산하 경찰관서
의정부교도소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서
평택지소	충남지방경찰청 중 천안서북경찰서, 천안동남경찰서, 아산경찰서, 당진경찰서, 예산경찰서, 충북지방경찰청 중 진천경찰서
춘천교도소	경기지방경찰청 중 남양주경찰서, 구리경찰서, 포천경찰서, 여주경찰서, 양평경찰서, 가평경찰서
원주교도소	경기지방경찰청 중 이천경찰서, 여주경찰서, 양평경찰서, 충북지방경찰청 중 제천경찰서, 충주경찰서, 단양경찰서, 음성경찰서
강릉교도소	
영월교도소	충북지방경찰청 중 제천경찰서, 단양경찰서, 경북지방경찰청 중 봉화경찰서, 영주경찰서
대구교도소 (구치소)	경북지방경찰청(영덕경찰서, 울진경찰서, 봉화경찰서, 울릉경찰서 제외) 산하 경찰관서, 경남지방경찰청 중 밀양경찰서, 거창경찰서, 합천경찰서, 창녕경찰서
부산교도소 (구치소)	울산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서, 경남지방경찰청 중 지방경찰청 소속 부서, 창원중부경찰서, 창원서부경찰서, 마산중부경찰서, 마산동부경찰서, 김해경찰서, 진해경찰서, 양산경찰서, 밀양경찰서
청송교도소 (직업훈련교도소, 제2교도소, 제3교도소) 안동교도소	대구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서
김천교도소	대구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서, 충남지방경찰청 중 지방경찰청 소속 부서, 대전중부경찰서, 대전서부경찰서, 대전동부경찰서, 대전북부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 충북지방경찰청 중 영동경찰서, 옥천경찰서

수용시설	인접 지방경찰청 소속 이송 금지경찰관서
경주교도소 포항교도소	대구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서
울산구치소	부산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서, 경북지방경찰청 중 경주경찰서, 청도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중 김해경찰서, 양산경찰서, 밀양경찰서
창원교도소 진주교도소 통영구치소 밀양구치소	부산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서
대전교도소	충남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서, 충북지방경찰청 중 지방경찰청 소속 부서, 청주상당경찰서, 청주흥덕경찰서, 영동경찰서, 옥천경찰서, 전북지방경찰청 중 무주경찰서
천안개방교도소 천안교도소	대전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서, 경기지방경찰청 중 평택경찰서, 안성경찰서, 충북지방경찰청 중 지방경찰청 소속 부서, 청주상당경찰서, 청주흥덕경찰서, 진천경찰서
청주교도소 (여자교도소)	충남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공주교도소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논산지소	대전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충주구치소	경기지방경찰청 중 여주경찰서, 경북지방경찰청 중 문경경찰서
광주교도소	전북지방경찰청 중 정읍경찰서, 고창경찰서, 순창경찰서
전주교도소	
순천교도소	경남지방경찰청 중 하동경찰서
목포교도소	
군산교도소	충남지방경찰청 중 서천경찰서
제주교도소	
장흥교도소	
속초대용감방	
영동대용감방	충남지방경찰청 중 지방경찰청 소속 부서, 대전중부경찰서, 대전서부경찰서, 대전동부경찰서, 대전북부경찰서, 둔산경찰서, 경북지방경찰청 중 김천경찰서, 전북지방경찰청 중 무주경찰서
남원대용감방	전남지방경찰청 중 곡성경찰서, 구례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중 하동경찰서, 함양경찰서
상주대용감방	충남지방경찰청 중 보은경찰서
거창대용감방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서, 경북지방경찰청 중 고령경찰서, 전북지방경찰청 중 무주경찰서, 장수경찰서

기소중지자 지명수배·통보지침

[시행 2006.2.1] [예규 제389호, 2006.1.25, 일부개정]

1. 목 적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의 개정(1997. 1. 1 시행)에 따라 기소중지자에 대한 지명수배?지명통보의 방법 및 소재발견시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소중지자 지명수배?통보기준

가. 검사가 직수사건을 기소중지 결정하거나 송치사건이 의견과 달라서 기소중지결정을 하는 경우

1)「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하 "영장"이라 한다)이 발부된 자」및「지명통보 대상자중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영장이 발부된 자」에 대하여는 "지명수배"한다. 다만, 긴급체포를 하지 아니하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지명수배"할 수 있다.<개정 2006. 1. 25>

2)「법정형이 장기 3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에 대하여는 "지명통보"한다.

3)「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에 대하여는 ??지명통보??할 수 있다.<신설 2006. 1. 25>

나. 사법경찰관이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

3. 영장의 청구등 지명수배 절차

가. 검사가 청구하는 경우

1) 검사가 직수사건을 기소중지 결정하거나 송치사건의 의견과 달리 기소중지 결정을 하면서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영장업무 담당직원은 체포영장청구부 또는 구속영장청구부 비고란에 <지명수배>라는 붉은색 고무인을 찍는다.

2)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후 기소중지 결정과 동시에 지명수배(통보)입력요구서를 작성하여 지명수배 사실을 전산입력한 후 영장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영장 원본은 영장업무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3) 영장업무 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영장 원본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첨 제1호 서식에 의한「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 목록」, 별첨 제2호 서식에 의한「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 목록」, 별첨 제3호 서식에 의한「지명수배자 체포영장 발부대장」, 별첨 제4호 서식에 의한「지명수배자 구속영장 발부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영장은「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과「지명수배자 구속영

장철」에 발부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4) 영장업무 담당직원은 근무시간 이외나 공휴일에는「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과「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을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나. 사법경찰관이 신청하는 경우
1) 관할 지방검찰청의 영장업무 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지명수배대상 피의자에 대하여 신청한 영장이 발부된 때에는 별첨 제3호 서식에 의한「지명수배자 체포영장 발부대장」과 별첨 제4호 서식에 의한「지명수배자 구속영장 발부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사법경찰관은 영장을 발부받은 후 지명수배(통보)입력요구서를 작성하여 지명수배 사실을 전산입력한 후 영장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여 송치하고 그 영장 원본은 보관한다. 송치사건기록의 의견란에는「기소중지(체포영장)」,「기소중지(구속영장)」또는「기소중지(긴급체포)」라고 기재한다.
다. 가, 나항의 경우 지명수배 대상자에 대한 영장청구기록 표지의 좌측 상단에 <지명수배대상자>라는 붉은 고무인을 찍는다.
라.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1) 지명수배 대상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3. 8. 23>
2) 기재요령
○ <삭제 2003. 8. 23>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 및 사유」란에는 <지명수배>라는 붉은색 고무인을 찍는다.
마. 영장의 재청구
1) 검사가 재청구하는 경우
○ 영장업무 담당직원은 영장의 유효기간 만료 5일전까지 기소중지 사건기록을 대출받아 주임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주임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에 영장을 재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종전의 영장은 체포?구속영장 반환서에 첨부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 반환하고 체포?구속영장집행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재신청한 경우도 같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40호, 제41호 서식 참조)
다만,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청구서에 종전의 체포영장청구서 사본을 첨부, 간인하여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고, 일선청의 실정에 따라서 사건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체포영장 사본만을 첨부하여 재청구할 수 있다.
○ 영장업무 담당직원은 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 체포영장 청구부 또는 구속영장청구부 비고란에「최초 영장 진행번호」를 기재하고 <유효기간 만료>라는 붉은색 고무인을 찍는다.
○ 영장업무 담당직원은 영장을 재발부된 때에는 별첨 제1호 서식에 의한「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 목록」, 별첨 제2호 서식에 의한「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 목록」, 별첨 제3호 서식에 의한「지명수배자 체포영장 발부대장」, 별첨 제4호 서식에 의한「지명수배자 구속영장 발부대장」의 비고란에「최초 진행번호」를 기재하고「재발부」라고 주서한다.
2) 사법경찰관이 재신청하는 경우
○ 사법경찰관은 유효기간 만료일의 전일까지 영장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영장신청일은 유효기간 만료일로 기재한다. 종전의 영장은 체포?구속영장반환보고서에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에 제출하여야 한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8호 서식 참조) 다만,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신청서에 종전의 체포영장신청서 사본을 첨부, 간인하여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수 있다.
○ 관할 지방검찰청의 영장업무 담당직원은 기고중지사건 기록을 대출받아 영장신청서와 함께 영장전담 검사 또는 당직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영장업무 담당직원은 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 체포영장 청구부 또는 구속영장청구부의 비고란에「최초 영장 진행번호」를 기재하고 <유효기간> 만료라는 붉은색 고무인을 찍는다.
○ 영장업무 담당직원은 영장이 재발부된 경우 별첨 제3호 서식에 의한「지명수배자 체포영장 발부대장」과 별첨 제4호 서식에 의한「지명수배자 구속영장 발부대장」의 비고란에「최초 진행번호」를 기재하고「재발부」라고 주서한다.
3) 재청구 체포영장청구(신청)서의 기재요령
○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에 관한 기재요령은 위 라.항과 같다.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란에는 <유효기간 만료>라는 붉은색 고무인을 찍는다.
○「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범죄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사유」란에는 <「별지체포영장청구서사본 기재와 같다」>라는 고무인을 찍는다.
4. 지명통보 절차
가. 검사가 직수사건을 기소중지 결정하거나 송치사건의 의견과 달리 기소중지결정을 하면서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통보를 할 때에는 지명수배(통보)입력 요구서를 작성하여 지명통보 사실을 전산입력한다.
나. 사법경찰관이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통보를 할 때에는 지명수배(통보)입력요구서를 작성하여 지명통보 사실을 전산입력한다. 송치사건 기록의 의견란에는「기소중지(지명통보)」라고 기재한다.
5. 불기소?기소중지 사건기록 표지 기재 요령
가. 검사는 기소중지 결정을 할 때 불기소?기소중지 사건기록 표지 비고란에 지명수배하는 경우에는「지명수배(체포영장)」,「지명수배(구속영장)」,「지명수배(긴급체포)」, 지명통보하는 경우에는「지명통보」라고 기재한다.
나. 다만, 검사가 직수사건을 기소중지 결정하거나 송치사건의 의견과 달리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때에는 지명수배?지명 통보 명령란에 날인하고 지명수배 결정할 경우에만 위 가. 항과 같이 비고란에 기재한다.
6. 지명수배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
가.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수배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34호 서식 참조)
나.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 체포 또는 구속한 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지명수배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긴급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긴급체포한 후 확인서를 받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신병과 함께 수배관서에 인계하여

야 한다.
라. 지명수배자를 체포한 때에는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에 보고하고(모사전송 또는 유선보고 가능) 피의자를 조사한 다음 체포한때로부터 36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검사의 신병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체포한 때라 함은 검거관서에서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시점을 말한다.
마. 기소중지자 검거보고를 받은 관할지방검찰청의 기소중지사건 담당직원은 즉시 기소중지기록을 찾아 기록대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바. 지명수배자를 체포한 자는 피의자가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농후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포의 과정과 상황 등을 자세히 기재한 지명수배자체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배관서에 인계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한다.
사. 검사가 지명수배한 기소중지자를 검거한 사법경찰관은 즉시 수배한 검찰청으로 피의자를 호송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아.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아래의 수배관서 순서에 따라 검거된 피의자를 인계받아 조사하여야 한다.
○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배관서<신설 2006. 1. 25>
○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동일한 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자. 지명수배자를 검거 또는 인수한 수배관서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즉시 지명수배 해제의뢰를 하여야 한다.
차.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늦어도 24시간내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 제209조,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검거한 경우에는 검거관서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카. 긴급체포한 지명수배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는 다시 지명수배하지 못한다.
7. 지명통보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
가. 지명통보된 자(이하 "지명통보자"라 한다)의 소재를 발견한 때에는 지명통보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과 범죄사실, 지명통보한 관서(이하 "통보관서"라 한다) 등을 고지하고 발견일자로부터 1개월이내에 통보관서에 출석하거나 사건이송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별첨 제3호 서식에 의한「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지명통보자에게교부하고, 1부는 소재발견관서에서 보관하며, 1부는 통보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나. 소재 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각 건마다「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를 송부받은 통보관서의 사건 담당자는 즉시 지명통보자에게 출석하기로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거나 사건이송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명통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건이송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지

명통보를 해제한다. 이 경우 체포영장 청구기록에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 출석요구서 사본등 지명통보자가 본인이 확인한 일자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나 사건이송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지명통보자가 통보관서에 출석하거나 이송신청에 따른 이송관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즉시 지명통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8. 지침시행 이전 지명수배자에 대한 조치
가. 수배관서는 1997. 8. 31까지 기존 지명수배자중 수배종별 A로 분류된 자는 지명수배자(A)로, 수배종별 C로 분류된 자는 지명통보자(C)로, 수배종별 B로 분류된 자는 이 지침의 규정에 따라 지명수배자(A)와 지명통보자(C)로 각 재분류하여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나. 수배종별 A로 분류되었던 지명수배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하되 그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이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다. 수배종별 B로 분류되었던 자중 향후 지명수배자(A)로 재분류될 기소중지자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규정된 지명수배 대상 피의자에 대한 영장청구 절차에 따라 1997. 8. 31까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다만,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 받지 아니할 수 있다.
9. 대검예규 제251호(1997. 1. 10)「기소중지자 체포업무 처리지침」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제389호,2006.1.25>
개정된(2006. 1. 25.개정) 본 예규는 2006. 2. 1.부터 시행한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시행 2014.9.29] [예규 제737호, 2014.9.29, 일부개정]

‘13. 10. 31. 시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법률 제11955호) ‘ 제5조의 12(도주선박의 선장 등 가중처벌) 상 누락된 죄명을 보완하고, ’14. 9. 29. 시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법률 제12341호) ’ 및 ‘아동복지법(법률 제12361호) ’ 상 신설 또는 개정에 따른 죄명을 반영하는 등 대검예규 제730호를 개정하여 ’14. 9. 29.부터 시행함.

1. 형법 죄명표시
가. 각칙관련 죄명표시 형법죄명표(별표 1)에 의한다.
나. 총칙관련 죄명표시
(1) 미수·예비·음모의 경우에는 위 형법죄명표에 의한다.
(2) 공동정범·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죄명과 동일한 형법각칙 표시 각 본조 해당죄명으로 한다.
(3)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 형법각칙 표시 각 본조 해당죄명 다음에 교사 또는 방조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2. 군형법 죄명표시
가. 각칙관련 죄명표시
군형법 죄명표(별표 2)에 의한다.
나. 총칙관련 죄명표시
(1) 미수·예비·음모의 경우에는 위 군형법 죄명표에 의한다.
(2) 공동정범·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죄명과 동일한 군형법 각칙표시 각 본 조 해당 죄명으로 한다.
(3)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 군형법 각칙표시 각본조 해당 죄명 다음에 교사 또는 방조를 추가로 표시한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시
가. 정범·기수·미수·예비·음모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별표 3)에 의한다.
나.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위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교사 또는 위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방조」로 표시한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시
가. 정범 · 기수 · 미수의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별표 4)에 의한다.
나.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위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교사 또는 위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방조」로 표시한다.

5. 공연법, 국가보안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수산업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복지법 각 위반사건 죄명표시
가. 정범 · 기수 · 미수 · 예비 · 음모의 경우에는 별표5에 의한다.
나.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위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교사 또는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방조」로 표시한다.

6. 기타 특별법위반사건 죄명표시
가. 원칙
「· · · 법위반」으로 표시한다.
나. 공범 · 미수
(1) 공범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 · 법위반」으로 표시하고, 특별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 · 법위반 교사 또는 · · · 법위반 방조」로 표시한다.
(2) 미수에 관하여는「…법위반」으로 표시한다.

<별표 1> 형법 죄명표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 1.내란수괴

2.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

3.내란부화수행

제88조 내란목적살인

제89조 (제87조, 제88조 각 죄명)미수

제90조 **(내란, 내란목적살인)(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 외환(유치, 항적)

제93조 여적

제94조 ①모병이적

②용병이적

제95조 ①군용시설제공이적

②군용물건제공이적

제96조 군용시설파괴이적

제97조 물건제공이적

제98조 ①간첩, 간첩방조

②군사상기밀누설

제99조 일반이적

제100조 (제92조 내지 제99조 각 죄명)미수

제101조 (제92조 내지 제99조 각 죄명)(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03조 ①(전시, 비상시)군수계약불이행

②(전시, 비상시)군수계약이행방해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105조 (국기, 국장)모독

제106조 (국기, 국장)비방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107조 ①외국원수(폭행, 협박)

②외국원수(모욕, 명예훼손)

제108조 ①외국사절(폭행, 협박)

②외국사절(모욕, 명예훼손)

제109조 외국(국기, 국장)모독

제111조 ①외국에대한사전

②(제1항 죄명)미수

③(제1항 죄명)예비, 음모

제112조 중립명령위반

제113조 ①외교상기밀누설

②외교상기밀(탐지, 수집)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114조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제115조 소요

제116조 다중불해산

제117조 ①(전시, 비상시)공수계약불이행

②(전시, 비상시)공수계약이행방해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119조 ①폭발물사용

②(전시, 비상시)폭발물사용

③(제1항, 제2항 각 죄명)미수

제120조 (제119조 제1항, 제2항 각 죄명)(예비, 음모, 선동)

제121조 (전시, 비상시)폭발물(제조, 수입, 수출, 수수, 소지)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 직무유기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124조 ①직권남용(체포, 감금)

②(제1항 각 죄명)미수

제125조 독직(폭행, 가혹행위)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제128조 선거방해

제129조 ①뇌물(수수, 요구, 약속)

②사전뇌물(수수, 요구, 약속)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 요구, 약속)

제131조 ①수뢰후부정처사

②, ③부정처사후수뢰

제132조 알선뇌물(수수, 요구, 약속)

제133조 ①뇌물(공여, 공여약속, 공여의사표시)

②제3자뇌물(교부, 취득)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

제138조 (법정, 국회회의장)(모욕, 소동)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명령불준수)

제140조 ①공무상(봉인, 표시)(손상, 은닉, 무효)

②공무상비밀(봉함, 문서, 도화)개봉

③공무상비밀(문서, 도화,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제141조 ①공용(서류, 물건, 전자기록등)(손상, 은닉, 무효)

②공용(건조물, 선박, 기차, 항공기)파괴

제142조 공무상(보관물, 간수물)(손상, 은닉, 무효)

제143조 (제140조 내지 제142조 각 죄명)미수

제144조 ①특수(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내지 제143조 각 죄명)

②(제1항 각 죄명, 다만 제143조 미수의 죄명은 제외한다)(치상, 치사)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45조 ①도주

②집합명령위반

제146조 특수도주

제147조 피구금자(탈취, 도주원조)

제148조 간수자도주원조

제149조 (제145조 내지 제148조 각 죄명)미수

제150조 (제147조, 제148조 각 죄명)(예비, 음모)

제151조 범인(은닉, 도피)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2조 ①위증

②모해위증

제154조 (허위, 모해허위)(감정, 통역, 번역)

제155조 ①증거(인멸, 은닉, 위조, 변조), (위조, 변조)증거사용

②증인(은닉, 도피)

③모해(제1항, 제2항 각 죄명)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조 무고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58조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방해

제159조 (사체, 유골, 유발)오욕

제160조 분묘발굴

제161조 ①(사체, 유골, 유발, 관내장치물)(손괴, 유기, 은닉, 영득)

②분묘발굴(제1항 각 죄명)

제162조 (제160조, 제161조 각 죄명)미수

제163조 변사체검시방해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 ①(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②(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제165조 (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제166조 ①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②자기소유(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제167조 ①일반물건방화

②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제168조 방화연소

제169조 진화방해

제170조 실화

제171조 (업무상, 중)실화

제172조 ①폭발성물건파열

②폭발성물건파열(치상, 치사)

제172조의2 ①(가스, 전기, 증기, 방사선, 방사성물질)(방출, 유출, 살포)

②(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제173조 ①(가스, 전기, 증기)(공급, 사용)방해

②공공용(제1항 각 죄명)

③(제1항, 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제173조의2 ①과실(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 제2항 각 죄명)

②(업무상, 중)과실(제1항 각 죄명)

제174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 제2항 각 죄명)미수

제175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 제2항 각 죄명)(예비, 음모)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조 ①(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②(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제178조 (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제179조 ①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②자기소유(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제180조 방수방해

제181조 과실일수

제182조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제1항 각 죄명)미수

제183조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제1항 각 죄명)(예비, 음모)

제184조 수리방해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제186조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교통방해

제187조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전복, 매몰, 추락, 파괴)

제188조 (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치상, 치사)

제189조 ①과실(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

②(업무상, 중)과실(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

제190조 (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미수

제191조 (제186조, 제187조 각 죄명)(예비, 음모)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92조 ①음용수사용방해

②음용수(독물, 유해물)혼입

제193조 ①수도음용수사용방해

②수도음용수(독물, 유해물)혼입

제194조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제195조 수도불통

제196조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제195조 각 죄명)미수

제197조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제195조 각 죄명)(예비, 음모)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98조 (아편, 몰핀)(제조, 수입, 판매, 소지)

제199조 아편흡식기(제조, 수입, 판매, 소지)

제200조 세관공무원(아편, 몰핀, 아편흡식기)(수입, 수입허용)

제201조 ①아편흡식, 몰핀주사

②(아편흡식, 몰핀주사)장소제공

제202조 (제198조 내지 제201조 각 죄명)미수

제203조 상습(제198조 내지 제202조 각 죄명)

제205조 단순(아편, 몰핀, 아편흡식기)소지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207조 ①통화(위조, 변조)

②, ③외국통화(위조, 변조)

④(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행사, 수입, 수출)

제208조 (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취득

제210조 (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지정행사

제211조 ①통화유사물(제조, 수입, 수출)

②통화유사물판매

제212조 (제207조, 제208조, 제211조 각 죄명)미수

제213조 (제207조제1항 내지 제3항 각 죄명)(예비, 음모)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14조 유가증권(위조, 변조)

제215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기재)

제216조 허위유가증권작성, 유가증권허위기재

제217조 (위조유가증권, 변조유가증권,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 자격모용기재유가증권, 허위작성유가증권, 허위기재유가증권)(행사, 수입, 수출)

제218조 ①(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위조, 변조)

②(위조, 변조)(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행사, 수입, 수출)

제219조 (위조, 변조)(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취득

제221조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소인말소

제222조 ①(공채증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유사물(제조, 수입, 수출)

②(공채증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유사물판매

제223조 (제214조 내지 제219조, 제222조 각 죄명)미수

제224조 (제214조, 제215조, 제218조제1항 각 죄명)(예비, 음모)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 (공문서, 공도화)(위조, 변조)

제226조 자격모용(공문서, 공도화)작성

제227조 허위(공문서, 공도화)(작성, 변개)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등(위작, 변작)

제228조 ①(공정증서원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②(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불실기재

제229조 (위조, 변조)(공문서, 공도화)행사, 자격모용작성(공문서, 공도화)행사, 허위(작성, 변개)(공문서, 공도화)행사, (위작,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공전자기록등,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행사

제230조 (공문서, 공도화)부정행사

제231조 (사문서, 사도화)(위조, 변조)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 사도화)작성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위작, 변작)

제233조 허위(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작성

제234조 (위조, 변조)(사문서, 사도화)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 사도화)행사, (위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허위작성(진단서, 검안서, 증명서)행사

제235조 (제225조 내지 제234조 각 죄명)미수

제236조 (사문서, 사도화)부정행사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38조 ①(공인, 공서명, 공기명, 공기호)(위조, 부정사용)

②(위조, 부정사용)(공인, 공서명, 공기명, 공기호)행사

제239조 ①(사인, 사서명, 사기명, 사기호)(위조, 부정사용)

②(위조, 부정사용)(사인, 사서명, 사기명, 사기호)행사

제240조 (제238조, 제239조 각 죄명)미수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41조 간통

제242조 음행매개

제243조 (음화, 음란문서, 음란필름, 음란물건)(반포, 판매, 임대, 전시, 상영)

제244조 (음화, 음란문서, 음란필름, 음란물건)(제조, 소지, 수입, 수출)

제245조 공연음란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6조 ①도박

②상습도박

제247조 (도박장소, 도박공간)개설

제248조 ①복표발매

②복표발매중개

③복표취득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 ①살인

②존속살해

제251조 영아살해

제252조 ①(촉탁, 승낙)살인

②자살(교사, 방조)

제253조 (위계, 위력)(촉탁, 승낙)살인, (위계, 위력)자살결의

제254조 (제250조 내지 제253조 각 죄명)미수

제255조 (제250조, 제253조 각 죄명)(예비, 음모)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 ①상해

②존속상해

③(제1항, 제2항 각 죄명)미수

제258조 ①, ②중상해

③중존속상해

제259조 ①상해치사

②존속상해치사

제260조 ①폭행

②존속폭행

제261조 특수(제260조 각 죄명)

제262조 (제260조, 제261조 각 죄명)(치사, 치상)

제264조 상습(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제261조 각 죄명)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66조 과실치상

제267조 과실치사

제268조 (업무상, 중)과실(치사, 치상)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 ①낙태

②(촉탁, 승낙)낙태

③(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제270조 ①업무상(촉탁, 승낙)낙태

②부동의낙태

③(1항, 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71조 ①유기

②존속유기

③중유기

④중존속유기

제272조 영아유기

제273조 ①학대

②존속학대

제274조 아동혹사

제275조 ①(제271조제1항, 제3항, 제272조, 제273조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②(제271조제2항, 제4항, 제273조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276조 ①체포, 감금

②존속(체포, 감금)

제277조 ①중체포, 중감금

②중존속(체포, 감금)

제278조 특수(제276조, 제277조 각 죄명)

제279조 상습(제276조, 제277조 각 죄명)

제280조 (제276조 내지 제279조 각 죄명)미수

제281조 ①(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특수, 상습)(제276조 제1항, 제277조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②(제276조제2항, 제277조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특수, 상습)(제276조 제2항, 제277조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 ①협박

②존속협박

제284조 특수(제283조 각 죄명)

제285조 상습(제283조, 제284조 각 죄명)

제286조 (제283조 내지 285조 각 죄명)미수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287조 미성년자(약취, 유인)

제288조 ①(추행, 간음, 결혼, 영리)(약취, 유인)

②(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약취, 유인)

③국외이송(약취, 유인), (피약취자, 피유인자)국외이송

제289조 ①인신매매

②(추행, 간음, 결혼, 영리)인신매매

③(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인신매매

④국외이송인신매매, 피매매자국외이송

제290조 ①(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상해

②(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치상

제291조 ①(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살해

②(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치사

제292조 ①(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피국외이송자)(수수, 은닉)

②(제287조 내지 제289조 각 죄명)(모집, 운송, 전달)

제293조 <삭제>

제294조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 제292조제1항 각 죄명)미수

제296조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 제292조제1항 각 죄명)(예비, 음모)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각 죄명)미수

제301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내지 제300조 각 죄명)(상해, 치상)

제301조의2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내지 제300조 각 죄명)(살인, 치사)

제302조 (미성년자, 심신미약자)(간음,추행)

제303조 ①(피보호자, 피감독자)간음

②피감호자간음

제304조 <삭제>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간살인, 강간치사, 강제추행상해,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살인, 강제추행치사)

제305조의2 상습(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각 죄명)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 명예훼손

제308조 사자명예훼손

제309조 (출판물,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제311조 모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13조 신용훼손

제314조 ①업무방해

②(컴퓨터등손괴, 전자기록등손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제315조 (경매, 입찰)방해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16조 ①(편지, 문서, 도화)개봉

②(편지,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 ①(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침입

②퇴거불응

제320조 특수(제319조 각 죄명)

제321조 (신체, 주거,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방실)수색

제322조 (제319조 내지 321조 각 죄명)미수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제324조 강요

제324조의2 인질강요

제324조의3 인질(상해, 치상)

제324조의4 인질(살해, 치사)

제324조의5 (제324조, 제324조의2, 제324조의3, 제324조의4 각 죄명) 미수

제325조 ①점유강취

②준점유강취

③(제1항, 제2항 각 죄명)미수

제326조 중권리행사방해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조 절도

제330조 야간(주거, 저택, 건조물, 선박, 방실)침입절도

제331조 특수절도

제331조의2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제332조 상습(제329조 내지 331조의2 각 죄명)

제333조 강도

제334조 특수강도

제335조 준강도, 준특수강도

제336조 인질강도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제338조 강도(살인, 치사)

제339조 강도강간

제340조 ①해상강도

②해상강도(상해, 치상)

③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

제341조 상습(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제340조제1항 각 죄명)

제342조 (제329조 내지 제341조 각 죄명)미수

제343조 강도(예비, 음모)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 사기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제348조 준사기

제348조2 편의시설 부정이용

제349조 부당이득

제350조 공갈

제351조 상습(제347조 내지 제350조 각 죄명)

제352조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1조 각 죄명)미수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 ①횡령

②배임

제356조 업무상(횡령, 배임)

제357조 ①배임수재

②배임중재

제359조 (제355조 내지 제357조 각 죄명)미수

제360조 ①점유이탈물횡령

②매장물횡령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362조 ①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②장물알선

제363조 상습(제362조 각 죄명)

제364조 (업무상, 중)과실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 (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제368조 ①중손괴

②(제366조, 제367조 각 죄명)(치상, 치사)

제369조 ①특수(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

②특수공익건조물파괴

제370조 경계침범

제371조 (제366조, 제367조, 제369조 각 죄명)미수

※ 본 죄명표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적용한다.

가. 괄호안에 들어가지 않은 단어는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와 각 결합하여 각 죄명을 이룬다.

【예시1】

○ 외국원수(폭행, 협박) : 외국원수폭행, 외국원수 협박

○ (전시, 비상시)공수계약불이행 : 전시공수계약불이행, 비상시공수계약불이행

○ 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항공기, 광갱)일수 : 일반건주물일수, 일반기차일수, 일반전차일수, 일반자동차일수, 일반선박일수, 일반항공기일수, 일반광갱일수

나.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는 다른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와 각 결합하여 각 죄명을 이룬다.

【예시 2】

○ (허위, 모해허위)(감정, 통역, 번역) : 허위감정, 모해허위감정, 허위통역, 모해허위통역, 허위번역, 모해허위번역

○ 허위(공문서, 공도화)(작성, 변개)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변개, 허위공

도화작성, 허위공도화변개)

○ (공채증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유사물(제조, 수입, 수출) : 공채증서유사물제조, 공채증서유사물수입, 공채증서유사물수출, 인지유사물제조, 인지유사물수입, 인지유사물수출, 우표유사물제조, 우표유사물수입, 우표유사물수출, 우편요금증표유사물제조, 우편요금증표유사물수입, 우편요금증표유사물수출

다. 괄호안에 제○○조의 각 죄명 또는 제○○조 내지 제○○조의 각 죄명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조에 기재된 각 죄명이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 3】

○ (제87조, 제88조 각 죄명)미수 :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실행, 내란부화수행, 내란목적살인)미수

<별표 2> 군형법 죄명표

제1장 반란의 죄

제5조 1. 반란수괴

2. 반란(모의참여, 지휘, 중요임무종사, 살상)(파괴, 약탈)

3. 반란(부화뇌동, 폭동관여)

제6조 반란목적군용물탈취(수괴, 모의참여, 지휘, 중요임무종사, 살상파괴, 부화뇌동, 폭동관여)

제7조 (제5조 내지 제6조 각 죄명)미수

제8조 ①(제5조 내지 제6조 각 죄명)(예비, 음모)

②(제5조 내지 제6조 각 죄명)(선동, 선전)

제9조 ①반란불보고

②이적목적반란불보고

제2장 이적의 죄

제11조 ①군용시설제공이적

②군용물건제공이적

제12조 군용(시설, 물건)파괴이적

제13조 ①간첩, 간첩방조

②대적군기누설

③ 1.(부대, 기지, 군항지역, 군사시설보호지역)(간첩, 간첩방조, 대적군기누설)

2. (방위산업체, 연구기관)(간첩, 간첩방조, 대적군기누설)

3. (부대이동지역, 부대훈련지역, 대간첩작전지역, 군특수작전수행지역)(간첩, 간첩방조, 대적군기누설)

제14조 1. (향도, 지리지시)이적

2. 항복강요이적

3. (은닉, 비호)이적

4. 왕래방해이적

5. (암호, 신호)사용이적, (명령, 통보, 보고)(사전, 전달태만)이적, 허위(명령, 통보, 보고)이적

6. (부대, 함대, 편대, 대원)(해산, 혼란)이적, (부대, 함대, 편대, 대원)(연락,

집합)방해이적

7. 일반물건제공이적

8. 일반이적

제15조 (제11조 내지 제14조 각 죄명)미수

제16조 ①(제11조 내지 제14조 각 죄명)(예비, 음모)

②(제11조 내지 제14조 각 죄명)(선동, 선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18조 불법전투개시

제19조 불법전투계속

제20조 불법진퇴

제21조 (제18조 내지 제20조 각 죄명)미수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22조 항복(부대, 진영, 요새, 함선, 항공기)방임

제23조 솔대도피

제24조 1.적전직무(수행거부, 유기)

2.전시(사변, 계엄지역), 직무(수행거부, 직무유기)

3.직무(수행거부, 유기)

제25조 (제22조, 제23조 각 죄명)미수

제26조 (제22조, 제23조 각 죄명)(예비, 음모)

제5장 수소이탈의 죄

제27조 1. 지휘관적전수소이탈

2. 지휘관(전시, 사변, 계엄지역)수소이탈

3. 지휘관수소이탈

제28조 1. 초병적전수소이탈

2. 초병(전시, 사변, 계엄지역)수소이탈

3. 초병수소이탈

제29조 (제27조 내지 제28조 각 죄명)미수

제6장 군무이탈의 죄

제30조 ① 1. 적전군무이탈

2. (전시, 사변, 계엄지역)군무이탈

3. 군무이탈

② 적전이탈자불복귀, (전시, 사변, 계엄지역)이탈자불복귀, 이탈자불복귀

제31조 (적전, 전시, 사변, 계엄지역)특수군무이탈, 특수군무이탈

제32조 1. (전시, 사변, 계엄지역), 이탈자(은닉, 비호)

2. 이탈자(은닉, 비호)

제33조 적전도주

제34조 (제30조 내지 제33조 각 죄명)미수

제7장 군무태만의 죄

제35조 1. 전투준비태만

2. (부대, 병원)유기

3. 공격기피

4. 군기(문서, 물건)방임

5. (전시, 사변, 계엄지역)군용물결핍

제36조 1. 적전비행군기문란

2. (전시, 사변, 계엄지역)비행군기문란

3.비행군기문란

제37조 1. (전시, 사변, 계엄지역)위계항행위험

2. 위계항행위험

제38조 ① 1. 적전허위(명령, 통보, 보고)

2. (전시, 사변, 계엄지역)허위(명령, 통보, 보고)

3. 허위(명령, 통보, 보고)

② 1. 적전의무자허위(명령, 통보, 보고)

2. (전시, 사변, 계엄지역)의무자허위(명령, 통보, 보고)

3. 의무자허위(명령, 통보, 보고)

제39조 (명령, 통보, 보고)(허위전달, 전달불이행)

제40조 1. 적전초령위반

2. (전시, 사변, 계엄지역)초령위반

3. 초령위반

제41조 ① 1. 적전근무기피목적상해

2. 근무기피목적상해

② 1. 적전근무기피목적위계

2. 근무기피목적위계

제42조 ①유해음식물공급

②유해음식물공급(치사, 치상)

③과실유해음식물공급

④이적목적유해음식물공급

제43조 출병거부

제8장 항명의 죄

제44조 1. 적전항명

2. (전시, 사변, 계엄지역)항명

3. 항명

제45조 1.적전집단항명수괴, 적전집단항명

2.(전시, 사변, 계엄지역)집단항명수괴, (전시, 사변, 계엄지역)집단항명

3.집단항명수괴, 집단항명

제46조 상관제지불복종

제47조 명령위반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제48조 1. 적전상관(폭행, 협박)

2. 상관(폭행, 협박)

제49조 ① 1. 적전상관집단(폭행, 협박)수괴, 적전상관집단(폭행, 협박)

2. 상관집단(폭행, 협박)수괴, 상관집단(폭행, 협박)

② 적전상관공동(폭행,협박), 상관공동(폭행, 협박)

제50조 1. 적전상관특수(폭행, 협박)

2. 상관특수(폭행, 협박)

제51조 1. 적전상관집단특수(폭행,협박) [삭제]

2. 상관집단특수(폭행, 협박) [삭제]

제52조 ① 1. 적전(제48조 내지 제50조 각 죄명)치사

2. (전시, 사변, 계엄지역)(제48조 내지 제50조 각 죄명)치사

3. (제48조 내지 제50조 각 죄명)치사

② 1. 적전(제48조 내지 제49조 각 죄명)치상

2. (전시, 사변, 계엄지역)(제48조 내지 제49조 각 죄명)치상

제52조의2 1. 적전상관상해

2. 상관상해

제52조의3 ① 1. 적전상관집단상해수괴, 적전상관집단상해

2. 상관집단상해수괴, 상관집단상해

② 적전상관공동상해, 상관공동상해

제52조의4 1. 적전상관특수상해

2. 상관특수상해

제52조의5 1. 적전상관중상해

2. (전시,사변,계엄지역)상관중상해

3. 상관중상해

제52조의6 1. 적전상관상해치사

2. (전시,사변,계엄지역)상관상해치사

3. 상관상해치사

제53조 ①상관살해

②상관살해(예비, 음모)

제54조 ①적전초병(폭행, 협박)

②초병(폭행, 협박)

제55조 ① 1. 적전초병집단(폭행, 협박)수괴, 적전초병집단(폭행, 협박)

2. 초병집단(폭행, 협박)수괴, 초병집단(폭행, 협박)

② 적전초병공동(폭행, 협박), 초병공동(폭행, 협박)

제56조 1. 적전초병특수(폭행, 협박)

2. 초병특수(폭행, 협박)

제57조 1.적전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수괴, 적전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 **[삭제]**

2.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수괴, 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 **[삭제]**

제58조 ① 1. 적전(제54조 내지 제56조 각 죄명)치사

2. (전시,사변,계엄지역)(제54조 내지 제56조 각 죄명)치사

3. (제54조 내지 제56조 각 죄명)치사

② 1. 적전(제54조, 제55조 각 죄명)치상, 단서, 적전초병집단(폭행)수괴치상

2. (제54조,제55조 각 죄명)치상

제58조의2 1. 적전초병상해

2. 초병상해

제58조의3 ① 1. 적전초병집단상해

2. 초병집단상해

② 적전초병공동상해, 초병공동상해

제58조의4 1. 적전초병특수상해

2. 초병특수상해

제58조의5 ① 적전초병중상해

② 초병중상해

제58조의6 1. 적전초병상해치사

2. (전시,사변,계엄지역) 초병상해치사

3. 초병상해치사

제59조 ①초병살해

②초병살해(예비, 음모)

제60조 ① 1. 적전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협박)

2.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협박)

② 1. 적전직무수행군인등(집단,특수)(폭행, 협박)

2. 직무수행군인등(집단,특수)(폭행, 협박)

③ (적전직무수행군인등,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 협박)

④ 1. 적전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사

2. (전시,사변,계엄지역)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사

3. 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사

⑤ 1. 적전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상

2. 직무수행군인등폭행치상

제60조의2 1. 적전직무수행군인등상해

2. 직무수행군인등상해

제60조의3 ① 1. 적전직무수행군인등(집단, 특수)상해

2. 직무수행군인등(집단, 특수)상해

② 직무수행군인등공동상해

제60조의4 1. 적전직무수행군인등중상해

2. 직무수행군인등중상해

제60조의5 1. 적전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

2. (전시,사변,계엄지역)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

3. 직무수행군인등상해치사

제61조 특수소요(수괴, 지휘, 부화뇌동)

제62조 ① 직권남용가혹행위

② 위력행사가혹행위

제63조 (제52조의2 내지 제52조의4, 제53조 제1항, 제58조의2 내지 제58조의4, 제59조 제1항,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각 죄명)미수

제10장 모욕의 죄

제64조 ①,②상관모욕

③,④상관명예훼손

제65조 초병모욕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66조 ①군용(공장, 함선, 항공기)방화, 전투용(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방화

② 1. 군용물현존창고방화

2. 군용물창고방화

제67조 1. (전시, 사변, 계엄지역)노적군용물방화

2. 군용물창고방화

제67조 1. (전시, 사변, 계엄지역)노적군용물방화

2. 노적군용물방화

제68조 폭발물파열군용(공장, 함선, 항공기)손괴, 폭발물파열전투용(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손괴, 폭발물파열군용물현존창고손괴, 폭발물파열군용물창고 손괴, (전시, 사변, 계엄지역)폭발물파열노적군용물손괴, 폭발물파열노적 군용물손괴

제69조 (군용물, 군용시설)손괴

제70조 노획물(횡령, 소훼, 손괴)

제71조 ①함선(복몰, 파괴)

②항공기추락(복몰, 손괴)

③(제1항, 제2항 각 죄명)(치사, 치상)

제72조 (제66조 내지 전조 제1항, 제2항 각 죄명)미수

제73조 ①과실(제66조 내지 제71조 각 죄명)

②(업무상, 중)과실(제66조 내지 제71조 각 죄명)

제74조 군용물분실

제75조 ①형법 제329조의 경우 : 군용물절도

형법 제330조의 경우 : 야간(주거, 저택, 건조물, 선박, 방실)침입 군용물절도

형법 제331조의 경우 : 군용물특수절도

형법 제331조의2 경우 : 군용(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형법 제332조의 경우 : 상습(형법 전3조 경우 각 본조 죄명)

형법 제333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

형법 제334조의 경우 : 군용물특수강도

형법 제335조의 경우 : 군용물준강도, 군용물준특수강도

형법 제336조의 경우 : 군용물약취강도

형법 제337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상해, 치상)

형법 제338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살인, 치사)

형법 제339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강간

형법 제340조의 경우 : ①군용물해상강도 ②군용물해상강도(상해, 치상)③군용물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

형법 제341조의 경우 : 상습군용물(형법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제340조 제1항 각 죄명)

형법 제342조의 경우 : 군용물(형법 제329조 내지 제334조, 제336조, 제337조 전단, 제338조 전단, 제339조, 제340조, 제341조 각 죄명)미수

형법 제343조의 경우 : 군용물강도(예비, 음모)

형법 제347조의 경우 : 군용물사기

형법 제347조의2의 경우 : 군용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8조의 경우 : 군용물준사기

형법 제348조의2의 경우 : 군용편의시설 부정이용

형법 제349조의 경우 : 군용물부당이득

형법 제350조의 경우 : 군용물공갈

형법 제351조의 경우 : 상습군용물(형법 제347조 내지 제350조 각 본조 죄명)

형법 제352조의 경우 : 군용물(형법 제347조, 제348조, 제350조, 제351조 각 본조 죄명)미수

형법 제355조의 경우 : ①군용물횡령 ②군재산배임

형법 제356조의 경우 : 업무상군용물횡령, 업무상군재산배임

형법 제357조의 경우 : ①군재산배임수재 ②군재산배임중재

형법 제359조의 경우 : (군용물횡령, 군재산배임, 업무상군용물횡령, 업무상군재산배임, 군재산배임수재, 군재산배임중재) 미수

형법 제360조의 경우 : ①점유이탈군용물횡령 ②매장군용물횡령

형법 제362조의 경우 : 군용장물(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

형법 제363조의 경우 : 상습군용장물(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

형법 제364조의 경우 : (업무상, 중)과실군용장물(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

제76조 (제66조 내지 제69조, 제71조 각 죄명)(예비·음모)

제12장 위령의 죄

제78조 1. 적전초소침범

2. (전시, 사변, 계엄지역)초소침범

3. 초소침범

제79조 무단이탈

제80조 ①군기누설

②(업무상, 중)과실군기누설

제81조 암호부정사용

제13장 약탈의 죄

제82조 ①주민재물약탈

②(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

제83조 ①(주민,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살해, 치사)

②(주민,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상해, 치상)

제84조 전지강간

제85조 (제82조 내지 제83조 각 죄명)미수

제14장 포로에 관한 죄

제86조 포로불귀환, 포로귀환방해

제87조 간수자포로도주원조

제88조 ①②포로도주원조

제89조 포로탈취

제90조 도주포로(은닉, 비호)

제91조 (제87조 내지 제90조 각 죄명)미수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92조 군인등강간

제92조의2 군인등유사강간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

제92조의4 군인등(준강간, 준강제추행)

제92조의5 (제92조 내지 제92조의3 각 죄명)미수

제92조의6 추행

제92조의7 (제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상해, 치상)

제92조의8 (제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살인, 치사)

제16장 그 밖의 죄

제93조 부하범죄부진정

제94조 정치관여

〈별표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제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제3조	〃 (알선수재)
제4조의 2중 체포, 감금의 경우	〃 (체포,감금)
제4조의 2중 독직폭행, 가혹행위의 경우	〃 (독직폭행,가혹행위)
제4조의 3중 공무상비밀누설	〃 (공무상비밀누설)
제5조	〃 (국고등손실)
제5조의 2	〃 (약취유인, 영리약취유인등)
제5조의 3	〃 (도주차량)
제5조의 4중 절도의 경우	〃 (절도)
제5조의 4중 강도의 경우	〃 (강도)
제5조의 4중 장물에 관한 죄의 경우	〃 (장물)
제5조의 5	〃 (강도상해등재범)
제5조의 8	〃 (범죄단체조직)
제5조의 9중 살인의 경우	〃 (보복살인등)
제5조의 9중 상해의 경우	〃 (보복상해등)
제5조의 9중 폭행의 경우	〃 (보복폭행등)
제5조의 9중 체포, 감금의 경우	〃 〔보복(체포등,감금등)〕
제5조의 9중 협박의 경우	〃 (보복협박등)
제5조의 9 제4항	〃 (면담강요등)
제5조의 10	〃 (운전자폭행등)
제5조의 11	〃 (위험운전치사상)
제5조의 12	〃 (선박교통사고도주)
제6조	〃 (관세)
제8조	〃 (조세)
제8조의 2	〃 (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제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제10조	〃 (통화위조)
제11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마약'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제11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 (향정)
제12조	〃 (외국인을위한재산취득)
제14조	〃 (무고)
제15조	〃 (특수직무유기)

〈별표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제3조중 사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제3조중 공갈의 경우	〃 (공갈)
제3조중 횡령의 경우	〃 (횡령)
제3조중 배임의 경우	〃 (배임)
제4조	〃 (재산국외도피)
제5조	〃 (수재등)
제6조	〃 (증재등)
제7조	〃 (알선수재)
제8조	〃 (사금융알선등)
제9조	〃 (저축관련부당행위)
제11조	〃 (무인가단기금융업)
제12조	〃 (보고의무)
제14조	〃 (취업제한등)

본문5의 별표 5

1. 공연법위반사건 죄명표

공연법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제5조 제2항	공연법위반(선전물)
그외	공연법위반

※제5조 제2항위반의 경우에만 "(선전물)"표시

2.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죄명표

국가보안법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제3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
제4조(제1항제2호 간첩 제외)	〃 (목적수행)
제4조 제1항 제2호	〃 (간첩)
제5조	〃 (자진지원·금품수수)
제6조 제1항	〃 (잠입·탈출)
제6조 제2항	〃 (특수잠입·탈출)
제7조(제3항 제외)	〃 (찬양·고무등)
제7조 제3항	〃 (이적단체의구성등)
제8조	〃 (회합·통신등)
제9조	〃 (편의제공)
제10조	〃 (불고지)
제11조	〃 (특수직무유기)
제12조	〃 (무고·날조)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건 죄명표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해당조문	죄 명 표 시
제2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제3조	〃 (부정의약품제조등)
제4조	〃 (부정유독물제조등)
제5조	〃 (부정의료업자)
제9조 제2항	〃 (허위정보제공)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건 죄명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제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 절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제3조 제2항	〃 〔특수강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제4조 제1항	〃 (특수강간)
제4조 제2항	〃 (특수강제추행)
제4조 제3항	〃 〔특수(준강간,준강제추행)〕
제5조 제1항	〃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제5조 제2항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제5조 제3항	〃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준강제추행)]
제6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강간)
제2항	〃 (장애인유사성행위)
제3항	〃 (장애인강제추행)
제4항	〃 〔장애인(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제5항	〃 (장애인위계등간음)
제6항	〃 (장애인위계등추행)
제7항	〃 (장애인피보호자간음)
제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제2항	〃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제3항	〃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제4항	〃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제5항	①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추행)〕
제8조	② 〃 〔강간등(상해, 치상)〕
제9조	〃 〔강간등(살인, 치사)〕
제10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제11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제12조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제13조	〃 (통신매체이용음란)
제14조	〃 (카메라등이용촬영)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그 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해당 기수 죄명 다음에 '미수' 표시하지 아니함

5.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제36조 제1항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피해자해고등)
제36조 제2항 제1호	〃 (상담소등설치)
제36조 제2항 제2호	〃 (폐지명령등)
제36조 제2항 제3호	〃 (영리목적운영금지)
제36조 제2항 제4호	〃 (비밀엄수)

6. 수산업법위반사건 죄명표

수산업법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제36조 제1항 제2호,제3호	수산업법위반(월선조업)
그외	수산업법위반

※ 제36조 제1항 제2호, 제3호위반의 경우에만 "(월선조업)" 표시

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건 죄명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제43조 제1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그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 제43조 제1항 위반의 경우에만 "(환각물질흡입)" 표시

8.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삭제)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 법률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제42조 제3항 제2호, 제21조 제1항	삭제
그외	삭제

※ 2006. 4. 28. 법률 제7943호에 의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폐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건의 경우에는 죄명을 세분화하지 아니함

9. 도로교통법위반사건 죄명표

도로교통법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제43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44조 제1항	〃 (음주운전)
제44조 제2항	〃 (음주측정거부)
제46조	〃 (공동위험행위)
제54조 제1항	〃 (사고후미조치)
그외	도로교통법위반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제2조 제2호의 '마약'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제2조 제3호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 (향정)
제2조 제4호의 '대마' 관련	〃 (대마)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항·제3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협박,주거침입, 퇴거불응,재물손괴등,존속폭행,체포,감금,존속협박,강요, 상해,존속상해,존속체포,존속감금,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협박,주거침입, 퇴거불응,재물손괴등,존속폭행,체포,감금,존속협박,강요, 상해,존속상해,존속체포,존속감금,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등,존속폭행,체포,감금,존속 협박,강요,상해,존속상해,존속체포,존속감금,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삭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제3항, 제4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협박,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등,존속폭행,체포,감금,존속협박,강요,상해,존속상해, 존속체포,존속감금,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제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 물건, 전자기록등)(손상, 은닉, 무효), 공용(건조물, 선박, 기차, 항공기)파괴, 살인, (촉탁, 승낙)살인, (위계, 위력)(촉탁, 승낙)살인, (위계, 위력)자살결의, (살인, 위계촉탁살인, 위계승낙살인, 위력촉탁살인, 위력승낙살인, 위계자살결의, 위력자살결의)(예비, 음모), 업무방해, (컴퓨터등손괴, 전자기록등손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경매, 입찰)방해,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준특수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 치상), 강도강간,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 치상), 상습(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 해상강도), 강도(예비, 음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제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상습, 공동, 집단·흉기등, 상습집단·흉기등)(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등, 존속폭행, 체포, 감금, 존속협박, 강요,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이용·지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7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9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 해당 기수죄명 다음에 '미수' 표시하지 아니함

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제18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제19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제20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제21조 제1항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
그 외의 제21조 제1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그 외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표시

13.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제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제4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제5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추행)〕
제8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제8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제9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치상)〕
제10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치사)〕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그 외의 11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제12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
제13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제14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제15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제16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합의강요)
제1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
제31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비밀누설)
그 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제70조 제1항, 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제71조 제3, 5호	〃 (개인정보누설등)
제71조 제9, 10, 11호,	〃 (정보통신망침해등)
제72조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	〃 (음란물유포)
그 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제18조 제1항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제18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제18조 제3항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6. 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건 죄명표

국민체육진흥법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제47조 제2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제48조 제3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제48조 제4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그 외	국민체육진흥법위반

17. 한국마사회법위반사건 죄명표

한국마사회법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제50조 제1호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제50조 제2호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그외	한국마사회법위반

1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건 죄명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제4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제5조	〃 (아동학대중상해)
제6조	〃 〔상습(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카목의 각 죄명)〕
제7조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제59조 제1항, 제2항	〃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제59조 제3항	〃 (이수명령 불이행)
제60조	〃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제61조 제1항	〃 〔(폭행, 협박)업무수행 등 방해〕
제2항	〃 〔(단체·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업무수행 등 방해〕
제3항	〃 〔업무수행 등 방해(치상, 치사)〕
제62조 제1항	〃 (비밀엄수의무위반)
제2항	〃 (아동학대신고인의 인적사항 공개 및 보도행위)
제3항	〃 (보도금지의무위반)
그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9. 아동복지법위반사건 죄명표

아동복지법 해당조문	죄 명 표 시
제71조 제1항 제1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제1의2호	"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제2호	" (아동학대, 아동유가방임, 장애아동관람, 구걸강요·이용행위)
제3호	" (양육알선금품취득, 아동금품유용)
제4호	" (곡예강요행위, 제3자인도행위)
제71조 제2항 제3호	" (무신고 아동복지시설 설치)
제4호	" (허위서류작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취득)
제5호	" (시설폐쇄명령위반)
제6호	" (아동복지업무종사자 비밀누설)
제7호	" (조사거부·방해 등)
제72조	" 〔상습(제71조 제1항 각호 각 죄명)〕
그외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복지법 제73조: 해당 기수 죄명 다음에 '미수' 표시하지 아니함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시행 2006.4.24] [법무부령 제00598호, 2006.4.24,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①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형법 위반 피의자
2. 별표에<%생략:별표0%> 정하여진 법률 위반 피의자

②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다.

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때
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
3.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
4.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의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작성과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의자가 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12.31, 1995.6.24, 1999.3.30>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부칙 <제281호,198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호,1993.12.31>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호,1995.6.24>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호,1999.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8호,2006.4.2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⑨및 ⑩생략

제8조 생략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시행 2014.6.26] [법무부령 제00818호, 2014.6.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31, 2003.7.28, 2008.1.7>

1. "압수물"이라 함은 압수된 물건과 환가대금 및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말한다.
2. "압수조서등"이라 함은 압수조서 또는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는 진술조서와 공판조서등을 말한다.

2의2. "압수표"라 함은 압수물에 관하여 종류별로 수리·처분명령·처분결과 등을 기재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압제번호"라 함은 압수표의 진행번호를 말한다.
4. "특수압수물"이란 압수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통화·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 다만, 원형보존이 불필요한 통화·외국환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귀금속류 및 귀금속제품
   다. 총포류 및 화약류
   라. 독약 및 극약
   마. 마약류
   바. 문화재 및 고가예술품
   사.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물건
   아. 그 밖에 검사 또는 법원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4의2. "일반압수물"이라 함은 특수압수물외의 압수물을 말한다.

5. "증제번호"라 함은 압수할 때에 압수물을 종류별, 각개별로 분류하여 압수물에 붙인 번호를 말한다.

6. "경찰서등"이라 함은 사법경찰관서와 세무관서 등 특별사법경찰관서를 말한다.

제3조(주의사항) ①압수물을 다루는 직원은 압수물이 범죄수사와 공소유지에 중요한 증명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압수물이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관리함으로써 압수물의 원상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압수물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압수물을 신속·정확하게 취급하고, 항상 관계서류를 정비하여 멸실·훼손등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타인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태도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압수물의 수리 <개정 2003.7.28>

제4조(압수물의 수리) ①검사에게 압수물의 송부 또는 인계가 있을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과 사건기록의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을 대조 확인하고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환가대금에 관하여는 환가지휘서·견적서·매수서등 공매관계서류도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압수물을 송부받은 때에는 압수물과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을 대조·확인하고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압수물부전지를 사건기록 왼쪽 아랫부분에 붙여야 한다.<신설 2003.7.28>

제5조(압수물 수리통지서)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압수물을 수리한 때에는 압수물을 송부 또는 인계한 자가 제시하는 사건송치부 또는 압수물 송부부등에 날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수물을 수리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사건송치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다른 검찰청으로부터의 이송 또는 환부촉탁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압수물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당해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송 또는 환부촉탁한 검찰청에서 전산망을 통한 확인 등 다른 방법으로 압수물의 수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압수물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3.7.28, 2008.1.7>
③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른 검찰청에 보존책임이 있는 사건기록을 압수물로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검찰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압수표의 작성)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압수물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압수표에 품명·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량·변질 또는 용적의 변화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무게와 부피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건송치전에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압수물이 환부·가환부·피해자환부 또는 폐기한 상태로 송부된 때에는 압수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압수물중 일부를 환부·가환부·피해자환부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를 작성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압수원표 총목록에 압제번호、수리연월일、피의자성명등을 기재하고, 압수물총목록, 사건송치서 또는 범죄인지서, 압수표 및 압수조서등에 압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압제번호) 압제번호는 "○년압제○○호"로 표시하고 사건마다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9조(압수물꼬리표、압수물봉투 및 압수금봉투)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통화、외국환、유가증권、환가대금을 제외한다)을 수리한 때는 별지 제4호서식(1)에 의한 압수물꼬리표에 압제번호、증제번호、사건명、피의자성명등을 기재하여 이를 압수물에 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2) 또는 별지 제4호서식(3)에 의한 압수물봉투에 넣거나 포장한 후 그 봉투와 포장에도 압제번호、증제번호、사건명、피의자성명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찰청에 보존된 사건기록이 압수물인 때에는 압수물꼬리표 및 포장에 그 사건기록의 원보존청、사건번호、피의자성명 및 죄명등을 주서로 표시하여 압수가 해제된 경우 환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이 통화、외국환、유가증권 또는 환가대금인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압수금봉투에 넣고 압제번호、피의자성명、종류、수량、총금액、증제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1.7>

제10조(특수압수물)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중 특수압수물에 해당하는 것은 특수압수물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로 분류된 압수물 중 통화、외국환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특수압수물에 관하여 이를 송부 또는 인계한 자로부터 감정서 3부를 제출받아 당해 사건기록과 압수표에 각 1부씩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특수압수물에 붙여야 한다.<개정 1987.12.31, 2003.7.28, 2008.1.7>

③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로 분류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그 뜻을 압수표、압수물봉투、압수금봉투 또는 압수물포장에 주서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7.28>

제11조(압수물 수리명령)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의 수리절차가 끝난 때에는 압수표를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제출하여 압수물의 수리명령 및 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2.12.31>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통화、외국환 또는 유가증권인 압수물에 관하여 제1항의 압수물 수리명령 및 확인인을 받을 때에는 검사로부터 원형보존의 필요유무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원형보존이 필요없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압수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3.7.28, 2008.1.7>

③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압수물수리명령을 받은 때에는 압수물과 압수표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유효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압수표·압수물 봉투 및 압수물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03.7.28>

제12조(추송 압수물의 수리) 압수물이 추가로 송부 또는 인계된 때에는 당해사건에 관하여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의하여 이 장에 규정된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법원 또는 검사로부터 추가로 압수물을 송부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가환부 압수물의 수리) ①검사로부터 가환부된 압수물에 관하여 제출명령이 있거나 피가환부인 이외의 자에게 환부할 사유가 발생하여 압수물이 제출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검찰청에서 가환부한 압수물인 때에는 당해사건에 관하여 이미 작성되어 있는 압수표에 의하여 수리절차를 취하고, 종전의 증제번호를 그대로 부여하되 압수표가 당해연도 이전에 작성 정리된 것인 때에는 새로운 압수표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이미 정리된 압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 총목록과 압수조서등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수리)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른 검찰청으로부터 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가 있는 때에는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된 보관금 전환통지서를 사건기록의 압수물 총목록과 대조하여 수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압수물의 영치

제15조(압수물 보관자) ①압수물(환가대금을 제외한다)의 출납과 보관은 영치사무담당직원이 이를 행한다.
②환가대금의 출납과 보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에는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에 정한 절차에 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이를 행한다.

제16조(영치절차) ①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인계받은 압수표와 압수물을 대조·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며 압수물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압수물대장에 영치연월일·압제번호·피의자성명·품명·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압수표의 수령인란에 날인하고, 압수표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3.8.17>
②제1항의 경우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유효기간이 있는 때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금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03.7.28>
③제1항의 경우 압수물이 환가대금인 때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압수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에 압제번호·증제번호·피의자성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환가대금과 함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압수금 및 환가대금인계부와 환가대금을 대조·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며 환가대금을 인수한 때에는 압수금 및 환가대금인계부의 수령인란에 날인하고, 보관금 영수증과 보관금 영수필 보고서를 작성하여 압수금 및 환가대금인계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전환통지서에 의하여 수리된 환가대금에 관하여는 국고금 취급은행으로부터 송부된 국고금 송금통지서와도 대조·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3.7.28>

⑤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보관금 영수필 보고서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보관금 영수증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3.7.28>

제17조(영치장소) ①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마친 때에는 압수물을 지체없이 창고 또는 이에 갈음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특수압수물은 금고 그 밖의 견고한 용기 또는 잠글 수 있는 설비에 보관하여야 한다. 파손되기 쉬운 물건이나 취급상 위험한 물건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93.8.17, 2003.7.28>

제18조(특수압수물대장)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에 관하여는 압수물대장외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특수압수물대장에 피의자 성명·압제번호·품명·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를 작성·비치하고, 그 보관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제18조의2(특수압수물의 점검)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에 대하여 월 1회 점검하고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특수압수물점검부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28]

제19조(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인 통화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과장의 참여하에 압수금 봉투를 풀로 견고하게 붙이고 소속과장의 봉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압수물인 통화영치의 특례) ①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인 통화와 함께 당해통화의 원형보존의 필요가 없다는 뜻이 기재된 압수표를 인계받은 때에는 압수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에 압제번호·증제번호·피의자성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압수물인 통화와 함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압수금 및 환가대금인계부와 압수물인 통화를 대조·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며, 압수물인 통화를 인수한 때에는 압수금인계부의 수령인란에 날인하고 보관금영수증과 보관금 영수필 보고서를 작성하여 압수금인계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보관금 영수필 보고서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보관금 영수증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압수물인 유가증권의 영치) ①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이 유가증권이나 주식 또는 예금、적금의 통장、전당표、보관표등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인 때에는 검사로부터 지급정지의 필요유무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의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1)에 의한 지급정지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그 발행기관에 송부하여 압수해제통보가 있기 전에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3.7.28>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압수물중 통장등의 잔고를 인출하거나 환가하여 압수물과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이를 분리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치하여야 한다.<신설 1993.8.17>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압수물중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검사로부터 지급정지해제 지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2)에 의한 지급정지해제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그 발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03.7.28>

제22조(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 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이 외국환인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1)에 의한 대외지급수단보관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압수된 외국환과 함께 외국환취급은행에 보관 의뢰하고 외국환보관증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이 소액인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8.4.4, 2008.1.7>

② 원형보존의 필요가 없는 외국환은 외화당좌예금계좌에 예치하여 보관할 수 있다.<신설 2008.1.7>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1절 처분명령의 기재

제23조(압수표의 처분명령기재) ①검사가 압수물을 처분할 경우와 재판에 의한 압수물의 처분 또는 몰수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음의 서류를 조사하고 압수표에 검사가 하여야 할 명령의 요지를 기재하고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압수물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6.5.1>

1. 재판에 의한 압수물의 처분 또는 몰수의 집행인 때에는 재판서의 원본、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2. 불기소、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에 의한 압수물의 처분인 때에는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결정서,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3. 사건을 다른 검찰청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송치하는 때에는 송치결정서、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4. 처분촉탁에 의한 압수물의 처분인 때에는 촉탁서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압수물의 처분인 때에는 사건기록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사건종결전에 압수물에 관하여 환부·가환부·피해자환부·폐기 또는 환가처분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압수표에 그 명령의 요지를 기재하여 이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의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처분명령란에 날인하고, 압수표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3.7.28>

제24조(처분명령요지란의 기재방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요지란의 기재는 별표 1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3.7.28>

제2절 대출

제25조(대출) ①검사가 압수물(환가대금을 제외한다)을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압수물건대출표를 작성하여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8.17>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이 압수물건대출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압수물 대출부에 검사의 성명·대출연월일·압제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수령인란에 검사 또는 참여직원의 수령인을 받고 압수물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8.17>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한 압수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압수물 대출부에 반환연월일을 기재하고, 반환수령인란에 날인한 후 압수물건대출표는 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3.8.17>

제26조(압수물인 통화의 대출) ①검사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된 압수물을 대출받아 개봉한 때에는 압수금봉투에 개봉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봉된 압수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제19조에 정한 절차에 준하여 개봉한 검사 또는 참여직원의 입회하에 다시 봉인하여야 한다.

제27조(법원의 대출)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법원이 압수물을 대출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몰수물처분

제28조(몰수유가물의 처분) ①검사는 몰수물이 유가물인 때에는 공매에 의하여 국고납입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물이 위험물이거나, 파괴 또는 폐기할 물건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의 공매에 의한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재무관의 지시를 받아 공매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공매절차를 마친 때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압수물처리부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압수물공매처리부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금처리부와 공매대금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4항의 압수금처리부에 날인하고, 수입금보고서와 수입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고, 수입금보고서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수입금영수증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3.7.28>
⑦영치사무담당직원은 몰수집행 또는 대가보관을 위한 공매를 할 경우 원형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그의 비용으로 사진촬영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매조건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29조(몰수무가물의 처분) ①검사는 몰수물이 무가물인 때에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유가물인 몰수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7.28>
1. 위험물인 때
2. 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가 노후·파손 등으로 인하여 공매할 수 없는 때
3. 그 밖의 물건으로서 파괴 또는 폐기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몰수물을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먼저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신설 2003.7.28>
③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처분 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압수표에 의하여 압수물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각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파괴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압수표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폐기조서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3.7.28>

제30조(몰수 환가대금의 처분) ①검사는 몰수물이 환가대금인 때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제1항의 국고납입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압수표에 의하여 압수금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보관금국고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보관금원부와 보관금국고납입의뢰서를 대조하여 압수금처리부에 날인한 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보관금국고납입의뢰서를 인계하여 보관금의 국고 귀속

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⑤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마친 후 보관금수입보고서와 보관금수입영수증을 작성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5항의 보관금수입보고서와 보관금수입영수증을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교부하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고, 보관금수입보고서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보관금수입영수증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3.7.28>

제31조(몰수통화의 처분) ①검사는 몰수물이 통화인 때에는 국고 납입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제1항의 국고납입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압수표에 의하여 압수금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금봉투를 개봉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압수금처리부와 몰수물인 통화를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몰수물인 통화와 압수금처리부를 대조하여 인수하고 몰수물인 통화를 국고납입하여야 하며, 국고납입한 때에는 수입금영수증과 수입보고서를 작성하여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고, 수입보고서는 압수표에 첨부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수입금 영수증은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3.7.28>

제32조(몰수통화 처분의 특례) 제30조의 규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몰수물인 통화의 처분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33조(몰수 유가증권의 처분의 특례) ①검사는 몰수물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국고납입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제1항의 국고납입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표를 인계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2)의 지급정지해제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유가증권의 발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1982.12.31>

④영치사무담당직원은 몰수물인 유가증권이 당좌수표·여행자수표·어음 등과 같이 추심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압수금추심의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발행기관에 추심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2003.7.28>

⑤제31조의 규정은 영치사무담당직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심금을 수령한 후의 추심금 및 유가증권의 국고납입절차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2.12.31>

제34조(몰수 외국환 처분의 특례) ①검사는 몰수물이 외국환인 때에는 국고납입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제1항의 국고납입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2조에 따른 외국환을 외국환취급은행에 매각하고, 외국환취급은행으로부터 외국환매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7>

④제3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몰수외국환의 매각대금의 국고납입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⑤검사는 외국환취급은행이 제2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관된 외국환의 매입을 거절하는 때에는 계속 보관하게 하거나 별지 제10호서식(2)에 의한 대외지급수단반환서에 의하여 외국환을 반환받아 폐기하거나 기타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폐기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검사는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찰청에서 보관 중인 외국환에 대하여 외국환취급은행이 매입을 거절할 때에는 계속 보관하게 하거나 폐기하는 등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신설 2008.1.7>

제35조(몰수물의 인계처분) ①검사는 별표 2에 정한 몰수물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표에 정한 바에 의하여 인계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압수물 인계서를 작성한 후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압수물수령서 및 몰수물과 함께 압수표에 기재된 인수자에게 인계하고, 압수물수령서를 반환받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3.7.28>

제36조(몰수물의 특별처분) ①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몰수물에 관하여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에 정한 몰수물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처분을 하는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처분명령의 내용에 따라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의한다.

제37조(몰수물의 특별인계 처분) ①검사는 검찰실무자료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에 관하여는 대검찰청에 인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검찰실무자료요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공안사건의 몰수물등 처분) ①검사는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몰수물과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몰수금품 통보서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2010.9.10>

②검사는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몰수물 또는 국고귀속된 압수물에 관하여 송부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건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3.7.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몰수물의 처분촉탁) ①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소재지 관할검찰청의 검사에게 몰수물의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

②검사가 제1항의 촉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몰수물처분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또는 초본과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제40조(몰수의 집행) ①검사는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몰수물제출명령서에 의하여 몰수물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②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물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5서식에 의한 몰수집행명령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3.7.28>

③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로부터 몰수물의 제출이 있거나 강제집행에 의하여 집행관으로부터 몰수물을 인계받은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고, 이 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7.28>

제41조(몰수의 집행촉탁) ①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검찰청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소재지 관할검찰청의 검사에게 몰수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②검사가 제1항의 촉탁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몰수집행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또는 초본과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③몰수집행의 촉탁과 동시에 당해몰수물의 처분도 촉탁하는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몰수집행촉탁서의 비고란에 그 뜻과 처분구분을 명백히 기재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제42조(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집행) 형사소송법 제4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몰수물제출명령서 또는 몰수집행명령서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몰수집행명령서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하여 상속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3조(합병후 존속 법인등에 관한 몰수집행) 형사소송법 제4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몰수물제출명령서 또는 몰수집행명령서에 그 법인에 관하여 집행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몰수집행명령서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법인의 명칭과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명칭과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

재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4조(위조·변조된 몰수부분 표시) ①검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이 몰수된 물건에 관하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에 주서로써 위조·변조의 표시를 하고 판결연월일·판결법원·사건명과 몰수의 뜻을 부기하고, 소속검찰청명과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의 집행을 한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물건이 공무소에 속한 것인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위조(변조)부분 몰수통지서를 작성·송부하여 해당공무소로 하여금 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45조(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 불능결정) ①검사는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몰수집행불능결정 또는 몰수물처분불능결정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검사가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명령 요지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몰수집행(몰수물처분) 불능결정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그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 압수표와 함께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사의 몰수집행불능결정 또는 몰수물처분불능결정은 압수표처분명령란에 날인의 방법으로 하며, 몰수집행(몰수물처분) 불능결정서에 서명·날인하여 압수표와 함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한 후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7.28>

제46조(몰수물의 교부) ①형사소송법 제484조제1항에 규정된 몰수물을 교부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형사소송법 제4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교부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는 경우에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교부청구서에 검사의 날인을 받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압수표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국고납입된 통화와 환가대금을 교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절 소유권포기

제47조(소유권포기) ①검사는 범죄에 이용될 염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압수물, 법령상 생산·제조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 경제적 가치로 보아 환부의 실익이 없는 압수물, 그 밖의 사유로 환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소유자에게 소유권 포기의사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소유권포기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그 뜻을 기재함으로써 소유권 포기서를 받는 것에 갈음할 수 있으며, 진술서 그 밖에 소유자가 직접 작성한 서

류에 소유권 포기의사가 기재된 때에는 이를 소유권 포기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3.7.28>

③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포기의사 유무의 확인을 경찰서등의 장 또는 소유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소유권포기의사 조사촉탁서에 의한다. 소유자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등에 수용되어 있어 그 시설의 장에게 촉탁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3.7.28>

제48조(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①소유권 포기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28조 내지 제38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사는 직권이나 피압수자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수물을 환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7.28]

제5절 환부

제49조(환부절차)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압수물(환가대금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환부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압수물건 환부통지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피환부인을 출석시켜 본인임을 확인하고 압수표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출석한 때에는 피환부인의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사본, 자필서명이 있거나 전자적 인증의 방법으로 작성된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고 피환부인과의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2010.1.29>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물을 환부한다. 이 경우에는 피환부인으로부터 압수물수령증을 제출받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3.7.28>

③제1항의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피환부인이 소재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할 수 없는 때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환가대금의 환부)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환가대금에 관하여 환부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환부인을 출석시켜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압수표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금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보관금환부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2항의 보관금 환부의뢰서와 보관금원부를 대조하고 압수금처리부에 날인한 후 피환부인에게 보관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피환부인으로부터 압수물수령증을 제출받아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에 압수물 수령증을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3.7.28>

제51조(압수물인 통화의 환부) 제50조의 규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통화의 환부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51조의2(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 압수물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그 밖에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재발급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28]

제52조(환부절차의 특례)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우송하여 환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압수물을 배달증명우편 또는 계좌입금으로 환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표의 비고란에 우송 또는 계좌입금의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87.12.31, 2003.7.28>

1. 피환부인이 우송에 의한 환부를 희망하는 경우

1의2. 피환부인이 계좌입금에 의한 환부를 희망하는 경우

2. 피환부인으로부터 출석하여 수령하겠다는 회답이 있었으나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우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의한 압수물건송부서를 작성하여 환부할 압수물과 함께 동봉하여 우송하여야 한다.<개정 1987.12.31>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환부받은 피환부인으로부터 압수물수령증의 송부가 없는 때에는 우편관서로부터 받은 배달증명서로써 압수물 수령증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7.12.31>

④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이 현금 또는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에 의한 압수금환부통지서를 피환부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03.7.28>

제53조(환부의 촉탁) ①검사는 다른 검찰청의 검사 또는 경찰서등의 장에게 압수물의 환부를 촉탁할 수 있다. 피환부인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도 촉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촉탁은 별지 제33호서식(1) 또는 별지 제33호서식(2)에 의한 압수물환부촉탁서에 의한다.

③환가대금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통화에 관하여 환부촉탁을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전환절차를 취한 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작성한 보관금전환통지서를 압수물환부촉탁서에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제54조(환부의 공고)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환부불능의 사유로 관보에 의한 공고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압수물공고목록표를 3부 작성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압수물공고목록표 1부에 날인한 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 보관하게 하고, 관보규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문서를 작성하여 압수물공고목록표 2부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압수물의 공고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1987.12.31, 2003.7.28>
③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게재와는 별도로 압수물공고목록표를 처분검찰청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할 수 있다.<신설 2003.7.28>

제55조(기간만료후의 압수물 처분)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국고에 귀속되는 압수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몰수물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불기소처분사건의 압수물환부) ①검사는 불기소처분된 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압수물중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그 사건에 대한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압수물 환부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 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나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또는 동법 제489조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압수표 및 압수물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3.8.17>

제6절 이송

제57조(다른 검찰청에의 이송) ①검사는 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에 압수물이 운반에 불편하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소속검찰청 또는 그 외의 장소에 보관한 상태로 송치할 수 있다.
②검사는 압수물이 있는 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는 때에는 송치결정서 및 송치서에 압수물의 송부, 소속검찰청보관 또는 검찰청외 보관의 구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의 송부없이 사건 송치를 받은 검사가 다시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사건이송통지서에 의하여 원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검사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압수표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소년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년부 송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3.8.17>

제58조(압수물의 송부)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압수물(환가대금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송부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물을 우송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송부한 후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3.7.28>

제59조(환가대금의 송부)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환가대금에 관하여 송부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금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고 보관금 송부를 의뢰한다.
③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압수금처리부와 보관금원부를 대조확인하고 압수금 처리부에 날인한 후, 정부보관금전환통지서를 작성하여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고 보관금 전환절차를 취한다.
④영치사무담당직원은 보관금전환통지서를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건기록과 함께 보관금전환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7.28>

제60조(압수물인 통화의 송부) 제59조의 규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통화의 송부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1조(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송부등) 제57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58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은 형사피고사건의 이송 또는 병합등에 의하여 사건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절 기소중지사건·참고인중지사건 <개정 1996.5.1>

제62조(기소중지처분·참고인중지처분 사건의 압수물처분) ①검사는 기소중지처분 및 참고인중지처분을 하는 사건의 압수물을 공소시효가 완성할 때까지 계속 보관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증서와 유가증권등 중요한 압수물을 제외한 서류 또는 위조인장등과 같은 소형의 압수물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5.1>
②검사는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19조로 준용되는 동법 제133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준하여 공소시효 완성전이라도 압수물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압수물을 사진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제1항의 보관명령 또는 기록편철 보관명령을 받은 때에는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 및 공소시효완성연월일란을 기재한 후 검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

다.<개정 2003.7.28>

④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압수물에 관하여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의한 기소중지·참고인중지사건압수물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매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압수표 비고란에 점검연월일 및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3.7.28>

⑤제4항의 경우 계속 보관하기에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검사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하며, 검사는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신설 2003.7.28>

⑥제1항 후단의 경우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이 재기된 때에는 다시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6.5.1, 2003.7.28>

제8절 사건종결전처리

제63조(준수사항) 검사는 압수물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이거나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사건종결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4조(사건종결전 환부·가환부·피해자 환부) ①이 장 제5절의 규정은 압수물의 사건종결전 환부·가환부 또는 피해자 환부에 이를 준용한다.

②압수물은 사건종결전에 가환부 할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피가환부인으로부터 미리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압수물가환부신청서를 받아 압수표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피가환부인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할 것을 고지하고 압수물수령서 2통을 받아 압수표에 첨부하여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수령서 1통을 압수표에 첨부,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사건기록에 편철한다.<개정 1984.12.31>

③가환부한 압수물에 관하여 그대로 본환부하는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본 환부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 사건기록에 편철된 가환부 압수물수령증에 본환부 한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65조(환가처분) ① 검사는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에 곤란한 것인 때에는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3.7.28, 2008.1.7>

② 제1항은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이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울 때에도 준용한다.<신설 2008.1.7>

제66조(사건종결 전 폐기) ①제29조·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은 검사의 「형사소송법」 제219조로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0조제2항·제3항에 따른 압수물처분에 준용한다. 이 경우 폐

기조서는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2008.1.7>

②검사는 사건종결전에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견본보관, 사진촬영, 감정서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3.7.28>

제67조(사건종결전 처분의 정리) 사건종결전에 이 절에 정한 환부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에 그 뜻을 기재하고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에도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8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 지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로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0조, 제132조, 제133조 또는 제134조에 따라 압수물의 처분 지휘품신이 있는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압수물처리지휘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은 후 사건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2008.1.7>

제5장 검찰청외 보관 증거물

제69조(압수물의 경찰서등 보관송치사건)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압수물을 경찰서등에 보관한 상태로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사건의 송치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도 제2장의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표의 비고란에 경찰서등의 보관송치사건 또는 고발사건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물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보관 위탁되어 있는 때에는 보관증을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비고란에 보관자의 소속·직위(직급)·성명 및 보관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9.10>

③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보관위탁되어 있는 때에는 보관증을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비고란에 보관자의 성명·주소 및 보관장소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보관자로부터 재정보증서 2통을 제출받을 수 있다.<신설 2010.9.10>

④ 제3항의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보관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관자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한다.<신설 2010.9.10>

제70조(압수물의 다른 검찰청 보관 이송사건) 제69조의 규정은 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을 당해 검찰청 또는 경찰서등에 보관한 상태로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사건의 송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1조(압수물의 보관위탁) ①형사소송법 제219조로 준용되는 동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

은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에 보관위탁의 뜻을 기재한 후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관증의 징구등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7.28, 2010.9.10>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물에 관하여 보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무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압수물 사무담당 직원은 압수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보관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2조(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①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위탁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보관위탁 압수물 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매 반기 1회 이상 그 보관상황을 확인하여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②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제69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 이외의 장소에 보관한 압수물에 관하여 보관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경찰서등 보관압수물의 처분) ①검사는 경찰서등에 보관중인 압수물 또는 경찰서등에서 보관위탁한 압수물을 처분할 때에는 압수물 처분 촉탁서에 의하여 경찰서등의 장에게 그 처분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제30조의 규정은 경찰서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처분촉탁에 의한 압수물공매대금의 송부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경찰서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처분촉탁에 의하여 압수물환가대금의 송부가 있는 때에는 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의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경찰서등에 보관중인 압수물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을 제출하게 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에 압수물제출을 명하는 뜻을 기재하고 검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3.7.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이 제출된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의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74조(공무소등에 보관위탁된 압수물의 처분) 제7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위탁된 압수물을 처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압수해제통지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장 공조

제75조(촉탁수리) ①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에 관한 처분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촉탁받은 검찰청소속의 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공조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촉탁검찰청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를 작성하고 압수표의 비고란에 촉탁받은 뜻을 기재한 후 소속

검찰청의 압수물 처분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소속검찰청에 보관중인 압수물에 관한 처분촉탁인 때에는 이미 작성되어 있는 압수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촉탁검찰청으로부터 처분결과의 회답요청이 있는 때에는 촉탁회답서에 의하여 회답하고, 압수표 및 공조사건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6조(환부수탁) ①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환부촉탁을 받은 경우 피환부인의 소재불명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불능인 때에는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피환부인이 다른 검찰청 관할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그 검찰청검사에게 환부를 전촉할 수 있다.

제77조(몰수집행수탁) 제75조의 규정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집행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7조의2(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의 압수물 처리) ①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에 관한 압수물의 수리·영치 및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②「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8조에 따라 요청국에 압수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압수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포기서 또는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를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압수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압수물의 반환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에 관한 서류를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의 반환에 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3월마다 요청국의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검사는 지체 없이 압수물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14]

제7장 상소사건의 특례

제78조(상소사건압수물의 송부) 상소사건의 압수물의 송부는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로부터 압수물 송부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되, 이 경우에는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9조(상소사건의 압수물 수리 및 영치)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압수물의 송부를 받은 때의 압수물의 수리 및 영치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상소사건 압수물의 처분) ①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압수물을 소속검찰청에서 처분하거나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 송부받지 아니한 압수물은 사건기록 반환서에 의하여 처분을 지시하거나 이를 송부받아 처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압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81조(관계서류의 정리) 압수물 처리와 종결원인에 관한 서류 및 관계서류는 압수표에 첨부하여 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이 이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제82조(압수표등의 정리보관) ①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의 처분이 종결된 때에는 압수표에 첨부된 관계서류를 대조·확인하고 압수원표 총목록에 최종완결 연월일을 기재하여 압수표와 함께 소속과장에게 제출하여 압수표와 압수원표 총목록의 완결란에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의 기재는 별표 1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3.7.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끝난 압수표는 연도별, 압제번호 순으로 보존한다.
④압수원표총목록·압수물대장·특수압수물대장 및 특수압수물점검부 등은 매 년초 전전년도말 기준 미제를 새장부로 이월하여 직전연도 장부와 함께 사용하고, 이월이 종료된 전전 년도 장부는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3.7.28>
⑤각급 검찰청의 장은 압수물 사무담당직원 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의 이동에 따른 압수물·압수표·압수물대장등에 관한 인계인수부를 비치·관리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3조(압수물 보관 및 처리현황보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환가대금, 압수물인 통화와 외국환의 보관 및 처리현황에 관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영치 및 보관금 현황표를 작성하여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에게 일일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치 및 보관금에 관한 업무량이 적은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일일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3.8.17>

제84조(압수물 현황조사보고)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검찰청 및 지청에 대하여 압수물과 이에 관한 관계장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8.17>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5조(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의 특별절차) 지방검찰청의 장은 관할 본청 또는 지청이 압수물에 관한 업무량이 적거나 직원수의 과소등의 사유로 인하여 압수물의 수리영치 및 처분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규칙의 뜻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별절차에 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장은 소속고등검찰청의 장과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6조(내사사건등의 압수물 처리) 내사·진정·변사·항고·재항고사건에 관한 압수물의 수리·영치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1984.12.31>

제87조(불기소사건등의 압수물처리)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중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압수물로서 법원의 결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 또는 가환부되지 아니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7.12.31]

제88조(통신제한조치 집행에 의한 압수물 처리)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그와 관련된 범죄의 사건기록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31]

부칙 <제231호,1981.12.24>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1982.12.31>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호,1984.12.31>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호,1987.12.31>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호,1988.12.29>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호,1993.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1994.12.3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9호,1995.12.30>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4호,1996.5.1>

이 규칙은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호,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호,1998.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호,2003.7.28>

이 규칙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6호,2006.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8호,200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689호,2010.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0호,201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8호,2014.6.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1998.12.29, 1996.5.1, 2003.7.28, 2006.9.14>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과 처분결과란의 기재요령

1. 검찰청보관 압수물의 경우

구 분	조 항	처분명령요지란의 기재요령	처분결과란기재요령
1. 몰 수	28-1	가. 몰수·공매국고 귀속(공매된 경우)	공매통지
	29-1		폐 기
	30-1	나. 몰수·무가물폐기	국고납입
	31-1	다. 몰수·국고납입	
	32-1		
	33-1		
	34-1		인 계
	35-1	라. 몰수·○○에게 인계	
	37-1		
	38-2		파괴(폐기)
	29-1	마. 몰수·파괴(폐기)	촉 탁
	39-1	바. 몰수·처분촉탁	
2. 위조(변조)분의 몰수	44-1	위조(변조)부분 몰수 표시한 후 제출인 ○○에 환부	환 부
3. 소유권포기	47	(몰수의 경우에 준한다)	(몰수의 경우에 준한다)
4. 환부, 가환부	49-1	제출인, 소유자, 피해자 ○○○에 환부, 가환부	환부(가환부)
	50-1		
	51		
	64		
	53-1	제출인, 소유자, 피해자 ○○○에 환부촉탁(타검찰청에 환부촉탁할 경우)	환부촉탁
	53-2		
5. 환부불능	49-3	관보공교	공고의뢰
	55	(몰수의 경우에 준한다)	(몰수의 경우에 준한다)
6. 사건의 이송	57-1	○○검찰청(가정법원)에 송부	송 부
	57-5		
	58-1		
	59-1		
	60		
	61		
7. 기소중지 사	62-1	보관(기록편철보관)	보관(기록편철)

건·참고 인 중지사건			
8. 사건종결전 처분			
(1) 환가처분	65	가. 멸실(파손,부패)우려·환가처분하여 대가보관	환가통지
		나. 보관불편, 환가처분하여 대가보관	
(2) 위험물 폐기	96	위험발생 우려·폐기	폐 기
9. 몰수물의 교부	46-1	○○○에 교부	교 부
10. 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	77의2-2	요청국 인도	법무부 송부
	77의2-3	요청국 반환보증부 인도	법무부 송부

2. 청의 보관압수물의 경우

구 분	조 항	처분명령요지란의 기재요령	처분결과란기재요령
1. 몰 수	73-1	가. 몰수 공매촉탁	공매촉탁
	73-2	(공매대금 송부시)	국고납입
	73-1	나. 몰수 폐기촉탁	폐기촉탁
	73-1	다. 몰수○○에 인계촉탁	인계촉탁
	73-1	라. 몰수 처분촉탁	처분촉탁
	73-2	(세관의 경우 공매대금송부시)	국고납입
	73-4	마. 몰수 제출명령	제출명령
	74		
2. 소유권포기	73-1	(몰수의 경우에 준함)	(몰수의경우에준함)
3. 환부, 가환부, 피해자 환부	73-1	제출인 / 소유자 / 피해자 } ○○○에 환부, 가환부촉탁(단, 환부불능인 경우는 상당 처분촉탁)	환부 / 가환부 } 촉 탁
4. 환부불능	73-1	(1.의 5.에 준함)	(1.의 5.에 준함)
5. 사건이송	73-1	보관위탁한대로 ○○검찰청(가정법원)에 송부	송 부
6. 사건종결전의 처분			
(1)환가처분	73-1	가. 멸실(파손, 부패)우려 환가처분촉탁	환가처분촉탁
		나. 보관불편, 환가처분촉탁	환가처분촉탁
(2) 위험물의 폐기	73-1	위험발생우려 폐기	폐기촉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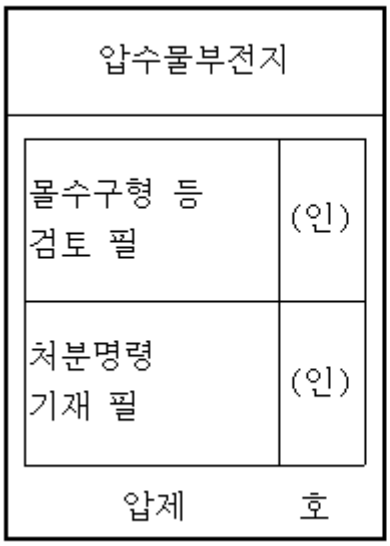
3.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 분	조 항	처분명령요지란의 기재요령	처분결과란기재요령
1. 몰수물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40-1	몰수·○○○에 제출명령	제출명령
2. 제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40-2	몰수·집달관에 집행명령	집행명령
3. 공무소에 통지하여 위조(변조)부분을 표시하게 하는 경우	44-3	위조(변조) 부분 몰수 ○○에 통지	통지

[별표 2] <개정 1987.12.31, 2006.9.14>

몰 수 품	처 분	비 고
1. 검찰실무자료	검찰실무자료로 인계	(인계할 검찰사무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실무자료 요지서를 작성 송부할 것)
2. 마약류	○○보건기관에 인계	시, 도, 군 등 보건기관
3. 총기류		
1) 사용가능한 권총	경찰서에 인계	
2) 군용총기류	○○지구 군수품처리위원회에 인계	
3) 엽총, 공기총류	공매국고귀속	경락자로부터 취득신고각서를 받을 것
4. 포약류 및 수류탄	○○지구 군수품처리위원회에 인계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	사용불능, 폐기	
6. 삭제 <2006.9.14>		
7. 문화재류	문화재관리국에 인계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03.7.28>



바 탕 색 : 초록색
전체가로 : 50mm
전체세로 : 70mm

56mm×76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1982.12.31, 1993.8.17, 2003.7.28>

<table>
<tr><td colspan="3">○○○○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td></tr>
<tr><td colspan="3">등 록 번 호 . . .
수 신 자 검찰청검사장 발신자 지방검찰청
제 목 압수물건 수리통지 검 사 (인)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td></tr>
<tr><td colspan="2">①피의자피고인</td><td>주민등록번호
성 명</td></tr>
<tr><td rowspan="2">송부</td><td>②연월일</td><td>. . .</td></tr>
<tr><td>③압제번호</td><td>압제 호</td></tr>
<tr><td rowspan="2">수리</td><td>④연월일</td><td>. . .</td></tr>
<tr><td>⑤압제번호</td><td>. . . 공제 호
. . . 압제 호</td></tr>
<tr><td colspan="2">⑥물건수량</td><td>제 호부터
제 호까지</td></tr>
<tr><td colspan="2">⑦비고</td><td></td></tr>
</ta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6.12.31, 2003.7.28> (앞 면)

압 수 표

<table>
<tr><td colspan="3">년 압 제 호</td><td colspan="4"></td><td>공 소
시 효</td><td>년</td><td colspan="5">시효
. . .완성</td></tr>
<tr><td rowspan="3">1심</td><td>주임
검사</td><td colspan="2"></td><td colspan="2">수리명령인</td><td colspan="2">. . . 수리</td><td rowspan="4">피의자
또 는
피고인</td><td colspan="5" rowspan="4"></td></tr>
<tr><td colspan="3">년 내사제 호</td><td rowspan="3">종결</td><td>검 사</td><td colspan="2">. . .</td></tr>
<tr><td colspan="3">년 형 제 호</td><td>공 판</td><td colspan="2">. . .</td></tr>
<tr><td rowspan="3">2심</td><td>주임
검사</td><td colspan="2"></td><td>결 과</td><td colspan="2">. . .</td></tr>
<tr><td colspan="3">년 공 제 호</td><td colspan="2">수리명령인</td><td colspan="2">. . . 수리</td><td rowspan="4">죄 명</td><td colspan="5" rowspan="4"></td></tr>
<tr><td rowspan="3">종결</td><td>검 사</td><td colspan="2">. . .</td></tr>
<tr><td>공 판</td><td colspan="2">. . .</td></tr>
<tr><td>결 과</td><td colspan="2">. . .</td></tr>
<tr><td rowspan="2">번호</td><td rowspan="2">물건</td><td rowspan="2">수량</td><td rowspan="2">압 수
사 무
주무인</td><td rowspan="2">영 치
사 무
주무인</td><td rowspan="2">과장
확인</td><td colspan="4">처 분 명 령</td><td colspan="5">처 분 결 과</td></tr>
<tr><td>일 자</td><td>요 지</td><td>과장
확인</td><td>주임
검사</td><td>일자</td><td>내 용</td><td>압수사무
주 무 인</td><td>영치사무
주 무 인</td><td>과장
확인</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57mm×182mm(인쇄용지(특급)120g/㎡)

(뒷 면)

번호	물건	수량	압수사무주무인	영치사무주무인	과장확인	처분명령				처분결과				
						일 자	요 지	과장확인	주임검사	일 자	내 용	압수사무주무인	영치사무주무인	과장확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3.8.17>

압 수 원 표 총 목 록

(앞 면)

①압 제 번 호	②접 수 연월일	③기 록 번 호	피의자 ④피고인 성 명	⑤완 결 연월일	⑥비 고
	. . .	형제 호			
	. . .	형제 호			
	. . .	형제 호			
	. . .	형제 호			
	. . .	형제 호			
	. . .	형제 호			
	. . .	형제 호			
	. . .	형제 호			

23231-31711비
93.5.18 승인

297mm×210mm
(인쇄용지(특급) 7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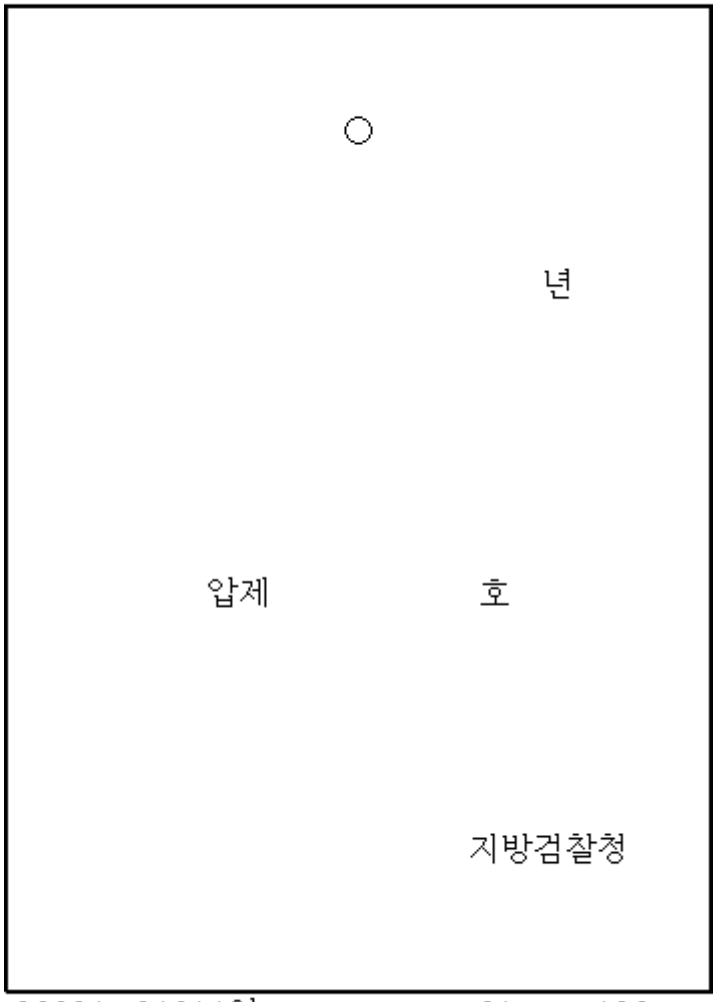
(후 면)

①압 제 번 호	②접 수 연월일	③기 록 번 호	피의자 ④피고인 성 명	⑤완 결 연월일	⑥비 고
	. . .	형제 호			
	. . .	형제 호			
	. . .	형제 호			
	. . .	형제 호			
	. . .	형제 호			
	. . .	형제 호			
	. . .	형제 호			
	. . .	형제 호			
	. . .	형제 호			
	. . .	형제 호			

[별지 제4호서식(1)] <개정 1993.8.17>

압 수 물 꼬 리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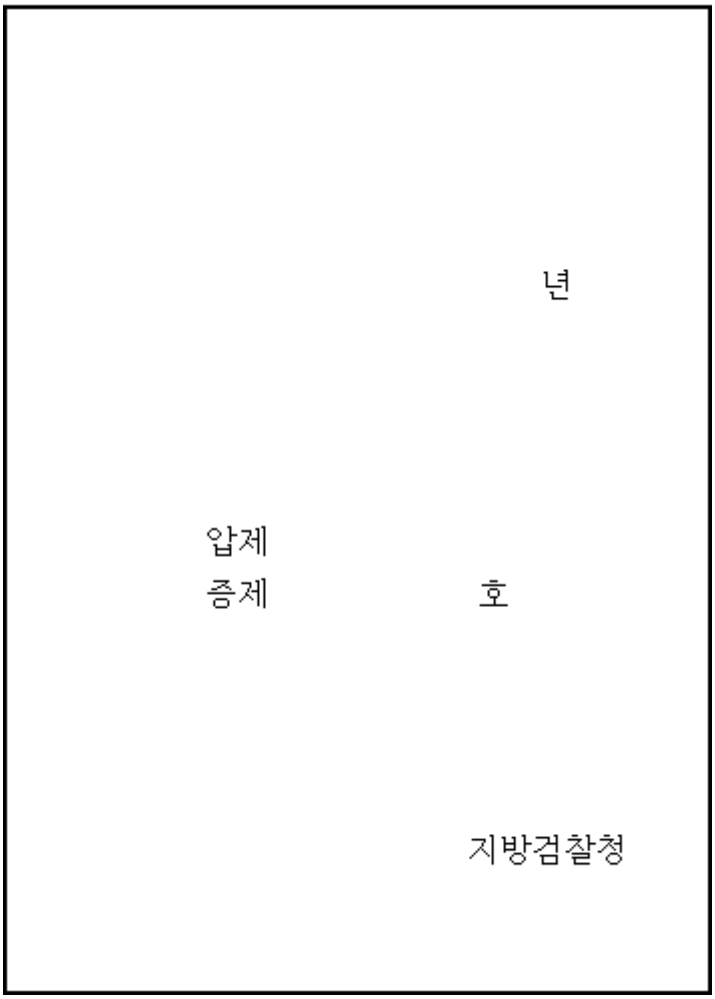
(앞 면)



23231-31811일 91mm×128mm

93.5.18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후 면)



[별지 제4호서식(2)] <개정 1993.8.17>

압 수 물 봉 투(중)

증 거 물 건	
년 압	
증 제 번 호	
피 해 자 (피 고 인)	

23231-31911일
93.5.18 승인

150mm×300mm
(크라프트지 120g/㎡)

[별지 제4호서식(3)] <개정 1993.8.17>

압 수 물 봉 투(대)

지 방 검 찰 청	
압 수 물 건	
서기 년 압제 호	
증 제 번 호	
피 의 자 (피 고 인)	

23231-32011일
93.5.18 승인

200mm×380mm
(크라프트지 120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993.8.17>

압 수 금 봉 투

압 수 금

지 방 검 찰 청				
년 압 제 호		피의자 (피고인)		
금				
종 류		수 량	금 액	증 제 번 호
10,000원	한국은행권			
5,000원	한국은행권			
1,000원	한국은행권			
500원	한국은행권			
100원	한국은행권			
50원	한국은행권			
10원	한국은행권			
5원	한국은행권			
1원	한국은행권			

23231-32111일 210mm×297mm

93.5.18 승인 (크라프트지 120g/㎡)

[별지 제6호서식] <개정 1987.12.31, 1993.8.17>

(앞 면)

압 수 물 대 장

영 치 연월일	압 제 번 호	물 건 번 호	성 명	품 명	수 량	보 관 처	처 분 연월일 및 결과	비 고

45231-16711비
87.11.30 승인

297mm×210mm
(인쇄용지(특급) 70g/㎡)

(뒷 면)

압 수 물 대 장

영 치 연월일	압 제 번 호	물 건 번 호	성 명	품 명	수 량	보 관 처	처 분 연월일 및 결과	비 고

[별지 제7호서식] <개정 1993.8.17>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인계부

① 연월일	② 압 제 번 호	③ 증 제 번 호	④ 성 명	⑤ 금 액 (품명)	⑥ 구 본	⑦ 영 치 주 문	⑧세입담당(세입세출외 현 금 출 납 공 무 원)	⑨ 과 장	⑩ 비 고

23231-32111비
93.5.18 승인

297mm×210mm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3.7.28>

특수압수물대장

영치일자	압제번호	증제번호	품명	수량	피의자	처분결과 및 처분일자	비고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03.7.28>

특수압수물점검부

점검연월일 : 점 검 자 :	결재	주 무	과 장

1. 점검장소 :

2. 점검목록 :

연 도	압 제 번 호	증 제 번 호	품 명	비 고

3. 보관상태 :

4. 지시사항 :

5. 비 고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1)] <개정 1993.8.17>

○○○○검찰청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 서 번 호 . . .

년 압제 호

수 신 검사 (인)

제 목 지급정지

귀행발행의 다음 은 당청형사 사건의 증거물건으로서 압수보관중에 있으므로 검사의 결정에 의한 본직의 압수해제 통보가 있을때까지 지급을 정지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아 래

①발행 연월일	②번 호	③기 호	④종 별	⑤금 액	⑥비 고

23231-32411일 210mm×297mm

93.5.1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2)] <개정 1993.8.17>

○○○○검찰청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 서 번 호 . . .

년 압제 호

수 신 검사 (인)

제 목 지급정지 해제

당청 제 호(. . .)로 지급 정지한 ○○은 해제함을 통보합니다.

아 래

①발 행 연월일	②번 호	③기 호	④종 별	⑤금 액	⑥비 고

23231-32511일 210mm×297mm

93.5.1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서식(1)] <개정 1993.8.17, 2003.7.28>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등록번호 . . .

년 압제 호 발신자 검찰청

검사 (인)

수신자

제 목 대외지급수단 보관의뢰

당청에 압수된 외국환을 보관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①압 제 번 호	②성 명	③종 류	④금 액	⑤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2)] <개정 1993.8.17, 2003.7.28>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등록번호 . . .

년 압제 호 발신자 검찰청

검사 (인)

수신자

제 목 대외지급수단 반환

귀 은행(지점)에 보관의뢰한 외국환 중 아래 내용의 보관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①보관번호	②보관일자	③종 류	④금 액	⑤압제번호	⑥성 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1993.8.17>

압 수 물 건 대 출 표

. . .

지방검찰청

참여 직원	성 명	인	주임 검사	성 명	인

압 수 번 호	물 건 번 호	피 의 자 또는 피고인	사 유
년 압제 호	증제 호		
	증제 호		
	증제 호		
	증제 호		
	증제 호		
	증제 호		
	증제 호		
	증제 호		
	증제 호		
	증제 호		

23231-32811일 128mm×182mm

93.5.1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1993.8.17>

① 주 임 검 사	② 대 출 연월일	③ 압 수 번 호	④ 피의자 피고인 성 명	⑤ 대출목적	⑥ 수령인	⑦ 반 환 연월일	⑧ 반 환 수령인	⑨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압수물대출부

23231-32911비

93.5.18 승인

297mm×210mm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1993.8.17>

압 수 물 처 리 부

① 연월일	② 압 제 번 호	③ 증 제 번 호	④ 성 명	⑤ 품 명	⑥ 수 량	⑦ 구 분	⑧ 영치사무 담 당 자	⑨ 과 장

23231-33011비

93.5.18 승인

297mm×210mm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1993.8.17>

압수물건공매처리부

① 연월일	② 압 제 번 호	③ 증 제 번 호	④ 성 명	⑤ 품 명	⑥ 수 량	⑦ 공 매 일 자	⑧ 영치사무 담 당 자	⑨ 과 장

23231-33111비

93.5.18 승인

297mm×210mm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1987.12.31, 1993.8.17>

압 수 금 처 리 부

연월일	압제번호	증제번호	성 명	처리구분	금 액				영치사무담당자	영치주무	세입계	과 장
					영치	은행보관		공매				
						환가대금	압수현금					

23231-33211비
93.5.18 승인

297mm×210mm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8.1.7>

압 수 물 폐 기 조 서

검사의 폐기명령에 따라 별첨 압수물건을 폐기하고 이 조서를 작성함.

일 시 :
장 소 :
물 건 : 별첨목록과 같음
방 법 :

영치사무담당자 직급 성명 :
입회자 직급 성명 :
확인자 과장 성명 :

297mm × 210mm
(신문용지 54g/m'(재활용품))

압 수 물 폐 기 목 록

①연도	②압수 번호	③ 증제 번호	④품명	⑤수량	⑥보관위치	⑦피의자 피고인	⑧폐 기 연월일	⑨폐 기 담당자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1983.8.17>

보관금국고납입의뢰서

아래 사람의 보관금을 국고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검찰청
영치사무주무

수 신 :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

총액(원)

연 도	압 제 번 호	증제호	성 명	금 액	보 관 일 자	과 장 확 인	비 고

23231-33411일
93.5.18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1993.8.17>

○○○○검찰청
(전화번호)

증 거 . . .
경 유 발신 검찰청
수 신 검사 (인)
참 조
제 목 압수금 추심의뢰

당청 년압제 호 에 대한 사건의 압수물( )이 국고귀속 명령되어 국고에 불입코저 추심하니 조속히 대금을 송부하여 주시고 추심이 불가능하면 그 사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23231-33611일 210mm×297mm
93.5.1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1993.8.17>

○○○○검찰청
(전화번호)

년 압제 호 . . .

수 신 발신 검찰청

제 목 압수물인계 검사 (인)

에 대한 사건이 종결되어 아래 압수물을 인계하오니 수령하여 의법조치하시고 별첨수령서를 지급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번 호	②물 건	③수 량	④번 호	⑤물 건	⑥수량

비 고

23231-33711일
93.5.18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1993.8.17>

압 수 물 건 수 령 서

압제 호

①증제호	②물 건	③수 량	④증제호	⑤물 건	⑥수 량

주민등록
대 조 필

위 물건을 받았으므로 수령서를 제출합니다.

. . .

(수령인) 주 거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지방검찰청 검사 귀하

23231-33811일

93.5.18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1993.8.17>

검찰실무자료 (기 록 / 압수물품) 요지

①피고인 주거·직업·성명·연령	
②성 명	
③범죄사실 요 지	
④보존대상이 되 는 사 유	
⑤비 고	

23231-33911일
93.5.18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2호 서식] 삭제 <2010.9.10>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1993.8.17>

○○○○검찰청
(전화번호)

검 . . .
압

수 신 검찰청 발신 지방검찰청
제 목 압수물건처분 촉탁 검사 (인)

귀청 형제 호(압제 호)로 보관 송치한 에 대한 사건의 아래 기재 압수물건에 대하여 몰수판결이 있으므로 처분 촉탁하오니 별첨 수리통지서를 지급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증제번호	② 물 건	③ 수 량	④ 처분구분	① 증제번호	② 물 건	③ 수량	④ 처분구분
⑤보관자							
⑥비고							

23231-34111일
93.5.18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1993.8.17>

년압제 호

몰 수 물 제 출 명 령

물건명

위 물건은 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몰수되었음으로 . . .까지 당청 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검찰청

검사 (인)

23231-34211일
93.5.18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1993.8.17, 2003.7.28>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수신자 법원소속 집행관 발신자 검찰청
검사 (인)

제 목 몰수집행명령
아래와 같이 몰수집행하시기 바람

피집행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거	
	④연 령	
⑤죄 명		
판결	⑥선 고	. . .
	⑦집행할몰수물	
	⑧확 정	. . .
⑨비 고		주 의 : 상속재산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때는 비고란에 그 요지를 정확히 기재하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것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1993.8.17>

<table>
<tr><td colspan="3">○○○○검찰청
(전화번호)
수 신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 발 신 지방검찰청
제 목 몰수집행촉탁(전촉·반촉) 검 사 (인)
아래와 같이 몰수의 집행을 촉탁함</td></tr>
<tr><td rowspan="4">수
형
자</td><td>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거
④연 령</td><td></td></tr>
<tr><td colspan="2">⑤죄 명</td><td></td></tr>
<tr><td rowspan="3">판
결</td><td>⑥선 고</td><td>법원</td></tr>
<tr><td>⑦몰 수 물 건</td><td></td></tr>
<tr><td>⑧확 정</td><td></td></tr>
<tr><td colspan="2">⑨촉 탁 사 유</td><td></td></tr>
<tr><td colspan="2">⑩비 고</td><td></td></tr>
<tr><td colspan="3">첨부 1. 판결서등본 1통</td></tr>
</table>

23231-34411일 210mm×297mm

93.5.18 승인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1993.8.17>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 . .
문 서 번 호 발신
수 신 검찰청 검사 (인)
제 목 위조(변조)부분 몰수통지에 대한 회답

. . .자 호로 위조·변조부분 몰수통지에 의하여 처분하였음을 회답합니다. 끝.

23231-34511일
93.5.18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검찰청
(전화번호)

. . .

수 신 발신 검찰청
제 목 위조(변조)부분 몰수통지 검사 (인)

귀청(소)소속의 다른 물건에 대하여 별첨판결등본(초본)과 같이 위조·변조부분 몰수의 판결이 있으므로 다음의 처분을 하기를 통보합니다.

다 음

1. 물건과 그 몰수부분
2. 처분내용
   위조·변조몰수부분을 주선으로 표시하고 적당한 곳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후 말미에 관직·성명을 기입·날인할 것
   (. . .○○피고사건에 관하여 ○○법원에서 주선의 위조·변조부분을 몰수지 검찰청 검사의 통지에 의하여 기입)

첨부 : 판결문등본(초본) 통

23231-34611일 210mm×297mm
93.5.1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1988.12.29, 1993.8.17>

년 압제 호

●몰수집행
●몰수물처분 불능결정서

①법 원	법원	⑦성 명	
②선고연월일	. . .		
③확정연월일	. . .	⑧직 업	
④죄 명		⑨생년월월	
⑤형 명			
⑥집행(처분) 할 물 건		⑩주 거	
⑪집행(처분) 불능사유		⑫비 고	

위의 사유로 인하여 몰 수 집 행 / 몰수물처분 이 불능임을 결정한다.

. . .

검찰청
검사 (인)

23231-34711일
93.5.18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1993.8.17>

소 유 권 포 기 서

아래 기입된 압수물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 . .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아 래

① 증제번호	②물 건 명	③수 량	① 증제번호	②물 건 명	③수 량

확인자 :

검찰청

검사 (인)

23231-34811일
93.5.18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1993.8.17>

○○○○검찰청
(전화번호)

압제 호 . . .

발신 검찰청

수 신 검사 (인)

제 목 압수물 수령권(소유권) 포기의사 조사촉탁

1. 아래 사람에 대한 다음 기재 물건에 수령권(소유권)을 포기케 하고자 하오니 뒤에 기재사항을 지급 조사하여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당청에 출석 수령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거			

포 기 할 물 품

④증제번호	⑤물 품 명	⑥수 량	④증제번호	⑤물 품 명	⑥수 량

23231-34911일 210mm×297mm

93.5.18 승인 (인쇄용지(2급) 60g/㎡)

. . . 수 신 검찰청검사 발신 경찰서장 교도소장 제 목 압수물수령권(소유권) 포기의사 조사촉탁회보 아래와 같이 조사보고(회보)합니다.	
압수물 수령권 포기서 표면 기재의 압수물에 대하여 수령권(소유권)을 포기합니다. . . . 주 거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포 기 거 부 사 유	
비 고	①표면 기재의 압수물건은 무가물, 범죄행위에 사용, 범죄로 인하여 취득, 범죄로 인하여 생긴 것이나 또는 환부치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수령권을 포기하는 것임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03.7.28>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수신자 성 명 귀하(우. 주소)

제 목 압수물건환부통지서

1. 귀하로부터 압수하였던 위 목록의 물건을 돌려드리고자 하니 년 월 일 시까지 우리 청 ○○과(☎○○○-○○○○, 담당 : ○○○)로 오셔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에는 반드시 이 통지서와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시고, 대리인이 오실 때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압 제

증 제 번 호	물 건	수 량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 만약 위 압수물건이 필요없거나, 돌려받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소유권 포기서에 서명날인하여 이 통지서를 우리 청으로 제출 또는 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신 명 의

○○○검사장 [인]

소유권포기서

위 목록에 기재된 압수물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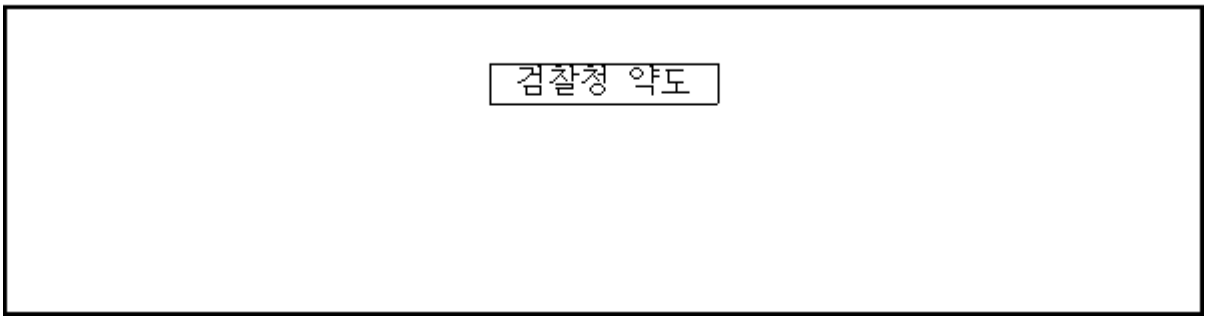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 락 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면)



[별지 제31호의2서식] <신설 1987.12.31, 1993.8.17>

압수물건송부서

압제 호

증 제 번 호	물 건	수 량

위 물건을 환부하니 수령하시고 아래 수령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당청에 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검찰청

수 령 증

지방검찰청 압제 호

증 제 번 호	물 건	수 량

위 물건을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인)

23231-35111일 210mm×297mm

93.5.18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31호의3서식] <신설 2003.7.28>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수신자 귀하(우. 주소)

제 목 압수금 환부통지

1. 우리 청에 보관 중인 압수금 원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환부하고자 하니 . . .까지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우리 청 ○○과로 출석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예금 통장으로 입금해 주기를 원할 때에는 아래 무통장입금청구서 기재란에 그 내용을 적어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청구한대로 송금하여 드리겠습니다.
3.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무통장입금청구서와 함께 동봉하여 우송하셔야만 송금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청 ○○과 압수담당 ○○○(전화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압제번호	증제번호	금 액	성 명	환부사유

○○검찰청 ○○지청장 [인]

자르는 선

년 압제 호(증 호)

-계좌입금청구서-

예 금 주 성 명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금 액

본인에 대한 환부압수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청구인 (인)

연락처(☎)

○○검찰청 ○○지청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1993.8.17>

보관금환부의뢰

아래(압수현금, 환가대금)은 에게 환부결정되었으므로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지방검찰청

과 장

총액(원)

①연도	②압제번호	③증제번호	④성명	⑤금액	⑥보관일자	⑦비고

23231-35211일
93.5.18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3호서식(1)] <개정 1993.8.17>

○○○○검찰청

(전화번호)

압제 . . .

수 신 검찰청검사 / 경찰서장 　　발 신 지방검찰청 검사 (인)

제 목 압수물건 환부촉탁

아래 압수물건을 송부하오니 촉탁수리통지서를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 령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거					
④증제호	⑤물 건	⑥수 량	④증제호	⑤물 건	⑥수 량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비 고						

23231-35311일 210mm×297mm

93.5.18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33호서식(2)] <개정 1982.12.31, 1993.8.17> (앞 면)

○○검찰청
(전화번호)

년 검제 호 년 월 일
년 압제 호

수 신 발 신 지방검찰청
제 목 압수물건환부촉탁 검 사 (인)

아래 압수물건을 송부하오니 수령인에게 환부하고 뒷면의 영수증을 받아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 령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증 제 번 호	물 건	수 량	증 제 번 호	물 건	수 량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비 고					

23231-44011일 210mm×297mm
93.5.18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뒷 면)

검 찰 청

(전화번호)

년 검제 호 년 월 일

년 압제 호

수 신 검찰청 발 신 검찰청

검사 검사

제 목 압수물건환부촉탁회답

표면기재의 압수물건을 수령인에게 환부하였으므로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답합니다.

영 수 증

표면기재의 압수물건을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주 거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환부불능사유 등 기타 사항

23231-35421일 210mm×297mm

93.5.18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1993.8.17>

① 사건번호	② 압수번호	③ 피의자또는피고인	④ 죄 명	⑤ 환 부 인	압수물건		
					⑥번 호	⑦물건명	⑧수 량

압수물공고목록표

23231-35511일

93.5.18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35호서식] 삭제 <1987.12.31>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1993.8.17>

○○○○검찰청
(전화번호)

문서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지방검찰청 발 신 지방검찰청

제 목 사건이송통지 검 사 (인)

귀청에서 압수물을 보관하고 있는 본 사건은 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이송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아 래

①피 의 자 성 명	
②죄 명	
③귀청 압수번호 및 증제번호	
④이 송 연 월 일 및 이 송 청	

23231-35611일
93.5.18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6호의2서식] **<개정 2008.1.7>**

기소중지·참고인중지사건 압수물점검부

점검일	압제번호	증제번호	물건명	보관위치	점검결과	확인	비고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4. 6. 26>

압수물가환부신청서

※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뒤쪽의 이의 신청 안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압수물에 대한 관계 [ ] 제출인, [ ] 피해자, [ ] 소유자, [ ] 기타( )

사건번호 20 년 형제 호

피 의 자

신청사유

아래 압수물을 가환부 받을 경우, 훼손·폐기·양도·질권설정 등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보관하고, 귀청으로부터 제출명령을 받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하겠으니, 가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 명	수 량	품 명	수 량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검찰청검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담당자확인		압수번호		증제번호	
주임검사 결정		검 사			
가	부	불허이유			

210mm × 297mm(백상지 80g/㎡)

(뒤쪽)

이의 신청 안내

○ 검사의 가환부 불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압수물 가환부 신청인은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 또한, 압수물 가환부 신청인은 검사의 가환부 불허통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위 불허결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가환부불허결정서 사본을 첨부해야 함)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지방검찰청 ○○과

전화

팩스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1993.8.17>

압수물건본환부통지서

압제

증 제 번 호	물 건	수 량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위 물건은 가환부 / 보 관 한대로 환부처분되어 압수가 해제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23231-35811일

93.5.18 승인

140mm×90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1993.8.17> (앞 면)

①진 행 번 호		제 호	제 호
②접 수 일 자		. . .	. . .
③청 구 관 서			
④주 임 검 사			
신청인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피의자	⑧성 명		
	⑨죄 명		
⑩환부 : 가환부·피해자환부·폐기 대가보관할 물건			
검사지휘	⑪연 월 일	. . .	
	⑫지 휘 구 분		
⑬비 고			

압수물처리지휘부
23231-35911일
93.5.18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뒷 면)

제 호	제 호	제 호
. . .	. . .	. . .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1993.8.17>

보관위탁압수물점검부

① 압수번호	② 물건 및 수량	③ 보관장소	④ 보관자	⑤ 보증인	⑥ 점검사항	⑦ 비 고	⑧ 확 인

23231-36011일
93.5.18 승인

297mm×210mm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1993.8.17>

○○○○검찰청
(전화번호)

증 거 823.1 . . .
압제 발신 검찰청
수 신 검사 (인)
제 목 압수해제통지

에 보관중인 다음 물품은 형사소송법 제 133 / 332 조에 의거 압수해제 되었기 통보합니다.

①증 호	②물 건	③수 량	①증 호	②물 건	③수 량

23231-36111일
93.5.18 승인

297mm×210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1987.12.31, 1993.8.17>

영치 및 보관금현황

종류 \ 처분별			이월액	신수액	계	은행입금	처리액				미제액
							국고귀속	환부	이송	계	
한화	영치										
	은행보관	환가대금									
		압수현금									
		계									
미화	영치										
	보관										
일화	영치										
	보관										
기타외화											

23231-36211일
93.5.18 승인

297mm×210mm
(신문용지 54g/m²)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시행 2015.7.28] [훈령 제775호, 2015.7.28, 폐지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처리, 구제업무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의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침해"란 경찰관등(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의경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수행(수사를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라 힘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이하 "소년"이라 한다),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경제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4. "성(性)적 소수자"라 함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당사자의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인 자를 말한다.
5. "범죄피해자"란「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의 범죄피해자를 말한다.
6. "신고자등"이란「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2조제2호의 범죄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
7. "조사담당자"라 함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정의 조사 및 구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8. "진정인"이라 함은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제3자로서 인권침해를 사유로 경찰청장에게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9. "피진정인"이라 함은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경찰관 등을 말한다.
10. "내부인권침해"라고 함은 경찰관 등 상호간 관계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제3조(타 규칙과의 관계)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보호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이 규칙이 다른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 된다. 다만, 다른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이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제4조(인권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病歷),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피해자 및 신고자 등 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범죄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범죄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무죄 추정) 경찰관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는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언행이나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접견교통권 등 보장) 경찰관은 법률에 보장된 피의자의 변호인 및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 물건 등의 수수, 의료검진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①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사회적 약자 보호)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관계에 있는지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당한 명령의 금지) ①경찰관은 다른 경찰관에게 법령이나 이 규칙을 위반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명령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경찰관은 구체적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명령 또는 강요받았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거부나 이의제기를 이유로 당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인권교육) ①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은 경찰활동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법령을 학습하고, 인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권 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③전2항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1. 인권의 개념과 역사의 이해
2. 인권보장의 필요성 및 범위의 이해
3. 인권보호 모범 및 침해 사례
4. 인권정책 및 관련 법령의 이해
5. 그 밖에 경찰활동시 인권보호의무

제3장 인권 보호 기구

제1절 경찰청 인권위원회

제14조(설치)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청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 한다.

제1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으로 한다.

제1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간사) ①간사는 의안에 대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각 위원과의 연락, 회의의 소집통지, 개최준비 및 기타 위원회의 운영사무를 총괄한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최·개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직·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 및 철회에 관한 사항
6. 토의 안건 심의·의결사항

제2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정기회의는 월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③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장이 요구하여 개최한다.

제2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무로 한다.

1. 인권과 관련된 경찰의 제도·정책·관행에 대한 자문,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2.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3. 경찰관련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제22조(경찰공무원의 출석 등)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성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개선 및 시정권고) ①위원회는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 경찰청장에게 인권과 관련된 제도·정책·관행의 개선에 필요한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여 인권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 그 의결로 경찰청장 또는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방문조사) ①위원회는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경찰 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위원을 지명하여 간사와 함께 방문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를 할 때 위원회는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소속 경찰관의 동반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문대상 시설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보고서 작성 등) ①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위원회 및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처리결과의 공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 사유

제27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신분증 발급)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절 지방청 인권위원회

제29조(설치) 시민들이 경찰행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경찰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에 지방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며, 산하에 모니터 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구성 및 운영) ①지방청 인권위원회는 지방청별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청 인권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의결을 통해 지방청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③지방청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청 인권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회의와 활동을 주재한다.

제30조의2(준용규정) 지방청 인권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는 제2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자격) 지방청 인권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방청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인권의식이 투철하고 원만한 인품과 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32조(위원의 위촉) ①지방청 인권위원회 위원은 제31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모와 추천을 통하여 지방청장이 위촉한다.
②위촉할 때에는 위촉권자인 지방청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3조(임기) 지방청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임무) 지방청 인권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의 인권시책과 관련된 본인이나 주민들의 의견 제시
2. 인권침해 사례 발견한 경우 지방청장에게 통보
3. 유치장 인권보호 실태 확인
4. 집회시위 과정의 모니터링
5. 사회적 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사 과정 참여
6. 인권교육 강의
7. 기타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한 사항

제35조(회의) ①지방청 인권위원회의 회의 개최 주기 및 방식은 자율적으로 한다.
②지방청장 또는 지방청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 소집과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지방청 인권위원회는 회의결과 경찰업무 개선사항 등을 심의·의결하여 지방청장에게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④지방청 인권위원회의 회의를 통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5조의2(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출석한 지방청 인권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의견제시) ①지방청 인권위원회 위원은 그 활동에 있어 인권보호 관련 경찰의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긴급한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구두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인권보호관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견제시 등에 대한 조치) 제36조에서 규정한 지방청 인권위원회 위원의 의견서와 회의에서 의결된 개선권고 사항 등에 대하여 지방청장은 적극적으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개선조치가 불가할 경우 그 이유와 대책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인권보호담당관

제38조(설치) 경찰 직무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보호를 통일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 감사관에 인권보호담당관을 둔다.

제39조(직무) 인권보호담당관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관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권 정책 총괄
2. 인권시책에 대한 종합 및 조정
3. 인권침해 및 내부 성희롱 사건의 신고·상담 접수, 조사 및 조치
4. 인권교육 및 홍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5. 인권관련 정책, 제도, 법령에 대한 의견 제시
6.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지방청 인권위원회 운영 지도
7.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권단체 등과 업무 협조
8. 인권시책 이행 실태 진단·모니터링·평가
9.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0조(사전협의 등) ①경찰청 하부조직 및 그 소속기관은 인권보호 정책·제도·법령을 수립하거나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인권보호담당관에 사전협의 및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인권보호담당관은 제1항의 정책·제도·법령 또는 그 밖의 경찰청 전체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보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 하부조직 및 그 소속기관에 필요한 조치 및 보완 등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으며, 요청이나 권고를 받은 경찰관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인권보호담당관은 위원회에 자문·권고를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 및 보완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절 인권보호관

제41조(운영 및 지정) ①지방청과 경찰서에는 인권의식의 향상과 인권보호 실태의 지도·감독·조치 등을 위하여 인권보호관을 둔다.

②인권보호관은 지방청·경찰서의 과장급 중에서 지방청장(경찰서장)이 지정한다.

제42조(인권보호관의 임무) 인권보호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2. 인권시책에 대한 종합 및 조정
3. 인권침해 신고·상담 접수, 조사 및 조치
4. 인권교육 및 홍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5. 인권보호단의 구성 및 운영
6. 인권단체와의 업무 협조
7. 인권실태 지도·점검·감독 및 평가
8.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절 보칙

제43조(상호교류) 위원회와 지방청 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관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호 교류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44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은 경찰청 인권위원회, 지방청장은 지방청 인권위원회의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내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청탁하거나 경찰인사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위원회 및 지방청 인권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극히 저조한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4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및 지방청 인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방청 인권위원회는 지방청장과 지방청 인권위원회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장 수사

제1절 수사 일반

제46조(임의수사 원칙) 수사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나 승낙하에 임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7조(불구속수사 원칙) ①수사는 불구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체포한 피의자라 하더라도 수사결과 명백히 불구속 사안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석방하여야 한다.

③구속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구속기간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8조(신속·공정한 수사의 원칙) 경찰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사실확인할 때 유의사항) 경찰관은 사실확인(내사)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사건관계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출석요구할 때 유의사항) ①경찰관은 피해자 등에 대한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잦은 출석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1회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시간을 고려하여 시간적 차이를 두고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출석 요구의 방법 및 출석 시간, 장소 등을 정할 때에는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1조(임의동행할 때 유의사항) ①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도 필요한 확인이 끝나는 즉시 귀가시켜야 한다.
③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는 임의동행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수사기록에 편철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제52조(영장심의 위원회) ①구속영장 신청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속영장 신청 전에 사건관련 부서의 과장 등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영장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등 영장심의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영장심의 위원회는 구속영장 신청 적부심사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구속영장 신청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 결과 해당사건의 처리 절차나 구속영장 신청 요건 등에 하자가 있을 경우 보완 수사토록 하여야 한다.

제53조(체포·구속할 때 유의사항) ①경찰관은 체포·구속할 때 상대방의 신체와 명예 등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는 장소, 시간, 방법등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제2항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소년,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하여는 사후에라도 제2항 및 제3항의 고지사항에 대하여 당사자뿐 아니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고지는 전·의경이 아닌 경찰관이 하여야 하며, 피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고지한 사실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54조(무기 등 사용의 한계)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무기, 경찰장구 및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특히 도주하는 상대방의 등뒤에서는 가급적 위해를 가하는 무기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실적인 도주 가능성,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55조(현행범 체포 할 때 유의사항) ①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범죄의 실행 직후인 자’의 요건에 의해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와 접착된 시간적·장소적 범위내에 있는 자로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②형사소송법 제211조제2항 ‘누구인지 물음에 도망하려 하는 자’의 요건에 의해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는 주변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충분한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제56조(긴급체포할 때 유의사항) ①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긴급성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하게 긴급체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주무과장(지구대장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즉시 주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자진출석 등 임의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체포영장에 의한 지명수배) 경찰관은 소재불명 피의자를 지명수배 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명수배 후 지체없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제58조(압수·수색할 때 유의사항) ①경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수사상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물의 수집이나 보전에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할 장소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경우에는 사생활과 명예,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59조(통지 의무) 경찰관은 각종 통지를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통지한 후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0조(변호인 참여 신청권 보장) ①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피의자신문전에 피의자 또는 그 외의 신청권자에게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신청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가

위태롭거나 공범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할 객관적이고 현저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담당경찰관은 변호인이 신문 일시 또는 참여할 수 있음을 통보받고도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④변호인 참여 신청 여부를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조서 말미에 참여 변호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1조(진술거부권 고지) ① 경찰관은진술거부권을 고지할 때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2.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②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당사자뿐 아니라 그 참여자의 이해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2조(자백피의자에 대한 면담) ①지방청 사건 주무계장 및 경찰서 사건 주무과장(이하 "면담관"이라 한다.)은 구속영장 신청사건중 자백 및 정황증거 외에 특별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신청 전에 면담을 하고 그 내용을 자백피의자 면담일자(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면담관은 면담 결과 자백의 임의성에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재수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수사 담당자를 교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3조(수사과정의 녹화 및 보존) 경찰관서의 장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과정을 녹화·보존하여야 한다.

제64조(심야 조사 금지) ①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심야라 함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다.

1. 자정 이후에 조사하지 않으면 피의자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2. 사건의 성질상 심야 조사를 하지 않으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체포 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5. 기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은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자·피해자 등 조사대상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 그 결과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자 이외의 경찰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소년·노약자·장애인·외국인인 피의자가 가족·친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심야 조사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외의 피의자가 가족 등의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65조 <삭 제>

제66조(전자식 장비에 의한 조사) ①경찰관은 조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소인, 참고인, 피의자 등에 대하여 경찰관서간 전자식 영상장비를 이용한 화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화상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화상조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화상조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출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④불구속 수사가 예상되는 지명수배 피의자 중 신병인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피의자 석방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2절 범죄피해자 및 신고자 등 보호

제67조(범죄피해자 조사할 때 유의사항) ①경찰관은 범죄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질문으로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범죄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처리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환부·가환부제도, 배상명령제도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설명하고, 장물범에 대한 여죄 수사 등을 통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범죄피해자에게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범죄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참여시켜 조사하여야 한다.

제68조(성폭력 등 범죄피해자 조사할 때 유의사항) ①성폭력 사건의 여성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여성경찰관이 조사 또는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성매매·가정폭력·학교폭력 등의 범죄피해자가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상담·치료기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기록을 첨부하거나 상담원 또는 전문의 등의 소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69조(대질조사할 때 유의사항) 경찰관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질신문 또는 가해자 식별을 위한 관련자간 대면을 지양하고, 범인식별실 또는 화상을 이용한 전자식 영상장비 사용 등 피

해자·참고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사건
2. 피해자·참고인에 대한 위해·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피해자 또는 참고인이 가해자와의 대면을 원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69조의2(동행할 때 유의사항) 경찰관은 범죄피해자 또는 신고자 등을 경찰관서 등으로 동행할 때 가해자 또는 피의자 등과 분리하여 동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진술녹화실 운영)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피해자의 반복 출석·진술 등으로 인한 불편 해소와 조사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찰관서에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71조(현장진출 조사 및 지원) 경찰관서의 장은 살인·강도·강간(성폭력)등 강력범죄 피해자로서 신원 비노출을 요하거나 기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장에 진출하여 조사 및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1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등) 경찰관은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범죄피해자 또는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 사진, 영상물 등 신상정보나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범죄피해자 또는 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피해자 전담 경찰관) 경찰관서의 장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및 기타 경찰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범죄의 피해자를 전담 보호·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3절 사회적 약자 보호

제73조(소년범 수사) ①경찰관은 소년을 수사할 때에는 처벌보다 지도·육성·보호가 우선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②소년의 심리·생리·성행·환경, 기타 비행의 원인 등을 이해하고 수사에 임하여야 하며, 되도록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 체포·구속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친밀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진술녹화실 등 안정되고 조용한 사무실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제74조(외국인 수사) ①외국인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해당국 영사기관에 체포·구속사실의 통보와 해당 영사기관원과 접견·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영사기관 통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피의자가 영사기관 통보 및 접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영사기관 체포·구속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사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장애인 수사) ①경찰관은 장애인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 전에 장애인 본인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장애유무 및 등급 등을 미리 확인하고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실시하여야 한다.

②정신적 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조사할 때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을 참여시켜야 하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장애인들이 관련된 사건은 각 이해당사자별 1인 이상의 보조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③장애인 피해자가 동성(同姓) 통역사의 참여를 원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경찰관서의 장은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수사 또는 민원 사무실 위치·구조 및 편의시설,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사소통 장비 등의 마련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6조(성적 소수자 수사)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족 등에 알려야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4절 유치인 인권보장

제77조(유치인 권리고지) 유치인 보호관은 입감할 때 유치인의 제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78조(신체검사할 때 유의사항)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동성(同姓)의 유치인 보호관이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로부터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9조(유치인 건강관리) 유치인 보호관은 유치장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침구류 세탁 및 위생소독을 수시로 하여야 하고, 유치인의 진료 요구에는 구체적인 건강상태 등을 파악하여 의사의 진료 또는 상비약의 지급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제80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①경찰관서의 장은 여성 유치인의 정서적·생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치실 구조, 시설 등을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②노약자·장애인 유치인을 위해 목발, 휠체어 등 필요한 기구 등을 비치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외국인 유치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분리 입감하여야 한다.

④성적 소수자인 유치인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독거수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1조(유치인 호송할 때 유의사항) ①유치인을 호송할 때에는 호송차량 탑승 장면이나 이동 중 피호송인의 모습이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노약자·환자 등 도주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을 개별 호송하는 경우에는 수갑·포승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절 언론 홍보

제82조(홍보관리) ①다음 각호의 자를 홍보책임자로 한다.
1. 경찰청 : 대변인
2. 지방청 : 홍보담당관
3. 경찰서 : 경찰서장

②언론홍보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홍보책임자가 전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홍보책임자가 직접 홍보할 수 없거나 홍보책임자 이외의 자의 인터뷰 및 브리핑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책임자가 지정하는 자가 이를 담당한다.
③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인터뷰 및 브리핑을 할 때에는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3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기준) ①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사건에 대하여 공판청구 전 언론공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홍보책임자는 언론공개를 할 수 있다.
1. 중요범인 검거 및 참고인·증거 발견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민의혹 또는 불안을 해소하거나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에 의해 언론공개를 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피요한 사항만 공개하여야 한다.
④개인의 신상정보 등이 기록된 모든 서류 및 부책 등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하여야 한다.

제84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한계) 제83조제2항의 언론공개를 할 때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1.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명예·사생활에 관한 사항
2.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사건관계인의 신원에 관한 사항
3. 범죄 수법 및 검거 경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

제85조(초상권 침해 금지) 경찰관은 경찰관서 안에서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5조의2 (예외적 촬영 허용) 경찰관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얼굴, 실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86조(공개수배) ①경찰관이 공개수배를 할 때에는 그 죄증이 명백하고 공익상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개수배를 하는 경우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 최소한의 사항만 공개하여야 한다.
③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수배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장 집회시위시 인권보호

제87조(불법집회 해산할 때 유의사항) ①경찰관은 불법집회의 경우 지속적인 경고로 불법성을 지적하여 해산을 유도하고, 강제 해산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물리력을 사용할 때 장애인, 노약자, 아동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8조(채증 활동) ①경찰관서의 장은 집회시위 관련자의 인권침해의 예방과 사후 구제를 위하여 증거수집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집회시위 참가자에 의한 증거수집 활동도 보장하여야 한다.
②수집한 증거는 제2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보관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89조(의경에 대한 교육실시) ①상설부대 지휘관은 의경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및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상설부대 지휘관은 사전에 장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여 관리하고, 의경에게 장비를 사용할 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용도외의 위해를 주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처리

제90조 <삭 제>

제91조 <삭 제>

제92조 <삭 제>

제93조 <삭 제>

제94조 <삭 제>

제95조(절차준수 및 비밀엄수) ① 조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진정인ㆍ피해자ㆍ피진정인 및 관계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조사담당자는 진정인등에게 법령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적법절차를 지키며, 피진정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진정인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는 사건의 조사를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진정인등에게 사건의 처리과정과 결과에 관하여 친절하게 안내하고 설명하여, 진정인 등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96조(주관부서) 인권침해사건의 조사ㆍ이첩ㆍ촉탁 등 처리에 관한 업무는경찰청인권보호담당관실에서 주관한다.

제97조(인권침해 진정의 상담ㆍ처리) ① 인권침해 사건의 상담을 위하여 인권보호담당관은 몇 사람의 전담 상담원을 배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인권침해 진정의 접수는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제8조에 따라 민원봉사실에서 접수ㆍ경유하여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에서 처리한다. 단, 진정의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관서 또는 부서가 특정되거나「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사무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③ 내부인권침해 사건의 진정에 관한 접수 및 처리는 경찰청장의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98조(진정의 각하) ① 경찰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1. 진정 내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진정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으로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징계시효 및 민사상 시효 등이 모두 완성된 경우
5.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권리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기간의 경과 등 형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종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진정이 익명(匿名)이나 가명(假名)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경우
8. 기각하거나 각하된 진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진정한 경우
9. 진정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수사 관계자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등 수사를 방해할 의도로 진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되는 경우

11. 진정서의 내용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진정인의 진정 취소를 이유로 각하 처리된 사건은 제외한다)
12.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에서 이미 조사 중인 사건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인권침해 방지와 제도 개선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진정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해당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④ 진정을 각하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진정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진정을 각하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권침해 진정사건 결정서 결정사항란에 각하로 표시하고 결정사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기록에 편철한다.

제99조(진정의 이첩) ①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하여 경찰청장은 경찰청 내 다른 국·관 또는 소속기관이 직접 조사·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청 내 국·관 및 경찰청 소속기관장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하되, 그 조사 및 처리 결과를 인권보호담당관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98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첩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그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정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결정사항란에 이첩으로 표시하고 그 사유를 기록한 후 기록에 편철 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진정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00조(직접 조사) ① 제9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건은 인권보호담당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② 관련 국·관 및 소속기관장이 자체 조사한 사건도 조사가 부족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의결로 인권보호담당관이 직접 재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경찰청장이 직접조사를 명하는 경우에는 인권보호담당관이 직접 조사한다.

제101조(조사의 촉탁) ①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한 조사 촉탁서를 기록에 첨부하여 관계되는 부서의 장에게 사건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촉탁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여 1개월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촉탁한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조사기간이 1개월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사건 조사의 진행 경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2조(사건의 인지) 조사담당자는 진정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수집한 자체 정보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의 단서가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인지(認知)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3조(조사대상자의 협조) ① 피진정인을 포함한 경찰관 등은 사건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1. 질문에 대한 답변
2. 증거물과 자료 제출
3. 출석과 진술서 제출
4. 조사담당자 등의 조사대상 기관 방문
5. 그 밖에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각 호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여 해당 감찰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제104조(참고인 조사) ① 조사담당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외의 사람에게 사실관계 확인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5조(물건 등의 보관) ① 조사담당자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피진정인 또는 참고인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 중 사건 조사에 필요한 물건은 보관할 수 있다.

② 조사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자에게 내주고 사건기록에 그 물건 등의 번호·명칭 및 내용, 제출자 및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는 제출받은 물건에 사건번호와 표제, 제출자 성명, 물건 번호, 보관자 성명 등을 적은 표지를 붙인 후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④ 조사담당자는 보관 중인 물건에 대하여 제출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환할 수 있다.

1.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사건에서 진정인이 제출한 물건이 있는 경우
2.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물건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106조(사건의 병합 등) 조사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7조(수사 개시로 인한 조사중단) 조사담당자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내용에 대하여 경찰·검찰 등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종결하거나 해당 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다만,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절차 이행은 계속할 수 있다.

제108조(조사중지) ① 조사담당자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건 해결과 진상 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정으로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조사중지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결정사항란에 조사중지로 표시하고 결정사유란에 그 중지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사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조사담당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사건표지에 새롭게 사건을 재개한 사유를 기재하고 즉시 조사를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제109조(진정의 취소) ① 진정인은 진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분명히 밝힌 취소장(전자우편 등 전자문서 형식의 취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인이 경찰관 등에게 말로 진정의 취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원 등이 대신 작성하여 진정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취소조서를 취소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전화로 진정취소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담당 직원의 전화통화 보고서를 취소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진정인 또는 피해자가 유치인인 경우에 진정을 취소하거나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려면 진정인 또는 피해자가 취소장을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손도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담당자는 유치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 문서를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한 사실을 유치장을 관리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그 공무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10조(진정의 기각) ① 경찰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은 진정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할 수 있다.

1.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3. 진정 내용이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따로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진정 내용은 사실이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각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결정사항란에 기각으로 표시하고 결정 사유란에 그 기각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즉시 진정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111조(인용 및 구제조치) ① 경찰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은 사건의 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2. 인권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한다.
3.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이나 법률구조 등을 안내한다.

4. 인권침해 행위를 한 당사자나 책임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5. 인권침해 사실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시하거나 권고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함께 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경찰청 내 하부조직으로부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지시받거나 요구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즉시 조치 내용을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진정인에게 인정 사실과 이에 따른 구제조치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⑥ 제1항 각호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결정사항란에 인용·구제로 표시하고 결정사유란에 그 인용의 사유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구제조치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 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진정인 및 관련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2조(긴급구제) ① 경찰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은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수행하거나 관련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의료·식사 및 옷 등의 제공
2. 유치장의 유치장소의 변경
3.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명령
4. 인권침해 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찰관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5.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경찰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즉시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경우 사건 처리 결과에 상관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3조(중요사건의 위원회 상정) 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권침해사건 처리과정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 내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14조(사건 결정의 통지 등)① 사건이 종결된 경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결정내용과 사유를 기재하여 진정인에게 송부하고 사건 결정서에 그 통지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15(자료 요청)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통계의 작성·관리와 원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6조 (기록 등의 열람·복사) 진정인은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본인의 진술이 적힌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장 조치 및 평가

제117조(외부기관에서 진정 등)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접수된 진정과 관련하여 조치하거나 답변을 할 때에는 인권보호담당관에 사전협의 및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인권보호담당관은 관련 의견을 제시하거나 답변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8조(조치 및 징계) ①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의 인권교육을 수강하게 하여야 한다.
②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인권침해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반복하여 침해가 발생하는 등 인권교육만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조치 또는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19조(진단계획 및 방법) ① 인권보호담당관은 경찰활동 관련 인권침해의 예방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인권시책 이행 실태, 인권교육계획 추진실태, 경찰청 소속 구금·보호시설 등에 대한 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진단은 대상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관찰, 서류점검, 면담, 설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방문진단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19조의2(진단보고서 작성 등) 인권보호담당관은 매년 진단을 마치면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활동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0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775호,2015.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칙의 폐지) 종전의「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771호)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영장심의-구속영장 신청 적부 심사서

요 건	판 단 사 항	판 단 의 견		
		예	아니오	종합
혐의의 상당성	① 소명자료에 의해 입증가능한 객관적·합리적 범죄인정이 가능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가			
도주 우려, 주거 부정	② 범죄의 경중, 태양, 동기, 횟수, 수법, 규모, 결과 자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는가			
	③ 피의자의 직업이 쉽게 포기할수 있는 것인가			
	④ 피의자의 도망을 억제할 만한 치료중인 질병이 있거나 또는 출산을 앞두고 있지는 않는가			
	⑤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해외여행이 잦은가			
	⑥ 가족간의 결속력이 없고 보호자가 없는가			
	⑦ 배우자 또는 나이어린 자녀, 연로한 부모가 없는가			적(適) ( )
	⑧ 가족들 중 피의자를 선행으로 이끌만한 능력과 의사가 있는 구성원이 없는가			
	⑨ 피의자 또는 피의자 가족이 지역사회와 유대관계가 없는가			부(否) ( )
	⑩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는가			
	⑪ 일정한 주거가 없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가 (체포영장 신청의 주거부정 요건 참조)			
증거 인멸 우려	⑫ 물증의 은익, 증인에 대한 위증이나 침묵의 강제대상이 되는 증거가 명백히 존해하는가			
	⑬ 증거가 범죄사실의 입증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⑭ 피의자가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 사회적으로 가능한가			
	⑮ 피의자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사 건	사건번호 :	피의자 성명 :		
담 당 자	소속 :	계급 :	성명 :	
영장심의위원 확 인 (팀장, 과장)	위원1	직위 :	계급 :	성명 : (인)
	위원2	직위 :	계급 :	성명 : (인)
	위원3	직위 :	계급 :	성명 : (인)
	위원4	직위 :	계급 :	성명 : (인)
	위원5	직위 :	계급 :	성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자백피의자 면담일지

연번	피의자	죄명	면담내용	면담결과 및 조치	면담일시·장소	면담관	비고
1	홍길동 (78.12.23)	강 도 (긴급체포)	①자백한 경위 ②자백하는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들이 있었는가? ③자백을 담보로 형량 감소등의 약속이 있었는지? ④기타 조사할 때 수사관에 의해 인권 침해를 당한 사항이 있는지? ⑤유리한 진술의 기회 부여 ⑥체포구속할 때 이유 등 고지여부	①고의로 강도를 한 것은 아니고 범행후 죄의식에 사로잡혀 사죄하는 마음으로 댓가를 치르기 위해 자백했습니다. ②폭행,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습니다. ③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④다소 고압적인 말을 사용하였으나 기분이 상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⑤선처를 부탁드립니다.	2005.4.25 13:00~14:00 수사과장실	경 정 김철수	

[별지 제3호서식] <삭제>

[별지 제4호서식]

임의동행 동의서

동행일시	
동행장소	
동행목적	
동행대상	성명 : (연령)
담당경찰관	소속: 계급: 성명 :

위 본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 받으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고지 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위 본인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경 찰 청

제목:사건처리결과통지

사건번호	200 년 인권제 호	진 정 인	

1.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에 진정을 제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00 . . .

경 찰 청 장

※ 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71길의 37번지 경찰청 인권센터 601호
Tel: (02)3150-2239 Fax: (02)3150-2739

귀하

우편번호

[별지 제6호서식]

<table>
<tr><td rowspan="2">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td><td>담 당</td><td>계 장</td><td>과 장</td><td>국 장</td></tr>
<tr><td></td><td></td><td>전 결</td><td></td></tr>
<tr><td colspan="5">인권침해 (진정·인지) 사건 결정서</td></tr>
<tr><td>사건번호</td><td colspan="2">200 년 인권제 호</td><td>사 건 명</td><td></td></tr>
<tr><td>진 정 인</td><td colspan="2"></td><td>피진정인</td><td></td></tr>
<tr><td>결 정 일</td><td colspan="4">200 . . .</td></tr>
<tr><td>결정사항</td><td colspan="4">결 정 사 유</td></tr>
<tr><td>각 하 □</td><td colspan="4"></td></tr>
<tr><td>이 첩 □</td><td colspan="4"></td></tr>
<tr><td>조사중지 □</td><td colspan="4"></td></tr>
<tr><td>기 각 □</td><td colspan="4"></td></tr>
<tr><td>인용 및
구제조치 □</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진정인 통지 □ 피진정인 통지 □</td></tr>
<tr><td>비 고</td><td colspan="4"></td></tr>
</table>

[별지 제7호서식]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02-3150-2239)

200 년 인권 제 호 200 . . .

수 신 발 신

제 목 **조 사 촉 탁** 경 ㊞

진정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연 령	
	③주 거			
조사촉탁 내용				
첨부서류				

[별지 제8호서식]

인 권 침 해 진 정 사 건 기 록

결 재	담 당	계 장	과 장	국 장
			전 결	

사건번호	200 년 인권 제 호	사 건 명	
단 서	□ 전화 □ 우편 □ 방문 □ 인터넷 □ 인지		
진 정 인		피진정인 또는 피조사자	
인권침해 요 지			
접수일자	200 . . .		
처리일자	200 . . .	처리결과	
비 고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 2014.11.21] [예규 제76호, 2014.11.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이하 ‘ 규정 ’ 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9호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 이라 한다)의 소속 직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 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개인정보파일 ” 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3. "개인정보 처리 ” 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개인정보 "수집 ” 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5. "개인정보 제공 ” 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위원회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개인정보처리자 ” 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자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7.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란 규정 제47조에서 정하는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을 말한다.

8. "개인정보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대리하여 소관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0. "분임 개인정보보호담당자"란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개인정보취급자"란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과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12. "개인영상정보책임자"란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소관부서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개인영상정보담당자"란 개인영상정보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15.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16.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7.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18.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특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 당시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의도적 또는 의도하지 아니한 유출이 발생하면 사고조사 및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 관련자를 별도 처벌규정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1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부과한 의무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법령 등에서 정한 위원회의 소관업무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어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7.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위원회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②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등 ” 이라 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허용한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③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으로부터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④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의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제6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 그 사유와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제7조(동의의 철회)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 확인은 아래의 방법을 따른다.

1. 정보 주체(본인)인 경우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이 불가능한 것)
2.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3. 웹사이트의 경우 ID/PW, 그 밖의 인증 방법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철회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제공의 고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릴 때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①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과 동시에 또는 필요한 경우 제공한 이후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요청 받은 자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사실을 문서로 받아야 한다.

②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릴 때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취급자는 별표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보유기간을 미리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3. 개별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된다.

④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서식에 의해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도의 서식에 의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존한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부가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취급자가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법정대리인의 동의) 개인정보취급자가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16조(민감정보 처리) ① 개인정보취급자가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3.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취급자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구분하여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8조(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회원제로 운영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방법을 제공해야하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절차를 위한 화면에 명시적으로 알리고 회원가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과 대체수단을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하나의 화면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제2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및 제3자 제공

제20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때는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주체와 재위탁의 관계) ① 정보주체는 수탁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재수탁자"라 한다)가 재위탁 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수탁자는 수탁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 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제3자 제공 및 연계제공) ①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관련근거에 의해 제3자 제공 및 외부기관에 연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나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제공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별지제1호서식에 따라 ‘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및 연계 제공하는 경우, 이용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한다. 만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제공기관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 혹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즉시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을 중단하고 이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③ 제3자 제공의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④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회로 부터 연계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제공받은 기관이 위원회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제3자가 이용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을 중단하고 이용을 금지하도록 대상기관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해당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해당기관에 대해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에 대하여 해당 사항을 통지한다.

제24조(정보주체와 재위탁의 관계) ① 정보주체는 수탁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재수탁자 ” 라 한다)가 재위탁 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수탁자는 수탁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 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제25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점검·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개인정보 보유·처리부서의 사용자 권한설정 등 제반보호 장치에 관한 사항의 확인 감독
8.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계 및 자료 취합
9.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업무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개인정보보호담당자의 업무)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의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점검·조사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점검
7. 개인정보 보유·처리부서의 사용자 권한설정 등 제반보호 장치에 관한 사항의 점검
8.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계 및 자료 취합
9.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업무

제27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공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지정되거나 변경이 발생하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제28조(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 업무를 대리한다.

②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소관부서의 효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분임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지정、변경 및 지도、감독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변경 및 지도、감독
3. 개인정보 수집에서 파기 등 전(全) 단계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
4. 접속기록 및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PC、서버 등)에 대한 보안관리
5.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연1회 이상 보안교육 실시
6. 그 밖에 소관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③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분임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실태점검)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검 대상 부서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개인정보 교육)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자체 개인정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연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내용
2. 개인정보보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개인정보보호교육에 대하여 외부전문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1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가 법적 근거에 따른 조치 불가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요구를 조치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제3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규에 정한 게시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에 개인별 맞춤서비스 등을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를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37조(필수적 기재사항)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38조(임의적 기재사항)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2.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6절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제40조(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적용) 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적용은 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개발 또는 관리 등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시스템으로 한정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부처 또는 상부 기관, 유관기관에 개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처 또는 기관에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개인정보취급자 접근 권한 관리 및 인증)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취급업무 전에 분야별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승인을 득해야 하며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취급, 처리 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자는 취급 업무에 관한 사항을 온라인 전자결재 또는 서면결재 등의 방법으로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여 개인정보 취급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④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⑤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관리 계정은 한 사람이 한 개의 계정을 사용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시스템 관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2조(접근통제) ①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비밀번호의 최소 길이 : 비밀번호는 구성하는 문자의 종류에 따라 최소 10자리 또는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는 정보주체에 대한 비밀번호 작성규칙과는 달리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최소 10자리 이상 : 영대문자(A~Z, 26개), 영소문자(a~z, 26개), 숫자(0~9, 10개) 및 특수문자(32개) 중 2종류 이상으로 구성한 경우
   다. 최소 8자리 이상 : 영대문자(A~Z, 26개), 영소문자(a~z, 26개), 숫자(0~9, 10개) 및 특수문자(32개) 중 3종류 이상으로 구성한 경우
   라. 비밀번호의 변경주기는 최장 6개월로 2개의 비밀번호를 서로 교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마. 위 나목과 다목의 특수문자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_ - + = [ ] [ ] | \ ; : ' " < > , . ? /

2. 비밀번호 분실 등으로 새로운 비밀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분실된 인원의 신원을 확인하고 관리자가 새로 부여한 임시 비밀번호를 초기 접속 시에만 사용하고 임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접근통제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또는 침입방지시스템(IPS)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이하 "IP"라 한다)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아니한 접근을 제한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2. 외부망으로부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은 원칙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외부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고 원격지에는 개인정보 작업내용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인 경우 P2P, 공유설정 등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 설정 등의 조치를 통해 업무상 꼭 필요한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시,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는 원칙적으로 P2P 프로그램、공유 폴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반드시 사용해야 할 경우 드라이브 전체 또는 불필요한 폴더가 공유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유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업무용 컴퓨터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사용하여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제43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 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1. 내부망에서 송、수신되는 고유식별정보는 공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암호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비밀번호와 바이오정보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2. 안전성이 확인된 전용선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암호화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고, 바이오정보는 식별 및 인증 등의 고유기능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되며 일반 민원 상담 시 저장되는 음성기록이나 일반 사진정보는 암호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또는 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주민등록번호는 검색 키로 사용하는 경우, 속도 등 성능을 고려하여 일부 정보만 암호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뒷자리 6개 번호 이상 암호화 가능

⑦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번호,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암호화 적용을 위해, 조직 내 의사결정권자의 승인을 득한 암호화 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여야 한다.

⑧ 고유식별정보를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여 관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부터 개인정보취급자의 PC에 내려 받아 저장할 때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탑재된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암호화함으로써 불법적인 노출 및 접근으로부터 차단하여야 한다.

제44조(접근기록의 위변조 방지) ①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의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확인·감독 하여야 한다.

<접속기록 항목 예시.>

필수 기록 항목	설명
ID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날짜 및 시간	접속 일시
접속자 IP 주소	접속자 정보
수행 업무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정기적으로 접속기록 백업을 수행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별도의 보조저장매체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접속기록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DVD-ROM, CD-ROM 등과 같은 덮어쓰기 방지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접속기록을 수정 가능한 매체(HDD 또는 테이프 등)에 백업하는 경우에는 무결성 보장을 위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별도의 장비에 보관·관리할 수 있다.

제45조(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위·변조, 유출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은 실시간 감시 등을 위해 항상 실행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야 한다.

② 운영체제(OS)·응용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는 악성 프로그램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응용 프로그램, 운영체제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감염 및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물리적 접근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디스켓(FD), 이동형 하드디스크(HDD), USB메모리, Flash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금고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출력 복사시 보호조치) ①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할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다량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할 경우 출력·복사자의 성명, 일시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강화된 보호조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출력 및 복사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완료된 경우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대응

제1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48조(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관계 법령이나 위원회의 의사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위원회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그 밖에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제49조(통지시기 및 항목) ①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실제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위원회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

②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초 발생한 시점과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실유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일차적으로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제50조(통지방법) ①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유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51조(개인정보 유출신고) ①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1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신고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9.6, 2014.11.2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 ’ 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유출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 ’ 를 제출할 수 있다.

④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1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유출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2절 개인정보 침해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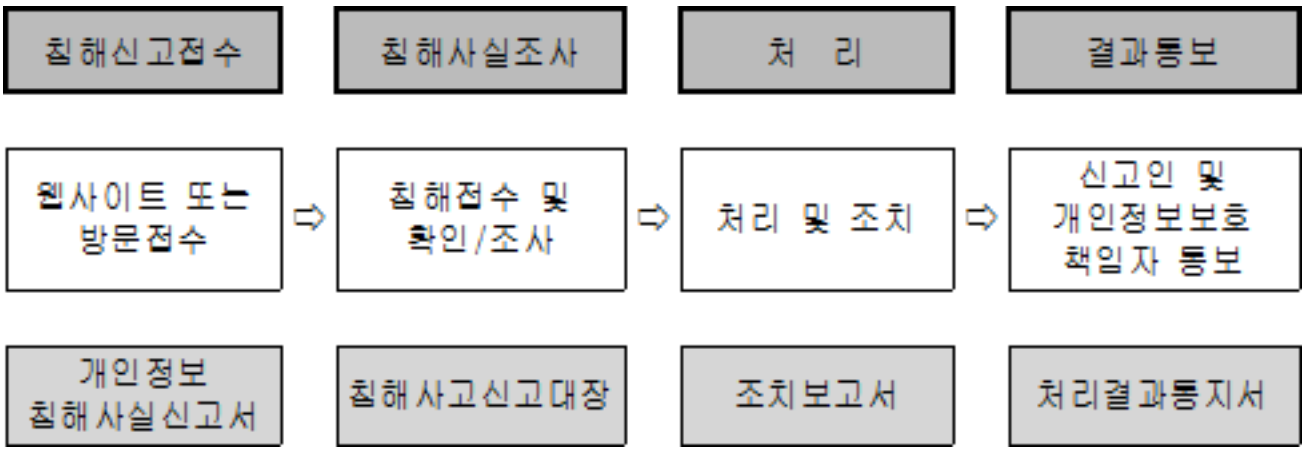
제52조(개인정보 침해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은 그 침해사실을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접수처 : 웹사이트 또는 방문접수(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2. 신고 접수 후 개인정보 침해사실에 대한 처리 조치 후 신고인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침해신고 처리절차】



제53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장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제1절 적용대상

제54조(적용대상 및 제외) 이 장은 위원회가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개인정보파일
   가.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나.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다.「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라.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마.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2.「개인정보보호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개인정보파일
   가.「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3.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4. 자료·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일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제2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와 절차

제55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현황을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9.6, 2014.11.21.>

제5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분인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한다.<개정 2013.9.6.>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자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7.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따라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7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9.6, 2014.11.21.>

제58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위원회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

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9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에 통보한다.<개정 2013.9.6, 2014.11.21.>

제60조(등록·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3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제61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2조(개인정보파일 이용·제공 관리)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3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①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야 한다.

②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③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제64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5조(보칙)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6호,2014.11.2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 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3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1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5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년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1년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 목적외 이용 [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210㎜×297㎜[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 · 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 · 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파일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란은 변경등록시에만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7일

공공기관 명칭	주소	등록부서	전화번호

등록항목	등록정보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 시 그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작성일		작성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생성일자		개인정보취급자	
주요 대상업무		현재 보관건수	
파기 사유			
파기 일정			
특기사항			
파기 승인일		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파기 장소			
파기 방법			
파기 수행자		입회자	
폐기 확인 방법			
백업 조치 유무			
매체 폐기 여부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폐기일	폐기사유	처리담당자	처리부서장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 제공 대장

구분	주요내용
① 개인정보파일명	
② 이용 · 제공받는 기관	
③ 이용 · 제공일자	
④ 이용 · 제공주기	
⑤ 이용 · 제공형태	
⑥ 이용 · 제공목적	
⑦ 이용 · 제공근거	
⑧ 이용 · 제공항목	
⑨ 비고	

【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 ] 열람 [ ] 정정·삭제 [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 열람	[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 정정·삭제	※ 정정·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위 원 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삭제' 란에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생략>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 ] 열람 [ ] 일부열람 [ ] 열람연기 [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 열람 [ ] 일부열람 [ ] 열람연기 [ ] 열람거절)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 열람·시청 [ ] 사본·출력물 [ ] 전자파일 [ ] 복제물·인화물 [ ] 기타		
	열람 방법	[ ] 직접방문 [ ] 우편 [ ] 팩스 [ ] 전자우편 [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위 원 장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생략>

【별지 제0호서식】

개인정보 ([ ] 정정·삭제, [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요구 내용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조치 내용	
□ 정정·삭제 □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위 원 장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서식】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위 원 장 귀하

210㎜×297㎜[인쇄용지(특급) 34g/㎡]

지역경찰을위한필수절차법

제 작 자 : 정애란
기관/부서 : 분당경찰서 야탑지구대
전화번호 : 0317063112
메일주소 : erai7900@naver.com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05번지 야탑지구대

제작일자 : 2015.9.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